발 간 등 록 번 호 G000DB5-2024-7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024년 7월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024년 7월판

일러두기

본 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심사지침」을 수록함.

세부사항은 고시 제2001-28호(2001년 6월 8일부터 시행)부터 고시 제2024-130호(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까지 신설내용은 추가하고, 변경내용은 최종내용으로 수록하되, 삭제고시는 제외하고 분류번호순(효능군순)으로 정렬하였으며, 심사지침은 2011년 3월 및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수록하였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0호(2024년 6월 25일 시행,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년 7월 1일 시행,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부록으로 수록함.

최종 고시 대호와 시행일을 괄호()안에 표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024년 7월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목 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

```
제정 2000.12.30. 고시 제2000- 73호(2001. 1. 1. 시행)
개정 2001. 6. 8. 고시 제2001- 28호(2001. 6. 8. 시행)
개정 2001, 8, 8, 고시 제2001- 43호(2001, 8, 8, 시행)
개정 2001.10.19. 고시 제2001- 51호(2001.10.25. 시행)
개정 2001.12. 5. 고시 제2001- 64호(2001.12. 5. 시행)
개정 2001.12.31. 고시 제2001- 73호(2001.12.31. 시행)
개정 2002. 3. 8. 고시 제2002- 17호(2002. 3. 8. 시행)
개정 2002, 3.29, 고시 제2002- 26호(2002, 4, 1, 시행)
개정 2002, 5.15, 고시 제2002- 36호(2002, 6, 1, 시행)
개정 2002, 5,25, 고시 제2002- 38호(2002, 6, 1, 시행)
개정 2002. 6.28. 고시 제2002- 42호(2002. 7. 1. 시행)
개정 2002, 6.29, 고시 제2002- 45호(2002, 7, 1, 시행)
개정 2002, 7, 8, 고시 제2002- 48호(2002, 1, 1, 적용)
개정 2002. 8.14. 고시 제2002- 57호(2002. 9. 1. 시행)
개정 2002, 8.14, 고시 제2002- 58호(2002, 8.16, 시행)
개정 2002, 9.17, 고시 제2002-65호(2002.10, 1, 시행)
개정 2002.11.14. 고시 제2002- 75호(2002.12. 1. 시행)
개정 2002.12.17. 고시 제2002- 90호(2003. 1. 1. 시행)
개정 2002.12.27. 고시 제2002- 93호(2003. 1. 1. 시행)
개정 2003. 1.29. 고시 제2003- 6호(2003. 2. 1. 시행)
개정 2003, 2.21, 고시 제2003- 11호(2003, 3, 1, 시행)
개정 2003. 3.28. 고시 제2003- 19호(2003. 4. 1. 시행)
개정 2003, 4.21, 고시 제2003- 21호(2003, 4.21, 시행)
개정 2003. 5.14. 고시 제2003- 28호(2003. 6. 1. 시행)
개정 2003, 5,31, 고시 제2003- 31호(2003, 6, 1, 시행)
개정 2003. 7. 2. 고시 제2003- 38호(2003. 7. 2. 시행)
개정 2003. 8. 1. 고시 제2003- 43호(2003. 8. 1. 시행)
개정 2003. 8.22. 고시 제2003- 45호(2003. 9. 1. 시행)
개정 2003. 9. 8. 고시 제2003- 50호(2003. 9. 8. 시행)
개정 2003. 9.29. 고시 제2003- 54호(2003.10. 1. 시행)
개정 2003.11. 1. 고시 제2003- 63호(2003.11. 1. 시행)
개정 2003.11.27. 고시 제2003- 71호(2003.12. 1. 시행)
개정 2003.11.29. 고시 제2003- 73호(2003.12. 1. 시행)
개정 2003.12.26. 고시 제2003- 84호(2004. 1. 1. 시행)
개정 2004. 1.16. 고시 제2004- 2호(2004. 1.16. 시행)
개정 2004. 1.26. 고시 제2004- 4호(2004. 2. 1. 시행)
개정 2004. 2.27. 고시 제2004- 13호(2004. 3. 1. 시행)
개정 2004. 3.13. 고시 제2004- 15호(2004. 3.13. 시행)
개정 2004. 3.29. 고시 제2004- 21호(2004. 4. 1. 시행)
개정 2004. 4.28. 고시 제2004- 28호(2004. 5. 1. 시행)
개정 2004. 6.28. 고시 제2004- 38호(2004. 7. 1. 시행)
개정 2004. 8. 9. 고시 제2004- 50호(2004. 8. 9. 시행)
```

```
개정 2004. 9. 1. 고시 제2004- 53호(2004. 9. 1. 시행)
개정 2004.10. 1. 고시 제2004- 61호(2004.10. 1. 시행)
개정 2004.12. 1. 고시 제2004- 74호(2004.12. 1. 시행)
개정 2004.12.23. 고시 제2004-81호(2005. 1. 1. 시행)
개정 2005. 1.29. 고시 제2005- 5호(2005. 2. 1. 시행)
개정 2005, 3, 9, 고시 제2005- 17호(2005, 3,10, 시행)
개정 2005. 3.31. 고시 제2005- 22호(2005. 4. 1. 시행)
개정 2005. 5. 7. 고시 제2005- 27호(2005. 5.10. 시행)
개정 2005. 6.20. 고시 제2005- 40호(2005. 7. 1. 시행)
개정 2005. 7.29. 고시 제2005- 52호(2005. 8. 1. 시행)
개정 2005. 8.29. 고시 제2005- 57호(2005. 9. 1. 시행)
개정 2005. 9. 9. 고시 제2005- 61호(2005. 9.15. 시행)
개정 2005.10.17. 고시 제2005- 68호(2005.10.17. 시행)
개정 2005.10.21. 고시 제2005- 70호(2005.10.21. 시행)
개정 2005.10.31. 고시 제2005- 71호(2005.11. 1. 시행)
개정 2005.11.25. 고시 제2005-82호(2005.12. 1. 시행)
개정 2005.12. 4. 고시 제2005- 84호(2005.12.15. 시행)
개정 2005.12.28. 고시 제2005- 97호(2006. 1. 1. 시행)
개정 2006. 1. 6. 고시 제2006- 2호(2006. 1. 9. 시행)
개정 2006. 1.30. 고시 제2006- 10호(2006. 2. 1. 시행)
개정 2006. 2.28. 고시 제2006- 17호(2006. 3. 1. 시행)
개정 2006. 3.29. 고시 제2006- 23호(2006. 4. 1. 시행)
개정 2006. 4.28. 고시 제2006- 33호(2006. 5. 1. 시행)
개정 2006. 7.27. 고시 제2006- 62호(2006. 8. 1. 시행)
개정 2006, 8.29, 고시 제2006- 68호(2006, 9, 1, 시행)
개정 2006.10.31. 고시 제2006- 82호(2006.11. 1. 시행)
개정 2006.11.13. 고시 제2006- 84호(2006.11.13. 시행)
개정 2006.11.30. 고시 제2006- 97호(2006.12. 1. 시행)
개정 2006.12.29. 고시 제2006-118호(2007. 1. 1. 시행)
개정 2007. 1. 5. 고시 제2007- 1호(2007. 1. 1. 시행)
개정 2007. 1.29. 고시 제2007- 7호(2007. 2. 1. 시행)
개정 2007. 2.28. 고시 제2007- 22호(2007. 3. 1. 시행)
개정 2007. 3.28. 고시 제2007- 26호(2007. 4. 1. 시행)
개정 2007. 4. 4. 고시 제2007- 28호(2007. 4. 5. 시행)
개정 2007. 4.26. 고시 제2007- 34호(2007. 5. 1. 시행)
개정 2007, 5.23, 고시 제2007- 42호(2007, 8, 1, 시행)
개정 2007. 5.29. 고시 제2007- 47호(2007. 6. 1. 시행)
개정 2007. 6.28. 고시 제2007- 54호(2007. 7. 1. 시행)
개정 2007. 7.26. 고시 제2007- 62호(2007. 8. 1. 시행)
개정 2007. 8.31. 고시 제2007- 78호(2007. 9. 1. 시행)
개정 2007. 9.27. 고시 제2007- 83호(2007.10. 1. 시행)
개정 2007.10.30. 고시 제2007- 97호(2007.11. 1. 시행)
개정 2007.11.27. 고시 제2007-112호(2007.12. 1. 시행)
개정 2007.12.27. 고시 제2007-132호(2008. 1. 1. 시행)
개정 2008, 1,30, 고시 제2008- 10호(2008, 2, 1, 시행)
```

개정 2008. 2.28. 고시 제2008- 28호(2008. 3. 1. 시행) 개정 2008, 4.2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28호(2008, 5, 1, 시행) 개정 2008. 5.1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35호(2008.10. 1. 시행) 개정 2008. 5.28.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45호(2008. 6. 1. 시행) 개정 2008. 6.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49호(2008. 6. 1. 시행) 개정 2008. 6.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69호(2008. 7. 1. 시행) 개정 2008. 7.1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73호(2008. 8. 1. 시행) 개정 2008. 7.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82호(2008. 8. 1. 시행) 개정 2008. 8.2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90호(2008. 9. 1. 시행) 개정 2008. 9.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97호(2008. 9. 2. 시행) 개정 2008, 9.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2호(2008, 9.30, 시행) 개정 2008.11. 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1호(2008.11. 5. 시행) 개정 2008.11.28.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7호(2008.12. 1. 시행) 개정 2008.12.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4호(2009. 1. 1. 시행) 개정 2009. 1.2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13호(2009. 2. 1. 시행) 개정 2009. 2.2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7호(2009. 3. 1. 시행) 개정 2009. 3.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8호(2009. 4. 1. 시행) 개정 2009. 3.2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50호(2009. 3.23. 시행) 개정 2009. 3.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59호(2009. 4. 1. 시행) 개정 2009. 4.2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71호(2009. 6. 1. 시행) 개정 2009. 4.2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73호(2009. 4.27. 시행) 개정 2009. 4.2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79호(2009. 5. 1. 시행) 개정 2009. 4.2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80호(2009. 4.29. 시행) 개정 2009. 5. 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82호(2009. 5. 6. 시행) 개정 2009. 5.27.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95호(2009. 6. 1. 시행) 개정 2009. 6.2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5호(2009. 7. 1. 시행) 개정 2009. 7.28.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8호(2009. 8. 1. 시행) 개정 2009. 8.2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9호(2009. 8.21. 시행) 개정 2009. 8.27.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61호(2009. 9. 1. 시행) 개정 2009, 9.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3호(2009.10, 1, 시행) 개정 2009.10.2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7호(2009.10.29. 시행) 개정 2009.10.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9호(2009.11. 1. 시행) 개정 2009.11.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4호(2010. 1. 1. 시행) 개정 2009.11.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5호(2009.12. 1. 시행) 개정 2009.12.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0호(2010. 1. 1. 시행) 개정 2009.12.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7호(2010. 1. 1. 시행) 개정 2010. 1.2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 20호(2010. 2. 1. 시행) 개정 2010. 2.2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 39호(2010. 3. 1. 시행) 개정 2010. 3.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7호(2010. 4. 1. 시행) 개정 2010. 4.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10호(2010. 5. 1. 시행) 개정 2010. 4.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20호(2010. 5. 1. 시행) 개정 2010. 5.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27호(2010. 5.24. 시행) 개정 2010, 5,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30호(2010, 6, 1, 시행) 개정 2010. 6.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43호(2010. 7. 1. 시행) 개정 2010. 6.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47호(2010. 7. 1. 시행)

| 5 |

```
개정 2010. 7.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57호(2010. 8. 1. 시행)
개정 2010. 8.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69호(2010. 9. 1. 시행)
개정 2010. 9.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80호(2010.10. 1. 시행)
개정 2010.10.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87호(2010.11. 1. 시행)
개정 2010.11.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98호(2010.12. 1. 시행)
개정 2010.12.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5호(2011. 1. 1. 시행)
개정 2011. 1.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3호(2011. 1.14. 시행)
개정 2011. 1.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10호(2011. 2. 1. 시행)
개정 2011. 1.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11호(2011. 2. 1. 시행)
개정 2011, 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16호(2011, 2.14, 시행)
개정 2011. 2.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23호(2011. 3. 1. 시행)
개정 2011. 3.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25호(2011. 3. 9. 시행)
개정 2011. 3.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39호(2011. 4. 1. 시행)
개정 2011. 4.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49호(2011. 5. 1. 시행)
개정 2011. 5.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60호(2011. 6. 1. 시행)
                                     (2011. 7. 1. 시행)
개정 2011. 6.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74호(2011. 8. 1. 시행)
                                     (2011. 9. 1. 시행)
                                     (2011.10. 1. 시행)
개정 2011, 8.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89호(2011, 9, 1, 시행)
개정 2011. 8.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99호(2011. 9. 1. 시행)
개정 2011. 9.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2011.10. 1. 시행)
개정 2011. 9.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2호(2011.10. 1. 시행)
개정 2011.10.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4호(2011.11. 1. 시행)
                                     (2012. 1. 1. 시행)
개정 2011.12.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2호(2012. 3. 1. 시행)
                                     (2012. 1. 1. 시행)
개정 2011.12.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3호(2012. 1. 1. 시행)
개정 2012. 2.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19호(2012. 3. 1. 시행)
                                     (2012. 2.10. 시행)
개정 2012. 3.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37호(2012. 4. 1. 시행)
개정 2012, 5.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57호(2012, 6, 1, 시행)
개정 2012. 6.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75호(2012. 7. 1. 시행)
개정 2012. 7.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97호(2012. 8. 1. 시행)
개정 2012. 8.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5호(2012. 9. 1. 시행)
                                     (2012.11. 1. 시행)
개정 2012. 9.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5호(2012.10. 1. 시행)
개정 2012.10.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9호(2012.11. 1. 시행)
개정 2012.11.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5호(2012.12. 1. 시행)
                                     (2013. 1. 1. 시행)
개정 2012.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3호(2013. 1. 1. 시행)
                                     (2013. 2. 1. 시행)
개정 2013, 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34호(2013, 3, 1, 시행)
개정 2013. 3.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54호(2013. 4. 1. 시행)
개정 2013. 4.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68호(2013. 5. 1. 시행)
```

개정 2013, 5.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75호(2013, 6, 1, 시행) 개정 2013. 6.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3호(2013. 7. 1. 시행) 개정 2013. 7.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3호(2013. 8. 1. 시행) 개정 2013. 8.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 9. 1. 시행) 개정 2013. 9.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1호(2013.10. 1. 시행) 개정 2013.1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7호(2013.11. 1. 시행) 개정 2013.11.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3호(2013.12. 1. 시행) 개정 2013.1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0호(2014. 1. 1. 시행) 개정 2014. 1.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7호(2014. 2. 1. 시행) 개정 2014, 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34호(2014, 3, 1, 시행) 개정 2014. 3.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46호(2014. 4. 1. 시행) 개정 2014, 4.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2호(2014, 5, 1, 시행) 개정 2014, 5.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75호(2014, 6, 1, 시행) 개정 2014. 6.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2호(2014. 7. 1. 시행) 개정 2014. 7.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7호(2014. 8. 1. 시행) 개정 2014, 8.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0호(2014, 9, 1, 시행) 개정 2014. 9.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6호(2014.10. 1. 시행) 개정 2014.10.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0호(2014.11. 1. 시행) 개정 2014.11.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2014.12. 1. 시행) 개정 2014.12.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2호(2015. 1. 1. 시행) 개정 2015. 1.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18호(2015. 2. 1. 시행) 개정 2015. 1.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1호(2015. 2. 1. 시행) 개정 2015. 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38호(2015. 3. 1. 시행) 개정 2015. 3.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51호(2015. 4. 1. 시행) 개정 2015, 4.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68호(2015, 5, 1, 시행) 개정 2015. 5.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81호(2015. 6. 1. 시행) 개정 2015. 6.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91호(2015. 6. 8. 시행) 개정 2015. 6.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8호(2015. 7. 1. 시행) 개정 2015, 7.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7호(2015, 7.21, 시행) 개정 2015. 7.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4호(2015. 8. 1. 시행) 개정 2015, 8.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4호(2015, 9, 1, 시행) 개정 2015, 9.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2호(2015.10, 1, 시행) 개정 2015.10.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5호(2015.10. 3. 시행) 개정 2015.10.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4호(2015.11. 1. 시행) 개정 2015.11.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5호(2015.12. 1. 시행) 개정 2015.12.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9호(2016. 1. 1. 시행) 개정 2016. 1.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1호(2016. 2. 1. 시행) 개정 2016. 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31호(2016. 3. 1. 시행) 개정 2016. 3.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49호(2016. 4. 1. 시행) 개정 2016. 4.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66호(2016. 5. 1. 시행) 개정 2016. 5.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83호(2016. 5. 4. 시행) (2016. 6. 1. 시행) 개정 2016, 6,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2016, 7, 1, 시행) 개정 2016. 7.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5호(2016. 8. 1. 시행) 개정 2016. 8.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3호(2016. 9. 1. 시행)

```
개정 2016. 9.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7호(2016.10. 1. 시행)
개정 2016.10.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3호(2016.11. 1. 시행)
개정 2016.11.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3호(2016.12. 1. 시행)
개정 2016.12.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9호(2016. 1. 1. 시행)
개정 2016.12.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2017. 1. 1. 시행)
개정 2017. 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7호(2017. 2.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35호(2017. 3. 1. 시행)
개정 2017. 3.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62호(2017. 4. 1. 시행)
개정 2017. 4.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77호(2017. 5. 1. 시행)
개정 2017, 5.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93호(2017, 6, 1, 시행)
개정 2017. 6.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96호(2017. 6.12. 시행)
개정 2017. 7.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9호(2017. 7. 1. 시행)
개정 2017. 7.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2017. 8. 1. 시행)
개정 2017. 8.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3호(2017. 9. 1. 시행)
개정 2017. 9.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0호(2017.10. 1. 시행)
개정 2017.10.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2017.11. 1. 시행)
개정 2017.11.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2017.12. 1. 시행)
개정 2017.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6호(2018. 1. 1. 시행)
개정 2018. 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8호(2018. 2. 1. 시행)
개정 2018. 2.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8호(2018. 3. 1. 시행)
개정 2018. 3.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58호(2018. 4. 1. 시행)
개정 2018. 4.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81호(2018. 5. 1. 시행)
개정 2018. 5.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97호(2018. 6. 1. 시행)
개정 2018. 6.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5호(2018. 6. 9. 시행)
개정 2018. 6.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2018. 7. 1. 시행)
개정 2018. 7.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7호(2018. 7.19. 시행)
개정 2018. 7.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8호(2018. 8. 1. 시행)
개정 2018. 8.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2018. 9. 1. 시행)
개정 2018, 9.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2018, 10.1, 시행)
개정 2018.10.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2018. 11.1. 시행)
개정 2018.11.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3호(2018. 12.1. 시행)
개정 2018.12.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2019. 1. 1. 시행)
개정 2019. 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1호(2019. 2. 1. 시행)
개정 2019. 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38호(2019. 3. 1. 시행)
개정 2019. 3.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57호(2019. 4. 1. 시행)
개정 2019. 4.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69호(2019. 4. 8. 시행)
개정 2019. 4.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88호(2019. 5. 1. 시행)
개정 2019. 5.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93호(2019. 6. 7. 시행)
개정 2019. 6.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2호(2019. 7. 1. 시행)
개정 2019. 7.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3호(2019. 7.21. 시행)
                                    (2019. 7.23. 시행)
개정 2019. 7.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1호(2019. 8. 1. 시행)
                                    (2019. 8. 5. 시행)
개정 2019, 8.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1호(2019, 9, 1, 시행)
개정 2019. 9.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0호(2019.10. 1. 시행)
```

```
개정 2019.10.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2019.11. 1. 시행)
                                     (2019.11. 8. 시행)
                                     (2020. 1. 1. 시행)
개정 2019.11.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2호(2019.12. 1. 시행)
                                     (2019.12. 5. 시행)
개정 2019.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3호(2020. 1. 1. 시행)
개정 2019.1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1호(2020. 1. 1. 시행)
정정 2019.1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2호(2020. 1. 1. 시행)
개정 2020. 1.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17호(2020. 2. 1. 시행)
개정 2020. 2.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5호(2020. 1. 4. 시행)
개정 2020. 2.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8호(2020. 2.10. 시행)
개정 2020. 2.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37호(2020. 1. 4. 시행)
                                     (2020. 3. 1. 시행)
개정 2020. 3.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69호(2020. 4. 1. 시행)
개정 2020. 4.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79호(2020. 5. 1. 시행)
                                     (2020. 5. 8. 시행)
개정 2020, 5.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7호(2020, 6, 1, 시행)
개정 2020. 6.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3호(2020. 7. 1. 시행)
개정 2020. 7.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1호(2020. 8. 1. 시행)
개정 2020. 8.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5호(2020. 9. 1. 시행)
개정 2020. 9.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7호(2020.10. 1. 시행)
개정 2020.10.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4호(2020.11. 1. 시행)
개정 2020.11.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5호(2020.12. 1. 시행)
개정 2020.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1호(2020.12. 1. 시행)
개정 2020.12.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5호(2021. 1. 1. 시행)
개정 2021. 1.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호(2021. 1.16. 시행)
개정 2021. 1.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6호(2021. 2. 1. 시행)
개정 2021. 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65호(2021. 3. 1. 시행)
개정 2021, 3.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1호(2021, 4, 1, 시행)
개정 2021, 4.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7호(2021, 5, 1, 시행)
개정 2021, 5.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2호(2021, 6, 1, 시행)
개정 2021. 6.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1호(2021. 6. 7. 시행)
개정 2021. 7.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호(2021. 7. 1. 시행)
개정 2021. 7.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4호(2021. 7. 6. 시행)
개정 2021. 7.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7호(2021. 8. 1. 시행)
개정 2021. 8.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4호(2021. 9. 1. 시행)
개정 2021. 9.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2021.10. 1. 시행)
개정 2021.10.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2021.11. 1. 시행)
개정 2021.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4호(2021.12. 1. 시행)
개정 2021.12.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7호(2022. 1. 1. 시행)
                                     (2022. 1. 9. 시행)
                                     (2022. 2. 1. 시행)
개정 2022, 1,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4호(2022, 2, 1, 시행)
개정 2022. 2.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6호(2022. 3. 1. 시행)
                                     (2022. 3.10. 시행)
```

(2022. 3.11. 시행) 개정 2022. 3.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7호(2022. 4. 1. 시행) 개정 2022. 4.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1호(2022. 5. 1. 시행) 개정 2022. 5.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1호(2022. 6. 1. 시행) 개정 2022. 6.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0호(2022. 7. 1. 시행) 개정 2022. 7.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1호(2022. 8. 1. 시행) 개정 2022. 7.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4호(2022. 8. 1. 시행) 개정 2022. 8.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7호(2022. 9. 1. 시행) 개정 2022. 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1호(2022. 9. 1. 시행) 개정 2022, 9.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2022.10, 1, 시행) 개정 2022.1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2022.11. 1. 시행) 개정 2022.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2022.12. 1. 시행) 개정 2022.12.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2023. 1. 1. 시행) 개정 2023. 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3호(2023. 2. 1. 시행) 개정 2023. 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37호(2023. 3. 1. 시행) 개정 2023. 3.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58호(2023. 4. 1. 시행) 개정 2023. 4.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82호(2023. 5. 1. 시행) 개정 2023. 5.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2023. 6. 1. 시행) 개정 2023. 6.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2023. 7. 1. 시행) 개정 2023. 7.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호(2023. 8. 1. 시행) 개정 2023. 8.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2023. 9. 1. 시행) 개정 2023. 9.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4호(2023.10. 1. 시행) 개정 2023.1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7호(2023.11. 1. 시행) 개정 2023.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2023.12. 1. 시행) 개정 2023.12.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호(2023.12.20. 시행) 개정 2023.12.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2024. 1. 1. 시행) 개정 2024. 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2024. 2. 1. 시행) 개정 2024. 1.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2024. 2. 1. 시행) 개정 2024, 2.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2024, 3, 1, 시행) 개정 2024. 3.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2024. 4. 1. 시행) 개정 2024, 4.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2024, 5, 1, 시행) 개정 2024, 5.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2024, 6, 1, 시행) 개정 2024, 6.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2024, 7, 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00호(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2.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6호, 2023. 2. 22., 일부개정.]

제1조(의약품등 분류번호) 의약품등 분류번호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86호, 2023. 2. 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의약품분류표

분류번호	약효분류
400 1174711 7171	
100 신경계 감각	
110 중추신	정시공작 전신마취제
	^{전선이} 위에 최면진정제
	되고면 6세 항전간제
	8년년시 해열, 진통, 소염제
	에르, '근'S, '프라'에 각성제, 흥분제
	~ 60개, 8년개 진훈제
	으로 " 정신신경용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20 말초신	
	골격 근 이완제
	자율신경제
124	진경제
125	발한제, 지한제
129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130 감각기	관용약
	안과용제
	이비과용제
	기타의 감각기관용약
140 알레르	
	항히스타민제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190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의약품
200 개개의 기관	예용 의약품
210 순환계	용약
211	강심제
212 -	부정맥용제
	이뇨제
	혈압강하제
	혈관보강제
	혈관수축제 1011년 21년
	혈관확장제 FRINTERON
218 -	동맥경화용제

분류번호 약효분류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220 호흡기관용약

221 호흡촉진제

222 진해거담제

223 함소흡입제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230 소화기관용약

231 치과구강용약

232 소화성궤양용제

233 건위소화제

234 제산제

235 최토제, 진토제

236 이담제

237 정장제

238 하제, 완장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40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241 뇌하수체호르몬제

242 수액신호르몬제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245 부신호르몬제

246 남성호르몬제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248 혼합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250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251 요로소독제

252 자궁수축제

253 통경제

254 피임제

255 비뇨생식기관용제(성병예방제포함)

256 치질용제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260 외피용약

261 외피용살균소독제

262 창상보호제

263 화농성질환용제

264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265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266 피부연화제(부식제를 포함)

267 모발용제(발모, 탈모, 염모, 양모제)

분류번호 약효분류 268 욕제 269 기타의 외피용약 290 기타의 개개의 기관용 의약품 300 대사성 의약품 310 비타민제 311 비타민A 및 D제 312 비타민BI제 313 비타민B제(비타민BI을 제외) 314 비타민C 및 P제 315 비타민E 및 K제 316 혼합비타민제(비타민A,D 혼합제를 제외) 319 기타의 비타민제 320 자양강장변질제 321 칼슘제 322 무기질제제 323 당류제 324 유기산제제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326 장기제제 327 유유아용제 329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330 혈액 및 체액용약 331 혈액대용제 332 지혈제 333 혈액응고저지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40 인공관류용제 341 인공신장관류용제 349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390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391 간장질환용제 392 해독제 393 습관성중독용제 394 통풍치료제 395 효소제제 396 당뇨병용제 398 종합대사성제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400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410 조직부활용약

411 클로로필제제

분류번호 약효분류

- 412 색소제제
- 419 기타의 세포부활용약
- 420 종양용약
 - 421 항악성종양제
 -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 430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
 - 431 방사성 의약품
 -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 490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600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 610 항생물질제제
 -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 612 주로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 613 주로 항산성균에 작용하는 것
 - 614 주로 그람양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 615 주로 그람음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 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것
 -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 619 기타의 항생물질 제제(복합항생물질제제를 포함)
- 620 화학료법제
 - 621 설화제
 - 622 항결핵제
 - 623 치나제
 - 624 구매제
 - 625 후란계 제제
 -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 630 생물학적 제제
 - 631 백신류
 - 632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 633 항독소 및 레토스피라혈청류
 - 634 혈액제제류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 636 생물학적 제제
 -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 640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 641 항원충제
 - 642 구충제
 - 649 기타의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 690 기타의 병원생물에 대한 의약품

분류번호 약효분류

700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및 관련제품

710 조제용약

711 부형제

712 연고기제

713 용해제

714 교미교취착색제

715 유화제

719 기타의 조제용약

720 진단용약

721 X선조영제

722 일반검사용 시약

723 혈액검사용 시약

724 생화학적 검사용 시약

725 면역혈청학적 검사용 시약

726 세균학적 검사용제

727 병리조직검사용 시약

728 기능검사용 시약

729 기타의 진단용약

730 공중위생용약

731 방부제

732 방역용 살균소독제

733 방충제

734 살충제

739 기타의 공중위생용약

740 관련제품

741 캅셀류

790 기타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791 반창고

799 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800 마약

810 알카로이드 마약(천연)

81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812 코카알카로이드계 제제

819 기타의 알카로이드계 마약(천연마약)

820 비알카로이드계 마약

821 합성마약

829 기타의 비알카로이드계 마약

890 기타의 마약

(이후 생략)

분류번호순 색인

분류번호순 색인

■ 약제

★ 일반원칙 교시 제2022-2503 22.11.1 61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Neuroprotective agents) 교시 제2018-253호 18.12.1 61 경구용 반성 B형간염치료제 교시 제2023-37호 23.3.1 62 경구용 반성 B형간염치료제 교시 제2020-69호 20.4.1 68 경구용 하보전증약 교시 제2020-199호 20.4.1 68 경구용 합보전증약 교시 제2024-20호 24.2.1 73 교지혈증치료제 교시 제2024-20호 24.2.1 73 교회합증치료제 교시 제2024-20호 24.2.1 73 교험업외제 교시 제2024-20호 24.2.1 73 교험업제제 교시 제2024-20호 24.2.1 73 교회합증치료제 교시 제2024-20호 24.2.1 73 교업기업기업 요약급여의 가증에 관한 규칙 교시 제2024-72호 24.5.1 77 편안경보에 교시 제2024-72호 24.5.1 77 편안경보에 교시 제2024-72호 24.5.1 79 환경보에 교기 제2024-72호 24.5.1 77 편안경보에 교기 제2024-72호 24.5.1 79 보고생물에 교기 제2024-72호 24.5.1 79 </th <th>성 분 명</th> <th>품 명</th> <th>고시번호</th> <th>시행일</th> <th>페이지</th>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경구용 남대사개선제 (Neuroprotective agents)	◆ 일반원칙				
경구용 안성 B항간염치료제 고시 제2023-37호 23.3.1. 62 경우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교시 제2020-69호 20.4.1 68 원합 차반투여 기준 고시 제2019-191호 19.9.1 68 경구용 항뇌전증약 경구에 행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고시 제2024-50호 24.2.1. 73 고시 혈증치료제 고시 제2024-20호 24.2.1. 73 고시 현실한제 행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고시 제2024-20호 24.2.1. 73 고시 현실한제 행열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고시 제2024-20호 24.2.1. 73 고시 현실한제 교시 제2024-32호 23.2.1. 75 골다공증치료제 고시 제2023-23호 23.2.1. 75 골다공증치료제 고시 제2024-72호 24.5.1. 77 국민건강보험 요앙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설행이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임정이 경하여 공교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국소지철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0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0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3 남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3 당뇨병용제 고시 제2022-268호 22.12.1 83 당뇨병용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3 당뇨병용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민약성 신통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0 민료스 코로내바이라스 (MERS-CoV) 및 코로내바이라스 (MERS-CoV) 및 코로내바이라스 (MERS-CoV) 및 코로내바이라스 (전문 등 영연령대 금기 성분 및 보고생기상으로 (조상 등 9) (COVID-19) 치료제 병원금기 성분 고시 제2013-127호 13.9.1. 96 반결학항산교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6 반결학항산교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보고생기업기로 기공.1. 98 비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집한 그 지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집한 이난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체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집한 이난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집한 이난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집한 이난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시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시방	간장용제		고시 제2022-250호	22.11.1.	61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괴립제) 분할 차방투여 기준 경구용 항되건증약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Neuroprotective agents)		고시 제2018-253호	18.12.1.	62
문할 처방투여 기준 경구용 항뇌건증약 교시 제2019-191호 19.9.1 68 경구용 항뇌건증약 교시 제2019-191호 19.9.1 68 경구용 항뇌건증약 교시 제2024-55호 24.4.1. 69 교기 제2024-20호 24.2.1. 73 교시 제2024-20호 24.2.1. 73 교시 제2014-34호 24.2.1. 73 교기 제공하지로제 교시 제2014-34호 24.2.1. 73 교기 제203-12호 23.2.1. 75 골다공하되로제 교시 제2024-72호 24.5.1. 7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생하에 의하여 충존환자 중 암환자에게 청하는 우예라는 약제로 건강보험십시평가임관이 참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국소지철제 교시 제2024-37호 24.3.1. 80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82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교시 제2022-268호 22.12.1. 83 되다시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83 담보양에 동일성는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마약성 진통제 교시 제2024-130호 24.7.1. 83 동일성는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교시 제2013-127호 13.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라스 (MERS-CoV) 및 고시 제2017-109호 17.7.1. 94 별로크기 성분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배결화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모시 제2013-127호 13.9.1. 95 배결화항산균 (NTM, Non-Tuberculous 제2시 제2013-127호 13.9.1. 96 배우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바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반급한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천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요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기주사 및 장기처방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고시 제2023-37호	23.3.1.	62
경구용 항혈전제 (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고시 제2024-55호 24.4.1. 69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4-34호 14.3.1. 73 고지혈증치료제 고시 제2013-32호 23.2.1. 75 골다공증치료제 고시 제2023-23호 23.2.1. 75 골다공증치료제 고시 제2024-72호 24.5.1. 77 국민강보험 요앙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조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국소지혈제 고시 제2024-37호 13.9.1. 80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고시 제2022-268호 22.12.1. 83 당뇨병용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2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83 당뇨병용제 고시 제2014-130호 24.7.1. 8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3-127호 13.9.1. 89 마약성 진통제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병유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보조생시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17-109호 17.7.1. 94 보조생시술에 가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5 비결핵향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보고생사실에 가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5 비결핵향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보고생사실에 가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6 만원호 가적인 항량 의약품 사용 비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연고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원호 아이나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체처요법 (Conditioning therapy) 요오드 조영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치방			고시 제2020-69호	20.4.1	68
교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교시 제2024-20호 24.2.1. 73 고지혈증치료제 교시 제2014-34호 14.3.1. 73 고혈압약제 교시 제2023-23호 23.2.1. 75 골다공증치료제 교시 제2024-72호 24.5.1. 7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계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압환자에게 참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신사평가원장이 경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국소지혈제 교시 제2019-240호 19.11.1 79 경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국소지혈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82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교시 제2022-268호 22.12.1. 83 되대사체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83 당노병용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83 당노병용제 교시 제2024-310호 24.7.1. 8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교시 제2013-127호 13.9.1. 99 미약성 진통제 교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르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르나바이러스 감염증 19 (COVID-19) 치료제 보존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교시 제2023-184호 22.8.1. 92 범우금기 성분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교시 제2023-184호 23.10.1. 95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연고 교시 제2017-109호 17.7.1. 94 비용효과적인 합량 의약품 사용 비타민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연고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원고 모셔지 보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체되었임 (Conditioning therapy) 요오드 조영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경구용 항뇌전증약		고시 제2019-191호	19.9.1	68
교지혈증치료제 교시 제2014-34호 14.3.1. 73 고혈압약제 교시 제2023-23호 23.2.1. 75 달다공증치료제 교시 제2024-72호 24.5.1. 77 국민건강보험 요앙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계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생가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신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국소지혈제 교시 제2019-240호 19.11.1 79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82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교시 제2022-268호 22.12.1. 83 되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교시 제2022-268호 22.12.1. 83 당뇨병용제 교시 제2024-130호 24.7.1. 83 당뇨병용제 교시 제2024-130호 24.7.1. 83 당뇨병용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89 마약성 진통제 교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COVID-19) 치료제 명유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목정생숙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교시 제2023-184호 22.8.1. 92 범무리가 성분 명하는데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보고생시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교시 제2017-109호 17.7.1. 94 반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비타민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연고 모시 제2017-109호 17.7.1. 98 비타민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연고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연고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연고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원고 모든 조영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치방	경구용 항혈전제 (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고시 제2024-55호	24.4.1.	69
교혈압약제 교시 제2023-23호 23.2.1. 75 골다공증치료제 교시 제2024-72호 24.5.1. 77 국민건강보험 요앙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실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국소지혈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80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교시 제2022-268호 22.12.1. 80 기관지천식 기료용흡입제 교시 제2022-268호 22.12.1. 83 되대사제에 및 뇌순환액등이 교시 제2023-137호 13.9.1. 83 당뇨병용제 교시 제2023-137호 13.9.1. 83 당뇨병용제 교시 제2023-130호 24.7.1. 8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교시 제2024-130호 24.7.1. 83 도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교시 제2013-127호 13.9.1. 89 마약성 진통제 교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교시 제2017-109호 17.7.1. 94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일부금기 성분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교시 제2023-184호 23.10.1. 95 비결핵항산균 (NI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비타민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코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원화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체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요오드 조영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99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4-20호	24.2.1.	73
골다공증치료제 고시 제2024-72호 24.5.1. 77 국민건강보험 요앙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반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병가임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국소지혈제 고시 제2023-37호 24.3.1. 80 기관지찬식 치료용흡입제 고시 제2023-268호 22.12.1. 83 보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고시 제2022-268호 22.12.1. 83 보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고시 제2024-130호 24.7.1. 8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4-130호 24.7.1. 8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3-127호 13.9.1. 89 마약성 진통제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병공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13-184호 23.10.1. 95 비결핵항산균 (NI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6 만연고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연고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연고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원고 조영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지혈증치료제		고시 제2014-34호	14.3.1.	73
국민건강보험 요앙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국소지혈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0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고시 제2022-268호 22.12.1. 83 뇌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3 남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3 당노병용제 고시 제2024-130호 24.7.1. 8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3-127호 13.9.1. 89 마약성 진통제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 (COVID-19) 치료제 병용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및 기계 제2017-109호 17.7.1. 94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5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6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만연고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치되요법 (Conditioning therapy) 요오드 조영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고혈압약제		고시 제2023-23호	23.2.1.	75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경하여 공고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경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국소지혈제 고시 제2013-127호 24.3.1. 80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고시 제2022-268호 22.12.1. 83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83 당뇨병용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3 당뇨병용제 고시 제2024-130호 24.7.1. 8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3-127호 13.9.1. 89 마약성 진통제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및 고시 제2013-184호 22.8.1. 92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23-184호 23.10.1. 95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6 반용효과적인 항량 의약품 사용 고시 제2017-109호 17.7.1. 98 반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체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유스자계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골다공증치료제		고시 제2024-72호	24.5.1.	77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82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교시 제2022-268호 22.12.1. 83 되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83 당뇨병용제 교시 제2024-130호 24.7.1. 8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교시 제2013-127호 13.9.1. 89 마약성 진통제 교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고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교시 제2023-184호 23.10.1. 95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교시 제2017-109호 17.7.1. 98 비타민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교시 제2013-127호 13.9.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요오드 조영제 교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교시 제2013-127호 13.9.1. 99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고시 제2019-240호	19.11.1	79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83 되내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3 당뇨병용제 고시 제2024-130호 24.7.1. 83 공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3-127호 13.9.1. 89 마약성 진통제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코시 제2017-109호 17.7.1. 94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17-109호 17.7.1. 95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고시 제2017-109호 17.7.1. 96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고시 제2017-109호 17.7.1. 98 민단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요오드 조영제 고시 제2018-174호 18.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국소지혈제		고시 제2024-37호	24.3.1.	80
되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3 당뇨병용제 고시 제2024-130호 24.7.1. 83 고시 제2013-127호 13.9.1. 89 고시 제2013-127호 13.9.1. 89 마약성 진통제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코시 제2017-109호 17.7.1. 94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13-184호 23.10.1. 95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고시 제2017-109호 17.7.1. 96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고시 제2017-109호 17.7.1. 98 비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고시 제2016-145호 16.8.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요오드 조영제 고시 제2018-174호 18.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2
당뇨병용제 고시 제2024-130호 24.7.1. 8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3-127호 13.9.1. 89 마약성 진통제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고시 제2022-184호 22.8.1. 92 컴플라비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고시 제2017-109호 17.7.1. 94 甘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23-184호 23.10.1. 95 甘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고시 제2019-38호 19.3.1. 96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고시 제2017-109호 17.7.1. 98 비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고시 제2016-145호 16.8.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고시 제2018-174호 18.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8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3-127호 13.9.1. 89 미약성 진통제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COVID-19) 치료제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23-184호 23.10.1. 95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고시 제2017-109호 17.7.1. 94 비용효과적인 항량 의약품 사용 고시 제2017-109호 17.7.1. 98 비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고시 제2016-145호 16.8.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요오드 조영제 고시 제2018-174호 18.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뇌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83
마약성 진통제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코시 제2017-109호 17.7.1. 94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23-184호 23.10.1. 95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고시 제2017-109호 17.7.1. 98 비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당뇨병용제		고시 제2024-130호	24.7.1.	83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되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의사 제2017-109호 17.7.1. 94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23-184호 23.10.1. 95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고시 제2017-109호 17.7.1. 98 비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3-127호	13.9.1.	8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보지 세2022-184호 22.8.1. 92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입부금기 성분 코시 제2017-109호 17.7.1. 94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23-184호 23.10.1. 95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19.3.1. 96 비타민제 고시 제2017-109호 17.7.1. 98 비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고시 제2016-145호 16.8.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마약성 진통제		고시 제2017-153호	17.9.1.	90
임부금기 성분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비타민제 만연고 임점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모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22-184호	22.8.1.	92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19.3.1. 96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고시 제2017-109호 17.7.1. 98 비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고시 제2016-145호 16.8.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고시 제2017-109호	17.7.1.	94
Mycobacteria) 치료제고시 제2019-38호19.3.1.96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고시 제2017-109호17.7.1.98비타민제고시 제2013-127호13.9.1.98안연고고시 제2016-145호16.8.1.98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고시 제2013-127호13.9.1.99요오드 조영제고시 제2018-174호18.9.1.99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고시 제2013-127호13.9.1.99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고시 제2023-184호	23.10.1.	95
비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고시 제2016-145호 16.8.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고시 제2018-174호 18.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고시 제2019-38호	19.3.1.	96
비타민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8 안연고 고시 제2016-145호 16.8.1.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고시 제2018-174호 18.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고시 제2017-109호	17.7.1.	98
C 등 전체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고시 제2013-127호13.9.1.99고시 제2018-174호18.9.1.99고시 제2018-174호18.9.1.99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고시 제2013-127호13.9.1.99요오드 조영제고시 제2018-174호18.9.1.99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고시 제2013-127호13.9.1.99	안연고		고시 제2016-145호	16.8.1.	98
요오드 조영제 고시 제2018-174호 18.9.1.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고시 제2013-127호		99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고시 제2018-174호	1891	99
			. "		
	진해거담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99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		고시 제2013-127호	13.9.1.	100
폐경기증후군에 투여하는 약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101
폐동맥고혈압 약제		고시 제2022-24호	22.2.1.	101
필수경구약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103
항생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104
항생제 및 항원충제		고시 제2022-111호	22.5.1.	105
항진균제		고시 제2022-131호	22.6.1.	106
항파킨슨 약제		고시 제2018-253호	18.12.1	109
향정신성약물		고시 제2023-58호	23.4.1.	109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고시 제2020-140호	20.7.1.	111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세2020-140호	20.7.1.	111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고시 제2018-253호	18.12.1.	111
Probiotics (정장생균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112
◆ 111 전신마취제				
Etomidate 주사제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고시 제2022-184호	22.8.1.	113
Ketamine HCI 주사제	휴온스 염산케타민주 등	고시 제2017-17호	17.2.1.	113
Propofol 주사제	포폴주사 등	고시 제2018-234호	18.11.1.	114
◆ 112 최면진정제				
Midazolam 주사제	바스캄주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115
♣ 113 항전간제				
Cannabidiol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고시 제2021-101호	21.4.1.	117
Carbamazepine 경구제	테그레톨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118
Clonazepam 경구제	리보트릴정 등	고시 제2018-18호	18.2.1.	118
Gabapentin 경구제	뉴론틴캡슐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118
Lamotrigine 경구제	라믹탈정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120
Levetiracetam 주사제	큐팜주사500 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120
Primidone 경구제	대웅프리미돈정	고시 제2018-18호	18.2.1.	121
Rufinamide 경구제	이노베론필름코팅정 100mg 등	고시 제2019-240호	19.11.1.	121
Sodium valproate 주사제	데파킨주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121
Stiripentol 경구제	디아코미트	고시 제2019-191호	19.9.1.	122
Tetrabenazine 경구제	세나진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122
◆ 114 해열, 진통, 소염제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 건조엑스(20→1) 300mg	신바로캡슐 등	고시 제2014-140호	14.9.1.	123
편두통 치료제		고시 제2020-265호	20.12.1.	123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				
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레일라디에스정 등	고시 제2023-197호	23.11.1.	123
25% ethanol soft ext.(3.5→1) 경구제				
Celecoxib 경구제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고시 제2017-215호	17.12.1.	124
Etoricoxib 경구제	알콕시아정 3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1-127호	21.5.1.	124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	동화록소닌정 등	고시 제2023-296호	24.1.1.	125
Methotrexate 프리필드시린지 주사제	메토젝트주	고시 제2016-145호	16.8.1.	125
Polmacoxib 경구제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2-250호	22.11.1.	126
Propacetamol HCI 주사제	데노간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126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 115 각성제, 흥분제				
Methylphenidate HCI 서방형 경구제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127
Methylphenidate HCI 일반형 경구제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128
◆ 117 정신신경용제				•
Agomelatine 경구제	아고틴정 25밀리그램	고시 제2024-130호	24.7.1.	129
Aripiprazole 주사제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9-21호	19.2.1.	130
Blonanserin 경구제	로나센정 2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130
Bupropion 100mg 경구제	웰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130
Bupropion HCI 150mg 경구제	웰부트린서방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130
Clozapine 경구제	클로자릴정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131
Desvenlafaxine 경구제	프리스틱 서방정 등	고시 제2020-107호	20.6.1.	132
Duloxetine 경구제	심발타캡슐 등	고시 제2016-263호	17.1.1.	133
Fluvoxamine maleate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I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그로민캡슐 등			
Amitriptyline HCl	에트라빌정 등	7 I 7 7 1 2 0 4 0 4 0 -	18.2.1.	135
Nortriptyline HCl	센시발정	- 고시 제2018-18호 -		
Amoxapine	아디센정			
Trazodone HCl	트리티코정 등			
Milnacipran HCl	익셀캡슐			
Levomepromazine maleate 경구제	티세르신정	고시 제2018-253호	18,12,1,	136
Lorazepam 주사제	아티반주	고시 제2019-191호	19.9.1.	136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인베가서스티나 주사, 인베가트린자 주사, 인베가하피에라주사	고시 제2023-82호	23.5.1.	136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	세로켈정 등	고시 제2018-18호	18.2.1.	136
Risperidone 주사제	리스페달콘스타 주사	고시 제2017-180호	17.10.1.	137
Sertraline HCl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	레메론정 등	고시 제2016-263호	17.1.1.	137
Citalopram HBr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		
Escitalopram oxalate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Sulpiride 경구제	설피딘정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138
Tandospirone 경구제	세디엘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139
Venlafaxine HCI 서방경구제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고시 제2016-263호	17.1.1.	139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고시 제2016-263호	17.1.1.	140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 =, = , =		1	_
Alemtuzumab 주사제	렘트라다주	고시 제2021-26호	21.2.1.	142
Amantadine 경구제	피케이멜즈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142
Amantadine 주사제	피케이멜즈인퓨전주	고시 제2018-253호	18.12.1.	143
Atomoxetine HCl 경구제	스트라테라캡슐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143
Cladribine 경구제	마벤클라드정	고시 제2021-26호	21.2.1.	144
CIGGIDING O I : II		- 1 · 112021 20±	41.4.1.	1-77

성 분 명	품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Clonidine hydrochloride 경구제	켑베이서방정 0.1mg	고시 제2019-252호	19.12.5.	144
Dimethyl fumarate 경구제	텍피데라캡슐	고시 제2021-26호	21.2.1.	145
Donepezil 경구제, 패취제	아리셉트정 등 도네리온패취 등	고시 제2023-165호	23.9.1.	146
Fig. 1.1(c) 24.721		□ II 7 2024 2C=	21 2 1	147
Fingolimod HCl 경구제	피타렉스캡슐 0.5밀리그램	고시 제2021-26호	21.2.1.	
Fremanezumab 주사제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148
Galantamine 경구제	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고시 제2019-21호	19.2.1.	150
Galcanezumab 주사제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 프리필드펜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151
Glatiramer acetate 주사제	코팍손프리필드주 20mg/1ml 등	고시 제2021-26호	21.2.1.	152
Memantine 경구제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고시 제2019-21호	19.2.1.	153
Modafinil 200mg 경구제	프로비질정 등	고시 제2021-294호	21.12.1.	154
Armodafinil 경구제	누비질정	고시 세2021-29 4오	21.12.1.	154
Nusinersen sodium 주사제	스핀라자주	고시 제2023-184호	23.10.1.	155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1-294호	22.2.1.	158
Pregabalin 서방형 경구제	리리카 CR 서방정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158
Pregabalin 일반형 경구제	리리카캡슐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159
Risdiplam 경구제	에브리스디건조시럽	고시 제2023-184호	23.10.1.	160
Rivastigmine 세세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고시 제2019-21호	19.2.1.	163
Satralizumab 주사제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고시 제2023-229호	23.12.1.	166
Teriflunomide 경구제	오바지오필름코팅정 등	고시 제2021-26호	21.2.1.	167
 ◆ 121 국소마취제 	_ 1	_ 202:20_		
Levobupivacaine HCl 25mg 주사제	카이로케인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169
Lidocaine HCI 주사제	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고시 제2020-161호	20.8.1.	169
◆ 122 골격근이완제			l.	
Atracurium besylate 주사제	아트라주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170
baclofen 주사제	리오레살주 10mg/5mL	고시 제2022-131호	22.6.1.	170
Eperisone hydrochloride 경구제	뮤렉스정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171
 ◆ 123 자율신경제 	111 7 8 8	1 11		
Bethanechol chloride 경구제	마이토닌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 11 1	172
Glycopyrrolate 주사제	모비눌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172
Oxybutynin 경구제	동화디트로판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172
 ◆ 124 진경제 	0-1 1	_ 2010 12/_	10.5.1.	
Hyoscine butylbromide 주사제	프리판주 등	고시 제2020-69호	20.4.1.	173
 ◆ 129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_ 121 0	_ 222 03_	20	
Tafamidis meglumine 경구제	빈다켈캡슐 20밀리그램	고시 제2018-200호	18,10,1,	174
◆ 131 안과용제				
Bilberry fruit dried ext. 경구제	알코딘연질캡슐 등	고시 제2016-187호	16,10,1,	175
Cyclosporin 0.05% 외용제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고시 제2017-109호	17.7.1.	175
Cyclosporin 0.1% 외용제	아이커비스점안액	고시 제2017-109호	17.7.1.	175
Dexamethasone 700㎏ 이식제	오저덱스이식제 700//g	고시 제2024-130호	24.7.1.	176
Natamycin 외용제	나타신점안현탁액	고시 제2019-93호	19.6.7.	177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고시 제2021-26호	21.2.1.	177
Rebamipide 0.1g/5ml 외용제	레바아이점안액2% 등, 레바아이점안액(1회용) 등	고시 제2023-197호	23,11,1,	
[1.65a111 piac 0.19/3111 40.1			2.11.1.	177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	비스메드점안액	고시 제2013-127호	13.9.1.	177
Tafluprost 외용제	타플로탄점안액 0.0015%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178
Tosufloxacin tosylate 외용제	동아오젝스점안액	고시 제2013-127호	13.9.1.	178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마카이드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178
Verteporfin 주사제	비쥬다인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179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	럭스터나주	고시 제2024-20호	24.2.1.	180
 132 이비과용제 				
Ciprofloxacin HCl + Dexamethasone 외용제	실로덱스점이혀탁액	고시 제2013-127호	13.9.1.	183
Fluticasone furoate 외용제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고시 제2013-127호	13.9.1.	183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	음나리스나 <u>잘</u> 스프레이	고시 제2013-127호	13.9.1.	183
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 외용제		고시 제2022-227호	22,10,1,	183
 ◆ 141 항히스타민제 			II.	
Desloratadine 경구제	에리우스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184
Piprinhydrinate 세세	푸라콩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184
Rupatadine 경구제	루파핀정	고시 제2017-215호	17,12,1,	184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I.	
Abrocitinib 경구제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고시 제2024-72호	24.5.1.	185
Baricitinib 경구제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72호	24.5.1.	186
Basiliximab 주사제	씨뮬렉트주사	고시 제2020-17호	20.2.1.	189
Belimumab 주사제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2-227호	22.10.1.	190
Cyclosporine 경구제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고시 제2020-107호	20.6.1.	191
Cyclosporine 주사제	산디문주 등	고시 제2020-107호	20.6.1.	193
Deucravacitinib 경구제	소틱투정	고시 제2024-130호	24.7.1.	193
Dimethyl fumarate 경구제	스킬라렌스장용정 3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195
Dupilumab 주사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72호	24.5.1.	195
Everolimus 경구제	써티칸정 등	고시 제2023-101호	23.6.1.	197
Filgotinib 경구제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20호	24.2.1.	198
Golimumab 주사제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296호	24.1.1.	201
Guselkumab 주사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206
Ixekizumab 주사제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209
Leflunomide 경구제	아라바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213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셀셉트캡슐 등	고시 제2024-55호	24.4.1.	213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	마이폴틱장용정 등	고시 제2023-229호	23.12.1.	216
Ozanimod 경구제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55호	24.4.1.	217
Rabbit anti-human thymocyte	치모글로부린주	고시 제2019-210호	10 10 1	219
immunoglobulin 주사제	시포글도구인구	고시 세2013-210호	19.10.1.	219
Risankizumab 주사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220
Secukinumab 주사제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222
Sirolimus 경구제	라파뮨정 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2-111호	22.5.1	226
Tacrolimus 제제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고시 제2019-210호	19.10.1.	226
Tocilizumab 주사제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고시 제2023-296호	24.1.1.	228
Tofacitinib 경구제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296호	24.1.1.	232
Tralokinumab 주사제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고시 제2024-72호	24.5.1.	237
Upadacitinib 경구제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고시 제2024-72호	24.5.1.	239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Ustekinumab 주사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246
◆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Epinastine 경구제	아르기정 등	고시 제2023-296호	24.1.1.	252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몬테리진캡슐, 몬테리진츄정	고시 제2023-184호	23.10.1.	252
Pranlukast 경구제	프라카논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코살린정			
Omalizumab 주사제	졸레어주사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253
Pemirolast potassium 시럽제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255
❖ 211 강심제				
Caffeine and sodium benzoate 주사제	메조카주사	고시 제2017-193호	17.11.1.	256
Ubidecarenone 경구제	데카키논캡슐	고시 제2019-191호	19.9.1.	256
◆ 212 부정맥용제				
Arotinolol HCI 경구제	알말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257
Dronedarone 경구제	멀택정	고시 제2018-200호	18.10.1.	257
Esmolol HCI 주사제	브레비블록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257
Pilsicainide HCI 경구제	썬리듬캡슐	고시 제2013-127호	13.9.1.	258
Propranolol HCI 경구제	인데놀정 등	고시 제2018-18호	18.2.1.	259
◆ 214 혈압강하제				
Ambrisentan 경구제	볼리브리스정 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9-93호	19.6.7.	260
Azilsartan medoxomil potassium 경구제	이달비정 2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7-215호	17.12.1.	261
Bosentan hydrate 경구제	트라클리어정 62.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0-217호	20.10.1.	261
Doxazosin 경구제	카딜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263
Fimasartan potassium 경구제	카나브정 30mg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263
lloprost 흡입액	벤타비스흡입액	고시 제2019-93호	19.6.7.	263
Macitentan 경구제	옵서미트정 1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101호	23.6.1.	265
Phenoxybenzamine 경구제	디벤지란캡슐	고시 제2019-171호	19.8.1.	266
Selexipag 경구제	업트라비정 20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93호	19.6.7.	266
Sildenafil 경구제	파텐션정 2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9-93호	19.6.7.	267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	레모둘린 주사	고시 제2019-93호	19.6.7.	269
Zofenopril calcium 경구제	조페닐정7.5밀리그램,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고시 제2013-127호	13.9.1.	271
◆ 217 혈관확장제				
Efonidipine 경구제	핀테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272
Nicorandil 주사제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	고시 제2022-207호	22.9.1.	272
Nifedipine 경구제	아달라트오로스정30 등	고시 제2020-161호	20.8.1.	272
Nimodipine 경구제	삼진니모디핀정 등	고시 제2019-132호	19.7.1.	273
Nitroglycerin 주사제	페링가니트0.1%주사 등	고시 제2022-207호	22.9.1.	273
Trimetazidine 경구제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바스티난정 등	고시 제2014-34호	14.3.1.	273
Verapamil HCI 주사제	일성이솦틴주사	고시 제2022-207호	22.9.1.	274
 ◆ 218 동맥경화용제 	10011111	1 112222 2012		
Alirocumab 주사제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37호	24.3.1.	275
, ocaniao -		- 1 11202 T 31 T	2 1.2.1.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Clopidogrel 경구제	피도글정 등	고시 제2020-79호	20.5.1.	276
Clopidogrel + Aspirin 복합경구제	클로스원캡슐 등	고시 제2018-28호	18.3.1.	278
Evolocumab 주사제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고시 제2024-37호	24.3.1.	279
Ezetimibe 경구제	이지트롤정 등	고시 제2016-66호	16.5.1.	281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	아토젯정 등	_ 2010-05_		
Ezetimibe + pita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	리바로젯정 등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	로수젯정 등	고시 제2021-245호	21.10.1.	281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	바이토린정 등			
Ezetimibe+Fenofibrate 복합경구제	에세페노정	고시 제2022-24호	22.2.1.	282
Lovastatin 경구제	로바로드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282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	오마코연질캡슐 등	고시 제2015-18호	15.2.1.	282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고시 제2022-227호	22.10.1.	283
Omega-3-acid ethyl esters 90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	로수메가연질캡슐 등	고시 제2021-152호	21.6.1.	284
❖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고시 제2024-130호	24.7.1.	286
Abciximab 주사제	클로티냅주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287
Adenosine 주사제	아데노코주사 등	고시 제2022-207호	22.9.1.	288
Alprostadil 주사제	에글란딘주 등	고시 제2021-294호	21.12.1.	288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	알푸로덱스주 20마이크로그램	고시 제2022-207호	22.9.1.	289
Alteplase 주사제	액티라제주사	고시 제2019-252호	19.12.1.	290
Argatroban 주사제	아가론주 등	고시 제2023-37호	23.3.1.	292
Aspirin 경구제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고시 제2018-97호	18.6.1.	292
Aspirin 25mg + Dipyridamole 200mg 경구제	아디녹스캡슐 등	고시 제2018-18호	18.2.1.	294
Citicoline 경구제	소마지나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294
Citicoline 주사제	참시티콜린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294
Dobesilate calcium 경구제	일성독시움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294
Ferric citrate 경구제	네폭실캡슐 500mg	고시 제2023-120호	23.7.1.	295
Finerenone 경구제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20호	24.2.1.	295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296
Icatibant 주사제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고시 제2021-65호	21.3.1.	296
Ivabradine 경구제	프로코라란정	고시 제2023-23호	23.2.1.	297
Kallidinogenase 경구제	카나쿨린정 등	고시 제2014-17호	14.2.1.	297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	포스레놀정 등	고시 제2018-174호	18.9.1.	298
Limaprost α-cyclodextrin 경구제	동아오팔몬정 등	고시 제2023-296호	24.1.1.	298
L-Carnitine	엘칸정·엘칸주사 등	고시 제2022-207호	22.9.1.	298
Milrinone 주사제	프리마코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299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	사미온정 등	고시 제2015-239호	16.1.1.	300
Pentoxifylline 경구제	트렌탈정400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00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고시 제2023-120호	23.7.1.	300
Sevelamer HCI 400mg, 800mg 경구제	레나젤정 등	고시 제2018-174호	10 0 1	201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포시 제ZUI8-1/4호	18.9.1.	301

Sodium ozagrel 주시계 기산분에스주 교시 제2018-253호 18.12.1. 301 Sucroferic oxyhydroxide 경구제 벨포로큐어블정 교시 제2019-240호 20.1.1. 301 Tenecteplase 주시체 메달래제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302 Tirofiban HCI 이그라스타트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302 Vericiguat 경구제 반르구보경 2.5mg 등 교시 제2022-550호 22.1.1. 302 Vericiguat 경구제 반르구보경 2.5mg 등 교시 제2023-165호 23.9.1. 305 학생 vitis vinifera ext. 엔테론경 50일리그램 등 교시 제2023-165호 23.9.1. 305 학생 220 호흡기관용약 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출업제 네오카프주 등 교시 제2016-232호 16.5.1. 306 학교 수 222 호흡추관제 네오카프적 교시 제2018-280호 16.5.1. 306 학교 수 222 호흡추관제 교시 네오카프적 교시 제2018-280호 17.1.1. 307 대로 함께 네오카프적 교시 제2018-280호 17.1.1. 308 Rect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무료인터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 308 Rect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마누에는 미산에 이라이베르에이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 308 대로 함께 대로 함께 마누에는 미산에 등 교시 제2018-28호 18.3.1. 310 대로 함께 마누에는 미산에 제2018-25호 18.3.1. 310 대로 함께 마누에는 미산에 마바에는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제 마누에는 미산에는 마누에는 미산에 마바에는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망네苷 흡입에 마누에는 미산에는 마누에는 미산에 마바에는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에 마누에는 미산에는 마누에는 미산에는 미산한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에 마누에는 미산에는 마누에는 미산에는 미산에는 미산에 기상이라는 이산에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에 마누에는 미산에는 마누에는 미산에는 미산에는 미산에는 미산에는 미산에는 미산에는 미산에는 미산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 벨포로츄아블정 고시 제2019-240호 20.1.1. 301 Tenecteplase 주시제 메탈아제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302 Tirofiban HCI 고시 선스카정 15일리그램 등 고시 제2022-556호 22.11. 302 Vericiguat 경구제 심스카정 15일리그램 등 고시 제2022-556호 23.9.1. 305 Vericiguat 경구제 베르쿠보정 2.5mg 등 고시 제2022-556호 23.9.1. 305 Vericiguat 경구제 베르쿠보정 2.5mg 등 고시 제2022-556호 22.11. 302 Vericiguat 경구제 베르쿠보정 2.5mg 등 고시 제2022-556호 23.9.1. 305 ★ 220 호흡기관용악 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흡압제 플루티폰흡압제 고시 제2016-66호 16.5.1. 306 ★ 221 호흡출진제 Caffeine citrate 주시제 데오카프주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07 Gaffeine citrate 약제 네오카프주 등 고시 제2016-223호 16.1.2.1. 308 Acetylysteine 주시제 무코스텐주 등 고시 제2016-223호 16.1.2.1. 308 Acetylysteine 주시제 명보주사 등 고시 제2016-223호 17.1.1. 308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òl 흡안에 무코스텐주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 308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òl 흡안에 무코스텐주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 308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òl 흡안에 무코스텐주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 308 Beclomethasone furoate 흡안에 무코스텐 등 고시 제2018-282호 183.1. 310 Formoterò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회용제 부분살부타용전 고시 제2018-282 183.1. 310 Formoterò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홈인에 무로스판 시럽 등 고시 제2018-282 183.1. 310 Formoteròl fumarate + Futicasone propionate 측임에 부분살부타용전 고시 제2013-127호 13.9.1. 310 Salbutamol suffate 흡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0 Salbutamol suffate 흡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te 음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te 출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te 출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te 출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te 출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te 출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te 출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te 출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te 출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te 출인액 변로리함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3 Salbutamol suffate 출인액 변로리함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3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p					
Tenecteplase 주시제 메탈라제주		100 " 1			
Tirofiban HCI 이그라스타토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302 Tolvapata 경구제 성스카정 15일리그램 등 교시 제2022-250호 22.11.1. 302 Vericiguat 경구제 성스카정 15일리그램 등 교시 제2022-250호 23.9.1. 304 Vericiguat 경구제 성스카정 15일리그램 등 교시 제2022-250호 23.9.1. 305 ★ 220 호흡구권용악 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흡단제 플루티폼흡인제 교시 제2014-34호 14.3.1. 306 Vilanted triferatate + Huicasone furoate 흡안제 필바엘린타 교시 제2016-262호 16.5.1. 306 ★ 221 호흡촉진제 Caffeine citrate 주사제 네오카프주 등 Caffeine citrate 약제 네오카프주 등 Caffeine citrate 약제 네오카프잭 교시 제2018-280호 19.1.1. 307 Caffeine citrate 약제 네오카프잭 교시 제2016-223호 16.12.1. 308 Accetylcysteine 출안액 뮤코스텐주 등 교시 제2016-223호 16.12.1. 308 Accetylcysteine 출안액 뮤코스텐주 등 교시 제2016-223호 17.11.1. 308 Bed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안제 모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1. 308 Bed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안제 알베스코흡안제 160.80 교시 제2017-193호 17.11.1. 309 Fluticasone furoate 흡안제 알베스코흡안제 160.80 교시 제2013-127호 13.9.1. 308 Fluticasone furoate 흡안제 알베스코흡안제 160.80 교시 제2013-127호 13.9.1. 310 Giclesonide 외용제 발매스코흡안제 임비코타부템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0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안제 보라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0 Salbutamol 경구제 임비코타부템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장구제 부광살부타물정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장구제 보라를 함의 지료제 보라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ce 음안액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ce 음안에 바로라를 하면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ce 음안에 바로라를 하면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ce 음안에 바로라를 함의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ce 음안에 바로라를 하면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ce 음안에 바로라를 함의 지료제 보라를 하면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ce 이라를 하는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fface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3 Salbutamol sufface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3 Salbutamol sufface (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n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음안에 마리크로 등 교시 제2012-123호 21.9.1. 315 Inda			. "		
Tolvaptan 경구제 성스카정 15밀리그램 등 교시 제2022-250호 22.11.1 302 Vericiguat 경구제 베르쿠보정 2.5mg 등 교시 제2022-56호 23.9.1 304 vitis vinifera ext. 엔테론정 50밀리그램 등 교시 제2022-56호 23.9.1 305 ★ 220 호흡기관용약 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합의제 플루티폼함임제 교시 제2016-66호 16.5.1 306 ★ 221 호흡존진제 Gaffeine citrate 무시제 네오카프주 등 교시 제2016-82호 19.1.1 307 Gaffeine citrate 액제 네오카프주 등 교시 제2016-223호 16.12.1 307 ★ 222 전해거담제 Acetylcysteine 출입액 무고미스트액 등 교시 제2016-223호 16.12.1 308 Acetylcysteine 출입액 무고미스트액 등 교시 제2016-223호 17.11.1 308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말베르로주사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1 308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망베스코홈입제 16.0.80 교시 제2017-193호 17.11.1 309 Huticasone furoate 흡입제 아누이트 100엘리타 교시 제2018-28호 18.3.1 310 Formoterol 흡입제 마는데 100엘리타 교시 제2018-28호 18.3.1 310 Formoterol 振입제 망베스코홈입제 16.0.80 교시 제2017-193호 17.11.1 310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Wilding 등 교시 제2018-182호 18.3.1 310 Formoterol fur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입제 마는트 100월리타 등 교시 제2018-182호 18.3.1 310 Formoterol fur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입제 바 무소프라 시합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경구제 보고 보는다 보는데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장라제 보고 보는다 보는데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장라제 보고 보는다 보는데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장라제 보고 보는다 보고 보는다 보는데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바로 흡입에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Bec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rmarate + (에나에 흡입용법을 150/50/80 교시 제2012-234호 21.9.1 313 Bec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rmarate + (에나에 흡입용법을 150/50/80 교시 제2012-234호 21.9.1 313 Bec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rmarate + (에나에 흡입용법을 150/50/80 교시 제2012-234호 21.9.1 313 Bec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rmarate + (에나에 흡입용법을 150/50/80 교시 제2012-234호 21.9.1 313 Bec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rmarate + (에나에 흡입용법을 150/80 교시 제2012-234호 21.9.1 313 Bec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rmarate + (에나에 흡입용법을 150/80 교시 제2012-234호 21.9.1 313 Bec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rmarate + (에나에 흡입용법을 150/80 교시 제2012-234호 21.9.1 313 Be			. "		
Vericiguat 경구제 베르쿠보청 2.5mg 등 고시 제2023-165호 23.9.1. 304 vitis vinifera ext.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고시 제2022-56호 22.3.11. 305 ★ 220 호흡기관용약 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플루티폼흡입제 고시 제2016-66호 16.5.1. 306 ★ 221 호흡촉진제 대보안 네모카프쪽 등 고시 제2016-66호 19.1.1. 307 전 221 호흡촉진제 대보안 네모카프쪽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07 전 221 전해거담제 대보안 보안 보		1 1 1			
### VIDER OF SUBJECT			. "		
◆ 220 호흡기관용약 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플루티폼흡입제 교시 제2014·34호 14.3.1. 306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흥입제 전기에 대한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흥입제 플루티폼흡입제 교시 제2014·34호 14.3.1. 306 ◆ 221 호흡촉진제 Caffeine citrate 주사제 네오카프액 교시 제2018·280호 19.1.1. 307 소etelycysteine 주사제 네오카프액 교시 제2016·223호 16.12.1. 308 Acetylycysteine 주사제 무고-텐투 등 교시 제2017·272호 13.9.1. 308 Acetylycysteine 출입액 무고-텐투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1. 308 Acetylycysteine 출입액 무고-텐투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1. 308 Acetylycysteine 출입에 무고-텐투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1. 308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is all 무고-텐트 이에 이치에프에이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1. 308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ndate 출입제 보를 한테 스 환경 교시 제2017·193호 17.11.1. 309 Fluticasone furoate 출입제 발레스 출입제 보를 스 판 를 시계 교시 제2018·128호 18.3.1. 310 Ival as a					
H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플루티폼홈입제 교시 제2014-34호 14.3.1. 306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헬바엘립타 교시 제2016-66호 16.5.1. 306 ★ 221 호흡촉진제 Caffeine citrate 약제 네오카프주 등 Caffeine citrate 약제 네오카프주 등 Acetylcysteine 주사제 무코스텐주 등 교시 제2016-223호 16.12.1. 308 Acetylcysteine 홈입액 무코스트에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08 Acetylcysteine 흡입액 무코스트에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08 Ambroxol HCI 주사제 앰브로주사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1. 308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아마이트에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1. 309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아마이트에 1000엘리타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09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아마이트에 1000엘리타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0 Formoterol furnarate + (Micronized) Bubasonide 흡입제 무로스판 시럽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0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변모론수사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0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변모론수에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변모론수에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변모론수에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변모론수에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변모론수에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변모론수에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변모론수에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변모론수에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변모론수에 무료를 바탕하는 교사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변모론수에 무료를 바탕하는 교사 제2013-127호 13.9.1. 313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변모론수에 무료를 보고하는 교사 제2013-127호 13.9.1. 313 Indicac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마이크로그램 등 교사 제2013-1234호 24.1.1. 313 Indicac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무료를 흡입적 모고리를 등 교사 제2013-1234호 24.1.1. 316 Indicacterol acetate+Mometasone 이택로그램 등 교사 제201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프리플라 출입어 모고리를 등 교사 제201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프리플라 중입어 모고리를 등 교사 제201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프리플라 중입어 모고리를 등 교사 제201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프리플라 중입어 모고리를 등 고사 제201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프리플라 중입어 모고리를 등 고사 제2014-130호 24.7.1. 320 Salbutamol xinfate micronized + budes		년에는 6 30일이고 B 6	고기 제2022 30호	22.3.11.	202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홈타지 렐바엘립타 고시 제2016-66호 16.5.1. 306 ★ 221 호흡촉진제 Caffeine citrate 주시제 네오카프주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07 Caffeine citrate 액제	2 :20 :	프르티포흐이제	고시 제2017-37호	1/1 3 1	306
◆ 221 호흡촉진제 Caffeine citrate 주사제 네오카프역					
대한 대한 대한 전체		2 1 2 5 1	고지 제2010 00호	10.5.1.	300
대한 대한 대한 학계 대한 기관 대한 기관 대한 기관 대한 기관 기계		HORLTA C			
★ 222 진해거담제 Acetylcysteine 주사제 무코스텐주 등 고시 제2016-223호 16.12.1. 308 Acetylcysteine 흡입액 무코미스트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08 Ambroxol HCI 주사제 앨브로주사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08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09 Fituicasone furoate 흡입제 양베스코흡입제 160,80 고시 제2013-127호 13.9.1. 309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아누이티 100엘립타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09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아누이티 100엘립타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0 Ive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 푸로스판 시럽 등 고시 제2013-127호 19.2.13. 310 Salbutamol 3d/Familia Salb			고시 제2018-280호	19.1.1.	307
Acetylcysteine 주사제		4 11/11/11			
Acetylcysteine 흡입액			⊒ II 7/I204€ 222÷	16 12 1	200
Ambroxol HCI 주사제 앰브로주사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08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악베스코흡입제 160,80 고시 제2013-127호 13.9.1. 309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아뉴이티 100엘리타 등 고시 제2018-28호 18.3.1. 310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입제 악마이터 100엘리타 등 고시 제2018-28호 18.3.1. 310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입제 악마이터 100엘리타 등 고시 제2019-21호 19.2.13. 310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 부광살부타몰정 등 고시 제2019-21호 13.9.1. 311 Salbutamol 정구제 부광살부타몰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서비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고시 제2015-205호 15.12.1. 311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흡입제 모세리의 휴사제 대체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아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34호 21.9.1. 316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어떤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34호 19.1.1 316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무갈라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F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무네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eslizumab 주사제 무감라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22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다시스를 입용캡슐 300/25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Formoterol 흡입제 보스터 100/6 에이지에프에이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1. 309 Ciclesonide 외용제 알베스코흡입제 160,80 교시 제2013-127호 13.9.1. 309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아뉴이티 100엘립타 등 교시 제2018-28호 18.3.1. 310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임비코트터부헬러 등 교시 제2015-184호 15.11.1. 310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 푸로스판 시럽 등 교시 제2019-21호 19.2.13. 310 Salbutamol 경구제 부광살부타몰정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센터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고시 제2015-205호 15.12.1. 311 **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교시 제2022-56호 22.3.1. 312 Bect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흡인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교시 제2022-130호 24.7.1. 313 Benralizumab 주사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교시 제2022-1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마이크로그램 등 대접acetate (메계면활성제) 주사제 서팩텐 등 교시 제2021-234호 21.9.1. 316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F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eslizumab 주사제 무칼라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eslizumab 주사제 시퍼턴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앰므로수사 등 	고시 세201/-193호	17.11.1.	308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이유이트 100엘립타 등 고시 제2018-28호 18.3.1. 310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입제 시비고트터부헬러 등 고시 제2015-184호 15.11.1. 310 l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 푸로스판 시럽 등 고시 제2019-21호 19.2.13. 310 Salbutamol 경구제 부광살부타물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벤토린흡입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세리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고시 제2015-205호 15.12.1. 311 Sectionate 휴업의 보험에서 제2015-205호 15.12.1. 311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흡입제 트림보우흡입제100/6/12.5 고시 제2023-296호 24.1.1. 313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휴인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고시 제2024-130호 24.7.1. 313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메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이대로그램 등 이대로그램 등 이대로그램 등 이대로그램 등 기관에서 제2024-130호 24.7.1. 316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마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34호 21.9.1. 316 Mempolizumab 주사제 무갈라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되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eslizumab 주사제 당시 성계어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eslizumab 주사제 당시 성계어주 고시 제2021-270호 21.11.1. 322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제피러스흡입용캠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323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09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입제	Ciclesonide 외용제	알베스코흡입제 160,80	고시 제2013-127호	13.9.1.	309
Budesonide 흡입제 심비코트터무엘러 등 고시 제2015-184호 15.11 310 l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 푸로스판 시럽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장기계 부광살부타몰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벤토린흡입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고시 제2015-205호 15.12.1. 311 Propionate 흡입제 제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고시 제2015-205호 15.12.1. 311 모든에 보험에 가능하는 휴가 보다는 무를 함께 고시 제2022-56호 22.3.1. 312 모든에 보험하는 함께 가능하는 함께 가능하는 함께 가능하는 함께 가능하는 함께 가능하는 함께 가능하는 기를 하는 기를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아뉴이티 100엘립타 등	고시 제2018-28호	18.3.1.	310
Salbutamol 경구제 부광살부타몰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번토린흡입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세례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례타이드 에보할러 고시 제2015-205호 15.12.1. 311 ♣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고시 제2022-56호 22.3.1. 312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흡입제 프렌스파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고시 제2023-296호 24.1.1. 313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미네레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시 제2021-234호 19.1. 316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서팩텐 등 고시 제2021-234호 19.1. 316 mepolizumab 주사제 부칼라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Reslizumab 주사제 성케어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eslizumab 주사제 당아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70호 21.11.1. 322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323	,	심비코트터부헬러 등	고시 제2015-184호	15.11.1.	310
Salbutamol 경구제 부광살부타몰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번토린흡입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세례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례타이드 에보할러 고시 제2015-205호 15.12.1. 311 ♣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고시 제2022-56호 22.3.1. 312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흡입제 프렌스파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고시 제2023-296호 24.1.1. 313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미네레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시 제2021-234호 19.1. 316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서팩텐 등 고시 제2021-234호 19.1. 316 mepolizumab 주사제 부칼라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Reslizumab 주사제 성케어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eslizumab 주사제 당아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70호 21.11.1. 322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323	l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	푸로스판 시럽 등	고시 제2019-21호	19.2.13.	310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세례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례타이드 에보할러 고시 제2015-205호 15.12.1. 311 ★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흡입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고시 제2023-296호 24.1.1. 313 Benralizumab 주사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고시 제2024-130호 24.7.1. 313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마네크로그램 등 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나고 제2021-234호 21.9.1. 316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서팩텐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mepolizumab 주사제 부칼라주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mepolizumab 주사제 의리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eslizumab 주사제 상케어주 고시 제2021-270호 21.11.1. 322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323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propionate 흡입제 세네타이느 니스커스 등, 세레타이느 에보알러 고시 세2015-205호 15.12.1. 311 ★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흡입제 Benralizumab 주사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고시 제2023-296호 24.1.1. 313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미네레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마이크로그램 등 Un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서팩텐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mepolizumab 주사제 부간라주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mepolizumab 주사제 부간라주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mepolizumab 주사제 부간라주 고시 제2018-280호 19.1.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20 Reslizumab 주사제 상케어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oflumilast 경구제 당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323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벤토린흡입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흡입제 Benralizumab 주사제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에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Indacaterol acetate+Mometaso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고시 제2015-205호	15.12.1.	311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흡입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고시 제2023-296호 24.1.1. 313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메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메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메너제어 흡입용캡슐 1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이러트라 흡입용캡슐 1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시팩텐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여러트라 흡입용캡슐 1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여러트라 흡입용캡슐 1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습입제 시팩텐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어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어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어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어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어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어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어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어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어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어너제어 흡입제 이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어너제어 흡입제 150/50/80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이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이너제어 富입제 150/50/80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이너제어 150/50/80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150/50/80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150/50/80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150/50/80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150/50/80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150/50/80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150/50/80 Indacaterol acetate+	❖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 Glycopyrronium bromide흡입제 트림모우흡입제100/6/12.5 교시 제2023-296호 24.1.1. 313 Benralizumab 주사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고시 제2024-130호 24.7.1. 313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메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메너제어 흡입용캡슐 1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메너제어 흡입용캡슐 1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메너제어 흡입용캡슐 1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비즈로그램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비즈로그램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鲁ሀ지 기료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15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고시 제2022-56호	22.3.1.	312
Benralizumab 주사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고시 제2024-130호 24.7.1. 313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메네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34호 21.9.1. 316 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서팩텐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mepolizumab 주사제 누칼라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20 Reslizumab 주사제 성케어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oflumilast 경구제 다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70호 21.11.1. 322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323	r r	트림보우흡입제100/6/12.5	고시 제2023-296호	24.1.1.	313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34호 21.9.1. 316 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서팩텐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mepolizumab 주사제 누칼라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18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20 Reslizumab 주사제 상케어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oflumilast 경구제 당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70호 21.11.1 322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323	Benralizumab 주사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고시 제2024-130호	24.7.1.	313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고시 제2021-234호 21.9.1.316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서팩텐 등고시 제2018-280호 19.1.1.316mepolizumab 주사제 누칼라주고시 제2024-130호 24.7.1.318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고시 제2018-280호 19.1.1.320Reslizumab 주사제 상케어주고시 제2024-130호 24.7.1.320Roflumilast 경구제 당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등고시 제2021-270호 21.11.1.322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고시 제2019-191호 19.9.1.323			고시 제2021-234호	21.9.1.	315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서팩텐 등고시 제2018-280호19.1.1.316mepolizumab 주사제누칼라주고시 제2024-130호24.7.1.318Pirfenidone 경구제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고시 제2018-280호19.1.1.320Reslizumab 주사제상케어주고시 제2024-130호24.7.1.320Roflumilast 경구제닥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등고시 제2021-270호21.11.1.322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고시 제2019-191호19.9.1.323		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고시 제2021-234호	21.9.1.	316
mepolizumab 주사제누칼라주고시 제2024-130호24.7.1.318Pirfenidone 경구제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고시 제2018-280호19.1.1.320Reslizumab 주사제싱케어주고시 제2024-130호24.7.1.320Roflumilast 경구제닥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등고시 제2021-270호21.11.1.322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합세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고시 제2019-191호19.9.1.323			고시 제2018-280호	19.1.1	316
Pirfenidone 경구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8-280호 19.1.1. 320 Reslizumab 주사제 싱케어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oflumilast 경구제 닥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70호 21.11.1. 322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323					
Reslizumab 주사제 싱케어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320 Roflumilast 경구제 닥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70호 21.11.1. 322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323					
Roflumilast 경구제 닥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21-270호 21.11.1. 322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323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323		0	. "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	엘라스폴100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323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Tiotropium 흡입제	스피리바흡입용캡슐 등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고시 제2022-56호	22.3.1.	324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	트렐리지엘립타 등	고시 제2024-37호	24.3.1.	325
❖ 231 치과구강용약				
가글 용제	헥사메딘가글액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26
Doxycycline hyclate 20mg 경구제	덴티스타캡슐	고시 제2022-160호	22.7.1.	326
 232 소화성궤양용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	란스톤캡슐 등	7.1. 7#2022 200 -	22.42.4	
Pantoprazole	판토록정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327
Rabeprazole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	넥시움정 등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71000			
Pantoprazole sodium	판토록주사 등	고시 제2022-160호	22.7.1.	328
Esomeprazole	넥시움주 등	, ,,=====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고시 제2014-75호	14,6,1,	330
Bismuth 경구제	데놀정	고시 제2022-111호	22.5.1.	331
Fexuprazan 경구제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23호	23.2.1.	332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12 1 1 1 1 1 2 0 2 3 2 3 1 2 3	23.2.1.	332
Cimetidine	타가메트주 등		18.9.1.	332
Famotidine	가스터주 등	고시 제2018-174호		
Ranitidine HCl	잔탁주 등			
llaprazole 경구제	전략	고시 제2018-58호	18.4.1.	333
Irsogladine maleate 경구제	가스론엔정 2mg 등, 4mg	고시 제2013-127호	13.9.1.	333
Lafutidine 경구제	스토가정10mg 등	고시 제2013-12/호	14.1.1.	334
Latutionie 정무세 Polaprezinc 경구제	프로맥정 등	고시 제2013-210호	19.12.1.	334
	로 사 학생 등 기계 등 기	고시 제2019-252호 고시 제2013-127호		
Roxatidine acetate HCI 경구제			13.9.1.	334
S-pantoprazole 경구제	레토프라정 등	고시 제2018-174호	18.9.1.	335
Sodium alginate 경구제	라미나지액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335
Sulglycotide 경구제	글립타이드정 200밀리그람	고시 제2013-127호	13.9.1.	335
Tegoprazan 경구제	케이캡정5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120호	23.7.1.	335
◆ 235 최토제, 진토제				
항구토제 (Aprepitant 제제, Granisetron HCI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고시 제2018-253호	18.12.1.	336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디클렉틴장용정 등	고시 제2024-100호	24.6.1.	336
Succinate 복합경구제		. "	L	
◆ 238 하제, 완장제				T
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	루칼로정 등	고시 제2020-79호	20.5.1.	337
Sodium docusate, D-sorbitol 복합 제제	알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37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Beclomethasone dipropionate 경구제 Calcium polycarbophil 경구제	클리퍼지속성 장용정 5mg 실콘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38

Dexpanthenol 주시제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E.Coli strain Nissle 1917 동결전공을 14mg 경구제 때문나를 검합을 고시 제2017-193호 17.11.1. 338 Mesalazine 제제 때문사 점약 등 고시 제2021-1245호 21.10.1. 339 Mingalastat 경구제 2단속도검을 지시 제2021-1245호 21.10.1. 339 Mingalastat 경구제 2단속도검을 고시 제2021-127호 20.1. 341					
Mesalazine 제제 벤타사 좌약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3 39 Migalastat 경구제 고시 제2021-145호 21.10.1 339 대접 2라볼드캡슐 고시 제2021-173호 21.10.1 339 대접 2라볼드캡슐 고시 제2021-173호 21.10.1 339 대접 2라볼드캡슐 고시 제2020-173호 20.2 1. 341					
Migalastat 경구제 결각을드캡슐 고시 제2021-245호 21.10.1 339 Ramosetron HCI 2 5,9, 5,9 경구제 이미보정 고시 제2020-17호 20.2.1 341 Somatostatin acetate 주사제 소마토산주 등 고시 제2021-17호 13.9.1 341 ◆ 241 남하수체호르몬제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미니린정 등 고시 제2020-107호 20.6.1, 342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미니린전 등 고시 제2021-165호 23.9.1, 343 Somatrogion 주사제(성장흐르몬제) 메브란주 등 고시 제2021-165호 23.9.1, 343 Somatrogion 주사제(성장흐르몬제) 유트로만플러스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45 Somatrogion 주사제(성장흐르몬제) 문로만플러스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45 Somatrogion 주사제(성장흐르몬제) 문로만플러스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53 Vasopressin acetate 주사제 글라이프레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53 Vasopressin 20U 주사제 불라이프레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53 Vasopressin 20U 주사제 보스테소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53 Teripraratide acetate 주사제 코스테소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53 Thyrotropin 주사제 보스테소주 등 고시 제2012-207호 22.9.1, 355 Thyrotropin 주사제 보스테소주 등 고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3 답방소 부감상선호르몬제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로스테소주 등 고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5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Oxymetholone 경구제 셀트리온 옥시매톨론정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밀데시마본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제일데시메드란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제일데시메드란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출모하는 고리프라덴주150마이크로리랭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출모하는 고리프라덴주150마이크로리랭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출모하는 고리프라덴주150마이크로리랭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1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출리암시물론주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1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출리암시물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bitartrate 경구제 출모하는 고리프라덴주130마이크로리앵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divertrate 경구제 출리암시물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divertrate 경구제 출리암시물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divertrate 경구제 로리아시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ibitartrate 경구제 로리아시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ibitartrate 경구제 로리아시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ibitartrate 경구제 로리아시물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2 Epine					
Ramosetron HCI 2.5/g, 5/g 경구제 이리보청 고시 제2020-17호 20.2.1, 341 Somatostatin acetate 주시제 소마토산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41 ★ 241 남하수체호르몬제 DESMOPRESSIN acetate 주시제 미니린정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42 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 미니린주사액 고시 제2018-253호 18.12.1, 342 Somatrogon 주시제(성장호르몬제) 언제라드라필드펜주 24mg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344 Somatrogon 주시제(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플라스주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344 Somatrogon 주시제(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플라스주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344 Terriparessin acetate 주사제 글라이프레신주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344 기상305-253 전체	" "				
Somatostatin acetate 주사제					
● 241 뇌하수체호르몬제 미니린청 등 고시 제2020-107호 20.6.1. 342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미니린청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42 Somatrogon 주시제(성장호르몬제) 미니린주사액 고시 제2023-165호 23.9.1. 343 Somatropin 수시제(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344 Somatropin 수시제 (성장흐르몬제)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344 Somatropin 주시제 (성장흐르몬제)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344 Somatropin 주시제 (성장흐르몬제)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345 Somatropin 주시제 (성장흐르몬제)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53 보고 243 갑상선, 부갑상선흐르몬제 클라이프레신주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53 ★ 243 갑상선, 부갑상선흐르몬제 태리본피하주사 고시 제2017-193호 17.11.1. 353 ★ 243 갑상선, 부갑상선흐르몬제 태리본피하주사 고시 제2012-207호 22.9.1. 354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포스테오주 등 고시 제2019-171호 19.8.1. 355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모르는 옥시메톨론경 고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셀트리온 옥시메톨론경 고시 제2019-171호 19.8.1. 357 ★ 245 부신호르몬제 셀트리온 옥시메톨론경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멘트코트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제일에피네프라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최근토프론제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출르마르돌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출르마르돌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출르마르돌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divarian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제 세계에 매크로프론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제 플로트폰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제 플로트폰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divarian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acetonide 주사제 플리어스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acetonide 주사제 플리어스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제 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acetonide 주사제 플리어스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divarian 를로프론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acetonide 주사제 플리어스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divarian 를로프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divarian 를로프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acetonide 주사제 프로미스를 모시하는 교리에스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acetonide 주사제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미니런정 등 고시 제2020-107호 20.6.1. 342 Desmopressin acetate 주시제 미니런정 등 고시 제2013-253호 18.12.1. 342 Somatrogon 주시제(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플댄주 24mg 등 고시 제2023-165호 23.9.1. 343 Somatropin 서방형 주시제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344 Somatropin 주시제(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주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344 Somatropin 주시제(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주 등 고시 제2019-172호 13.9.1. 353 Vasopressin 20U 주시제 글라이프레신주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53 ★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Teriparatide acetate 주시제 보리된주 등 고시 제2022-207호 22.9.1. 354 Teriparatide 주사제 보스테오주 등 고시 제2022-207호 22.9.1. 355 Thyrotropin 주시제 보스테오주 등 고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4 단백동화-터로이트제 Oxymetholone 경구제 설트리오 옥시메톨론경 고시 제2018-253호 18.12.1. 357 ★ 245 부신호르몬제 프레로이트 주시제 제일테시마탄존주사액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57 ★ 245 부신호르몬제 프레로이트 주시제 제일테시마탄존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토코트 고시 제2019-313호 20.1.1. 359 Deflazacott 경구제 캘ュ트정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9 Deflazacott 경구제 캘ュ트정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9 Deflazorot 경구제 객트로 프레크만펜주150마이크로크램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9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시제 불루피드롤주 등 고시 제2019-313호 19.6.7. 360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시제 돌루페드롤주 등 고시 제2019-313호 19.6.7. 360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시제 돌루페드롤주 등 고시 제2019-313호 13.9.1. 361 ★ 247 단포흐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Danazol 경구제 영풍 다나폴캡슐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리마정1mg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리마정1mg 등 고시 제2018-213호 13.9.1. 361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점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8-132호 13.9.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점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8-132호 13.9.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기노병경등 고시 제2017-180호 17.11.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기노바건용터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이라 프로기노병경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이라 프로기노병경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이라 프로기노병경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이라 프로기노병경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이라 프로기노병경우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		1-1-1-1	1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3.3.1.	J-11
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 미니린주사액 교시 제2018-253호 18.12.1. 342 Somatrogon 주사제(성장흐르몬제) 엔젤라프라밀드벤주 24mg 등 교시 제2023-165호 23.9.1. 343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 (성장흐르몬제) 유트로만플러스주 등 교시 제2019-252호 19.12.5. 344 Teriparessin acetate 주사제 클라이프레신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53 Vasopressin 20U 주사제 한림 바소프레신 주사액 교시 제2017-193호 17.11.1. 353 ★ 243 갑상선, 부갑상선흐르몬제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테리본피하주사 교시 제2012-207호 22.9.1. 354 Teriparatide 주사제 바고레오주 등 교시 제2019-171호 19.8.1. 365 ★ 243 갑상선, 부갑상선흐르몬제 Teriparatide 주사제 타이로센주 등 교시 제2019-171호 19.8.1. 365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Oxymetholone 경구제 벨트라온 옥시메톨론경 교시 제2019-171호 19.8.1. 357 ★ 245 부신호르몬제 전트로인드 주사제 제일데사이타순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토코트 교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세일메피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철르트정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제제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제제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제표로 전체 프로메드용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제품 표면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제품 표면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제품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acetated 경구제 프로기노바오용터밀리크램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제품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dectate 경구제 프로기노바오용터밀리크램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dectate 경구제 프로기노바오용데밀리크램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 362 Epinephrine dectate 경구제 의 제2017-193호 17.1.1. 362 E		미니리것 등	고시 제2020-107호	20.6.1	342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 고시 제2023-165호 23.9.1. 343 Somatropin 서방형 주시제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공러스주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344 Somatropin 주사제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증는 고시 제2012-268호 22.12.1, 346 Terriparestin acetate 주사제 글라이프레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53 *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Terriparatide acetate 주사제 테리본피하주사 고시 제2022-207호 22.9.1, 354 Terriparatide acetate 주사제 테리본피하주사 고시 제2022-207호 22.9.1, 355 Terriparatide 구시제 포스테스주 등 고시 제2012-193호 17.11.1, 357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Oxymetholone 경구제 셀트라온 옥시매톨론정 고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5 부신호르몬제 Ostropin 주사제 세일테시메타손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토코트 고시 제2022-160호 22.71.1, 359 Deflazacort 경구제 제일메디베르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일메디베르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설크트정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objective 가지 제일메디베르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제제 제일메미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제제 제일메미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1 Epinephrine 제제 제일메미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제제 제일메미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acetate 경구제 플리아시들론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acetate 경구제 프레나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acetate 경구제 프레나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3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나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 247 난포주르몬제 말하호르몬제 모레나정드 고시 제2013-127호 13.9.1, 363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나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레나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 249 건무로르몬제 모레나정드 고시 제2013-127호 13.9.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레나정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레나정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 249 기막으로르몬제 모레나정드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 249 기막으로르몬제 모레나정드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 249 기막으로르몬제 모레나정드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 249 기막으로르몬제 모레나정					
Somatropin 서방형 주시제 (성장흐르몬제)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5. 344 Somatropin 주시제 (성장흐르몬제) 유트로핀주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366 Terlipressin acetate 주시제 글라이므레스주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53 ★ 243 갑상선, 부간상선흐르몬제 Teriparatide acetate 주시제 범리본피하주사 고시 제2022-207호 22.9.1. 354 Teriparatide acetate 주시제 범리본피하주사 고시 제2022-207호 22.9.1. 355 Thyrotropin 주시제 보스테오주 등 고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Oxymetholone 경구제 범리된지는주시액 교시 제2018-253호 18.12.1. 357 ★ 245 단신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주시제 체임데시메타순주사액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57 ★ 245 단신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체임데시메타순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토코트 고시 제2022-160호 22.7.1. 359 Deflazacort 경구제 캠프트정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9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레임메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9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레임메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제제 제의메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acetonide 주사제 블리앙사블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블리앙사블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의미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 247 단포흐르몬제 및 황체흐르몬제 Dienogest 경구제 의장 등 다나졸캡슐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마스테어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마스테어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3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마스테어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3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마스테어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 249 기타의 흐르몬제(항흐르몬제를 포함) 보포지크호르몬(ISH) 주사제 프레마스테어 등 고시 제2017-180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흐르몬제(항흐르몬제를 포함) 보포지크호르몬(ISH) 주사제 이이브이데프셔주 500010 등 고시 제2017-180호 17.11.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의미리스주 고시 제2017-180호 17.11.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의미리스주 고시 제2017-180호 17.11.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의미리스주 고시 제2017-180호 19.3.1. 369 Follitropina + lutropin q(rhl.H) 복합주사제 에로카인주 교시 제2018-285호 14.4. 370 GnRH antagonist 주사제 고시 제2018-285호 14.4. 370 GnRH antagonist 주사제				1	
Somatropin 주사계 (성장호르몬제) 유트로민주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346 Terlipressin acetate 주시제 글라이프레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53 Vasopressin 20U 주사제 한런 바소프레신 주사액 고시 제2017-193호 17.11.1, 353 *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테리본피하주사 고시 제2022-207호 22.9.1, 354 Teriparatide 주사제 포스테오주 등 고시 제2022-207호 22.9.1, 355 Thyrotropin 주사제 보스테오주 등 고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Oxymetholone 경구제 셀트리온 옥시매톨론정 고시 제2018-253호 18.12.1, 357 * 245 부신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주시제 레엘타마타손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토코트 고시 제2019-313호 20.1.1, 359 Befiazacort 경구제 캘코트정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책으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책으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all에 제일에나메르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ottartrate 주사제 책으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ottartrate 주사제 레일메니프리주사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물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물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물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물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다정1mg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로기나라오용테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게나암정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게나암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7.11.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게나암 등 고시 제2017-180호 17.11.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게나암등 고시 제2017-180호 17.11.1, 367 Chomiphene citrate 경구제 의료리밀드시리주 교시 제2017-180호 17.11.1, 367 Chomiphene citrate 경구제 의료리밀드시리주 교시 제2019-57호 19.4.1, 369 Darbepoetin alpha 주사제 네스프프리밀드시리주 고시 제2019-57호 19.4.1, 369 Follitropin*a lutropin q(rhth) 복합주세 제고비스주 고시 제2019-255호 24.4.1, 370 GnRH antagonist 주사제 고시 제2018-28호 18.13.1, 311			. "	+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 글라이프레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53 Vasopressin 20U 주사제 한림 바소프레신 주사액 고시 제2017-193호 17.11.1. 353 ★ 243 감상선, 부감상선호르몬제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테리본피하주사 고시 제2022-207호 22.9.1. 354 Thyrotropin 주사제 보스테오주 등 고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Oxymetholone 경구제 셀트리온 옥시매톨론정 고시 제2019-171호 19.8.1. 357 ★ 245 부신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제일에사메탕손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토리트 고시 제2021-160호 22.7.1. 359 Deflazacort 경구제 캘리트정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 359 Deflazacort 경구제 캘리트정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 359 Deflazacort 경구제 레임에서메타온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일에서메타르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레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일에서메르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JM 제일에서메르민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19.6.7. 360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블리암시탈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탈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Firestadiol hemihydrate 경구제 브라인커를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리나리커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3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리나리커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리나리커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3 Evenorogestrol 제제 미레나 20mcg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미레나 20mcg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미레나 20mcg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체 명공리바라트관산영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체 영공리바피스트라인영정 고시 제2019-37호 19.4.1. 367 Epithropoietin 주사제 네스프리필드시리주 고시 제2019-38호 19.3.1. 361 Firthropoietin 주사제 네스프리필드시리주 고시 제2019-38호 19.3.1. 361					
Vasopressin 20U 주사제 한림 바소프레신 주사액 교시 제2017-193호 17.11.1. 353 ★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테리본피하주사 교시 제2022-207호 22.9.1. 355 Thyrotropin 주사제 포스테오주 등 교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Oxymetholone 경구제 셀트리온 옥시메톨론정 교시 제2018-253호 18.12.1. 357 ★ 245 부신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제일텍사메타손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토코트 교시 제2019-313호 20.1.1. 359 Deflazacort 경구제 캘코트정 등 교시 제2019-252호 19.12.1. 359 Deflazacort 경구제 캘코트정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일메파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일메파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제제 제일메파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제에 제일메파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3호 10.1.1. 360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솔루메드롤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열풍 다나폴캡슐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Dienogest 경구제 명하다르면자에 프리아카메 등 교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리마정1mg 등 교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리마장1mg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리마장1mg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리마장1mg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만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미레나 20mcg 교시 제2013-127호 13.9.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만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미레나 20mcg 교시 제2017-180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만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명품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명품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명품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Epithropoietin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Epithropoietin 주사제 네스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Epithropoietin 주사제 네스프리필드시린지주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Epithropoietin 주사제 네고프리필드시린지주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Epithropoietin 주사제 네고프리필드시린지주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Epithropoietin 주사제 네고프리프리프리프리프스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Epithropoietin 주사제 네고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					
◆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대리본피하주사 교시 제2022-207호 22.9.1. 354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테리본피하주사 교시 제2022-207호 22.9.1. 355 Thryoropin 주사제 토어로젠주 등 교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Oxymetholone 경구제 셀트리온 옥시메톨론정 교시 제2018-253호 18.12.1. 357 ◆ 245 부신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제일액사메타손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토코트 교시 제2022-160호 22.7.1. 359 Defiazacort 경구제 캘코트정 등 교시 제2019-252호 19.12.1. 359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젝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제제 제일액메비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9-933호 19.6.7. 360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솔루메드롤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Financinolone acetonide 주사제 솔루메드롤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Paize 로르르지 명우 드라스플로 로르르지 교리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테리본피하주사 교시 제2022-207호 22.9.1. 354 Teriparatide 주사제 모스테오주 등 교시 제2022-207호 22.9.1. 355 Thyrotropin 주사제 타이로젠주 등 교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Oxymetholone 경구제 셀트리온 옥시메통론정 교시 제2018-253호 18.12.1. 357 ★ 245 부신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제일택사메타손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토코트 교시 제2022-160호 22.7.1. 359 Deflazacort 경구제 캘코트정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일때네프린주나액 등 교시 제2019-323호 19.12.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일때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9-323호 19.12.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일때메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ordium succinate 주사제 제일때메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일때메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일때메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F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들론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Danazol 경구제 영풍 다나졸캡슐 등 교시 제2018-253호 18.12.1. 362 Dienogest 경구제 비간정 등 교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리다정1mg 등 교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리나정1mg 등 교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교시 제2023-184호 23.10.1. 363 Evenorgestrol 제제 프로메라 프로메라 등 교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마레나 20mcg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교리 프로메라 등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교시 제2017-180호 17.10.1. 367 Epythropoietin alpha 주사제 데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Follitropin-t + lutropin α(r·hl H) 복합주사제 데프리프트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Follitropin-t + lutropin α(r·hl H) 복합주사제 제고에리스주 고시 제2018-55호 24.4.1. 370 GnRH antagonist 주사제		26 의 소스 웨인 구시력	고시 세시기 193포	17.11.1.	درد ا
Teriparatide 주사제 포스테오주 등 고시 제2022-207호 22.9.1. 355 Thyrotropin 주사제 타이로젠주 등 고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Oxymetholone 경구제 셀트리온 옥시메톨론정 고시 제2018-253호 18.12.1. 357 ★ 245 부신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제일택사메타손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멘토크트 고시 제2022-160호 22.7.1. 359 Deflazacort 경구제 캠프트정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1. 359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으트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으트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리램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9 Epinephrine 제제 제의대비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플리암시눌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눌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눌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Danazol 경구제 영풍 다나졸캡슐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i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다정1mg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레다정1mg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리나정1mg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보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마레나 20mcg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보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의로 크레나지크 그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Erythropoietin ਕ/rh에 의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7 Erythropoietin ਕ/rh에 목한주사제 되었어?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7 Erythropoietin ব/rh에 의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7 Erythropoietin ব/rh에 의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70 GnRH antagonist 주사제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테리보피하즈사	고시 제2022-207층	22 Q 1	35/
Thyrotropin 주사제 타이로젠주 등 고시 제2019-171호 19.8.1. 356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Oxymetholone 경구제 셀트리온 옥시메톨론정 고시 제2018-253호 18.12.1. 357 ★ 245 부신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제일덱사메타손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토코트 고시 제2019-252호 19.12.1. 359 Deflazacort 경구제 캘코트정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일메페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에제 제일메페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슬루메드롤주 등 고시 제2019-93호 19.6.7. 360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슬루메드롤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슬라마스탈스를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Dienogest 경구제 영풍 다나졸캡슐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Dienogest 경구제 의미네나 20mcg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리나오8청 [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t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레나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t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레나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t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레나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이비의에프씨주 500이나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의무리판시트로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의무리판시트로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Darbepoetin alpha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6 Epithropoietin 주사제 에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7 Epithropoietin 주사제 의모하면 (사비나) 복합주사제 제고베리스주 고시 제2019-53호 19.3.1. 368 Follitropin-α + lutropin α(사비나) 복합주사제 지고베리스주 고시 제2019-53호 19.3.1. 369 Follitropin-α + lutropin α(사비나) 복합주사제 지고베리스주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셀트리온 옥시메톨론정 고시 제2018-253호 18.12.1. 357 ★ 245 부신호르몬제 제일덱사메타손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인탁코트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인탁코트 교시 제2019-313호 20.1.1. 359 Defiazacort 경구제 캘코트정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섹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교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MM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 교시 제2019-31호 20.1.1. 360 Epinephrine MM 제일에피네프로우사액 등 교시 제2019-31호 20.1.1. 360 Epinephrine MM 제일에피네프로우사액 등 교시 제2019-31호 20.1.1. 360 Epinephrine MM 제일에피네프로우사액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Epinephri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솔루메드롤주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361 ** 247 반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 보고보지 기본					
Oxymetholone 경구제셀트리온 옥시메톨론정고시 제2018-253호18.12.1.357★ 245 부신호르몬제교시 제2019-313호20.1.1.358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엔토코트교시 제2022-160호22.7.1.359Deflazacort 경구제캘코트정 등교시 제2019-252호19.12.1.359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책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교시 제2019-313호20.1.1.360Epinephrine 제제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교시 제2019-313호20.1.1.360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솔루메드롤주 등교시 제2013-127호13.9.1.361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트리암시놀론주 등교시 제2013-127호13.9.1.361★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명풍 다나졸캡슐 등교시 제2018-253호18.12.1.362Dienogest 경구제비산정 등교시 제2018-253호18.12.1.362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프레다정1mg 등교시 제2023-184호23.10.1.363Estradiol valerate 경구제프리막정1mg 등교시 제2023-184호23.10.1.363Levonorgestrol 제제미레나 20mcg교시 제2023-184호23.10.1.363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프로케라정 등교시 제2017-193호17.11.1.364★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포함교시 제2017-180호17.10.1.367U문자국호르몬 (FSH) 주사제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교시 제2017-180호17.10.1.367Olomiphene citrate 경구제여로프리필드시린지주 등교시 제2017-180호17.10.1.367Orabpepoetin alpha 주사제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교시 제2019-38호19.3.1.369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대교비나주교시 제2018-28호<		니이포엔구 등	고시 세2013-171조	19.0.1.	330
★ 245 부신호르몬제		세트리오 오시메토로저	고시 게2019-252층	19 12 1	357
스테로이드 주사제 제일덱사메타손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58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토코트 고시 제2022-160호 22.7.1. 359 Deflazacort 경구제 캘코트정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1. 359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렉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제제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93호 19.6.7. 360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출루메드롤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놀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Danazol 경구제 영풍 다니콜캡슐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Dienogest 경구제 비산정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다정1mg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레나정1mg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베라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고시 제2022-111호 22.5.1. 366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아이브이에프씨주 500이U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Darbepoetin alpha 주사제 네스프르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7 Erythropoietin 주사제 에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대로베리스주 고시 제2024-55호 24.4.1. 370 GnRH antagonist 주사제		골드니는 국시에 골든 6	고시 세2010 200호	10.12.1.	331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엔토코트 고시 제2022-160호 22.7.1. 359 Deflazacort 경구제 캘코트청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1. 359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제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M제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93호 19.6.7. 360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솔루메드롤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놀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Danazol 경구제 영풍 다나졸캡슐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Dienogest 경구제 비간정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다정1mg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메라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베라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국호르몬 (FSH) 주사제 고시 제2022-111호 22.5.1. 366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아이브에프씨주 500에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Darbepoetin 리pha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퍼고베리스주 고시 제2024-55호 24.4.1. 370 GnRH antagonist 주사제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게이데시메티소즈시에 드	고시 게2010-212층	20 1 1	250
Befiazacort 경구제 캠코트정 등 고시 제2019-252호 19.12.1. 359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섹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고시 제2019-313호 20.1.1. 360 Epinephrine 제제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93호 19.6.7. 360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솔루메드롤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놀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Danazol 경구제 영풍 다니졸캡슐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Dienogest 경구제 비간정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다정1mg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베라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마리버전 등 고시 제2022-111호 22.5.1. 366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Darbepoetin 리pha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제고베리스주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GnRH antagonist 주사제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Epinephrine 제제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 고시 제2019-93호 19.6.7. 360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솔루메드롤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놀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명풍 다니졸캡슐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Dienogest 경구제 명풍 다니즐캡슐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다청1mg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Levonorgestrol 제제 미레나 20mcg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메라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모르베라정 등 고시 제2022-111호 22.5.1. 366 태반성성산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Erythropoietin 주사제 에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피고베리스주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솔루메드롤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놀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Danazol 경구제 영풍 다나졸캡슐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Dienogest 경구제 비간정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다정1mg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Levonorgestrol 제제 미레나 20mcg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베라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고시 제2022-111호 22.5.1. 366 태반성성전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Darbepoetin alpha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Erythropoietin 주사제 에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퍼고베리스주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 ·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트리암시놀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1 ★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Danazol 경구제 영풍 다나졸캡슐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Dienogest 경구제 비간정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다정1mg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리나라오정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Levonorgestrol 제제 미레나 20mcg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베라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고시 제2022-111호 22.5.1. 366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Darbepoetin 리pha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7-57호 19.4.1. 367 Erythropoietin 주사제 에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퍼고베리스주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 · · ·				
◆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의제 성명등 다니졸캡슐 등고시 제2018-253호18.12.1.362Dienogest 경구제비산정 등고시 제2018-253호18.12.1.362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프레다정1mg 등고시 제2023-184호23.10.1.363Estradiol valerate 경구제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고시 제2023-184호23.10.1.363Levonorgestrol 제제미레나 20mcg고시 제2013-127호13.9.1.364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프로베라정 등고시 제2017-193호17.11.1.364◆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고시 제2022-111호22.5.1.366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고시 제2017-180호17.10.1.367Clomiphene citrate 경구제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고시 제2017-180호17.10.1.367Darbepoetin alpha 주사제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고시 제2019-57호19.4.1.367Erythropoietin 주사제에포카인주 등고시 제2019-38호19.3.1.369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퍼고에레리스주고시 제2018-28호18.3.1.370GnRH antagonist 주사제고시 제2018-28호18.3.1.371					
Danazol 경구제 영풍 다니졸캡슐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Dienogest 경구제 비간정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다정1mg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63 Levonorgestrol 제제 미레나 20mcg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베라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보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고시 제2022-111호 22.5.1. 366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Darbepoetin alpha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7 Erythropoietin 주사제 에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Follitropin·a + lutropin a(r-hLH) 복합주사제 퍼고네 제2018-28호 18.3.1. 371		드리암시골논수 등	고시 세2013-12/오	13.9.1.	361
Dienogest 경구제 비간정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3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다정1mg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Levonorgestrol 제제 미레나 20mcg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베라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고시 제2022-111호 22.5.1. 366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Darbepoetin alpha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7 Erythropoietin 주사제 에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70 GnRH antagonist 주사제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 · · · · · · · · · · · · · · · · · ·	OH FUIZZIA F	7 I 7 7 1 2 2 4 2 2 5 2 -	10.10.1	262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프레다경1mg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Levonorgestrol 제제 미레나 20mcg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베라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고시 제2022-111호 22.5.1. 366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Darbepoetin alpha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7 Erythropoietin 주사제 에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퍼고베리스주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363 Levonorgestrol 제제 미레나 20mcg 고시 제2013-127호 13.9.1. 364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프로베라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고시 제2022-111호 22.5.1. 366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Darbepoetin alpha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7 Erythropoietin 주사제 에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퍼고베리스주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Levonorgestrol 제제미레나 20mcg고시 제2013-127호13.9.1.364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프로베라정 등고시 제2017-193호17.11.1.364❖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고시 제2022-111호22.5.1.366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고시 제2017-180호17.10.1.367Clomiphene citrate 경구제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고시 제2017-180호17.10.1.367Darbepoetin alpha 주사제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고시 제2019-57호19.4.1.367Erythropoietin 주사제에포카인주 등고시 제2019-38호19.3.1.369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퍼고베리스주고시 제2024-55호24.4.1.370GnRH antagonist 주사제고시 제2018-28호18.3.1.371	, -, -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프로베라정 등고시 제2017-193호17.11.1364❖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고시 제2022-111호22.5.1366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고시 제2017-180호17.10.1367Clomiphene citrate 경구제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고시 제2017-180호17.10.1367Darbepoetin alpha 주사제네스프르리필드시린지주 등고시 제2019-57호19.4.1367Erythropoietin 주사제에포카인주 등고시 제2019-38호19.3.1369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퍼고베리스주고시 제2024-55호24.4.1370GnRH antagonist 주사제고시 제2018-28호18.3.1371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고시 제2022-111호22.5.1.366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고시 제2017-180호17.10.1.367Clomiphene citrate 경구제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고시 제2017-180호17.10.1.367Darbepoetin alpha 주사제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고시 제2019-57호19.4.1.367Erythropoietin 주사제에포카인주 등고시 제2019-38호19.3.1.369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퍼고베리스주고시 제2024-55호24.4.1.370GnRH antagonist 주사제고시 제2018-28호18.3.1.371					
반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고시 제2022-111호 22.5.1. 366 대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Darbepoetin alpha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7 Erythropoietin 주사제 에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퍼고베리스주 고시 제2024-55호 24.4.1. 370 GnRH antagonist 주사제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71 3		고시 제2017-193호	17.11.1.	364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이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Darbepoetin alpha 주사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고시 제2019-57호 19.4.1. 367 Erythropoietin 주사제 에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Follitropin-교 + lutropin 교(r-hLH) 복합주사제 퍼고베리스주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GnRH antagonist 주사제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 ·	포함)		,	1
Clomiphene citrate 경구제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고시 제2017-180호17.10.1.367Darbepoetin alpha 주사제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고시 제2019-57호19.4.1.367Erythropoietin 주사제에포카인주 등고시 제2019-38호19.3.1.369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퍼고베리스주고시 제2024-55호24.4.1.370GnRH antagonist 주사제고시 제2018-28호18.3.1.371				22.5.1.	366
Darbepoetin alpha 주사제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고시 제2019-57호19.4.1.367Erythropoietin 주사제에포카인주 등고시 제2019-38호19.3.1.369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퍼고베리스주고시 제2024-55호24.4.1.370GnRH antagonist 주사제고시 제2018-28호18.3.1.371					367
Erythropoietin 주사제에포카인주 등고시 제2019-38호19.3.1.369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퍼고베리스주고시 제2024-55호24.4.1.370GnRH antagonist 주사제고시 제2018-28호18.3.1.371			고시 제2017-180호	17.10.1.	367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Darbepoetin alpha 주사제		고시 제2019-57호		367
GnRH antagonist 주사제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Erythropoietin 주사제	에포카인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69
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퍼고베리스주	고시 제2024-55호	24.4.1.	370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	GnRH antagonist 주사제		고시 제2018-28호	18.3.1.	371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9-210호		371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Lutropin alpha (r-hLH) 주사제	루베리스주 75IU	고시 제2024-55호	24.4.1.	371
Menotrophin 주사제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3/1
Menotrophin HP 주사제	아이브이에프엠 에이치피주 등	고시 제2022-111호	22.5.1.	372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	미쎄라프리필드주	고시 제2019-38호	19.3.1.	373
Octreotide 주사제	산도스타틴주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374
Pasireotide pamoate 주사제	시그니포 라르 주사 20,40,60 밀리그램	고시 제2017-193호	17,11,1,	375
Pegvisomant 주사제	소마버트 1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17-193호		376
* 252 자궁수축제	조마미드 10월니그램 등	고시 세2021-234오	21.9.1.	3/0
		□ II 7 2012 127÷	12.0.1	277
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	에르빈주사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77
◆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				1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고시 제2019-240호	19.11.8.	378
5mg, dutasteride 0.5mg)	기드라에 사에 건 4 이미지 그라. 드	□ II 7 2012 127 =	12.0.1	270
Alfuzosin 경구제	자트랄엑스엘정10밀리그람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78
Atosiban 주사제	트랙토실주 등	고시 제2015-184호	15.11.1.	379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듀오다트캡슐	고시 제2022-56호	22.3.1.	379
Fesoterodine fumarate 경구제	토비애즈서방정 4mg, 8mg	고시 제2013-127호	13.9.1.	380
Mirabegron 경구제	베타미가서방정 등	고시 제2020-107호	20.6.1.	380
Naftopidil 경구제	플리바스정 등	고시 제2017-153호	17.9.1.	380
Potassium citrate 경구제	유로시트라케이 10mEq서방정	고시 제2019-191호	19.9.1.	380
Potassium citrate, Citric acid 경구제	유로시트라씨산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381
Silodosin 경구제	트루패스캡슐 4mg 등	고시 제2017-62호	17.4.1.	381
Solifenacin 경구제	베시케어정 등	고시 제2016-223호	16.12.1.	381
Tamsulosin HCI 경구제	보령염산탐스로신캡슐0.2밀리그람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81
Terazosin HCI 경구제	일양하이트린정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82
Tolterodine 경구제	디트루시톨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82
❖ 261 외피용살균소독제	1 1 120 0	1 11-21-21-21		
Povidone iodine 외용제	포타딘연고 등	고시 제2011-163호	12.1.1.	383
 ◆ 263 화농성질환용제 	_ 122_ 0	_ 2011 100_		- 555
Mafenide acetate 외용제	메페드크림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384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500mcg (6×10 ⁵ IU) 외용제	이지에프외용액 0.005%	고시 제2018-253호	18.12.1.	384
◆ 264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고시 제2018-253호	18.12.1.	385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고시 제2019-57호	19.4.1.	385
Ammonium lactate 외용제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 등	고시 제2019-210호	19.10.1.	386
Buprenorphine 패취제	노스판패취 5μg, 10μg, 20μg	고시 제2017-193호	17,11,1,	387
Capsaicin 외용제	다이악센크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87
Lidocaine 패취제	리도탑 카타플라스마 등	고시 제2016-31호	16.3.1.	387
◆ 265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 <u>3 1E 10</u>	- 1 12010 312		
Fluconazole 외용제	후코날크림 0.5%	고시 제2018-253호	18 12 1	389
 ◆ 266 피부연화제(부식제를 포함) 	1-2-0 0.570	_ 2010 2332	1.0.12.1.	303
Imiquimod 12.5mg 외용제	알다라크림	고시 제2016-49호	16.4.1.	390
 ◆ 269 기타의 외피용약 		- 1 12010 132		
Calcipotriol 외용제	다이보넥스	고시 제2013-127호	13 9 1	391
cardiportion =10.1	1 1 1 - 7 -		15.5.1.	١٠٠١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Penciclovir 외용제	펜시비어크림	고시 제2020-244호	20.11.1.	391
Pimecrolimus 외용제	엘리델크림 1%	고시 제2019-57호	19.4.1.	391
Tacalcitol 20.87mcg/g 외용제	본알파하이연고	고시 제2013-127호	13.9.1.	391
Tacrolimus 외용제	프로토픽연고 0.1%, 0.03% 등	고시 제2020-79호	20.5.1.	392
 ◆ 311 비타민A 및 D제 		12 1 1 1 1 2 0 2 0 7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0.5.1.	332
Calcitriol 경구제	본키연질캡슐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93
Calcitriol 주사제	본키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93
Paricalcitol 주사제	제플라주 등	고시 제2020-161호	20.8.1.	394
 ★ 316 혼합비타민제(비타민A,D 혼합 		고시 세2020-101호	20.0.1.	394
수용성비타민·엽산 복합성분 경구제	에글 세외) 레날민정, 네프비타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95
* 322 무기질제제	네클런경, 네프미니경 궁	고시 세2015-127호	15.9.1.	393
	헤모콤액 등	7 J 7∥2020 70÷	20 5 0	200
액제형 철분제제		고시 제2020-79호	20.5.8.	396
철분주사제	베노훼럼주, 페린젝트주 등	고시 제2024-72호	24.5.1.	397
Iron acetyl-transferrin 200mg 경구제	알부맥스캅셀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398
❖ 325 단백아미노산 제제	OHELLION E	7 I 7 7 10 0 10 0 7 7		
경장영양제	엔커버액 등	고시 제2019-93호	19.6.7.	400
단백아미노산 제제		고시 제2013-151호	13.10.1.	400
A액(Glucose), B액(Amino-acid), C액(Intralipid) 주사제		고시 제2019-240호	19.11.1.	401
Glycyl-L-glutamine 주사제	글라민주 등	고시 제2019-240호	19.11.1.	401
L-leucine, L-phenylalanine, L-methionine 등 주사제	클리니믹스85주사	고시 제2013-127호	13.9.1.	402
N(2)-L-alanyl-L-glutamine 주사제	디펩티벤주 등	고시 제2019-240호	19.11.1.	402
α-Keto-DL-isoleucine calcium 67.0mg외 9종 경구제	케토스테릴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403
❖ 329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Lipid 주사제	스모프리피드 20%주 등	고시 제2019-240호	19.11.1.	404
❖ 332 지혈제				
Eptacog alfa 주사제	노보세븐알티주	고시 제2019-252호	19.12.1.	405
Gelatin sponge 외용제	큐탄플라스트스폰지 등	고시 제2013-151호	13.10.1.	406
Idarucizumab 주사제	프락스바인드주사제	고시 제2019-21호	19.2.1.	406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써지셀(오리지날) 등	고시 제2023-37호	23.3.1.	407
P-aminomethyl benzoic acid 주사제	에스빅스주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407
Thrombin 제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407
Tranexamic acid 경구제	도란사민캅셀	고시 제2017-193호	17.11.1.	408
❖ 333 혈액응고저지제			ı	
Apixaban 경구제	엘리퀴스정 등	고시 제2022-184호	22 8 1	409
Dabigatran 경구제	프라닥사캡슐 11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2-184호		410
Dalteparin sodium 주사제	프라그민주 등	고시 제2018-97호	18.6.1.	412
Defibrotide 주사제	데피텔리오주 200밀리그램	고시 제2019-93호	19.6.7.	413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	릭시아나정 1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2-184호	22.8.1.	415
Enoxaparin sodium 주사제	크렉산주 등	고시 제2018-97호	18.6.1.	416
Fondaparinux sodium 주사제	아릭스트라주	고시 제2019-191호	19.9.1.	417
Heparin 주사제	* ¬——ЧТ	고시 제2013-127호	13.9.1.	417
Nadroparin 주사제	 후락시파린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17
Rivaroxaban 경구제	구역시파인구 등 자렐토정 2.5밀리그램 등		22.8.1.	
NIVAROXADAN 성구세 ◆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시골포장 4.3월시스템 중	고시 제2022-184호	ZZ.Ö. I.	418
·	파괴타경 드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14 12 1	422
Cilostazol 경구제	프레탈정 등	고시 제2014-210호	14.12.1.	422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Damoctocog alfa pegol 주사제	지비주 500 IU 등	고시 제2023-184호	23,10,1,	422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100호	24.6.1.	423
Emicizumab 주사제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고시 제2023-82호	23.5.1.	426
G-CSF 주사제 filgrastim	그라신프리필드 시린지주 등			
Lenograstim	뉴트로진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428
Hydroxyethyl starch 함유 제제	보루벤주,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 헥스텐드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29
Pentastarch 제제	제일펜타스타치 10%주	고시 제2017-193호	17.11.1.	430
Plerixafor 주사제	모조빌주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430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WII 주사제	애드베이트주 등	1 10-2-2-1-2-2		
Beroctocog alfa	그린진에프주 등	고시 제2023-146호	23.8.1.	433
Moroctocog alfa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 ,,=====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Rurioctocog α pegol 주사제	애디노베이트주 250 IU 등	고시 제2023-146호	23.8.1.	434
Lonoctocog alfa 주사제	앱스틸라주 250 IU 등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주사제	베네픽스주	고시 제2020-107호	20.6.1.	435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albumun fusion protein Albutrepenonacog a 주시제	아이델비온주 250 IU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436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0tm = 21	□ II 7 2022 404÷	22.0.1	427
IX-Fc fusion protein Eftrenonacog α 주사제	알프로릭스주 250 IU 등	고시 제2022-184호	22.8.1.	437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Nonacog gamma 주사제	릭수비스주	고시 제2018-280호	19.1.1.	438
Romiplostim 주사제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고시 제2024-100호	24.6.1.	439
Susoctocog alfa 주사제	오비주르주	고시 제2024-20호	24.2.1.	442
Ticlopidine HCI 경구제	유유크리드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42
❖ 341 인공신장관류용제				'
복막투석액		고시 제2013-127호	13.9.1.	444
L-methionine 외 복막투석액	뉴트리닐 피디-4액		17.11.1.	444
❖ 349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	
Calcium chloride 외 (안내수술용 평형염액)	비에스에스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45
D-mannitol + D-sorbitol	유로솔액 등	고시 제2020-265호	20.12.1.	445
 ❖ 391 간장질환용제 				
Lamivudine 100mg 경구제	제픽스정 등	고시 제2019-93호	19.6.7.	446
❖ 392 해독제				
구형흡착탄 경구제	크레메진세립 등	고시 제2022-131호	22.6.1.	447
Betaine anhydrous 180g 경구제	시스타단산 1그램	고시 제2014-17호	14.2.1.	447
Deferasirox 경구제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48
Flumazenil 주사제	아넥세이트주 등	고시 제2017-35호	17.3.1.	448
Leucovorin calcium 주사제	페르본주사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49
Sodium thiosulfate 주사제	아메톡스주 25%	고시 제2013-127호	13.9.1.	449
Zinc acetate 경구제	윌리진캡슐 25밀리그램, 50밀리그램	고시 제2013-127호	13.9.1.	449
❖ 394 통풍치료제				
Colchicine 경구제	콜킨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50
◆ 395 효소제제				
Agalsidase alfa 3.5mg 주사제	레프라갈주	고시 제2019-313호	20.1.1.	451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Agalsidase β 37mg 주사제	파브라자임주 등	고시 제2020-17호	20.2.1.	452
Alglucosidase alfa 주사제	마이오자임주 등			
Avalglucosidase alfa 주사제	넥스비아자임주	고시 제2023-165호	23.9.1.	454
Asfotase alfa 주사제	스트렌식주 40mg/mL 등	고시 제2024-55호	24.4.1.	454
Elosulfase alfa 5mg 주사제	비미짐주	고시 제2016-83호	16,6,1,	457
Galsulfase 주사제	나글라자임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458
ldursulfase 주사제	엘라프라제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58
Rasburicase 주사제	패스터텍주	고시 제2018-253호	18,12,1,	459
❖ 396 당뇨병용제			1	
당뇨병용제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고시 제2018-174호	18.9.1.	460
Dapagliflozin 경구제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4-20호	24.2.1.	460
Empagliflozin 경구제	자디앙정 10밀리그램	고시 제2024-20호	24.2.1.	461
Metformin 경구제	다이아벡스정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461
Pioglitazone 경구제	액토스정 등	고시 제2017-180호	17.10.1.	462
❖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	<u>.</u> 약품		'	
4:1 w/w mixed hydrogel of sodium				
hyaluronate gel crosslinked by divinyl	레시노원주 등	고시 제2022-56호	22.3.1.	463
sulfone and sodium hyaluronate 주사제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	이모튼캡슐	고시 제2021-194호	21.7.23.	463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고시 제2020-79호	20.5.1.	463
Bromocryptine mesylate 경구제	팔로델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64
Burosumab 주사제	크리스비타주사액	고시 제2023-82호	23.5.1.	464
Cabergoline 경구제	카버락틴정 등	고시 제2018-58호	18.4.1.	466
Carglumic acid 경구제	카바글루확산정200mg	고시 제2020-69호	20.4.1.	467
Cinacalcet HCI 경구제	레그파라정 등	고시 제2018-81호	18.5.1.	467
Denosumab 주사제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고시 제2024-72호	24.5.1.	468
Diazoxide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	고시 제2023-184호	23.10.1.	469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	다이놀정	고시 제2017-193호	17.11.1.	469
Eliglustat tartrate 경구제	세레델가캡슐 84밀리그램	고시 제2017-193호	17.11.1.	470
	듀파락시럽 등, 듀파락-이지시럽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70
Miglustat 경구제	자베스카캡슐 100밀리그램	고시 제2019-21호	19.2.1.	471
Nafamostat 주사제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 등	고시 제2020-161호	20.8.1.	472
Nitisinone 경구제	올파딘캅셀	고시 제2013-127호	13.9.1.	473
Pamidronate 제제	파노린주사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473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	세레브로리진주 등	고시 제2020-107호	20.6.1.	474
Romosozumab 주사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고시 제2022-207호	22.9.1.	474
S-adenosyl-L-methionine	사데닌정 등	고시 제2022-56호	22.3.11.	475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				
Sodium alendronate 시럽제	마시본액 등	고시 제2020-133호	20.7.1.	475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	히루안플러스주 등	고시 제2020-79호	20.5.1.	475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	하이알주 등	고시 제2020-79호	20.5.1.	476
Thioctic acid 주사제	부광치옥타시드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77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고시 제2024-72호	24.5.1.	478
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경구제		고시 제2016-31호	16.3.1.	480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 421 항악성종양제				
상황균사체엑스 경구제	메시마캅셀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81
5-fluorouracil 주사제	중외 5-에프유 주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481
6-Mercaptopurine 경구제	푸리네톤정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481
Cyclophosphamide 제제		고시 제2020-107호	20,6,1,	481
Etoposide 제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482
GnRH agonist 주사제		고시 제2018-253호	18.12.1.	483
Interferon α-2a 주사제	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	고시 제2015-118호	15.7.1.	486
Interferon α-2b 주사제	인트론에이멀티도스펜	고시 제2016-110호	16.7.1.	488
letrozole 경구제	페마라정 등	고시 제2019-93호	19.6.7.	489
Megestrol acetate	메게이스내복혀탁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90
Methotrexate 세세		고시 제2018-253호	18.12.1.	490
Mitoxantrone HCI 주사제	미트론주	고시 제2021-26호	21.2.1.	492
Rituximab 주사제	맙테라주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493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197호	23.11.1.	498
Tamoxifen 경구제	놀바덱스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499
Vincristin sulfate 주사제	빈크란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00
 ◆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_ 2010127_	10.5.1.	300
Anagrelide acetate	아그릴린캅셀 등	고시 제2019-240호	19.11.1.	501
Selumetinib 경구제	코셀루고캡슐10, 25밀리그램	고시 제2023-296호	24.1.1.	501
Thymomodulin 경구제	로이콘시럽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04
 ◆ 431 방사성 의약품 				
에프도파18F	도파체크주사	고시 제2024-55호	24.4.1.	505
3,3-Diphosphono-1, 2-Propane Dicarboxylate(DPD), Tetrasodium 주사제	테세오스주 등	고시 제2014-166호	14.10.1.	505
Chromium(51Cr) edetate 1mCi	새한크롬이디티에이주사	고시 제2013-127호	13.9.1.	505
Exametazime 주사제	스타빌라이지드세레텍주 등	고시 제2019-21호	19.2.1.	505
Indium chloride(111In) 3.3mCi, Pentetreotide 10mcg 주사제	옥트레오스캔주사	고시 제2013-127호	13.9.1.	506
Strontium chloride (Sr-89)	메타스트론주	고시 제2017-35호	17.3.1.	506
Thallium-201 주사제	한국원자력의학원염화탈륨(TI-201)주사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07
◆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	단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	케라힐-알로	고시 제2018-115호	18.6.9.	508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칼로덤	고시 제2019-191호	19.9.1.	508
자가유래연골세포	콘드론	고시 제2022-184호	22.8.1.	509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큐피스템주	고시 제2013-210호	14.1.1.	510
Abatacept 주사제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고시 제2023-296호	24.1.1.	511
Adalimumab 주사제	휴미라주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513
Aflibercept 주사제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524
Anakinra	키너렛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526
Brolucizumab 주사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고시 제2024-130호	24.7.1.	526
Etanercept 주사제	엔브렐주사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528
Faricimab 주사제	바비스모주	고시 제2024-130호	24.7.1.	533
Function 1 (1/1)	- -	/1 /112024 130 2	∠¬./.I.	ررر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Infliximab 제제	레미케이드 주 등	고시 제2024-130호	24.7.1.	535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	콜겐스마주	고시 제2022-181호	22.8.1.	545
Ranibizumab 주사제	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24.7.1.	547
Vedolizumab 주사제	킨텔레스주 등	고시 제2024-55호	24.4.1.	549
 ◆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경 		_ 202133_	21.1.1.	3 13
Benzathine penicillin G 주사제	몰다민주 등	고시 제2017-136호	17.8.1.	553
Daptomycin 주사제	펜토신주 35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1-161호	21.6.7.	553
Linezolid 경구제	자이복스정 등		21.0.7.	333
Linezolid 2mg/ml주사제	자이복스주 등	고시 제2024-55호	24.4.1.	554
Tedizolid 경구제	시벡스트로정 200mg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554
Teicoplanin 주사제	타고시드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55
Vancomycin 주사계	반코마이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56
◆ 612 주로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경		12 1 1 1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3.3.1.	330
Amikacin sulfate 주사제	아미킨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57
Aztreonam 주사제	메작탐주사 등	고시 제2020-161호	20.8.1.	557
Colistimethate 주사제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557
 ◆ 613 주로 항산성균에 작용하는 것 	+ 2 4 - 4 - 1 4 1 6	15 T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11.1.	551
Kanamycin sulfate 주사제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559
Rifabutin 경구제	마이코부틴캅셀 등	고시 제2014-34호	14.3.1.	559
Rifampicin 경구제	리팜핀정 등	고시 제2018-174호	18.9.1.	560
 ★ 614 주로 그람양성균, 리케치아, 비 		고시 세2010 174포	10.5.1.	300
Azithromycin 경구제	지스로맥스정 등	고시 제2024-55호	24.4.1.	561
Erythromycin 경구제	시 건	고시 제2018-174호	18.9.1.	562
Roxithromycin 경구제	루리드정 등	고시 제2018-174호	18.9.1.	562
★ 615 주로 그람음성균, 리케치아, 비		고시 세2010-174호	10.9.1.	302
Doxycycline 50, 100mg 제제	국제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캡슐100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3-252호	23.12.20.	563
❖ 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	화이자펜타미딘이세티온산염주 300mg	고시 제2018-158호	18.8.1.	564
◆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Bleomycin HCl 주사제	브레오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65
Mitomycin-C 점안액 (조제실 제제에 한함)		고시 제2004-28호	04.5.1.	565
Mitomycin-C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565
◆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	오구멘틴정 등	고시 제2024-55호	24.4.1.	566
Cefazolin sod. 주사제	세파 <u>종</u> 린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66
Ceftazidime 주사제	포텀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66
Ceftazidime + Avibactam 주사제	자비쎄프타주	고시 제2024-20호	24.2.1.	567
Ceftolozane + Tazobactam 주사제	저박사주	고시 제2022-227호	22.10.1.	567
Ertapenem 주사제	인반즈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567
Gentamicin sulfate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568
Imipenem + Cilastatin 제제	티에남주 등			
Meropenem 세제	유한메로펜주 등	고시 제2024-55호	24.4.1.	568
Doripenem 제제	피니박스주사 등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Rifaximin 경구제	노르믹스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569
Tigecycline 주사제	타이가실주	고시 제2018-28호	18.3.1.	569
❖ 619 기타의 항생물질 제제(복합항상		•		
Clarithromycin 경구제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고시 제2022-111호	22.5.1.	570
◆ 621 설화제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	설파디아진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572
Sulfamethoxazole 400mg, Trimethoprim 80mg 경구제	셉트린정, 셉트린시럽 등	고시 제2018-158호	18.8.1.	573
Sulfasalazine 경구제	사라조피린이엔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73
❖ 622 항결핵제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	서튜러정 100mg	고시 제2024-55호	24.4.1.	574
Delamanid 경구제	델티바정 50mg	고시 제2024-55호	24.4.1.	575
Pretomanid 경구제	도브프렐라정 200mg	고시 제2024-55호	24.4.1.	576
❖ 623 치나제				
Dapsone 경구제	태준답손정 25mg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577
❖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l		
에이즈치료제		고시 제2015-184호	15.11.1.	578
Acyclovir 제제	조비락스 등	고시 제2019-38호	19.3.1.	578
Balofloxacin 100mg	큐록신정	고시 제2017-77호	17.5.1.	579
Ciprofloxacin 경구제	사이톱신정 등	고시 제2017-77호	17.5.1.	580
Darunavir ethanolate 433.64mg 경구제	프레지스타정 400mg	고시 제2013-127호	13.9.1.	580
Darunavir ethanolate 650.46mg 경구제	프레지스타정 600mg	고시 제2016-31호	16.3.1.	581
Darunavir ethanolate + Cobicistat silicon dioxide 복합제	프레즈코빅스정	고시 제2016-31호	16.3.1.	581
Elbasvir + Grazoprevir 경구제	제파티어정	고시 제2017-77호	17.5.1.	581
Etravirine 경구제	인텔렌스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582
Famciclovir 250mg 경구제	팜비어정 250mg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82
Ganciclovir 주사제	싸이메빈정주 등	고시 제2015-205호	15.12.1.	583
Gemifloxacin mesylate 경구제	팩티브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584
Glecaprevir + Pibrentasvir 경구제	마비렛정	고시 제2021-65호	21.3.1.	584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	하보니정	고시 제2019-171호	19.8.1.	586
Letermovir 경구제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7.1.7ll2020 20F÷	21.1.1	F00
Letermovir 주사제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고시 제2020-305호	21.1.1	588
Levofloxacin 경구제	레보펙신정 등	고시 제2023-252호	23,12,20,	588
Levofloxacin 주사제	크라비트주 등	고시 제2023-252호	23,12,20,	590
Lomefloxacin 경구제	로맥사신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91
Maribavir 경구제	리브텐시티정200밀리그램	고시 제2024-55호	24.4.1.	591
Moxifloxacin 경구제	아벨록스정 등	고시 제2021-26호	21,2,1,	592
Nelfinavir mesylate 경구제	비라셉트필름코팅정	고시 제2017-215호	17.12.1.	593
Ofloxacin 제제	타리비드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593
Oseltamivir 경구제	타미플루캡슐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594
Palivizumab 주사제	시나지스주 등	고시 제2017-246호	18,1,1,	595
Raltegravir potassium 경구제	이센트레스정,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고시 제2018-174호	18.9.1.	596
Sofosbuvir 경구제	소발디정	고시 제2022-227호	22.10.1.	596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	소설 기	고시 제2022-250호	22.10.1.	
DOLOSDANI I AEIHARSANI O LVII	H2T'10	그게 제2022 230호	44.11.1.	טפע

Sofosburir + Velpatasrir + Voxilaprevir 경구제 보세비경 교시 제2022-250호 22.11.1 599 Tenofovir disoproxil 3구제 미리어 제2018-253호 18.12.1 599 Tenofovir disoproxil + Emtricitabine 경구제 모색스청 교시 제2019-93호 19.6.7. 600 Tosufloxacin 경구제 모색스청 교시 제2013-127호 13.9.1 600 Valacyclovir HCI 경구제 발로렌스청 250일리그램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600 Valacyclovir HCI 경구제 발로렌스청 250일리그램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600 Valacyclovir HCI 경구제 발로렌스청 250일리그램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600 Valacyclovir HCI 경구제 발로렌스청 250일리그램 등 교시 제2015-239호 16.1.1 601 Zabarofitoxacin 경구제 리앤스로르드는 제2019-210호 17.1.1.1 601 Per dried rab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2.5U.lior Whole-virus rabies antigon)구시에 보라 전체 제2018-127호 13.9.1. 603 Whole-virus rabies antigon)구시에 보라 전체 제2019-210호 19.1.0.1 604 Per dried rab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2.5U.lior Whole-virus rabies antigon)구시에 보라 전체 제2019-210호 19.1.0.1 604 Per dried rab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2.5U.lior Whole-virus rabies antigon)구시에 제 toxin Antimorphic botulinum A toxin 주시제 보라건조살무시항독소주 교시 제2023-101호 23.6.1 613 Per dried rab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2.5U.lior Whole-virus rabies antigon)구시에 제 toxin Antimorphic botulinum A toxin 주시제 보라건조살무시항독소주 교시 제2023-101호 23.6.1 613 Per dried rab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 zell line and purified zell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Tenofovir disoproxil 용구제 비리이드형 등 교시 제2018-253호 18.12.1, 599 Tenofovir disoproxil + Emtrictabine 경구제 트라바다정 교시 제2019-93호 19.6.7, 600 Tosufloxacin 경구제 오색건경 교시 제2013-127호 13.9.1, 600 Valacyclovir HCI 경구제 발트렉스정 250밀리그램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600 Valacyclovir HCI 경구제 발트렉스정 250밀리그램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601 Zabofloxacin 경구제 기본단테정 교시 제2015-239호 16.1.1, 601 Zanamivir 의용제 기본단테정 교시 제2017-193호 17.1.1.1, 601 ★ 631 박사류 Ter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22.5I.U/or Wholevirus rabies antigen) 구시제 비료로 시제 제2013-127호 13.9.1, 603 Wholevirus rabies antigen) 구시제 비료로 시제 제2013-127호 13.9.1, 603 Wholevirus rabies antigen) 구시제 보복으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603 Costricilum botulinum A toxin Apal 제2 보복으주 등 교시 제2023-101호 25.1, 607 ★ 633 항목소 및 렉토스피라협정류 시제 제2016-145호 16.8.1, 612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시제 시원에 가용 주시제 시원자를 보면하는 지원지를 보면하는 지원지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경구제	보세비정	고시 제2022-250호	22.11.1.	599
Tenofovir disoproxil + Emtricitabine 경구제			고시 제2018-253호	18.12.1.	599
Tosufloxacin 경구제 모션스정 25인일리그램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600 Valacyclovir HCl 경구제 발표력으청 25인일리그램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600 Valaganciclovir 경구제 발싸이트적 45인일리그램 등, 고시 제2023-229호 23.12.1. 601 Zabofloxacin 경구제 자보란테청 고시 제2015-239호 16.1.1. 601 Zanamivir 의용제 자보란테청 고시 제2017-193호 17.11.1. 601 수 631 백시류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2.5 IU/or Whole-viuus rabies antipen} 시간에 보험하는 지원 전체	Tenofovir disoproxil + Emtricitabine 경구제		고시 제2019-93호	19.6.7.	600
Valacyclovir HCI 경구제 발트렉스정 250밀리그램 등				13.9.1.	600
상 1 성의 대한 경구제 발사이트적 450일리그럼 등, 발사이트적 450일리그럼 등, 발사이트적 48년말 교시 제2015-239호 16.1.1. 601 전 2 제 제2015-239호 16.1.1. 601 전 3 제 제2015-239호 16.1.1. 601 전 4 631 백신류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메로리 rabies antipen)주시제		발트렉스정 250밀리그람 등			600
지기 배시한 1 배	,	발싸이트정 450밀리그람 등,			601
★ 631 백신류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2.5i.Ulor Whole-wirus rabies antipen)주사제 ★ 632 독소류 및 독소이드류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PAN 보통스주 등 고시 제2019-210호 19.10.1. 604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Davidium Potulinum A toxin 주사제 Nativenin agkistrodon halys 보론스주 등 고시 제2022-160호 22.7.1. 607 ★ 633 항목소 및 렌토스피라협청류 Antivenin agkistrodon halys 보란건조살무사항독소주 고시 제2023-101호 23.6.1. 611 ★ 634 혈액제제류 Albumin 주사제 고시 제2016-145호 16.8.1. 612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인티트록빈III 주 등 고시 제2022-131호 22.6.1. 615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인티트록빈III 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 25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 250I.U, 500I.U 주사제 모이트로루인III 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 250I.U, 500I.U 주사제 모이트로루인III 주 등 고시 제2022-266호 24.1.1. 619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 250I.U, 500I.U 주사제 모이트로루인III 주 등 고시 제2022-266호 22.12.1. 620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용고 제 13인자) 대로로봇르데스엔주 등 고시 제2022-26호 22.3.1. 622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용고 제 13인자) 600, 1500, 1500, 1500 III 주사제 모르카인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3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마달로텍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1000IU 주사제 모르카인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1000IU 주사제 모르카인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1000IU 주사제 모르카인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1000IU 주사제 모르카인패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1000IU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1000IU 주사제 모르카인패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1000IU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636	Zabofloxacin 경구제	자보란테정	고시 제2015-239호	16.1.1.	601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2.5I.U(or Whole-wirus rabies antigen)주사제	Zanamivir 외용제	리렌자로타디스크	고시 제2017-193호	17.11.1.	601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2.5I.U/or Whole-virus rabies antigen)주사제 ★ 632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보투스주 등 고시 제2019-210호 19.10.1. 604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보투스주 등 고시 제2022-160호 22.7.1. 607 ★ 633 항독소 및 텝로스피라협청류 Antivenin agkistrodon halys 보란건조살무사항독소주 고시 제2023-101호 23.6.1. 611 ★ 634 협약제제류 Albumin 주사제 고시 제2016-145호 16.8.1. 612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반티를린비 주 등 고시 제2022-131호 22.6.1. 615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반티를린비 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 250I.U, 500I.U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 250I.U, 500I.U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 250I.U, 500I.U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 250I.U, 500I.U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 250I.U, 500I.U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 250I.U, 500I.U 주사제 고시 제2023-266호 22.12.1. 620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고시 제2023-266호 22.13.1. 622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633 Hu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IU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고시 제2019-93호 19.6.7. 636 ★ 636 생물학적 제체	❖ 631 백신류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보통스주 등 고시 제2022-160호 22.7.1. 607 ◆ 633 항독소 및 랩토스피라헬청류 Antivenin agkistrodon halys 보란건조살무사항독소주 고시 제2023-101호 23.6.1. 611 ◆ 634 혈액제제류 Albumin 주사제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Pt트를림비! 주 등 고시 제2022-131호 22.6.1. 615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Pt트를림비! 주 등 고시 제2014-166호 14.10.1. 616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50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50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50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50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500I.U, 500I.U, 50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500I.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2.5I.U(or Whole-virus rabies antigen)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603
haemagg utinin complex 주사제	-			T	1
★ 633 항목소 및 렙토스피라혈청류 보란건조살무사항독소주 교시 제2023-101호 23.6.1. 611 ★ 634 혈액제제류 시bumin 주사제 교시 제2016-145호 16.8.1. 612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훼이바주 교시 제2022-131호 22.6.1. 615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훼이바주 교시 제2014-166호 14.10.1. 616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행이바주 교시 제2013-135호 22.6.1. 615 Anti-inhibitor coagulation full full full full full full full ful		디스포트주	고시 제2019-210호	19.10.1.	604
Antivenin agkistrodon halys 보란건조살무사항독소주 고시 제2023-101호 23.6.1. 611 ★ 634 혈액제제류 Albumin 주사제 고시 제2016-145호 16.8.1. 612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함이바주 고시 제2022-131호 22.6.1. 615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안티트롬빈III 주 등 고시 제2014-166호 14.10.1. 616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함주용 해파박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 25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 250I.U, 500I.U 주사제 무건되고 250I.U, 500I.U 주사제 무건보수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 250I.U, 500I.U, 500I.U) 주사제 무건보수 등 고시 제2023-296호 24.1.1. 619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 250I.U, 500I.U 주사제 무건보수 등 고시 제2023-296호 22.12.1. 620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 250I.U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620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고시 제2022-266호 22.3.1. 622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코시 제2013-127호 13.9.1. 633 IgM 고함유 사람연역글로불린 주사제 펜타글로빈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IU 주사제 메라글로빈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마갈로텍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 635 생물학적 시형용제제류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투베르룰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보톡스주 등	고시 제2022-160호	22.7.1.	607
★ 634 혈액제제류 고시 제2016-145호 16.8.1. 612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훼이바주 고시 제2022-131호 22.6.1. 615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안티트롬빈III 주 등 고시 제2014-166호 14.10.1. 616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정주용 해파박주 등 고시 제2015-134호 15.8.1. 617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I 250I.U, 500I.U 주사제 그린에이트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I 250I.U, 500I.U) 주사제 이뮤네이트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I 250I.U, 250I.U, 500I.U) 주사제 그린모노주 등 고시 제2023-296호 24.1.1. 619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 코아카텍스주250IU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620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고시 제2022-56호 22.3.1. 622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페브로카민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3 Igm vair A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펜타글로빈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메글로텍주 <t< td=""><td></td><td></td><td></td><td></td><td></td></t<>					
Albumin 주사제 고시 제2016-145호 16.8.1. 612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훼이바주 고시 제2022-131호 22.6.1. 615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안티트롬빈III 주 등 고시 제2014-166호 14.10.1. 616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코근에이트주 고시 제2015-134호 15.8.1. 617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250I.U, 500I.U 주사제 무리에이트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250I.U, 500I.U, 1,000I.U(as Von-Willebrand factor Ⅲ 250I.U, 250I.U, 250I.U, 500I.U) 주사제 무비때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구근모노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구근모노주 등 고시 제2023-296호 24.1.1. 619 Human inmunoglobulin G 주사제 무비때an inmunoglobulin G 주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620 Human inmunoglobulin G 주사제 마브로카민피 고시 제2021-65호 21.3.1. 632 Ig에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펜타글로빈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3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IU 주사제 메갈로텍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메갈로텍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세프로틴 고시 제2013-127호 13.9.1. 636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튜베르룰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보란건조살무사항독소주	고시 제2023-101호	23.6.1.	611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훼이바주 고시 제2022-131호 22.6.1. 615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안티트롬빈III 주 등 고시 제2014-166호 14.10.1. 616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 634 혈액제제류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안티트롬빈III 주 등 고시 제2014-166호 14.10.1. 616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정주용 헤파빅주 등 고시 제2015-134호 15.8.1. 617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I 250I.U, 500I.U 주사제 그린에이트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I 250I.U, 1,000I.U(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 무대에 되어 Coagulation factor WII 구사제 무대에 모양되었다. 무대에 무대에 되어 Coagulation factor WII 구사제 무대에 마르주 고시 제2023-296호 24.1.1. 619 보기 제2022-268호 22.12.1. 620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고시 제2022-268호 22.3.1. 622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되바라글로반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3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IU 주사제 메타글로반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Immunoglobulin G, Human 어라고 무사제 메라그로만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Immunoglobulin G, Human 어라고 무사제 메라그로만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서프로틴 고시 제2013-127호 13.9.1. 636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 636 생물학적 제제	Albumin 주사제		고시 제2016-145호	16.8.1.	612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 25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 25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 250I.U, 500I.U, 1,000I.U(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 25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 25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 25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 25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 250I.U 주사제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 20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Implementation with a factor № 20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Implementation Will □ 20III 제2013-127호 13.9.1. 633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Immunoglobulin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세프로틴 20III 제2013-127호 13.9.1. 635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20II 제2013-127호 13.9.1. 638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고시 제2022-131호	22.6.1.	615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안티트롬빈!!! 주 등	고시 제2014-166호	14.10.1.	616
2501.U, 5001.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 2501.U, 5001.U, 1,0001.U(as Von-Willebrand factor 1251.U, 2501.U, 5001.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 2501.U, 5001.U, 5001.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 2501.U, 5001.U, 5001.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 212.EL 2501.U 등 고시 제2023-296호 22.12.1. 620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 코아가텍스주2501U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620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고시 제2022-56호 22.3.1. 622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Ⅱ (혈액응고 제 13인자) Ⅱ (혈액응고 제 13인자) Ⅱ (평액응고 제 13인자) Ⅱ 문로반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3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1U 주사제 Ⅲ (화대 그후사제 메라글로벌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메라르틱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정주용 헤파빅주 등	고시 제2015-134호	15.8.1.	617
500,U, 1,000,U,(as Von-Willebrand factor 125,U, 250,U, 500,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Ⅲ 구사제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 코아가텍스주25이U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620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고시 제2022-56호 22.3.1. 622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Ⅱ (혈액응고 제 13인자) Ⅱ (혈액응고 제 13인자) Ⅱ (현액응고 제 13인자) Ⅱ (판매이 등 교시 제2013-127호 13.9.1. 633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U 주사제 Ⅲ (파네이 등 자체 및 모르텍주 교시 제2013-127호 13.9.1. 634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세프로틴 교시 제2013-127호 13.9.1. 635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투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 636 생물학적 제제	_	그린에이트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주사제 그단모도구 등 고시 제2023-296호 24.1.1. 619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 코아가텍스주250IU 등 고시 제2022-268호 22.12.1. 620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고시 제2022-56호 22.3.1. 622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피브로가민피 고시 제2021-65호 21.3.1. 632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펜타글로빈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3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IU 주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메달로텍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세프로틴 고시 제2019-93호 19.6.7. 636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 636 생물학적 제제	500I.U, 1,000I.U(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계	이뮤네이트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고시 제2022-56호 22.3.1. 622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시제 펜타글로빈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3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IU 주사제 메타글로빈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메라르토텍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세프로틴 고시 제2019-93호 19.6.7. 636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 636 생물학적 제제			고시 제2023-296호	24.1.1.	619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IU 주사제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레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 636 생물학적 제제			고시 제2022-268호	22.12.1.	620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비프로가인비 교시 제2013-127호 21.3.1. 632 1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펜타글로빈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3 1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IU 주사제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고시 제2022-56호	22.3.1.	622
Marie Ma		피브로가민피	고시 제2021-65호	21.3.1.	632
5000IU 주사제 전로에스니에프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메갈로텍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세프로틴 고시 제2019-93호 19.6.7. 636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 636 생물학적 제제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펜타글로빈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3
cytomegalovirus 주사제 메일토텍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세프로틴 고시 제2019-93호 19.6.7. 636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 636 생물학적 제제	1	윈로에스디에프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세프로틴 고시 제2019-93호 19.6.7. 636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 636 생물학적 제제	1	메갈로텍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5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투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 636 생물학적 제제		세프로틴	고시 제2019-93호	19.6.7.	636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 636 생물학적 제제					
◆ 636 생물학적 제제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고시 제2013-127호	13.9.1.	638
					·
		캄랍주	고시 제2013-127호	13.9.1.	639

성 분 명	품 명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	솔리리스주 등	고시 제2024-55호	24.4.1.	640	
Interferon β-1a 주사제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	고시 제2021-26호	21 2 1	649	
Peginterferon β-1a 주사제	플레그리디펜주 등	고시 세2021-20호	21.2.1.	649	
Interferon β-1b	베타페론주사	고시 제2021-26호	21.2.1.	650	
Interferon-y 주사제	인터맥스감마주 200만단위	고시 제2016-21호	16.2.1.	651	
Natalizumab 주사제	티사브리주	고시 제2021-26호	21.2.1.	651	
Peginterferon alfa-2a 주사제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고시 제2016-66호	16.5.1.	652	
Ravulizumab 주사제	울토미리스주 등	고시 제2024-55호	24.4.1.	654	
◆ 641 항원충제					
Atovaquone 250mg, Proguanil HCl 100mg 경구제	말라론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658	
Metronidazole 주사제	트리젤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658	
Pyrimethamine	다라프림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658	
Pyrimethamine + Sulfadoxine 복합경구제	팬시다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659	
Pyronaridine + Artesunate 복합경구제	피라맥스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660	
❖ 721 X선조영제					
Barium sulfate 제제	솔로탑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66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고시 제2023-101호	23.6.1.	661	
PEG3350 외	코리트산 등	고시 제2022-160호	22.7.1.	661	
❖ 729 기타의 진단용약					
Corticorelin trifluoroacetate	씨알에이치페링 등	고시 제2019-191호	19.9.1.	663	
Perfluorobutane 주사제	소나조이드주	고시 제2022-181호	22.8.1.	663	
Somatorelin acetate	지에이치알에이치페링	고시 제2019-191호	19.9.1.	663	
❖ 81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Paracetamol 250mg, Ibuprofen 200mg, Codeine phosphate 10mg 복합 제제	마이폴캡슐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664	
❖ 821 합성마약					
Alfentanil HCI 주사제	알페닐주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665	
Fentanyl citrate 주사제	구연산펜타닐주 등	고시 제2019-171호	19.8.1.	665	
Oxycodone HCl 주사제	옥시넘주사 등	고시 제2017-193호	17.11.1.	666	
Remifentanil 주사제	울티바주 등	고시 제2016-203호	16.11.1.	667	
Sufentanil citrate 주사제	수펜탈주사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667	

■ 한약제제

구 분	고시번호	시행일	페이지
❖ 일반사항			
같은 날에 2가지 이상 기준처방 동시 투약시 인정여부	고시 제2011-10호	11.2.1.	671
급여 한약제의 제형 변형에 따른 인정범주	고시 제2005-61호	05.9.15.	671
처방별 적응증	고시 제2009-214호	10.1.1.	671

성분명순 색인

성분명순 색인

3,3-Diphosphono-1, 2-Propane Dicarboxylate(DPD)),	Antivenin agkistrodon halys ·····	611
Tetrasodium 주사제 ······		Apixaban 경구제 ·····	409
4:1 w/w mixed hydrogel of sodium hyaluronate	gel	Argatroban 주사제 ······	292
crosslinked by divinyl sulfone and sodium		Aripiprazole 주사제 ·····	130
hyaluronate 주사제 ······		Armodafinil 경구제 ·····	154
5-fluorouracil 주사제 ······	481	Arotinolol HCI 경구제 ······	257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	
dutasteride 0.5mg)		Asfotase alfa 주사제 ······	
6-Mercaptopurine 경구제 ·····		Aspirin 25mg + Dipyridamole 200mg 경구제 ·····	
Abatacept 주사제 ·····		Aspirin 경구제 ···································	
Abciximab 주사제 ······		Atomoxetine HCI 경구제 ······	
Abrocitinib 경구제 ·····		Atosiban 주사제 ·······	
Acetylcysteine 주사제 ·····		Atovaquone 250mg, Proguanil HCI 100mg 경구자	
Acetylcysteine 흡입액 ·····		Atovaquone 250mg, moguanii men 100mg 8/2	าเ 658
Acyclovir 제제 ·····	578	Atracurium besylate 주사제 ·····	
Adalimumab 주사제 ······		Avalglucosidase alfa 주사제 ···································	
Adenosine 주사제 ·····	288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 ·······	
Aflibercept 주사제 ·····	524	Azilsartan medoxomil potassium 경구제 ············	
Agalsidase alfa 3.5mg 주사제 ······	451	Azithromycin 경구제 ···································	
Agalsidase β 37mg 주사제 ······	452	Aztreonam 주사제 ······	
Agomelatine 경구제 ······	129		
- Albumin 주사제 ·····		A액(Glucose), B액(Amino-acid), C액(Intralipid) 주시	^[^ -⁄1∩1
Alemtuzumab 주사제 ·····	142	baclofen 주사제 ·····	
Alfentanil HCl 주사제 ······		Balofloxacin 100mg ······	
Alfuzosin 경구제 ······		Baricitinib 경구제 ······	
Alglucosidase alfa 주사제 ······		Barium sulfate 제제 ······	
Alirocumab 주사제 ·······		Basiliximab 주사제 ·······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계 ······			
Alprostadil 주사제 ·······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Alteplase 주사제 ·······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 + Glycopyrronium bromide흡입제 ····································	
Amantadine 경구제 ·······			
Amantadine 주사제 ···································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입기	3Ua II
Ambrisentan 경구제 ······		Beclomethasone dipropionate 경구제 ······	
Ambroxol HCl 주사제 ······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 ···································	
Amikacin sulfate 주사제 ···································		Belimumab 주사제 ···································	
Amitriptyline HCI		Benralizumab 주사제 ·······	
Ammonium lactate 외용제 ·····		Benzathine penicillin G 주사제 Beroctocog alfa	
Amoxapine		<u> </u>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 ······		Betaine anhydrous 180g 경구제 ·····	
Anagrelide acetate ·····		Bethanechol chloride 경구제 ······	
Anakinra		Bilberry fruit dried ext. 경구제 ·····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		Bismuth 경구제 ···································	

Blonanserin 경구제 ······	130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Bosentan hydrate 경구제 ····· 2		complex 주사제 ······	
Brolucizumab 주사제 ·····	526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	607
Bromocryptine mesylate 경구제 ······		Clozapine 경구제 ·····	
Budesonide (micronized) 2.3mg 제제 ······ 3		Colchicine 경구제 ·····	
Buprenorphine 패취제 ······ 3		Colistimethate 주사제 ·····	
Bupropion 100mg 경구제 ······	130	Corticorelin trifluoroacetate ·····	663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 ·······	130	Cyclophosphamide 제제 ·····	481
Burosumab 주사제 ······	164	Cyclosporin 0.05% 외용제 ·····	
Cabergoline 경구제 ······	166	Cyclosporin 0.1% 외용제 ·····	
Caffeine and sodium benzoate 주사제 ······ 2		Cyclosporine 경구제 ·····	
Caffeine citrate 액제 ·····		Cyclosporine 주사제 ·····	
Caffeine citrate 주사제 ······	307	Dabigatran 경구제 ·····	410
Calcipotriol 외용제 ·····	391	Dalteparin sodium 주사제 ·····	412
Calcitriol 경구제 ······	393	Damoctocog alfa pegol 주사제 ······	422
Calcitriol 주사제 ······		Danazol 경구제 ·····	362
Calcium chloride 외 (안내수술용 평형염액) ··········	145	Dapagliflozin 경구제 ······	
Calcium polycarbophil 경구제 ······	338	Dapsone 경구제 ······	577
Cannabidiol	117	Daptomycin 주사제 ······	
Capsaicin 외용제 ·····	387	Darbepoetin alpha 주사제 ·····	367
Carbamazepine 경구제 ······		Darunavir ethanolate + Cobicistat silicon dioxide	
Carglumic acid 경구제 ·······	167	복합제	
Cefazolin sod. 주사제 ······		Darunavir ethanolate 433.64mg 경구제 ······	580
Ceftazidime + Avibactam 주사제 ······	67	Darunavir ethanolate 650.46mg 경구제 ······	
Ceftazidime 주사제 ·····		Deferasirox 경구제 ·····	448
Ceftolozane + Tazobactam 주사제 ······	567	Defibrotide 주사제 ·····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		Deflazacort 경구제 ·····	
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Delamanid 경구제 ·····	575
ext.(3.5→1) 경구제 ······ 1		Denosumab 주사제 ·····	
Celecoxib 경구제 ······	124	Desloratadine 경구제 ·····	184
Chromium(51Cr) edetate 1mCi ······	505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	342
Ciclesonide 외용제 ······		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 ······	342
Cilostazol 경구제 ········	122	Desvenlafaxine 경구제 ·····	132
Cimetidine	332	Deucravacitinib 경구제 ······	193
Cinacalcet HCl 경구제 ······	167	Dexamethasone 700㎏ 이식제 ······	176
Ciprofloxacin HCI + Dexamethasone 외용제 ······· 1	183	Dexpanthenol 주사제 ·····	338
Ciprofloxacin 경구제 ······		Diazoxide ·····	469
Citalopram HBr	137	Dienogest 경구제 ·····	362
Citicoline 경구제 ······ 2	294	Dimethyl fumarate 경구제 ·····	145
Citicoline 주사제 ···································	294	Dimethyl fumarate 경구제 ·····	195
Cladribine 경구제 ·······	144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 ·····	469
Clarithromycin 경구제 ······		D-mannitol + D-sorbitol ·····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		Dobesilate calcium 경구제 ······	
Clomipramine HCI	135	Donepezil 경구제, 패취제 ······	146
Clonazepam 경구제 ···································		Doripenem 제제 ······	568
Clonidine hydrochloride 경구제 ······		Doxazosin 경구제 ······	
Clopidogrel + Aspirin 복합경구제 ······ 2		Doxycycline 50, 100mg 제제 ······	
Clopidogrel 경구제 ···································		Doxycycline hyclate 20mg 경구제 ·····	

Dronedarone 경구제 ······	· 257	Famotidine ·····	332
Duloxetine 경구제 ·····	· 133	Faricimab 주사제 ······	
Dupilumab 주사제 ······	· 195	Fentanyl citrate 주사계 ······	665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	lmg	Ferric citrate 경구제 ·····	295
복합경구제 ·····		Fesoterodine fumarate 경구제 ·····	
E.Coli strain Nissle 1917 동결건조물 14mg 경구제·	· 338	Fexuprazan 경구제 ·····	
Eculizumab 주사제 ·····		Filgotinib 경구제 ·····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 ·····	· 415	Fimasartan potassium 경구제 ······	263
Efonidipine 경구제 ·····		Finerenone 경구제 ·····	295
Elbasvir + Grazoprevir 경구제 ·····	· 581	Fingolimod HCI 경구제 ·····	
Eliglustat tartrate 경구제 ·····		Fluconazole 외용제 ·····	
Elosulfase alfa 5mg 주사제 ·····		Flumazenil 주사제 ······	448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 ·····		Fluoxetine HCI ······	137
Emicizumab 주사제 ·····		Fluticasone furoate 외용제 ·····	183
Empagliflozin 경구제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	310
Enoxaparin sodium 주사제 ·····		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	
Eperisone hydrochloride 경구제 ·····		Fluvoxamine maleate ·····	135
Epinastine 경구제 ·····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		Fondaparinux sodium 주사제 ······	
Epinephrine 제제 ·····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Eptacog alfa 주사제 ·····		흡입제 ····	310
Ertapenem 주사제 ·····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r	ne,
Erythromycin 경구제 ·····		Inactivated and purified≥2.5I.U(or Whole-virus rate	
Erythropoietin 주사제 ·····		antigen)주사제 ····································	
Escitalopram ·····		Fremanezumab 주사제 ·····	148
Escitalopram oxalate ·····	· 137	Gabapentin 경구제	
Esmolol HCI 주사제 ·····		Galantamine 경구제 ···································	
Esomeprazol ·····		Galcanezumab 주사제 ······	
Esomeprazole ·····		Galsulfase 주사제 ·······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		Ganciclovir 주사제 ·····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		G-CSF 주사제 filgrastim ·····	
Etanercept 주사제 ·····	· 528	Gelatin sponge 외용제 ·····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	seed	Gemifloxacin mesylate 경구제 ·····	
oil 주사제		Gentamicin sulfate 주사제 ·····	568
Etomidate 주사제 ·····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 ·····	296
Etoposide 세제 ·····		Glatiramer acetate 주사제 ······	
Etoricoxib 경구제 ·····		Glecaprevir + Pibrentasvir 경구제 ······	
Etravirine 경구제 ·····		Glycopyrrolate 주사제 ······	
Everolimus 경구제 ·····		Glycyl-L-glutamine 주사제 ·····	
Evolocumab 주사제 ·····		GnRH agonist 주사제 ·····	
Exametazime 주사제 ·····		GnRH antagonist 주사계 ·····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 ······		Golimumab 주사제 ·······	
Ezetimibe + pita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 ······	· 281	Guselkumab 주사제 ······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 ·····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 ·····	· 281	Heparin 주사제 ···································	417
Ezetimibe 경구제 ·····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c 4 -
Ezetimibe+Fenofibrate 복합경구제 ·····	· 282	주사제	617
Famciclovir 250mg 경구제 ·····	· 582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 ·····	
주사제 618	L-Carnitine ·····	29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 ·····	586
1,000I.U(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 ···································	Leflunomide 경구제 ·····	. 213
	Lenograstim ·····	. 428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I 주사제 ······· 619	Letermovir 경구제 ······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	Letermovir 주사제 ·····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 622	letrozole 경구제 ·····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Leucovorin calcium 주사제 ·····	449
Hydroxyethyl starch 함유 제제 ······ 429	Leukotriene 조절제 ······	
Hyoscine butylbromide 주사제 ······· 173	Levetiracetam 주사제 ······	
lcatibant 주사제 296	Levobupivacaine HCl 25mg 주사제 ······	
Idarucizumab 주사제 ···································	Levofloxacin 경구제 ·····	
Idursulfase 주사제	Levofloxacin 주사제 ······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633	Levomepromazine maleate 경구제 ······	
llaprazole 경구제	Levonorgestrol 계계 ······	
lloprost 흡입액 263	Lidocaine HCI 주사제 ······	
Imipenem + Cilastatin 제제 ······ 568	Lidocaine 패취제 ······	
Imipramine HCI	Limaprost α-cyclodextrin 경구제 ······	
Imiquimod 12.5mg 외용제 ····· 390	Linezolid 2mg/ml주사제 ·····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IU	Linezolid 경구제 ·····	
주사제 634	Lipid 주사제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L-leucine, L-phenylalanine, L-methionine 등 주사	제 403
주사제 635	L-methionine 외 복막투석액······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Lomefloxacin 경구제·······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315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 ······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 · 316	Lonoctocog alfa 주사제 ·······	
Indium chloride(111In) 3.3mCi, Pentetreotide 10mcg 주사제	Lorazepam 주사제 ·······	
구시계 500 Infliximab 계계 535	Lovastatin 경구제 ·······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	
Interferon α-2a 주사제 486 Interferon α-2b 주사제 488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	
	Lutropin alpha (r-hLH) 주사제 ···································	
Interferon β-1a 주사제 ······· 649 Interferon β-1b ····· 650	Macitentan 경구제 ···································	
Interferon-y 주사제 ······ 651	Mafenide acetate 외용제 ······	
	Maribavir 경구제 ···································	
Iron acetyl-transferrin 200mg 경구제 ····· 398 Irsogladine maleate 경구제 ···· 333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	
lyabradine 경구제 ···································	Megestrol acetate	
l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 ··········· 310	Memantine 경구제 ·······	
Ixekizumab 주사제 209	Menotrophin HP 주사제 ···································	
Kallidinogenase 경구제 ······ 297	Menotrophin 주사계 ···································	
	mepolizumab 주사제 ···································	
Kanamycin sulfate 주사제	Meropenem 계계 ·······	
Ketamine HCI 주사제	Mesalazine 세계 ······	
Lactulose 경구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 470	Metformin 경구제 ·······	
Lafutidine 경구제	Methotrexate 세제 ······	
Lamivudine 100mg 경구제446	Methotrexate 프리필드시린지 주사제 ·······	
Lamotrigine 경구제 ······ 120 Lansoprazole ····· 327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 ·····	

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 ·····	· 377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 ·····	177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 ·····	· 127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 ·····	54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		Oseltamivir 경구제 ·····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	· 361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	407
Metronidazole 주사제 ·····	658	Oxybutynin 경구제 ·····	172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 ·····	· 183	Oxycodone HCI 주사제 ······	666
Midazolam 주사제 ·····	· 115	Oxymetholone 경구제 ······	357
Migalastat 경구제 ······	. 339	Ozanimod 경구제 ······	217
Miglustat 경구제 ·····	471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	136
Milnacipran HCI	· 135	Palivizumab 주사제 ······	595
Milrinone 주사제 ······	299	Pamidronate 제제 ·····	473
Mirabegron 경구제 ······	. 380	P-aminomethyl benzoic acid 주사제 ·····	407
Mirtazapine ·····	· 137	Pantoprazole ·····	327
Mitomycin-C 점안액 (조제실 제제에 한함) ···········	. 565	Pantoprazole sodium ·····	328
Mitomycin-C 주사제 ······	. 565	Paracetamol 250mg, Ibuprofen 200mg, Codeine	
Mitoxantrone HCI 주사제 ·····	492	phosphate 10mg 복합 제제 ·····	664
Modafinil 200mg 경구제 ······	· 154	Paricalcitol 주사제 ·····	
Montelukast 경구제 ······		Paroxetine HCI	137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	. 252	Pasireotide pamoate 주사제 ·····	375
Moroctocog alfa ·····		PEG3350 외 ·····	
Moxifloxacin 경구제 ·······		Peginterferon alfa-2a 주사제 ·····	65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		Peginterferon β-1a 주사제 ······	649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 ·····		Pegvisomant 주사제 ·····	
N(2)-L-alanyl-L-glutamine 주사제 ······		Pemirolast potassium 시럽제 ·····	255
Nadroparin 주사제 ······		Penciclovir 외용제 ·····	
Nafamostat 주사제 ······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 ·····	
Naftopidil 경구제 ·····	. 380	Pentastarch 제제 ·····	430
Natalizumab 주사제 ·····		Pentoxifylline 경구제 ·····	
Natamycin 외용제 ······		Perfluorobutane 주사제 ·····	663
Nelfinavir mesylate 경구제 ·····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	252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 ······		Phenoxybenzamine 경구제 ·····	266
Nicorandil 주사제 ·····	. 272	Pilsicainide HCI 경구제 ·····	258
Nifedipine 경구제 ·····		Pimecrolimus 외용제 ·····	391
Nimodipine 경구제 ······	· 273	Pioglitazone 경구제 ·····	462
Nitisinone 경구제 ······	· 473	Piprinhydrinate 계제 ·····	184
Nitroglycerin 주사제 ·····		Pirfenidone 경구제 ·····	320
Nortriptyline HCI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 ·····	158
Nusinersen sodium 주사제 ·····		Plerixafor 주사제 ·····	430
Octreotide 주사제 ·····	. 374	Polaprezinc 경구제 ·····	334
Ofloxacin 세계 ·····	- 593	Polmacoxib 경구제 ·····	
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 외용제 ·······		Potassium citrate 경구제 ·····	380
Omalizumab 주사제 ·······		Potassium citrate, Citric acid 경구제 ·····	381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Povidone iodine 외용제 ·····	
복합경구제	· 283	Pranlukast 경구제 ·····	252
Omega-3-acid ethyl esters 90 + Rosuvastatin		Pregabalin 서방형 경구제 ·····	
복합경구제		Pregabalin 일반형 경구제 ·····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 ······		Pretomanid 경구제 ·····	
Omeprazole ·····	·· 327	Primidone 경구제 ·····	121

Probiotics (정장생균제) ······ 112	Roflumilast 경구제 ·····	322
Propacetamol HCI 주사제 ······ 126	Romiplostim 주사제 ·····	439
Propofol 주사제 ······ 114	Romosozumab 주사제 ·····	474
Propranolol HCI 경구제 ······ 259	Roxatidine acetate HCI 경구제 ·····	334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636	Roxithromycin 경구제 ······	562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 ···· 474	Rufinamide 경구제 ·····	··· 121
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 ····· 337	Rupatadine 경구제 ······	··· 184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 ·····	498
복합경구제 336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 ·····	300
Pyrimethamine 658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	
Pyrimethamine + Sulfadoxine 복합경구제 ······ 659	경구제	475
Pyronaridine + Artesunate 복합경구제 ····· 660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	··· 311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 ······ 136	Salbutamol 경구제 ·····	··· 311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 ······· 219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	··· 311
Rabeprazole ····· 327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Rabies human immunoglobulin 300 I.U 주사제 · 639	흡입제	
Raltegravir potassium 경구제 ····· 596	Satralizumab 주사제 ·····	··· 166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 341	Secukinumab 주사제 ·····	
Ranibizumab 주사제 ······ 547	Selexipag 경구제 ·····	266
Ranitidine HCI	Selumetinib 경구제 ·····	
Rasburicase 주사제 ······ 459	Sertraline HCl ·····	
Ravulizumab 주사제 654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 ······	301
Rebamipide 0.1g/5ml 외용제 ······ 177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 ······	301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WIII 주사제 ·· 433	Sildenafil 경구제 ·····	267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Silodosin 경구제 ·······	
Rurioctocog α pegol 주사제 ················· 434	Sirolimus 경구제 ···································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Nonacog gamma 주시제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 ······ Sodium alendronate 시럽제 ·····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주사제 435	Sodium alginate 경구제 ···································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albumun	Sodium docusate, D-sorbitol 복합 제제 ··········	
fusion protein Albutrepenonacog a 주사제 ····· 436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 ·········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Fc fusion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 ·······	
protein Eftrenonacog α 주사제 ······ 437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 ···································	- ۲۰ ۱۲۸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Sodium ozagrel 주사제 ···································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 ······ 434	Sodium thiosulfate 주사제 ·······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Sodium valproate 주사제 ···································	
500mcg (6×105 IU) 외용제 ······ 384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경구제 ·	
Remifentanil 주사제 667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 ···································	
Reslizumab 주사제 ······ 320	Sofosbuvir 경구제 ···································	
Rifabutin 경구제 559	Solifenacin 경구제 ·······	
Rifampicin 경구제 560	Somatorelin acetate ······	
Rifaximin 경구제 ····· 569		
Risankizumab 주사제 ····· 220	Somatostatin acetate 주사제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	
Risdiplam 경구제 ····· 160		
Risperidone 주사제 ······ 137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 (성장호르몬제) ········· Somatropin 주사제 (성장호르몬제) ·········	
Rituximab 주사제 ······ 493	S-pantoprazole 경구제 ···································	
Rivaroxaban 경구제 ······ 418	S-pantoprazole 경구세 ···································	
Rivastigmine 세계 ······ 163	onithetitoi 9±√I	122

Strontium chloride (Sr-89) ·····	··· 506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	· 269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 ·····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	· 178
Sufentanil citrate 주사제 ······	··· 667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	· 361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 ·····	··· 572	Trimetazidine 경구제 ·····	· 273
Sulfamethoxazole 400mg, Trimethoprim 80mg	F72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경구제 ····································		Ubidecarenone 경구제 ·······	
		Upadacitinib 경구제 ······	
Sulglycotide 경구제 ······		Ustekinumab 주사제 ······	
Sulpiride 경구제 ···································		Valacyclovir HCI 경구제 ······	
Susoctocog alfa 주사제 ···································		Valganciclovir_ 경구제 ······	
Tacalcitol 20.87mcg/g 외용제 ······		Vancomycin 주사제 ······	
Tacrolimus 외용제 ···································		Vasopressin 20U 주사제 ·····	
Tacrolimus 계계 ······		Vedolizumab 주사제 ·····	. 549
Tafamidis meglumine 경구제 ·····		Venlafaxine HCI 서방경구제 ·····	· 139
Tafluprost 외용제 ·····		Verapamil HCI 주사제 ······	· 274
Tamoxifen 경구제 ·····		Vericiguat 경구제 ······	
Tamsulosin HCI 경구제 ·····		Verteporfin 주사제 ······	· 179
Tandospirone 경구제 ·····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Tedizolid 경구제 ······		Umeclidinium 흡입제 ······	
Tegoprazan 경구제 ·····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기	
Teicoplanin 주사제 ·····			
Tenecteplase 주사제 ······	··· 302	Vincristin sulfate 주사제 ·····	
Tenofovir disoproxil + Emtricitabine 경구제 ······	600	vitis vinifera ext. ·····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	599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 ·····	· 180
Terazosin HCl 경구제 ······	··· 382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 ·····	
Teriflunomide 경구제 ······		Zabofloxacin 경구제 ·····	· 601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	··· 354	Zanamivir 외용제 ·····	· 601
Teriparatide 주사제 ······		Zinc acetate 경구제 ·····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 ······	353	Zofenopril calcium 경구제 ······	· 271
Tetrabenazine 경구제 ······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 ·····	
Thallium-201 주사제 ·······		α-Keto-DL-isoleucine calcium 67.0mg외 9종 경구	제
Thioctic acid 주사제 ···································			· 403
Thrombin 세제 ······		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경구제 ······	· 480
Thymomodulin 경구제 ······		가글 용제	
Thyrotropin 주사계 ·······		간장용제	··· 61
Ticlopidine HCI 경구제 ···································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Neuroprotective agents) ·····	··· 62
Tigecycline 주사제 ···································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 62
Tiotropium 흡입제 ···································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	·투여
Tirofiban HCI		기준	
Tocilizumab 주사제 ·······		경구용 항뇌전증약	··· 68
Tofacitinib 경구제 ···································		경구용 항혈전제 (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69
Tolterodine 경구제 ···································		경장영양제	· 400
Tolvaptan 경구제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 73
Tosufloxacin tosylate 외용제 ······		고지혈증치료제	73
Tosufloxacin 경구제 ······		고혈압약제 ····	75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 286
Tralokinumab 주사제 ·······		골다공증치료제	
Tranexamic acid 경구제 ···································		- · · · · · · · · · · · · · · · · · · ·	
Trazodone HCI ······	··· 13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저	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	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9
국소지혈제 ····	80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 ·····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뇌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83
단백아미노산 제제	··· 400
당뇨병용제 ····	83
당뇨병용제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460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89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	508
마약성 진통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메리스 그리니바이되스 (MEDC CAV) 미 그리니바이) Y [E]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I디 <u>스</u> 02
법요그가 서비 투자어려면 그가 서비 미 이번그가	서비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싱군 0.4
H코새시스에 내용되는 충고모 야계	94 0E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95
복막투석액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	eria)
치료제	96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98
미디던제	90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508
상황균사체엑스 경구제	
수용성비타민·엽산 복합성분 경구제 ·····	395
스테로이드 주사제	··· 358
안연고	98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	법
(Conditioning therapy) ·····	99
액제형 철분제제	396
에이즈치료제	578
에프도파18F ····	
요오드 조영제 ····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자가유래연골세포	509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 건조엑스(20→1) 300mg ···································	123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	99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	202
진해거담제	207
철분주사제	39/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385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	··· 367
편두통 치료제 ···································	··· 123
폐경 흐 ㅎㄹ모요번 이정기주	100

폐경기증후군에 투여하는 약제 101
폐동맥고혈압 약제 101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327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328
필수경구약제 103
항구토제 (Aprepitant 제제, Granisetron HCI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세제, Ramosetron 세제) ······ 336
항생제104
항생제 및 항원충제 105
항진균제106
항파킨슨 약제 109
향정신성약물 109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111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111

품명순 색인

품명순 색인

가스론엔정 2mg 등, 4mg	333	데놀정	331
가스터주 등	332	데카키논캡슐	256
갈라폴드캡슐	339	데파킨주 등	121
구연산펜타닐주 등	665	데피텔리오주 200밀리그램	413
국제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캡슐100밀리그램		덱스테놀주 등	338
등	563	덴티스타캡슐 ·····	
그라신프리필드 시린지주 등	428	델티바정 50mg ·····	575
그로민캡슐 등	135	도네리온패취 등	
그린모노주 등	619	도란사민캅셀 ·····	
그린에이트주 ····	618	도브프렐라정 200mg	
그린진에프주 등		도파체크주사	
글라민주 등	401	동아오젝스점안액	
글라이프레신주 등	353	동아오팔몬정 등	
글립타이드정 200밀리그람	335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나글라자임주 ····	458	동화디트로판정 등	
나타신점안현탁액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367	듀미록스정 ·····	
네오카프액 ·····		 듀오다트캡슐 ······	
네오카프주 등	307	듀파락시럽 등, 듀파락-이지시럽 등	
네폭실캡슐 500mg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넥스비아자임주		디벤지란캡슐	
넥시움정 등		디스포트주	
넥시움주 등		디아코미트	
노르믹스정 ····		디클렉틴장용정 등	
노보세븐알티주 ·····		디트루시톨정 등	
노스판패취 5/4g, 10/4g, 20/4g ······		디펩티벤주 등	
놀바덱스정 등		라미나지액 등	
놀텍경		라믹탈정 등	
누비질정 ····		라파뮨정 1밀리그램 등	
누칼라주		란스톤캡슐 등 ·······	
뉴론틴캡슐 등		럭스터나주	
뉴트로진주 ·····		레그파라정 등	
뉴트리닐 피디-4액 ·····		레나젤정 등	301
다라프림정		레날민정, 네프비타정 등	
다이놀정		레메론정 등	
다이보넥스		레모둘린 주사	
다이아벡스정 등		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다이악센크림 등		레미케이드 주 등	
닥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등		레바아이점안액2% 등, 레바아이점안액(1회용) 등 …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레보펙신정 등	
대웅프리미돈정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	
데노가즈 드		-112-11-10 4727-0	74.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	마이폴캡슐 등	
7114 7114 71010 F		마이폴틱장용정 등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마카이드주	
레시노원주 등	463	말라론정	
레일라디에스정 등	123	맙테라주 등	
레토프라정 등	335	멀택정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메갈로텍주	635
레프라갈주 ····	451	메게이스내복현탁액 등	490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메시마캅셀 등	481
렉사프로정 등	137	메작탐주사 등	557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301	메조카주사 ····	
렐바엘립타	306	메타스트론주 ····	
렘트라다주	142	메탈라제주	
로나센정 2밀리그램 등	130	메토젝트주	
로맥사신정 등		메페 <u>드크림</u> 등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		모비눌주 등	
로바로드정 등		모조빌주 등	
로수메가연질캡슐 등		몬테리진캡슐, 몬테리진츄정 ·····	
로수젯정 등		몰다민주 등 ···································	
로이콘시럽 등		무렉스정 등·····	
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	186		700
록산캅셀 등		무코미스트액 등	
		뮤코스텐주 등 ·····	
루리드정 등	271	뮤타플로캡슐	
루베리스주 7510		미니린정 등	
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미니린주사액 ····	
루칼로정 등		미레나 20mcg	
루파핀정		미쎄라프리필드주	
리도탑 카타플라스마 등	387	미트론주	
리렌자로타디스크	601	바비스모주	
리리카 CR 서방정 등	158	바스캄주 등	115
리리카캡슐 등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바스티난정 등	273
리바로젯정 등	281	바이토린정 등	281
리보트릴정 등	118	반코마이신주 등	
리브텐시티정200밀리그램	591	발싸이트정 450밀리그람 등, 발싸이트액제용분말	601
리스페달콘스타 주사	137	발트렉스정 250밀리그람 등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183	베네픽스주	
리오레살주 10mg/5mL ······		베노훼럼주, 페린젝트주 등	
리팜핀정 등		베로랍주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베르쿠보정 2.5mg 등	
릭수비스주	438	베시케어정 등	381
릭시아나정 15밀리그램 등		베타미가서방정 등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베타페론주사	. 650
마벤클라드정		베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	
마비렛정			
마시본액 등		벤타비스흡입액	
마이오자임주 등		벤토린흡입액 등	
마이코부틴캅셀 등		벨포로츄어블정	
		보란건조살무사항독소주	
마이토닌정 등	1/2	보령에릭캡슐	562

보령염산탐스로신캡슐0.2밀리그람 등	381	센시발정	135
보세비정	599	셀셉트캡슐 등	
보톡스주 등		셀트리온 옥시메톨론정	
본알파하이연고		셉트린정, 셉트린시럽 등	573
본키연질캡슐 등		소나조이드주 ·····	
본키주 등		소마버트 10밀리그램 등	
볼루벤주,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 헥스텐드주 등		소마지나정	
	429	소마토산주 등	341
볼리브리스정 5밀리그램 등		소발디정	
부광살부타몰정 등	311	소틱투정 ·····	193
부광치옥타시드주 등		솔로탑 등	661
브레비블록주 등		솔루메드롤주 등	361
브레오신주 등	565	솔리리스주 등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수펜탈주사 등	
20밀리그램 ·····	140	스모프리피드 20%주 등	
비라셉트필름코팅정		스모프카비벤주 등	
비리어드정 등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비미짐주	457	스킬라렌스장용정 30밀리그램 등	
비스메드점안액	177	스타빌라이지드세레텍주 등	
비에스에스액 등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스토가정10mg 등	
비잔정 등		스트라테라캡슐 등	
비쥬다인주		스트렌식주 40mg/mL 등	
빈다켈캡슐 20밀리그램		스티렌정 등	
빈크란주 등	500	스피리바흡입용캡슐 등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사데닌정 등	475	스피리바레스피맷	324
사라조피린이엔정 등		스핀라자주	
사미온정 등		시그니포 라르 주사 20,40,60 밀리그램	375
사이톱신정 등	580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 ·····	272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191	시나지스주 등	595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시노비안주,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원샷주	463
산도스타틴주 등		시벡스트로정 200mg 등	554
산디문주 등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		시스타단산 1그램	447
삼진니모디핀정 등	273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새한크롬이디티에이주사		신바로캡슐 등	
서튜러정 100mg ·····	574	실로덱스점이현탁액	
서팩텐 등	316	실콘정 등	
설파디아진정		심발타캡슐 등	133
설피딘정 등	138	심비코트터부헬러 등	310
세나진정 ·····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세디엘정 ·····	139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싱귤레어세립 등,	
세레델가캡슐 84밀리그램	470	싱귤로드속붕정 등	252
세레브로리진주 등	474	싱케어주 ·····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311	싸이메빈정주 등	583
세로자트정 등	137	써지셀(오리지날) 등	
세파졸린주 등	566	써티칸정 등	
세프로틴 ·····	636	썬리듬캡슐	258

세료웹정 등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 124	알페닐주 등	665
생물에든주사 189 압프로릭스주 250 U 등 437 사일에이지패링 등 633 애드베이트주 등 433 아가론주 등 292 애드베이트주 등 434 아가론주 등 292 애드베이트주 등 434 아고틴션 25일리그램 129 액토스정 등 462 아그린스티트주 302 액티라셔주사 290 아그린스티트주 302 액티라셔주사 290 아그린스티트주 303 액티라셔주사 290 아그린스티트주 316 아나이티 100앱티터 등 310 앤브로주사 등 308 알백 등 337 아타이티 100앱티터 등 316 앤브로주사 등 308 알백 등 337 아디노코주사 등 288 알백 등 337 아디노코주사 등 288 알백 등 337 아디산코스라설등 등 294 아택트라 홈입용캡을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6 아마니앤크로그램 등 213 애글란딘주 등 266 아라바경 등 273 애글란딘주 등 288 아르가경 등 273 애글란딘주 등 288 아르가경 등 289 아르네트로 등 414 에르벤추사액 등 317 아리스트리주 417 에리우스경 184 18				
씨암에이기패링 등 663 애드베이트주 등 433 아가론주 등 292 애디노베이트주 250 IU 등 434 사고린침 25일입긔램 129 액토소청 등 462 아그라스타트주 302 액티라제주사 290 아그립건설 등 501 앰윌리티크립드시리즈, "프라스타트주 302 액티라제주사 290 아그립건설 등 501 앰윌리티크립드시리즈, "프라스타트주 448 프리몰드펜주 151 아뉴이티 100열립타 등 310 앰브로주사 등 308 아달라도오로스청30 등 272 앱스탈라주 250 IU 등 434 아데노고주사 등 288 알액 등 150,750 마이크로그램 등 316 아디센츠 등 294 아테노라 참 200마이크로그램 등 266 아리바장 등 213 애로난근 등 288 아마라청 등 213 애로난근 등 288 아리바장 등 213 애로난근 등 288 아리바장 등 213 애로난근 등 288 아리바장 등 213 애로난근 등 288 아이테스로 구 417 애로스타르 등 288 아이테스로 구 417 애로스타르 등 150,750,7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리센트경 등 146 애로나시작 등 377 아리스트라주 417 애로스타르 등 150 아메로스로 25% 에너에 중입용감찰 150,750,7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리센트경 등 146 애로나시작 등 377 아리스노라구 178 아마리스나감스브라디 183 애스박스주 등 153 아라센트 구 550 에 대체대 장 등 153 아라센트 그 154 애로나시작 등 154 애리나시작 등 154 아마리스크 그로 등 557 애보시작 등 153 아라센크 그로 대를 다이었습니라 등 292 애타레곤스로 200,002% 177 아이벨리스 그로 그를 등 155 에도 156 에도 146 에로 14명 등 135 아스메리 그로 대를 다이었습니라 등 292 에트라벌경 등 135 아이벨니스로 250 IU 등 436 에도가인주 등 369 아이벨스프로 크림션한택 469 에피디올레스 내복팩 117 아이브이에프에 무 550 IU 등 367 엑셀론관을 (엑셀로패링 등 136 아이브이에프에 무 550 IU 등 372 엑스파인크리필드시킨지구 168 아이브이에프에 무 550 IU 등 372 엑스파인크리필드시킨지구 169 아이브이에프에 무 550 IU 등 372 엑스파인크리필드시킨지구 169 아이멀리스로 발로 기반이 무 372 엑스파인크리필드시킨지구 169 아이멀리스로 발로 기반이 무 372 엑스파인크리필드시킨지구 169 아이멀리스로 함께 그 323 엘라프리케팅 등 305 아르얼리스 프라트 343 아인크이에드워구 5 50 IU 등 372 엑브리스 158 등 369 아이멀리스로 함께 그 324 엑타주사 등 328 엑브리스로 필름 기반이 두 327 엑브리스로 필름 기반이 무 328 엑브리스로 필름 기반이 두 329 아이멀리스로 발로 기반이 등 367 엑트리스로 필름 360 아티먼스로 그리를 150 등 368 엘리크리트 150 등 368				
아가본주 등 29일 애디노베이트주 250 IU 등 434 아고틴점 25밀리크램 129 액토스점 등 462 이그라스타트주 302 액티라제수사 290 아그릴린컵벨 등 501 엠켈러티120밀리크램/밀리리타크리필드시린지주, 프리필드벤주 511 아닐세이트주 등 448 프리필드벤주 551 아나시티 100엘립타 등 310 앰브로주가 등 308 아달라도오로스정30 등 772 앱스틸라격 520 IU 등 434 아데노고주사 등 288 알액 등 337 아디녹갑압을 등 294 어택트라 흡임용캡을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6 아라비점 등 213 에글란디주 55 125 125 125 125 125 137 137 137 137 137 137 137 137 137 137			애드베이트주 등	433
이고라스타트주 302 액티라계주사 200 어디라스타트주 302 액티라계주사 200 어디라스타트주 302 액티라계주사 200 어디라스타트주 302 액티라계주사 200 어디라에는 등 310 앤브로구사 등 308 마닌라이트 등 310 앤브로구사 등 308 안타보스로스경30 등 272 앱스탈라주 250 U 등 434 아데노고주사 등 308 안타보스 306 등 274 앤스탈라주 250 U 등 337 아디노스컨설 등 294 어택트라 홈인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6 아다센경 등 252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6 아다센경 등 252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라센션 등 252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리센션 등 377 에리스라주 30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어리센션 등 377 에리스라주 30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어리센션 등 377 에리스라구주 30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티바건수로 305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티바건수로 305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티센션 등 307 에로시스라구주 30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티센션 등 307 에로시스라구주 30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티센션 등 30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티센스라구스 300 마이크로그램 등 300 메리스라컨안데,002% 777 아빌리피어메인테나구사 300 메리그램 등 130 에로비전수 등 300 메리스컨안데,002% 777 아빌리파스메인에터나구사 300 메리그램 등 130 에로미데이르라푸로주 113 어스피리 크로텍트션 100 메리스로 300 마이크로그램 등 135 아이베크스로로관센터투액 469 메리드로푸로 113 어디크로로푸르션터투액 469 메리드로푸로 113 아이브이에프에 이지피주 등 367 엑셀로겐스 나무액 177 아이브이에프에 300 미리크를 등 329 메리트로젝스 내무액 177 아이브이에프에 300 지기주 등 372 멘스웨스라스 1548 152 메리트로푸드 369 아이버스스라스컨앤데,004주 등 300 메리트로푸드에스덴주 등 328 아이브이에프에 301 지기주 등 372 멘스웨스라스 등 328 아이브이어프에 301 지기주 등 372 멘스웨스라스 등 328 아이브이어프에 301 지기주 등 329 메리드로폰스 155 이어 1548 152 메리트로푸드 369 아이브이어프럼 751 등 372 멘스웨스라스 등 328 아이브이어프럼 5 238 엔커버액 등 328 아이브이어프럼 5 238 엔커스 등 328 엔커버액 등 339 메리드로폰센터 1548 309 메리트로폰센터 1548 309 메리트로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폰	아가론주 등	··· 292		
아그라는타론주 302 액티라지주나 290 아그렇답캠 등 501 엠갤러타120밀리그램/밀리라타크필드시리자주, 아버세이트루 등 488 크립트맨주 151 아뉴이터 100엘립타 등 310 엠브로주사 등 308 어달라토오로스정30 등 272 앤스틸라주 250 IU 등 434 아테노코주사 등 308 이달라토오로스정30 등 272 앤스틸라주 250 IU 등 334 아디노스캠성 등 284 아택트라 흡입용컵술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6 아디색경 135 업트라버경 200마이크로그램 등 266 아라바경 등 133 에글란던주 등 288 아라비경 200마이크로그램 등 266 아라바경 등 133 에글란던주 등 288 이르기점 등 252 에너제이 흡입용컵술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라센트라 등 146 에르반구주 등 288 에르반구주 등 146 에르반구스라에 등 317 아리스트라주 147 에리우스점 184 아메토스주 259 449 에브리스디건조시컵 160 에티킨주 등 557 에비사점 등 153 아바디스나갈스프레이 183 에스박스주 등 407 아벨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557 에비사점 등 153 아라페스크로를 130 에게페노점 2일리그램 등 130 에게페노점 2일리그램 등 130 에게페노점 210 에르바스주를 130 아스페리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램 등 292 에트라빌집 등 135 아이벨나은구 250 IU 등 436 에포가인주 등 369 에파메스트라푸로구 113 아스페리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램 등 372 엑브리스라 나부액 117 아이벨스프로글라센취탁액 469 에피디올레스 나부액 117 아이벨스미플로로라에스엔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램 등 163 아이벨비스 전우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램 등 488 아이빌리에브에 전에 자파주 등 372 엑스파리크리필드제주 24mg 등 343 아입되어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리지 등 524 엔커벡 등 400 마리크리필드제션 150밀리그램 등 348 아입되어온라 등 329 에르라리필드제즌 24mg 등 349 아입되어온라 등 349 에르라리필드제즌 250 IU 등 349 아르라필드지린지주 148 엔트로션 50밀리그램 등 349 아르라젝트 등 3				
아그렇已갑쌀 등 501				
아닉세이트추 등 448 프리필드맥주 151 아뉴이티 100앱티타 등 310 앰브로주사 등 308 아당라트오로스경30 등 272 앤스틸라주 250 IU 등 434 아데노코주사 등 288 알액 등 337 아디녹스캡슐 등 294 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6 아디센경 315 업트라비경 200마이크로그램 등 316 아디센경 등 213 에글란단주 등 288 아르기경 등 252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리셉트청 등 146 에르반주사액 등 377 아릭스트라주 417 에리우스청 184 아메틱스주 25% 449 에브리스디건조시럽 160 아미킨주 등 557 에비시작 등 에박사정 등 153 아바미스나귈스프레이 183 에스박스주 등 407 아벨로구성 등 592 에이베리스검안액0.002% 177 아벨로마다에만테나주사 300일리그램 등 126 에토미데이트라푸로주 113 아스피브 프로텍트경 100일리그램 등 292 에트라빌정 등 135 아이뗍비오주 250 IU 등 436 에포가인주 등 369 아이텔시조로글리샘현닥액 469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에 이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트화산경 125일리그램 등 163 아이브이에프에 이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트화산경 125일리그램 등 163 아이브이에프에 구5나 등 372 엔크라스티르워드시킨지주 148 아이브이에프에 구5나 등 372 엔크라스티르워드시킨지주 148 아이브이에프에 구5나 등 372 엔크라스티르워드시킨지주 148 아이브이어프어주 75나 등 372 아스피브 프로텍트경 100일리그램 등 322 에브리주수 170 아이브이스턴스 이이라리프리필드시킨지 등 324 아이브이스턴스 이이라리프리필드시킨지 등 524 아이크리플트시킨지구 189 아르라주 등 121 아르라스를 180 엔로리스를 180 엔로리스를 180 300 아트닷경 등 281 엔로크스를 190 기급 등 300 아트닷경 등 281 엔트로스 190 기급 등 300 아트닷경 등 281 엔로크스를 190 기급 등 300 아트닷경 등 281 엔로크스를 190 기급 등 300 아트닷경 등 281 엔로크스를 190 기급 등 300 아트닷컴 등 281 엔로크스를 100를 331 엔로크스를 100를 331 앤로크를 100를 331	아그릴린캅셀 등	··· 501		
아뉴이티 100엘립타 등 310 앱브로주사 등 308 어달라돈으로스경30 등 272 앱스틸라주 250 IU 등 434 이대보고주사 등 288 알액 등 337 아디눅스캡슐 등 294 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6 이다센청 135 업트라비청 200마이크로그램 등 266 이라비청 등 213 에글란단주 등 316 이라비청 등 252 에너제여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이라센청 등 252 에너제여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이라센트 수 25% 449 에브라스디건로시럽 160 이마킨주 등 557 에비시액 등 153 이바미스나걸스프레이 183 에스벡스주 등 407 아벨록스점 등 592 에이베라스점안액0.002% 177 아벨리마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592 에이베라스점안액0.002% 177 아빌리마디에멘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126 에토미데이트라푸로주 111 31 이스피린 프로젝트 중 100밀리그램 등 126 에토미데이트라푸로주 111 31 이스피린 프로젝트 중 100밀리그램 등 129 에트라벨 중 등 135 아이델비오주 250 IU 등 436 에포카인주 등 369 에디니블랙스 대본액 117 아이브이데프셔주 75IU 등 372 엑브렉주사 등 369 이미벡스로르클라센텀액 469 에디디몰렉스 내본액 117 아이브이데프에 에이지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 중 125밀리그램 등 488 아이브이에프에 주 75IU 등 372 엔브렉주사 등 528 에이베스점안액 510로 325 선카리스로 등 488 아이브라스로 인제리스로 등 224 엔스파리프트시킨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524 엔커버백 등 440 어로비스로 필드시킨지 등 524 엔커버드 등 369 에타리주 등 300 아트리주 등 1281 엔토크를 필르코팅 50째 등 330 아트릭주 등 1281 엔토크를 1962 50일리크림 등 300 아트릭주 등 1281 엔토크를 1962 50일리크림 등 300 아트릭주 등 1281 엔토크를 1962 50일리크림 등 300 아트리주 등 1281 엔토크를 1962 50일리크림 등 329 앤탈리크림 196 329 앨릭크림 196 329 앤라크림 528 엘리크림 196 329 앤라크림 528 앤라크림 528 엘리크림 528 앤라크림 528 앤리크림 528 앤라크림 528			프리필드펜주 ····	· 151
아달라트오로스정30 등 272 앱스틸라주 250 IU 등 434 아데노고라서 등 288 알액 등 337 아디녹스캡슐 등 294 아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6 아디센경 55 254 아라바정 등 255 에너레스 등 252 에너레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266 아라바정 등 252 에너레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리센트정 등 146 에르빈주사액 등 377 에리우스청 등 370 에리스트라주 417 에리우스청 등 377 에리우스청 55% 449 에브리스디건조시립 160 아미킨주 등 557 에빅사액 등 에비리스나감스프레이 183 에스비스는경 등 400 에비리스라장스트에 177 아벨록스정 등 557 에비시스나감스프레이 183 에스비스는 등 400 에비리스 등 252 에너페스성 등 150 이 에베로스점 등 252 에너베리스라감스트에 153 에시페노청 202 에티베리스점 2일리그램 등 315 아이벨리스라 255 IU 등 315 에모리브라 251 IU 등 315 에포카인주 등 315 이미벡스프로글리센형틱액 469 에피디올레스 내본액 117 아이벡스프로글리센형틱액 469 에피디올레스 내본액 117 아이벡스메르웨주 7510 등 372 엑스자이드화산정 125밀리그램 등 163 아이브이메프셔주 500010 등 372 엑스자이드화산정 125밀리그램 등 380 아미벡스로 251 IU 등 328 에모카인주 등 360 에포카인주 등 360 에모카인주 등 360 에프라인에 315 II 등 335 아이브이에프워주 7510 등 372 엑스자이드화산정 125밀리그램 등 448 이미브이메프셔주 7510 등 372 엑스파이트화산정 125밀리그램 등 363 아이멀리스라 315 III 등 328 에르브라 315 III 등 328 에르브라 315 III 등 328 에르브라 315 III 등 3			앰브로주사 등	. 308
아테노코주사 등 288 알액 등 337 아디녹스캡슐 등 100일 아테로 함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6 아디센정 133 업트라비청 200마이크로그램 등 288 이르기정 등 251 에글란디주 등 288 이르기정 등 252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리센트청 등 252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리센트청 등 414 에르빈주사액 등 377 아릭스트라주 417 에리우스정 184 어머킨주 등 557 에빅사액 등, 에빅사적 등 150 에마킨구 등 417 에리우스정 184 어머킨구 등 557 에빅사액 등, 에빅사적 등 417 에리스라컬스프레이 183 에스빅스주 등 407 어벨록스정 등 557 에빅사액 등, 에빅사적 등 417 에에비스라컬스프레이 183 에스빅스주 등 407 어벨록스정 등 557 에빅사액 등 153 어바미스나컬스프레이 183 에스빅스주 등 407 어벨록스정 등 528 에르비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130 에제페노정 288 어벨리크리에디앤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126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113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램 등 292 에트라빌정 등 135 어디빌비온구 250 IU 등 436 에포카인주 등 369 어디빌베온구 250 IU 등 436 에포카인주 등 369 어디브에프에 데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램 등 448 어이브이에프에 데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램 등 448 어이브이에프에주 75IU 등 372 엔브렐주사 등 288 어이버글로콜린에스엔주 등 62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75U 등 37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75U 등 373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75U 등 373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75U 등 328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트로폴린에스엔주 등 228 엔르리스폰 등 339 아트라주 등 319 엔트리스폰 등 329 엔트리스폰 등 330 앤로크트 339 앤트리스폰 등 343 엔로크트 339 앤트리스폰 등 343 엔로크트 339 앤트리스폰 등 343 엔로크트 344 등 344 엔트리즈 344 등				
아디녹스캡슐 등 294 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6 아디센경 5 213 에글란디주 등 288 아리버경 등 255 에너세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업트라비경 200마이크로그램 등 368 전략시장 등 251 에너세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리센트정 등 146 에르빈주사액 등 377 아리스트라주 417 에라우스경 184 어때록스주 25% 449 에브리스디건조시럽 160 아미킨주 등 557 에빅사액 등, 에빅사경 등 155 에비게이 출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160 아미킨주 등 557 에빅사액 등, 에빅사경 등 150 에베리스컵안목 등 407 아벨록스정 등 592 에이베리스컵안액0.002% 177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130 에제페노경 282 어낼렉스캡슐 29일 기관를 166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113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램 등 129 에트라벌정 등 130 에프라멀 로로트 3100일리그램 등 130 에포키인주 등 359 에드라벌정 등 359 에드라벌정 등 369 아이벨스로르글리샘현탁액 469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에 아이괴자주 등 372 엑브랜주사 등 369 아이브에프엠 어이지자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램 등 163 아이브에프엠 어이지자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램 등 448 아이브에프엠 어이지자주 등 372 엑브렐주사 등 128 엔트렐주사 등 128 엔트리즈라인역 175 엔젤라프리필드제리지주 166 아이커비스검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제란지주 166 아이커비스검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제란 24mg 등 343 어밀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리지 등 524 엔커버액 등 400 아즈비드로인잭터주, 아프리프리필드시리지구 148 엔테론정 50일리구람 등 305 아토켓정 등 281 엔트리트 139 엔트리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리지 150일리그램 237 엘라스폴리에주 등 323 이트랙 캠핑 131 억타리스토 136 엘릭템그림 1% 391 엘라스폴리엘즈루 250 IU 등 434 억테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일리그램 237 엘라스폴리에주 5 250 IU 등 434 억테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일리그램 238 엘리델크림 1% 391 엘라스폴리에주 5 288 엘리델크림 1% 391 엘라스폴리엘즈루 250 IU 등 434 억테라주 150 IU 등 434 억테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일리그램 238 엘리델크림 1% 391 엘라스폴리엘즈루 250 IU 등 434 억테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일리그램 237 엘라스폴리에주 5 250 IU 등 434 억테라주 5 66 엘리카스폴리엘즈루 250 IU 등 439 얼테라주 5 66 엘리카스폴리젤트 250 IU 등 439 얼테라주 5 66 엘리카스폴리젤트 5 250 IU 등 439 얼테라주장 5 288 엘리델크림 1% 391 델라스폴리젤트 5 250 IU 등 439 얼테라주장 5 250 IU 등 439 얼테라즈 5 250 IU 등 439 얼테라즈 5 250 IU 등 439 달테라즈 5 250 IU 등 439			<u> </u> 알액 등	· 337
아다센경 135 업트라비경 200마이크로그램 등 266 아라바경 등 213 애글란던주 등 288 아르기경 등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리센트경 등 146 에르빈주사액 등 317 아리센트경 등 146 에르빈주사액 등 317 아리센트리주 417 에리우스경 184 아메톡스주 25% 449 에브리스디건조시립 160 아미킨주 등 557 에비사액 등, 에빅사격 등 153 아바미스나갈스프레이 183 에스빅스주 등 407 아벨로마이민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130 에제페노경 282 아벨리프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130 에제페노경 282 아벨리프리테즈 100밀리그램 등 130 에제페노경 282 아벨리프리플리센턴학액 469 에피디올레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메프웨주 5000년 등 367 액셀론캡슐, 예셀론패和 등 163 아디브이에프웨 에이피파주 등 312 엑스자이트웨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웨 어이피파주 등 312 엑스자이트웨스 125밀리그램 등 163 아이브이에프웨 어이피파주 등 312 엑스자이트웨스 125밀리그램 등 163 아이브이에프웨 어이피파주 등 312 엑스자이트웨스 125밀리그램 등 163 아이브이에프웨 어이피파주 등 312 엑스자이트웨스경 125밀리그램 등 488 아이브에르메르워주 7510 등 372 엑브렐주사 등 158 아이베크로볼린어스엔주 등 158 아이버크로볼린어스엔주 등 159 엔릴리주사 등 159 엔릴리주사 등 150 에르리크를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경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제린 121구 130 아르리크를드시킨지구 148 엔테론경 50밀리그램 등 305 아토켓경 등 281 앤트로트 305 아토켓경 등 281 앤트로트 등 170 엔트리스토 필름코팅경 50대g 등 305 아토켓경 등 281 앤트로트 319 악타리스토 및데르디스토 115일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랙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88 아티반주 등 166 엘리케스적 등 489 엘리기스토리에로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랙콤비젤연질캡슐 등 381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랙콤비젤연질캡슐 등 381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랙콤비젤연질캡슐 등 381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랙콤 381 엘라스플100주 323 아트랙콤비젤연질캡슐 등 381 엘라스폴100주 323 얼릴거스플100주 323 아트랙콤비젤연질캡슐 등 381 엘라스폴100주 323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랙콤비젤연질캡슐 등 381 엘라스폴100주 323 엘라스폴100주 323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랙콤비젤연질캡슐 등 381 엘라스폴100주 323			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6
아라바정 등 233 에글란딘주 등 288 어르기정 등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어리센트정 등 146 에르빈주사액 등 377 이러센트경 등 417 에리우스정 184 어메톡스주 25% 449 에브리스디건조시럽 160 아미킨주 등 557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53 아바미스나궡스프리이 183 에스빅스주 등 407 이벨록스정 등 153 아바미스나궡스크린니스로 등 557 에비사액 등, 에빅사정 등 153 아바미스나궡스로 등 130 에서페노정 282 어벨리리니라수사 300밀리그램 등 130 에서페노정 282 이트리브경 100밀리그램 등 126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131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292 에트라빌정 등 135 아이델비온주 250 IU 등 436 에포카인주 등 369 에피디올레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씨주 250 IU 등 436 에포카인주 등 369 에피디올레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씨주 25000 등 367 액셀론캡슐, 엑셀론패ᆆ 등 163 아이브이에프에 메이치피주 등 372 엑스파이트확신정 125밀리그램 등 488 아이브이에프에주 75IU 등 372 엑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575 엔젤라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369 이오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369 이오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369 이토관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명 등 369 이토관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명 등 300 이트로가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플리이주 323 엑르라스피를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플리이주 323 앤라프리핑트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플리이주 323 앤라르크리트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플리이주 323 앤라프리핑트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플리이주 323 앤라그리크에 5 50일리그램 등 369 앤타스주 등 160 엘리카스저 등 488 앤티로크 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플리이주 323 앤라그리크에 5 50일리그램 등 369 앤라스크림 100주 323 앤라스크림 390 엘라스플리리티스주 250 IU 등 434 전 350 엘리가스전 등 369 앤라스크림 390 엘라스프리핑드시린지 550 월리기스트라이시럼 등 555 앱플루시정 598 앤라스크림 1008 300 앤폰 클로리Ս페시트르산엄정 598 앤라스트리즈 369 앤카스트리즈 360 앤카스플리즈 360				
아르기정 등 252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이리센트科주 등 377 이릭스트라주 417 에리우스정 184 160 마미킨주 등 557 에비사생 등 에비사생 등 에비사정 등 153 이바미스나찰스프레이 183 에스빅스주 등 407 이벤복스정 등 557 에비사생 등 에비사정 등 153 이바미스나찰스프레이 183 에스빅스주 등 407 이벤복스정 등 407 이벤복스정 등 592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177 이탈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300 에재페노정 2밀리그램 등 153 이사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램 등 292 에트라빌정 등 135 이마일비온구 250 IU 등 436 에포카인주 등 369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웨주 5000IU 등 367 액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63 아이브이에프웨주 751U 등 372 엔브렐주사 등 528 어이비스점반액 175 엔브렐주사 등 528 이미에비스로불린에스엔주 등 429 엔스파이르피필드시린지주 166 이미의 배우구 751U 등 528 에어버스로불린에스엔주 등 429 엔스파이르피필드시린지주 166 이미의 배우구 751U 등 528 에어브이에프웨주 751U 등 528 에어버스로불린에스엔주 등 429 엔스파이르파닌주 24mg 등 343 어입의어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400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테론정 50밀리그램 등 305 아토렛정 등 281 엔토코트 359 아트라주 등 161 엔토크를 1872 등 364 엔크리플트시린지주 365 아트라주 등 16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리지 150밀리그램 237 엔트리스토 1982 등 369 악타라른 383 엘라라프레젝주 50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털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37 엘리스폴비이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털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38 엘라라프체계주 등 458 악테라구 250 IU 등 439 악립가스컴 등 566 엘로리이십리 등 557 업클루사정 598 일리기스로라이시럽 등 557 업클라시정 등 499 알다라크림 390 앨란가스로리 550 IU 등 434 악템라구의 161 일리가스로 550 IU 등 434 악템라구리 56 157 일라리크림 176 250 IU 등 362 일래기스로라이시럽 등 557 업클라시정 등 458 악테라그리를 158 399 얼라가스로리 550 IU 등 434 악템라구의 150 III 등 362 III 등 362 III 등 363			에글란딘주 등	288
아리셉트정 등 146 에르빈주사액 등 377 아리스트라주 417 에리우스정 184 어메톡스주 25% 449 에브리스디건조시럽 160 아미킨주 등 557 에빅시액 등, 에빅시정 등 153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183 에스빅스주 등 407 아벨록스정 등 592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177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130 에제페노정 282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126 에트미데이트리푸로주 113 아스피린 프로테트정 100밀리그람 등 292 에트라벌정 등 359 아이벡스프로클리센혜탁액 469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367 엑셀론캡슐, 엑셀르패취 등 163 아이브이에프엠 에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448 아이브이에프엠 에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448 아이버스점안액 75IU 등 372 엔브렉주사 등 528 아이베크로불린에스엔주 등 52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리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시리지주 367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리지 등 524 엔스파링프리필드제로 24mg 등 363 아토렉정 등 281 엔트로스 309 아토렛정 등 281 엔토코트 359 아트라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랭가 프리필드시리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리이주 323 아트랙콤비겔연결캡슐 등 283 엘라스폴리이주 323 아트랙콤비켈연결캡슐 등 328 엘리델크리 1% 391 안티트록틴베 주 등 136 엘록테이루 250 IU 등 434 악테라주, 악테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리 1% 391 안티트록틴베 주 등 166 엘리카스정 등 490 알다라크림 390 엘칸장 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555 업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458 알레기살드라이시럼 등 555 업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366 알코딘연질캡슐 등 366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315
아릭스트라주 417 에리우스정 184 아메톡스주 25% 449 에브리스디건조시럽 160 이미긴주 등 557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407 이벤시자 등 407 이벤리자이메인테나구사 300밀리그램 등 130 에지께노정 282 이센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126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113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램 등 292 에트라빌정 등 135 아이델비온주 250 IU 등 436 에포카인주 등 369 이미네오르라 나보자 117 아이브이메프씨주 5000IU 등 436 에포카인주 등 369 이미네오르라 나보자 117 아이브이메프씨주 5000IU 등 367 엑셀론캡슐, 엑셀론캡슐, 엑셀론캡슐 155밀리그램 등 163 아이브이에프에에 에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램 등 428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62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검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검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검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검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시린지주 188 엔티콘경 50밀리그램 등 305 이토젯정 등 281 엔토리스토 필름코팅정 50째 등 309 이토로자 프리필드시리지 150밀리그램 237 엑르스플 100주 303 아트랙콤 비젤연질캡슐 등 136 엘로리스토 필름코팅정 50째 등 309 이트로자 무리필드시리지 160일리그램 281 엔토리스토 필름코팅정 50째 등 309 이토로지를 118 391 엘라스플리에 주 5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스플리에 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크림리 1% 391 엘라스플리에 160,80 391 엘라스플리에 160,80 309 앵핑 플로미펜시트르산염정 등 362 알베스크홈입제 160,80 309 앵핑 플로미펜시트르산염정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렉레이스로 250밀리그램, 오렉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리지				
아메톡스주 25% 449 에브리스디건조시럽 160 아미킨주 등 557 에박사액 등, 에박사광 등 153 이바디스나갈스프레이 183 에스빅스주 등 407 이벨록스정 등 592 에이메리스점안액0.002% 177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130 에서페노점 183 에스빅스주 등 130 어시페노점 2밀리그램 등 126 에트미데이트리푸로주 113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292 에트라빌정 등 369 아이벨시스프로글리셈현탁액 469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미 등 367 에보론캡션 125밀리그램 등 163 어이브이에프에 에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램 등 163 아이브이에프에주 7510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램 등 528 에스피링프로리센스엔주 등 524 엔스크링크리플니신지주 166 아이커비스검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검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제란 24mg 등 343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400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티론정 50밀리그램 등 305 아토랫정 등 281 엔토크트 359 아트라주 등 170 엔트리스토 필름코링정 50mg 등 305 아토랫저 등 181 엔토크트 329 엘라스폴티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라주사 162밀리그램 237 엘라스폴티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라주사 162밀리그램 288 엘리리크림 1% 391 앤타리콤 390 엘단자크림 390 엘단자크림 390 엘라스폴리이트주 598 일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엘로리크림 160,80 309 영품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등 362 알베스크롬입제 160,80 309 영품 플로미펜시트르산염정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렉라이트로 250 UU 다시 보라프리필드시리지 360 얼룩막으라게든 366 알코딘연질캡슐 등 366 오랜덴아리크로 367 오픈덴리즈 550 U리트리스토 367 오픈데핀시토르산염정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렉레이자로 250 UU 등 367 오픈데인지로 250 UU 등 367 오픈데인지로 250 UU 등 367 오픈데인지로				
아미킨주 등 557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53 이바미스나갈스프레이 183 에스빅스주 등 407 이번복스정 등 592 에이버데스-점안액,002% 177 이탈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130 에제피노정 282 이살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126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135 이스피린 프로텍트점 100밀리그램 등 292 에트라빌정 등 369 이어베스프로글리셈현탁액 469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씨주 500이ሀ 등 367 엑셀로캡슐, 엑셀론패취 등 163 아이브이에프에 에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램 등 163 아이브이에프엠 에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라 등 448 아이브이에프엠 구 75IU 등 372 엔스렉로캡슐, 엑셀론객슐 등 528 에이베크로불린에스엔주 등 622 엔스피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검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제주 24mg 등 343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50밀리그람 등 369 이어토시주 등 369 에커버스점안액 524 엔커버액 등 50밀리그람 등 359 이토라주 등 170 엔트리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랑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이타반주 136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1% 391 엔타리르 11% 391 엔타리크림 11% 391 엔타리크림 11% 391 엘라스프리림 390 엘라장·엘킨주사 등 398 알당정 등 257 영풍 다나폴캡슐 등 362 알베스크롭입제 160,80 398 오구멘틴경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566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183 에스빅스주 등 407 아벨록스정 등 592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177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130 에제메나정 282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126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113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292 에트라빌정 등 135 아이벨비온주 250 IU 등 436 에포가인주 등 369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 469 에피디오렉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씨주 500미U 등 367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63 아이브이에프웨주 75IU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448 아이브이에프웨주 75IU 등 372 엔브렐주사 등 528 아이비크로불린에스엔주 등 62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크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크리필드시린지주 186 아이로이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400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로비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400 아로비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경 50mg 등 300 아트릭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릭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아티반주 136 엘목데이트주 250 IU 등 434 억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필크림 1% 391 앤티트롬비Ⅲ 주 등 160 알다라크림 390 엘라장-엘라주사 등 5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엘클루사정 5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엘클루사정 599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엘클루사정 599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엘클루사정 599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크홈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알부맥스캅셀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53
이벨록스정 등 592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177 이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130 에제페노정 282 이벨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126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113 이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292 에트라빌정 등 359 아이델바온주 250 IU 등 436 에포카인주 등 369 에파디얼리바오주 등 369 아이벡스프로글리셈한탁액 469 에피디얼리라를 대본액 117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163 아이브이에프엠 에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448 아이브이에프엠 주5IU 등 37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580 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528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시린지주 343 어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400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305 아토젯정 등 281 엔토코트 359 아트라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0g 등 300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아티반주 4162밀리그램 228 엘리필크림 1% 391 안티트롬빈베 주 등 616 엘리카스정 등 434 악템라지 수 162밀리그램 228 엘리필크림 1% 391 안티트롬빈베 주 등 616 엘리카스정 등 439 알라라리즘 598 알라라리즘 390 엘라장 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앱클루사정 598 알림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홈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오랜덴스캅셀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센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리지				
아벨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130 에제폐노정 282 아벨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126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113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292 에트라빌정 등 135 아이델비온주 250 IU 등 436 에포가인주 등 369 어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 469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367 엑셀론캡슐, 엑셀르패취 등 163 아이브이에프엠 에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488 아이브이에프엠 제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528 아이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62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제론 24mg 등 343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400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터로정 50밀리그람 등 305 아토켓정 등 281 엔토코트 359 이트라주 등 170 엔트리스를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라주 등 170 엔트리스를 필름코팅경 50mg 등 300 아트라가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어티반주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앤티르롬빈Ⅲ 주 등 166 엘리귀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장의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앤티르롬빈Ⅲ 주 등 616 엘리귀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정엘칸주사 등 298 알밀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홈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오랜덴스캅쉘 등 362 오랜덴스칼랩슐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랜덴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아벨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292 에트라빌정 등 359 어티렉니온주 250 IU 등 436 에포카인주 등 369 어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 469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367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63 아이브이에프에 에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448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372 엔브렐주사 등 528 아이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62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제로 24mg 등 343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400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305 아토켓정 등 281 엔토코트 359 아트라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랙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아티반주 136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안티트롬빈Ⅲ 주 등 616 엘리퀴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장·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앱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폴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2억센시아우 2508미리크래,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센시아우 2508미리크래,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아이델비온주 250 IU 등 436 에포카인주 등 369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 469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367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63 아이브이에프엠 에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448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372 엔브렐주사 등 528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62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제로 24mg 등 343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주 524 엔커버액 등 400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305 아토젯정 등 281 엔토코트 359 아트라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랄과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랙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아티반주 136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안티트롬빈Ⅲ 주 등 616 엘리퀴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장·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엡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폴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24U시아주 2508 ሀ리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2508 일라프라집설 등 368 오구멘틴정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렌시아주 2508 11 로 20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 469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117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367 엑셀론캡슐, 엑셀론캡슐 , 엑셀론캡슐 , 엑셀론캡슐 등 163 아이브이에프엠 에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448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372 엔브렐주사 등 528 아이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62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제즌 24mg 등 343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305 아토젯정 등 281 엔토코트 359 아트라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락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앵라폴리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5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안티트롬빈Ⅲ 주 등 616 엘리퀴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정·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앱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폴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250 IU 등 366 알코딘연질캡슐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아이브이에프씨주 500이U 등 367 엑셀론캡슐, 엑셀론캡훠 등 163 아이브이에프엠 에이치피주 등 372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448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372 엔브렐주사 등 528 엔브렐주사 등 528 아이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62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페주 24mg 등 343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400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305 아토겍정 등 281 엔토코트 359 아트라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러제주 등 458 아티반주 136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릴크림 1% 391 안티트롬빈Ⅲ 주 등 616 엘리커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장·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앱클루사정 등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얼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오쿠멘티경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아이브이에프엠 에이치피주 등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 163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372 엔브렐주사 등 528 아이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62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페주 24mg 등 343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400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305 아토켓정 등 281 엔토코트 359 아트라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아티반주 136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안티트롬빈Ⅲ 주 등 616 엘리케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장 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앱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오케니스코텔 등 366 알코딘연질캡슐 등 375 오렌시아서 27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 브큐프리필드시린지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448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622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66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페주 24mg 등 343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400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테론청 50밀리그람 등 359 아토 5 170 엔토리트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라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락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아티반주 136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텔크림 1% 391 안티트롬빈Ⅲ 주 등 616 엘리케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상-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앱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오쿠베스코텔 등 3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렌시아수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아이커비스점안액 175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 343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524 엔커버액 등 400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305 아토젯정 등 281 엔토코트 359 아트라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랑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아티반주 136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테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안티트롬빈Ⅲ 주 등 616 엘리케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상 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엡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오케니션의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렌시아서스로 300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148 엔테론정 50밀리그램 등 305 아토겠정 등 281 엔토코트 359 아트라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아티반주 136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테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안티트롬빈Ⅲ 주 등 616 엘리케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상에윌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엡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알부맥스캅셀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렌시아서 2780				
아토젯정 등				
아트라주 등 170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mg 등 300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리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아티반주 136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안티트롬빈Ⅲ 주 등 616 엘리케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정·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엡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오퀴네스칼셀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렌시아셔츠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아토젯정 등	281	엔토코트	. 359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237 엘라스폴100주 323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아티반주 136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안티트롬빈Ⅲ 주 등 616 엘리퀴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정·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엡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알부맥스캅셀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283 엘라프라제주 등 458 아티반주 136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안티트롬빈베 주 등 616 엘리퀴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정·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엡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알부맥스캅셀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아티반주 136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434 악테라주, 악테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안티트롬빈Ⅲ 주 등 616 엘리퀴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정·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엡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알부맥스캅셀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렌시아셔스쿠프리필드시킨지				
악테라주, 악테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228 엘리델크림 1% 391 안티트롬빈베 주 등 616 엘리퀴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정·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엡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알부맥스캅셀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안티트롬빈Ⅲ 주 등 616 엘리퀴스정 등 409 알다라크림 390 엘칸정·엘칸주사 등 298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255 엡클루사정 598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알부맥스캅셀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렌시아시크 250일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엘리델크림 1%	. 391
알다라크림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알말정 등 257 영풍 다나졸캡슐 등 362 알베스코흡입제 160,80 309 영풍 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367 알부맥스캅셀 등 398 오구멘틴정 등 566 알코딘연질캡슐 등 175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알베스코흡입제 160,80	악막것 등	257		
알부맥스캅셀 등				
알코딘연질캡슐 등				
4350131331			. = =	
			125밀리그램	- · · 511

오마코연질캡슐 등		자디앙정 10밀리그램	
오바지오필름코팅정 등	167	자렐토정 2.5밀리그램 등	···· 418
오비주르주 ·····		자베스카캡슐 100밀리그램	
오저덱스이식제 700/4g ·····		자보란테정 ····	
오젝스정		자비쎄프타주 ·····	
옥시넘주사 등		자이복스정 등	
옥트레오스캔주사		자이복스주 등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186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올파딘캅셀		자트랄엑스엘정10밀리그람 등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잔탁주 등	332
옵서미트정 10밀리그램 등	265	저박사주	567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		정주용 헤파빅주 등	···· 617
울토미리스주 등		제일덱사메타손주사액 등	
울티바주 등	667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	360
웰부트린서방정 등		제일펜타스타치 10%주	
웰정		제파티어정	····· 581
윈로에스디에프주	634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217
윌리진캡슐 25밀리그램, 50밀리그램	449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	323
유로솔액 등		제픽스정 등	446
유로시트라씨산 등	381	젝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360
유로시트라케이 10mEq서방정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232
유유크리드정 등	442	젬플라주 등	
유트로핀주 등	346	조비락스 등	578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344	조페닐정7.5밀리그램,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271
유한로섹캡슐 등		졸겐스마주 ······	545
유한메로펜주 등		졸레어주사 등·····	
이노베론필름코팅정 100mg 등	121	졸로푸트정 등	137
이달비정 20밀리그램 등	261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 등	
이리보정	341	중외 5-에프유 주 등	
이모튼캡슐		지비주 500 IU 등	422
이뮤네이트주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 198
이미프라민정 등		지스로맥스정 등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지에이치알에이치페링	
이센트레스정,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이지에프외용액 0.005%		참시티콜린주 등	
이지트롤정 등		치모글로부린주 ·····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카나브정 30mg 등	
익셀캡슐	135	카나쿨린정 등	
인데놀정 등		카딜정 등	
인반즈주	567	카바글루확산정200mg ·····	
인베가서스티나 주사, 인베가트린자 주사, 인베가하피에라주사	136	카버락틴정 등 카이로케인주	
인터맥스감마주 200만단위		기이보게 친구 칼로덤 ······	
인텔렌스정	582	물도님 캄랍주 ·····	
인트론에이멀티도스펜	488	급 급 ㅜ 캘코트정 등	
일성독시움정 등		글쓰=ㅎㅎ 케라힐-알로 ······	
일성이솦틴주사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일양하이트린정 등		케이캡정50밀리그램 등	
		,11,10005JTQ 0	ررر

케토스테릴정 ····	403	트렐리지엘립타 등	
켑베이서방정 0.1mg	144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206
코리트산 등	661	트루바다정	600
코살린정		트루패스캡슐 4mg 등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222	트리암시놀론주 등	
코셀루고캡슐10, 25밀리그램 ·····	501	트리젤주 등	658
코아가덱스주250IU 등		트리티코정 등	
코팍손프리필드주 20mg/1ml 등	152	트림보우흡입제100/6/12.5	
콘드론	509	티사브리주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티세르신정	
콜킨정 등		티에남주 등	
큐록신정	579	파노린주사 등	473
큐탄플라스트스폰지 등	406	파리에트정 등	327
큐팜주사500 밀리그램 등	120	파브라자임주 등	452
큐피스템주	510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313
크라비트주 등	590	파텐션정 20밀리그램 등	267
크레메진세립 등		판토록정 등	
크렉산주 등		판토록주사 등	
크리스비타주사액		팔로델정 등	464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570	팜비어정 250mg 등	
클로스원캡슐 등	278	패스터텍주 ····	
클로자릴정 등	131	팩티브정	584
클로티냅주 등	287	팬시다정	659
클리니믹스85주사 ·····		퍼고베리스주 ·····	370
클리퍼지속성 장용정 5mg	338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652
키너렛주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128
키산본에스주	301	페르본주사 등	449
킨텔레스주 등		페링가니트0.1%주사 등	273
타가메트주 등		페마라정 등	489
타고시드주 등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펜시비어크림	391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 등	386	펜타글로빈주 ·····	
타리비드 등		펜타사 좌약 등	
타미플루캡슐 등	594	펜토신주 350밀리그램 등	
타이가실주		포스레놀정 등	
타이로젠주 등	356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등	309
타플로탄점안액 0.0015% 등		포스테오주 등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460
태준답손정 25mg 등		포타딘연고 등	
테그레톨정 등	118	포텀주 등	
테리본피하주사		포폴주사 등	
테세오스주 등	505	푸라콩 등	184
텍피데라캡슐		푸로스판 시럽 등	310
토비애즈서방정 4mg, 8mg		푸로작캅셀 등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		푸리네톤정 등	
트라클리어정 62.5밀리그램 등		프라그민주 등	
트랙토실주 등		프라닥사캡슐 110밀리그램 등	410
트렌탈정400 등	300		

프라카논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252
프락스바인드주사제 ·····	406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275
프레다정1mg 등	363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588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588
프레즈코빅스정	
프레지스타정 400mg	580
프레지스타정 600mg	
프레탈정 등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363
프로맥정 등	334
프로베라정 등	364
프로비질정 등	154
프로코라란정	297
프로토픽연고 0.1%, 0.03% 등	392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468
프리마코주	299
프리스틱 서방정 등	132
프리판주 등	
플레그리디펜주 등	649
플루티폼흡입제	306
플리바스정 등	380
피니박스주사 등	568
피도글정 등	276
피도글정 등 피라맥스정	660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	296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320
피브로가민피 ·····	632
피케이멜즈인퓨전주	143
피케이멜즈정 등	142
피타렉스캡슐 0.5밀리그램	
핀테정 등	272
하보니정	586
하이알주 등	476
한국원자력의학원염화탈륨(TI-201)주사액 등	
한림 바소프레신 주사액	353
헤모콤액 등	396
헥사메딘가글액 등	326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426
화이자펜타미딘이세티온산염주 300mg ······	564
화이자펜타미딘이세티온산염주 300mg	418
후코날크림 0.5%	389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등	557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등	615
휴미라주 등	513
휴미라주 등	513

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16	
휴온스 염산케타민주 등 11	3
히루아플러스주 등47	5

일반원칙

구 문	세부인성기준 및 방법
구 분 [일반원칙] 간장용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 주사"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 인정
	alafenamide, Besifovir, Sofosbuvir, Ledipasvir+ Sofosbuvir, Elbasvir+Grazoprevir, Glecaprevir+ Pibrentasvir 경구제, Sofosbuvir+ Velpatasvir 경구제, Sofosbuvir+Velpatasvir+Voxilaparevir 경구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인터페론제제, 페그인터페론제제)와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22-250호, '22.11.1.)
[일반원칙]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Neuroprotective agents)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중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을 원칙으로 함. 나. 개별고시가 있는 약제는 해당 고시기준을 따름. ※ 대상약제 Acetyl L-carnitine HCL, Citicoline, Oxiracetam, Choline alfoscerate, Ibudilast, Ifenprodil tartrate, Nicergoline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가) HBeAg(+)로서 HBV-DNA≥20,000IU/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2,000IU/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서(1)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80단위 이상이거나,

(2)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 (Alanine Transaminase)가 40~80단위이면서 간생검(간생검이 곤란할 경우 노829 간섬유화 검사(Liver Fibroscan), 도163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Magnetic Resonance Elastography))에서 중등도 이상의 염증 괴사(A2 이상) 혹은 문맥주변부 섬유화 이상(F2 이상)의 단계를 보이는 환자 나) 간경변,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 양성인 경우 - 단, Besifovir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인정하지 아니하며,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투여방법 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경구제 중 1중나)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 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비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Besifovir 경구제는 L-carnitine 660mg을 함께 투여함. 라)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 또는 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세포 암종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치료 중인 각 약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 (Alanine Transaminase)가 40-80단위이면서 간생검(간생검이 곤란할 경우 노829 간섬유화 검사(Liver Fibroscan), 도163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Magnetic Resonance Elastography)) 에서 중등도 이상의 염증 괴사(A2 이상) 혹은 문맥주변부 섬유화 이상(F2 이상)의 단계를 보이는 환자 나) 간경변,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 양성인 경우 - 단, Besifovir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인정하지 아니하며,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투여방법 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경구제 중 1종나)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 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Besifovir 경구제는 L-carnitine 660mg을 함께 투여함. 라)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 또는 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세포 암종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치료 중인 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경구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
	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가)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의
	발현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 또는
	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2) 투여방법

		치료약제				
내성 약제		단독요법		병용요법		
		entecavir 1mg	tenofovir disoproxil 生는 tenofovir alafenamide	(lamivudine 또는 clevudine 또는 telbivudine)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entecavir 0.5mg + (adefovir 또는	1mg + (adefovir 또는 tenofovir
단독내성	lamivudine	인정	인정	인정	\searrow	$\geq \leq$
	clevudine	인정	인정	인정	$\geq \leq$	$\geq \leq$
내	telbivudine	인정	인정	인정	$\geq \leq$	$\geq \leq$
성	adefovir	인정	인정	인정	><	인정
다약제내성	entecavir 0.5mg	\times	인정	\geq	인정	
	entecavir 1mg	\geq	인정	\geq	\geq	인정
성	adefovir	> <	인정	인정 ^주	> <	인정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一 一 元	자기 보험한 보험한 순자내성에 한해 tenofovir disoproxil 병용요법을 인정함. ○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를 투여한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세포암종으로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함. 다. 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1) Telbivudine: 만 16세 이상 2) Clevudine: 만 18세 이상. 크레아티닌 클리어린스가60mL/분 미만인환자는 금기임. 3) Entecavir: 만 2세 이상 4) Adefovir: 만 18세 이상 5) Tenofovir disoproxil: 만 12세 이상 6) Tenofovir alafenamide: 만 18세 이상 7) Besifovir: 만 20세 이상 라. 인터페론과 병용투여 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함. 마.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등) 병용투여 시, 항바이러스제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래 - 가.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중 1종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나. anti-HBc(+)로서 rituximab을 포함하는 요법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12개월까지 다. HBsAg(-), HBV-DNA(-), anti-HBc(+)로서 조혈모 세포이식을 받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투여 시 : 총 18개월 투여까지 라. anti-HBc(+)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수혜자 로서 human anti-hepatitisB immunoglobulin 제제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 시 : 면역억제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4.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4.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가. 투여대상 ○ HBsAg(+)인 임산부로서 HBV-DNA ≥ 200,000 IU/mL인 경우 나. 투여방법 1) 투여용량: Tenofovir disoproxil 300mg를 1일 1회 경구 투여 2) 투여기간: 임신 24주~32주에 투여를 시작하여 출산 후 최대 12주까지 급여 인정 6. 교체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부분 바이러스 반응**) 및 무반응(일차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는 급여인정하며,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급여인정함. ※ 최신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야 함. (고시 제2023-37호, '23.3.1.)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1.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 해서는 아니됨. 2.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아래의 경우에만 인정함 아 래 - ○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고시 제2020-69호, '20.4.1.)
[일반원칙] 경구용 항뇌전증약	허가사항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 (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나. 병용요법 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 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 (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 다 음 - 1) Aspirin에 효과가 없는 경우: 약제사용 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2)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러지, 저항성,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 3)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4)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질환· 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 1) 병용요법(2제 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2)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함(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함. 다. 3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 1) 대성(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한 경우로서)가)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나) 재협착 병변환자다 기 대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 (Multiplestenting)한 환자 2) 투여기간가 1년 이내로 하며(3제 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 까지만 급여인정)나)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다)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一	제무인정기순 및 방법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라. Aspirin과 Prasugrel의 병용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다음의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 급여를 인정함 다 음 - 1) 불안정형 협심증,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2)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증재술(Primary or Delayed PCI)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마. Clopidogrel과 Aspirin의 병용요법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 ※ 고위험군 기준 ○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바. Ticagrelor와 Aspirin의 병용요법 1) Ticagrelor와 Aspirin와 정의 수용체 저해제 (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1) 만 50세 이상 (2)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3)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 고위험군의 기준 ① 만 65세 이상 ②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③ 혈관조영술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④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⑤ CKD stage 3, 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나) 투여기간: 3년 이내 ※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1) 뇌혈관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 Ticagrelor,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ginkgo 복합제 2) 심혈관질환 Aspirin,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Prasugrel, Ticagrelor, Ticlopidine HCl+ ginkgo 복합제 3) 말초동맥성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Beraprost sodium,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ginkgo 복합제 (고시 제2024-55호, '24.4.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관한 기준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0}	래 -			
	약제명	관리기간	비고		
	킴리아주 (Tisagenlecleucel)	1년	비호지킨림프종에 투여한 경우		
	졸겐스마주 (Onasemnogene abeparvovec)	5년	-		
	스핀라자주 (Nusinersen sodium)	1년	첫 투여 시 만18세 초과이면서, HFMSE		
	에브리스디건조시럽 (Risdiplam)	1년	점수가 5점 미만인 환자에 투여한 경우		
	럭스터나주 (Voretigene neparvovec)	4년	-		
		(고시 제2	024-20호, '24.2.1.)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 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0}	래 -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1) 투여대상				
	가) 위험요인 [*] 이 0 [*]	~1개인 경	병우 :		
	혈중 LDL-C≥16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 [*] 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				
	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증 LDL-C≥ 100 mg/dL일 때 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증 LDL-C≥7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 혈증 TG≥50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증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1) 투여대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 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7	성분군	성분명
		지오텐신 '소 억제제	Alacepril, Captopril, Cilazapril, Enalapril, Fosinopril, Imidapril, Lisinopril, Perindopril, Quinapril, Ramipril, Temocapril, Zofenopril 등
		시오텐신 제 차단제	Azilsartan Candesartan, Eprosartan, Fimasartan, Irbesartan, Losartan, Olmesartan, Telmisartan, Valsartan 등
	알파차단제		Doxazosin, Phenoxybenzamine 등
	베타차단제 (알파 및 베타 차단제 포함)		Amosulalol, Arotinolol, Atenolol, Betaxolol, Bevantolol, Bisoprolol, Carteolol, Carvedilol, Celiprolol, Metoprolol, Nadolol, Nebivolol, Propranolol, S-Atenolol 등
	칼슘 채널 차단제	DHP	Amlodipine, s-Amlodipine, Barnidipine, Benidipine, Cilnidipine, Efonidipine, Felodipine, Isradipine, Lacidipine, Lercanidipine, Manidipine, Nicardipine, Nifedipine, Nisoldipine, Azelnidipine
			Diltiazem, Verapamil 등
	중추신경계 작용약물		Moxonidine 등
		thiazide 계	Hydrochlorothiazide 등
	o] loop		Azosemide, Furosemide, Torasemide 등
	뇨 제	K+ sparing	Amiloride, Spironolactone 😇
		기타	Chlorthalidone, Indapamide, Metolazone, Xipamide 등
1	-R1-	[] 등] 기 기	

혈관확장제

(고시 제2023-23호, '23.2.1.)

Cadralazine, Minoxidil, Hydralazine 등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80㎜/㎜ 이하인 경우 다) 상기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2) 투여기간 가)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나)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다만, Raloxifene 제제,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제제 투여 환자로서 1) 투여대상가)에 해당하여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1) 투여대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正 ————————————————————————————————————	자카드'당기는 및 당납 가)에 따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2.5〈T-score≤-2.0)에 해당될 경우 1년 추가투여를 급여 인정하며, 이후에도 T-score가 -2.5 초과 -2.0이하(-2.5〈T-score≤-2.0)에 해당될 경우 1년의 추가투여를 급여 인정함.* ※ -2.5〈T-score≤-2.0 범위에서 연속 투여는 2년 (1년 + 1년)까지 인정하며, 2년 내에서 Raloxifene,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개별 성분, Denosumab 주사제 사이에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교체투여 가능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약제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나. 투여대상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T-score* 〈 -1.5 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Z-score* 〈 -3.0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다. 투여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나.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합.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 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 다. Bisphosphonate와 Vit.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 ※ SERM: Sele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4.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1. 약제의 범위 가. 항암요법제 사용 관련 ○ 245 부신호르몬제, 247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313 비타민B제 (비타민B1을 제외),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92 해독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421 항악성종양제,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431 방사성 의약품,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항암면역요법제

¬ н	IIIHODANA DI HIHI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나. 항구토제 사용 관련 ○ 235 최토제·진토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45부신호르몬제 다. 암성통증치료제 사용 관련 ○ 112 최면진정제, 113 항전간제, 114 해열진통소염제, 117 정신신경용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24 진경제,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811 아편 알칼로이드계 제제, 821 합성마약 2. 비용부담 상기 1.의약제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약값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자가 부담토록함. - 아 래 - 가.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이외에 투여한 경우 나.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액본인부담 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한 경우(해당약제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거나 또는 신청 및신고기관에 국한하여통보)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자816),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 (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한 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라플라스트-피콤비세트 1㎡ 및 3㎡, 그란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35×1㎜), 타코실 1매 (7.5㎡ 및 23.04㎡), 티씰 2㎡ 및 4㎡, 노바콜패드 1매(80×100㎜), 그란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 및 4㎡, 에비셀 2㎡ 및 4㎡, 베라씰프리필드시린지 2㎡ 및 4㎡ 다. 투여기준 1)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 내에서 한 수술 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가'의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의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범위 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치료재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라. 그간 인정사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투여소견서 첨부 시 인정 ○ 청신경중양적출술(자574), 전정신경절제술(자479-가), 외림프누공수술, 신경이식술(자460), 이과적두개내 수술, 인공와우이식술(자580) 2) 투여소견서 첨부시 사례별 인정 ○ 고실성형술(자564), 이소골재건술(자579), 등골수술 (자569), 후두마비수술(자126), 후두협착증수술 (자127) 3) 투여소견서 참조 인정 ○ 폐절제술 후 발생한 기관지 늑막루증 열개부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 ○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 식도루 등에 내시경적 국소 주입법으로 사용한 경우 ○ 위장관출혈, 내시경적 시술 후 발생한 출혈, 위장 관누공, 기타 내시경적 시술의 보조요법 4) 국소지혈제의 진료비 청구는 실사용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규격의 단위당 금액을 산정토록 함. (고시 제2024-37호, '24.3.1.)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천식의 치료원칙에 따른 효능군별로 증상의 정도에 따라 2-3종의 흡입제 병용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기관지천식에 투여되는 흡입제 중 분무용 용액(Nebulizer solution)은 노인, 소아, 안면 마비환자, 의식불명 환자 등 일반적인 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나 응급치료 시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 제산제, 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2-268호, '22.12.1.)
[일반원칙] 뇌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의식이 극히 저하된 급성기 중증의 뇌병증 환자에게 3주 범위에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앙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 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 다 음 - 가) 헤모글로빈A1C(HbA1C) ≥6.5%

구 분			∖ -	네부인	l정기	준 5	및 병	l 법				
	나) 공복혈장혈당 ≥ 126mg/dl											
		다)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 200mg/dl										
	라)	라)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 200mg/dl										
	2) 병	2) 병용요법										
	가)	가) 2제요법										
	((1)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										
		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フト) HbA1C ≥7.0%										
		(나) 공복혈당 ≥130mg/dl										
	(다) 식후혈당 ≥180mg/dl											
	(2) HbA1C ≥7.5%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											
	하여야 함.											
	(3) 인정 가능 2제 요법											
					1 .1	m	DDD 111			SGLT-2 inhibitor		
	구분	Metformin	Sulfonylurea	Meglitinide	α-glucosidase inhibitor	Thiazoli- dinedione	DPP-IV inhibitor	dapagli flozin	ipragli flozin	empagli flozin	ertugli flozin	enavogli
	Metformin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HOZH 인정	110Z111 인정	HOZIII 인정	lioziii 인정	flozin 인정
	Sulfonylurea Meglitinide	인정 인정	\checkmark	\times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연정	연정	앤	인정	인정	\bowtie
	α-glucosidase inhibitor	인정	인정	인정	20	X						
	Thiazoli- dinedione	인정	인정	인정	\times		인정	\forall	\forall			
	DPP-IV inhibitor	인정	인정	\geq		인정		\bowtie	\bowtie			
	dapagliflozin ipragliflozin	인정 인정	인정 인정	\geqslant	\bowtie	\geqslant	\bowtie					
	SGLT-2 inhibitor empagliflozin	인정	인정	\geqslant								

(4)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 나) 3제요법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나, 다음의 3제요법은 인정함 다 음 - (1) 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2) metformin + SGLT-2 inhibitor(ertugliflozin, enavogliflozin 제외) + Thiazolidinedione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가) 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자가면역당뇨병(LADA),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고혈당과 관련된 급성합병증, 신장· 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증, 급성질환 발병 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에는 Insulin 주사제 투여를 인정함. 나)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요법을 인정함. 2) 경구제와 병용요법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 요법을 인정함. 단,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Enavogliflozin은 Insulin 주사제와 병용 시
	인정하지 아니함.
	다. GLP-1수용체작용제
	1) 경구제와 병용요법
	가) 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1)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
	또는
	(2)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나) 투여방법
	(1) 3종 병용요법(Metformin+Sulfonylurea+
	GLP-1 수용 체작용제)을 인정
	(2)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종 병용요법(Metformin+GLP-1 수용체
	작용제)을 인정
	2) Insulin과 병용요법(단일제)
	가) 투여대상
	(1)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2) 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
	(+Sulfonylurea)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나) 투여방법
	기저 Insulin+GLP-1 수용 체작용제(+Metformin)을 인정
	인경 3) Insulin과 병용요법(복합제)
	5) Insum의 성용표립(독립세) 가) 투여대상
	기 구역대명 (1)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다만, Insulin degludec +Liraglutide의 경우
	(12, 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	제]			
	성분군	성분명			
	Biguanide계	Metformin HCl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α-glucosidase inhibitor利	Acarbose, Miglitol, Voglibose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Alogliptin, Anagliptin, Ev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Linagliptin besylate, Saxagliptin,			

[경구제 중 2제 복합제]

DPP-IV inhibitor계

SGLT-2 inhibitor계

성분군	성분명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Metformin			
+Biguanide계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Biguanide계	Nateglinide+Metformin HCl, Repaglinide+Metformin HCl			
α-glucosidase inhibitor계 +Biguanide계	Voglibose+Metformin HCl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Metformin HCl, Pioglitazone HCl			
+Biguanide계	+Metformin HCl			
Thiazolidinedione계	Pioglitazone HCl+Glimepiride, Rosiglitazone			
+Sulfonylurea계	maleate+Glimepiride			
Thiazolidinedione계+DP	Pioglitazone HCl+Alogliptin, Lobeglitazone			
P-IV inhibitor계	sulfate+Sitagliptin phosphate, Pioglitazone HCl			
r-iv illillillit/i	+Sitagliptin phosphate			
	Alogliptin+Metformin HCl, Anagliptin+Metformin HCl,			
	Evogliptin+Metformin HCl, Gemigliptin+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Linagliptin besylate			
_	+Metformin HCl, Saxagliptin+Metformin HCl,			
DPP-IV inhibitor계	Sitagliptin phosphate +Metformin HCl, Sitagliptin			
+Biguanide계	HCl+Metformin HCl, Teneligliptin HBr+Metformin HCl,			
	Teneligliptin HCl+Metformin HCl, Teneligliptin			
	ditosylate +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Vildagliptin HCl+Metformin HCl, Vildagliptin			
	nitrate+Metformin HCl			

Ipragliflozin, Enavogliflozin

Sitagliptin phosphate, Sitagliptin HCl, Teneligliptin HBr, Teneligliptin HCl, Teneligliptin ditosylate, Vildagliptin, Vildagliptin HCl, Vildagliptin nitrate Dapagliflozin, Empagliflozin, Ertugliflozin,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성분군	성분명
	SGLT-2 inhibitor계 +Biguanide계	Dapagliflozin+Metformin HCl, Empagliflozin+Metformin HCl, Enavogliflozin+Metformin HCl
	SGLT-2 inhibitor계+Sulfonylurea 계	Dapagliflozin+Glimepiride
	SGLT-2 inhibitor계+DPP-IV inhibitor게 (단, Metformin HCl 병용 시에만 요양급여 인정)	Dapagliflozin+Gemigliptin, Dapa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 Dapagliflozin+Sitagliptin HCl, Dapagliflozin+Saxagliptin, Dapagliflozin+Evogliptin, Dapagliflozin+Linagliptin, Empagliflozin+Linagliptin, Ertugliflozin+Sitagliptin
	SGLT-2 inhibitor계+Thiazolidine dione계 (단, Metformin HCl 병용 시에만 요양급여 인정)	Dapagliflozin+Pioglitazone HCl
	[경구제 중 3제	복합제]
	성분군	성분명
	Thiazolidinedione계+DP P-IV inhibitor계 +Biguanide계	Lobeglitazone sulfate+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SGLT-2 inhibitor계 +DPP-IV inhibitor계 +Biguanide계	Dapagliflozin +Sitagliptin phosphate +Metformin HCl Evogliptin+Dapagliflozin+Metformin HCl
	[주사제]	
	· Insulin 주시	사 제
	• GLP-1 수용 치	작용제(단일제): Dulaglutide, Exenatide
	• Insulin + GI	.P-1수용체작용제(복합제): Insulin glargine
	+ Lixisenat	ide, Insulin degludec + Liraglutide
		(고시 제2024-130호, '24.7.1.)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의약품의 투약일~	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수가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지 아니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약 복용 중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환자의 귀책사유없이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동일성분 의약품"이라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 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예)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일반원칙] 마약성 진통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암성통증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III. 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나. 비암성통증 1) 투여대상 가)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에 허가사항 범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내에서 투여함. 단, 일부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 투여대상에 한하여 급여인정함.

- 다 음 -

대상 약제	투여 대상
Oxycodone 단일 및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복합 경구제	췌장염
Hydromorphone	고교정여 취보이트
서방형 경구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Tapentadol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Fentanyl 패취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 나) 수술 후 통증에 급여인정하되, 서방형제제 (Oxycodone 단일 및 복합제, Hydromorphone, Tapentadol, Fentanyl 패취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 2) 투여용량

다음 투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대상 약제	투여 용량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Oxycodone으로 1일당 60mg
Hydromorphone	1일당 24mg
Tapentadol	1일당 300mg
Fentanyl 패취제	3일당 37.5ug/h
Morphine 경구제	1일당 90mg

3) 투여기간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속효성제제는 단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함.

※ 대상약제

· Oxycodone 단일 및 복합제, Hydromorphone 경구제, Tapentadol 경구제, Fentanyl 패취제, Morphine 경구제

(고시 제2017-153호, '17.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1) 투여대상: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투여방법: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투여기간: 10~14일(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 대상 약제 · interferon 제제(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 lopinavir+ritonavir 제제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1) 투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 2) 투여방법: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투여기간: 7~14일 (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 대상 약제 · human immunoglobulin G (IVIG) 제제(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 항생제(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대상 성분: dexamethasone, prednisolone, methylprednisolone, hydrocortisone) (중증 이상의 경우) · 서분자량 헤파린(대상 성분: bemiparin, dalteparin, enoxaparin, nadroparin, fondaparinux)(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한 환자에 투여한 경우) · 신항응고제(대상 성분: apixaban, edoxaban,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rivaroxaban, dabigatran)(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해 입원한 환자 중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 할 수 없는 경우) · baricitinib 제제 및 tocilizumab 제제(피하주사제	
	제외)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 ⁰ - 다 음 -	시 급여 인정함.
	1) 대상 환자 가)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 치료 병상 등)에 입실한 지 48 이면서 고유량산소 비캐뉼라(h nasal cannula, 이하 HFN()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나)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신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 이상의 호흡기 치료를 적용한; 않은 경우 2) 용법 및 용량 · baricitinib 제제 (성인)	S시간 이내인 환자igh-flow oxygen C) 이상의 호흡기 는소요법으로 치료 즐기 치료가 필요한 자이면서, HFNC 지 7일이 경과되지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 제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고, 신기 용량으로 하루 1회, 최대 14일 투]능에 따라 다음의 =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14일이내 퇴원 시에는 퇴 하도록 함). - 다 음 -	원할 때까지 투여
	신기능	1회 투여량
	eGFR ≥60 mL/min/1.73m ² 30 ≤eGFR ⟨60 mL/min/1.73m ²	4mg 2mg
	15 ≤eGFR ⟨30 mL/min/1.73m²	1mg

· tocilizumab 제제 (만 2세 이상)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baricitinib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고, 다투여 당 최대 800mg 까지) 60- 투여하며, 1회 투여를 원칙으로 - 다음 - 몸무게 몸무게가 30kg 미만인 환자	분 이상 동안 정맥
		8mg/kg -184호, '22.8.1.)
[일반원칙]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분말 형태로 처방·조제하여서는 안 됨 4. 임부금기 2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을 처방·조제할 때는 부득이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투약 이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적절한 안내조치를 하여야 함 5. 급여기준 적용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2017-109호, '17.7.1.)
[일반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보조생식술 급여기준」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환자가 부담토록함 아 래 - 가. Prednisolone 경구제, Dexamethasone 경구제○투여 대상 1) 반복 유산과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2) 원인불명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착상 실패를경함한환자나.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Estradiol hemihydrate경구제,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아래와 같은기준으로 투여 시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아 래 - 가. Micronized progesterone 경구제의 경구 투여. 1) 체외수정 시 Progesterone의 보충요법 2) Progesterone 결핍으로 인한 불임 여성의 난모세포 공여프로그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3) 반복적인 유산(3회 이상)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나. 성장호르몬제(Growth hormone, Somatropin) 이 체외수정을 시행하는 여성 중 다음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1) 만 40세 초과 연령 2) 난소 예비능이 좋지 않은 과거력 3) 난소 기능검사 결과 기능저하 ※ 대상 약제: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Prednisolone 경구제, Dexamethasone 경구제, Micronized progesterone 경구제,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 Somatropin 주사제 (고시 제2023-184호, '23.10.1.)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질환 (폐질환, 림프절염, 파종성질환, 피부·연조직·골감염증 등)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원인균이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AC-M. avium, M. intracellulare 등]인 경우 1)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Rifampicin, Ethambutol을 병용투여하며, 가)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Streptomycin sulfate 또는 Amikacin sulfate를 추가할 수 있음. 나) 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약 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에 내성이 있거나 Macrolide계(Carithromycin, Azithromycin)에 내성이 있거나 Macrolide계(Carithromycin, Azithromycin)에 내성이 있거나 Macrolide계(Carithromycin, Azithromycin)에 또는 Ethambutol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또는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나. 원인균이 신속성장형 비결핵항산균(RGM, Rapid Growing Mycobacteria-Mabscessus, M.chelonae, M.fortuitum 등)인 경우 1) Cefoxitin sodium 또는 Imipenem monohydrate 중 1종과 Amikacin sulfate를 병용투여함 단 Mabscessus로 인한 폐실환인 경우 Tigecycline* 을 6개월 이내로 투여할 수 있음. 2)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Fluoroquinolone계. Doxycycline,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다. 원인균이 Mycobacterium kansasii인 경우 1) Isoniazid 또는 Macrolide계 (Clarithromycin, Azithromycin) 중 1종, Rifampicin, Ethambutol을 병용투여함 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Rifampicin 또는 Rifabutin에 내성이 있거나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Streptomycin sulfate, Amikacin sulfate,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라. 원인균이 상기 가, 나, 다 이외의 비결핵항산균 (NTM)인 경우에는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하여 투여하며, Linezolid는 경구제 투여를 원칙으로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마. CD4 수가 50cells/m²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 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를 CD4 수가 100cells/m² 이상으로 3개월 정 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 시 (고시 제2019-38호, '19.3.1.)
[일반원칙]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성분·동일제형 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약 량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 25mg, 50mg 함량의 약제가 각각 등재된 경우 - 1회 투약량이 50mg인 경우 → 50mg 1정 처방 - 1회 투약량이 75mg 필요한 경우 → 50mg 1정과 25mg 1정 처방
[일반원칙] 비타민제	소모성 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 내에서 투약한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비타민 결핍증에는 다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안연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수술 후 비강 점막 또는 두경부 점막 등 상처감염 예방목적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단, 항바이러스안연고는 제외함) (고시 제2016-145호, '16.8.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Conditioning therapy)	암질환이 아닌 환자(재생불량성빈혈 등)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범위 내에서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요오드 조영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iodixanol 제제의 경우 정맥조영에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성조영촬영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대상약제 ioxitalamic acid, ioxaglic acid, iohexol, iobitridol, iomeprol, iopamidol, iopromide, ioversol, iodixanol (고시 제2018-174호, '18.9.1.)
[일반원칙] 주사제의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	주사제의 자가주사 처방 및 장기 처방의 경우에는 환자와 주사제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시에는 자가주사 등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 진해거담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효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상기도 질환에 시럽제를 포함하여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시럽제를 포함하여 3종 이내로 인정함. 다.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함량 및 성분 등이 과량 또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함.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분류번호 222, 229에 해당되는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마. 진해거담 주사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일반원칙]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	(고시 제2013-127호, '13.9.1.) 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호르몬요법은 허가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적응증 1) 폐경기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밀도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경우에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2)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는 인정하지 아니함.나. 재평가 기간매 12개월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함(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및 필요성) 다. 적정투여기간 60세까지 투여하며, 60세를 초과하여 호르몬 요법을지속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여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5	방법
[일반원칙] 폐경기증후군에 투여하는 약제	갱년기장애(폐경기증후군) 증상의 발현 시 동 증상완화 위하여 호르몬제나 칼슘제제 등의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 = , ,	<u> </u>)13-127호, '13.9.1.)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폐동맥고혈압)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각 약제* 의 급여기준 범위(대상환자 및 투여방법 등)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병용요법 1) 2제 요법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2) 3제 요법 상기 1)의 2제 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각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지표	기준
	① 우심실부전의 임상적 증거(clinical evidence of RV failure)	있음
	② 증상진행의 속도(Rate of progression of symptoms)	빠름
	상기 1)의 2제 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2제 요법에 사용되지 않은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 순차적 병용투여(sequential combination)를 인정 - 다 음 - 지표 기준 ① 우심실부전의 임상적 증거(clinical evidence of RV failure) 있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 1	1 -7
	지표	기준
	③ 실신(Syncope)	있음
	④ WHO 기능분류(WHO-FC)	Ⅲ단계 이상
	⑤ 6분 보행거리(6MWT)	440m 이하
	⑥ 운동부하심폐검사	Peak O ₂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consumption≦15mL/ min/kg
	⑦ BNP/NT-proBNP plasma levels	50/300 이상
	⑧ 심초음파검사소견	Pericardial effusion
	(Echocardiographic findings)	또는 TAPSE〈1.5cm
	⑨ 혈류역학검사지표(Hemodynamics)	RAP≧8mmHg 또는 CI⟨2.5L/mim/m²
	3) 1)에 명시한 단독요법의 투여	여 기간(3개월)을 충족
	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	로 신속한(또는 초기)
	2제 병용 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가) 인정 가능 2제 병용 조학	하- 라
	· PDE5i계+ ERA계	
	Treprostinil 주사제+ El	RA계
	· Treprostinil 주사제+ P	DE5i계
	나) 대상환자	
	우심도자를 통해 폐동맥고혈	압이 확진*되고 WHO
	기능분류 단계 IV에 해당하	
	한 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	
	* 환자의 상태로 인해 우심도지	
	심초음파 검사 상 'peak tr	
	velocity 〉3.4(m/s)' 등 되	
	의심할 수 있는 경우를 꼬	나암암
	- 아 래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지표	기준
	6분 보행거리(6MWD)	165m 미만
	운동부하심폐검사(Cardiopulmon ary exercise testing)	Peak VO ₂ ⟨11ml/min/kg (⟨35% pred.) VE/VCO ₂ slope≥45
	NT-proBNP plasma levels	BNP>300ng/l NT-proBNP>1400ng/l
	Imaging(echocardiography, CMR imaging)	RA area>26cm² Pericardial effusion
	혈류역학검사지표(Hemodynamics)	RAP>14mmHg CI<2.0 l/mim/m² SvO ₂ <60%
	Macitentan 경구제 · PDE5i계 : Sildenafil · Prostacyclin계 : Selex 주사제, Iloprost 흡입역	ipag 경구제, Treprostinil
[일반원칙] 필수경구약제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가.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 1) 이뇨제 교감신경차단제 : α, β Adrer 3) 혈관확장제 4)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자 차단제 포함) 5) 칼슘채널 차단제(Ca-Blo 나. 인산염흡수방지제 1) 탄산칼슘(Calcium cark) noreceptor blocking agents 에(Angiotension II 수용체 ocker)

2)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 3) 초산 칼슘정 등 다. 비타민제 1) 수용성비타민제 2) 엽산 3)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 : 철분제제 2.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 및 간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해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초산 칼슘정 등 다. 비타민제 1) 수용성비타민제 2) 엽산 3)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 : 철분제제 2.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 및 간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T E	세구한경기군 및 경합
다. 비타민제 1) 수용성비타민제 2) 엽산 3)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 : 철분제제 2.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 및 간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역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역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2)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
1) 수용성비타민제 2) 엽산 3)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 : 철분제제 2.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 및 간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3) 초산 칼슘정 등
2) 엽산 3)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 : 철분제제 2.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 및 간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항생제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다. 비타민제
2) 엽산 3)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 : 철분제제 2.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 및 간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항생제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1) 수용 성비타민제
라. 조혈제 : 철분제제 2.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 및 간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라. 조혈제 : 철분제제 2.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 및 간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3) 비타민D3제제
2.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 및 간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역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역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한생제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가. 신장 및 간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해야 함.		
2) 부신피질 호르몬제: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한생제 한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3) 고혈압 치료제 :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해야 함.		,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해야 함.		
2) 부신피질 호르몬제: Prednisolone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해야 함.		
항생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해야 함.		(IP) 14/12015 12/12, 15.5.1.)
항생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해야 함.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해야 함.	[일반원칙]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해야 함.	항생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해야 함.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1		해야 함.
2. 중증 감염증에는 경구 투약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힐		2. 중증 감염증에는 경구 투약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주사제와 병용하여 처방 투여 할 수 있음.		수 없는 경우 주사제와 병용하여 처방 투여 할 수 있음.
(고시 제2013-127호, '13.9.1.)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항생제 및 항원충제	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항생제 (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 (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1	Į

¬ 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u>무</u> 문 [일반원칙] 항진균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아 래 - 가. 칸디다감염 1) Amphotericin B deoxycholate, Fluconazole, Itraconazole 경구제 투여시 인정 2) Echinocandin계 약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 - 다 음 - 가) 중증 또는 칸디다혈증을 동반한 침습성 칸디다증으로 확진된 경우 나) 침습성 칸디다증으로 확진된 경우로서 최근에 azole 투여 경험이 있었던 환자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침습성 칸디다증으로 확진된 경우로서 타 항진균제 (Fluconazole 등)에 실패하였 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 단, Fluconazole 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Fluconazole로 변경 투여하는 것이 권장됨. 3) Voriconazole은 타 항진균제(Fluconazole 등)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투여시 인정 나. 호중구 감소성 발열의 경험적 치료 1) Amphotericin B deoxycholate, Liposomal amphotericin B, Caspofungin, Itraconazole 주사제 투여시 인정 2) 투여기간 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명열인 경우는 호중구 감소증이 회복될 때까지 인정 나) 해열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2주 이내 또는해열 후 5-7일 이내로 인정 다.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1) Amphotericin B deoxycholate, Itraconazole,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Voriconazole 투여 시 인정 2) Caspofungin은 타 항진균제(Voriconazole 등)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투여시 인정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투여시 인정 라. 침습성 진균감염 예방 1)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Micafungin 투여시 인정 2)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관해-유도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또는 이식 편-숙주 질환(GVHD)으로 고용량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여자에서 Posaconazole 투여 시 인정 ○ 단, 저메틸화제(azacitidine, decitabine)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 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해당 요법의 시행 첫 3주기 (cycle) 이내 투여 시(단, 2-3 번째 주기는 주기의 시작시점에 절대호중구 수(ANC)가 500/씨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골수이형성증후군: 해당 요법의 시행 첫 3주기 (cycle) 이내 투여 시 (단, 매 주기의 시작시점에 절대호중구 수(ANC)가 500/씨 미만인 경우에 한함) 3) 세포독성화학요법, 방사선요법, 골수이식 환자에서 Fluconazole 투여 시 인정
	 4) 혈액종양 또는 골수이식 환자에서 Itraconazole 시럽투여시 인정 5) 급성 백혈병, 림프종 치료실패 또는 만성 골수성백혈병으로 인한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서 침습성
	막힐성으로 한한 소혈로세모이적환자에서 점흡성 아스페르길루스증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Voriconazole 투여시 인정
	마. Liposomal amphotericin B는 타 항진균제에 실패 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투여시 인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바. 그 외의 진균감염증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례별로 인정함. 단, Liposomal amphotericin B를 만성 육아종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1차 약제로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Voriconazole 주사제는 진균 안내염으로 진단된 성인 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혈액 또는 안구 내에서 진균 감염이 확인된 경우 2) 투여 방법: 전방 내 주사(50μg/0.1ml), 유리체강 내 주사(50μg/0.1ml~100μg/0.1ml) 투여 시 인정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고형장기이식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군 환자(호증구 감소증,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의 진균감염 예방에 Fluconazole, Itraconazole, Liposomal amphotericin B를 투여한 경우 * 대상약제 - Azole계: Fluconazole, Itraconazole, Posaconazole, Voriconazole - Echinocandin계: Anidulafungin, Caspofungin, Micafungin - Polyene계: Amphotericin B deoxycholate, Liposomal amphotericin B (고시 제2022-131호, '22.6.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항파킨슨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작용기전별로 1품목씩 인정함. 나. 복합제제의 경우는 복합된 제제수를 각각 1품목으로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다. 중증파킨슨씨병에 한하여 Levo-dopa 제제는 속효성 (Short-acting) 제제와 지속성(Long-acting) 제제를 투여할 수 있음. ※ 항파킨슨 약제 작용기전별 분류 1) Levo-dopa agents (Short acting agents, Long acting agents) 2) Dopamine agonists 3) MAO-B inhibitors (Monoamine oxidase inhibitor type B inhibitor) 4) Antiviral agents 5) Anti-cholinergic agents 6) COMT inhibitors (Catechol-o-methyltransferase inhibitor) (고시 제2018-253호, '18.12.1.)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

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 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한 아 래 - 가. Triazolam(품명: 할시온정 등):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1회 처방시 2주 이내 다. Zolpidem(품명: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 등), Zaleplon (품명: 잘레딥캡슐 5밀리그램 등): 1회 처방 시 4주 이내 4. 3개월 이상 항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 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급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 대상성분: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 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	준 및 방법
[일반원칙]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부록 2참조] (고시 제2020-140호, '20.7.1.)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중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동 사용 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 - 아	·량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 야 함.
	대상	사용량
	Oxygen gas (품명 : 산소)	15분당 45 ℓ (전신마취에 한함)
	Isoflurane (품명 : 아이프란액 등)	초회량: 15분까지 12.9㎡, 유지량: 15분당 5.5㎡
	Sevoflurane (품명 : 세보레인흡입액 등)	초회량: 15분까지 9.5㎡, 유지량: 15분당 5㎡
	Desflurane (품명 : 슈프레인)	초회량: 15분까지 15㎖, 유지량: 15분당 10.7㎖
	Thiopental sodium (품명 : 펜토탈소디움)	시케 시 ○ = 1-
	Suxamethonium chloride (품명 : 석시콜린)	- 실제 사용량
	Nitrous oxide (품명 : 아산화질소)	15분당 45 l (전신마취에 한함)
	(고사] 제2018-253호, '18.1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Probiotics (정장생균제)	1. 균주의 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6세 미만의 항생제에 의한 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항생제 연관설사) 다. 괴사성 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

111 전신마취제

7 4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1] Etomidate 주사제 (품명: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유도 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혈관계 질환 나. 반응성 기도질환(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다. 두개강내압 상승이 있는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의 기관삽관 술기 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혈관계 질환 나. 반응성 기도질환(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다. 두개강내압 상승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22-184호, '22.8.1.)
[111] Ketamine HCl 주사제 (품명 : 휴온스 염산케타민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상태이고, 기관지 경련 완화를 위해 충분한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정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 - 다 음 - 1) 천식 지속 상태 2) 급성 호흡부전의 중환자 3) 흡입화상 환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암성통증(Cancer pain) 또는 다른 방법으로 호전되지 아니한 만성신경병성 통증(Chronic neuropathic pain)에 주입치료(Infusion therapy) 다. 생후 3개월~18세의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 ○ 단,「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고시 제2017-17호, '17.2.1.)
[111] Propofol 주사제 (품명: 포폴주사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전신 마취의 유도 및 유지 1) 3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 2)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일측폐환기법(One lung ventilation)에 의한 수술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마취유도 목적으로 투여 시 나.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1%만 해당) ○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 -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다.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등(중증의환자를 다루는데 능숙하거나 심혈관계 소생술 및기도관리(airway management)에 숙련된 의사에의해서만 투여되어야 함.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투여하여야함.

[112] Midazolam 주사제 (품명:바스캄주 등) 1. 하가시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하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뇌전증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상병에 투여한경우 1) 임상적 기준 가) 기존의 뇌전증지속상태 치료제(Diazepam, Phenytoin, Phenobarbital)에 효과가 없는난치성 뇌전증지속상태의 경우 나)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이미 뇌전증지속상태의 발현이 충분한 시간(60-90분)이 경과한경우에는 즉각 Midazolam 투여가능다) 저혈압이 심하거나 Barbiturate 치료에 부작용이있는 경우라 신생아 또는소아 뇌전증지속상태인 경우의초기요법마) 경련발작이 심한 응급상황에서 정맥주사가어려울때, 근육주사등의 방법으로 투여하는경우2) 투여용량
가) 초기용량: 0.2-0.35mg/kg 주사하며 총15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유지용량: 0.05-0.4mg/kg/hr로 유지하나 뇌파 검사(EEG monitoring)하에서는 1mg/kg/hr까지 증량 가능

3) 투여기간 가) 녹파검사에서 돌발성 약제현상(Burst- suppres pattern)이 보이고 임상적으로 경련이 없어서히 감량 시작함. 나)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필요에 따라 2주일간 투여 가능함 다) 감량 후 재발하는 경우에는 다시 2주 연속 가능함 나. 인공호흡기와의 부조화(Ventilator fightin 전정목적으로 투여 서에는 0.1mg/kg/hr, 0.2mg/kg/hr 용량으로 투여하며, Vecuroniur 다른 제제를 같이 사용할 때는 감량함. (고시 제2019-191호, '19.	(으면 최대 투여 sg)에 최대 m 등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3] Cannabidiol (품명: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valproate, clobazam, topiramate, stiripentol, clonazepam, levetiracetam, zonisamide, ethosuximide, phenobarbital, lamotrigine, rufinamide 중 5종 이상약제를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최초항전간제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발작 감소를보이지 않은 환자 나. 투여방법 Clobazam과 병용 투여함.(단, Clobazam에 금기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단독투여를인정함) 다.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하여 동 약제 최초투여시점 보다 50%이상 발작이 감소한 경우 3개월의추가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발작 빈도 및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한 일지(seizure calendar)를 환자 및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투여대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Gastaut syndrome) 또는 드라벳 증후군 (Dravet syndrome)과 관련된 발작(seizure)의 치료 ○ 투여용량 1) 시작용량: 2.5mg/kg 하루 2회 복용(5mg/kg/day) 2) 유지용량: 투약 1주 후 5mg/kg 하루 2회복용 (10mg/kg/day)으로 증량할 수 있음 최대 권장 유지 용량: 내약성이 좋고, 발작 감소가 필요한 환자들은 10mg/kg 하루 2회복용 (20mg/kg/day)으로 증량할 수 있으며, 주마다 2.5mg/kg 하루 2회(5mg/day) 증량하도록 한다. * 10mg/kg/day에서 20mg/kg/day로 빠르게 증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 2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증량할 수 있다.
[113] Carbamazepine 경구제 (품명: 테그레톨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병인성 통증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3] Clonazepam 경구제 (품명:리보트릴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렘수면행동장애(REM sleep behavior disorder)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18호, '18.2.1.)
[113] Gabapentin 경구제 (품명: 뉴론틴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뇌전증(Epilepsy):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2.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 다 음 -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1) Thioctic acid(또는 a-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병용투여 시 저렴한약제의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단. 2~4주 치료후에도 증세의 호전이없어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착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파브리병(Fabry's disease) 바.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사.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아.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공고한 「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차.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엽인의 신경병성 통증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3] Lamotrigine 경구제 (품명: 라믹탈정 등)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전증 1)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 부분발작 및 전신 강직간대 발작 2) 부가요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작 나. 양극성 1형 장애 환자에서의 우울삽화의 재발 방지 (고시 제2019-191호, '19.9.1.)
[113] Levetiracetam 주사제 (품명: 큐팜주사500 밀리그램 등)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레비타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가. 단독요법 ○ 처음 뇌전증으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만 16세 이상) 나. 부가요법 1) 기존 1차 뇌전증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만 16세 이상) 2)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만 16세 이상) 3)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만 16세 이상) (고시 제2019-191호, '19.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3] Primidone 경구제 (품명 : 대웅프리미돈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 베타차단제(Propranolol, Arotinolol 경구제)에 부작용 또는 금기이거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의 본태성 진전(Essential Tremor) (고시 제2018-18호, '18.2.1.)
[113] Rufinamide 경구제 (품명: 이노베론필름코팅정 100mg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1세 이상의 환자에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치료 시 부가요법 (고시 제2019-240호, '19.11.1.)
[113] Sodium valproate 주사제 (품명: 데파킨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뇌전증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 급성기 등에투여 시 2주간 인정함. 나. 두 개강 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신속히 유효한 혈중농도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술 전후 혹은 소화기질환으로 인한 금식기간동안 또는 위장운동 저하로 경구제 투여가 유효하지않은 경우에 인정함. 다. 고령환자(65세이상) 또는 심장의 문제(Heart problem)가 있는 경우 4일 인정하고, 그 이상 동 약제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함.

구 분	베비이저기즈 미 바베
十 世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3] Stiripentol 경구제 (품명: 디아코미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Valproate와 Clobazam 병용요법에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SMEI,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Adjunctive therapy)으로 투여(단, 3제 요법 치료 중 Valproate나 Clobazam에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 발생 약제를 제외한 2제 요법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며, 3~6개월 간격으로 계속투여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SMEI, 드라벳증후군(Dravet's syndrome))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의 치료 (고시 제2019-191호, '19.9.1.)
[113] Tetrabenazine 경구제 (품명:세나진정)	헌팅톤무도병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헌팅톤무도병, 노인성무도병, 지연운동이상증, 반무도병과 같이 불수의적이고 불규칙적이며 조절이 되지 않는 움직임을 유발하는 질병의 치료제 이 약 외의 다른 치료법에 듣지 않는 지연운동이상증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4] 자오가·우슬·방풍·두충 ·구척·흑두 건조엑스(20→1)300mg (품명 : 신바로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증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4-140호, '14.9.1.)
[114] 편두통 치료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1)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2)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3)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나. 용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다만, Sumatriptan succinate는 1일 200mg, Zolmitriptan는 1일 5mg까지 인정함. ※ 대상 약제 Almotriptan, Frovatriptan, Naratriptan, Sumatriptan succinate, Zolmitriptan
[114]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 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3.5→1) 경구제 (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 (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 (조제)하여야 함. (고시 제2023-197호, '23.11.1.)
[114] Celecoxib 경구제 (품명 :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 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고시 제2017-215호, '17.12.1.)
[114] Etoricoxib 경구제 (품명: 알콕시아정 30밀리그램 등)	1. 허가사항 범위(골관절염)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 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고시 제2021-127호, '21.5.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4]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 (품명: 동화록소닌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진통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나.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의 소염·진통 (고시 제2023-296호, '24.1.1.)
[114] Methotrexate 프리필드시런지 주사제 (품명:메토젝트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Methotrexate 경구제의 부작용으로 투약이 불가능한 경우 나. Methotrexate 경구제로 3개월(용량: 15~20mg/week) 이상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크론병에 관해 유도 시25mg/주, 관해 유지 시 15mg/주로 투여 시 인정함. 3. 자가주사로 처방 가능하며,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 (방문 시 투여분 포함) 이내로 한함. 다만, 6개월 이상계속 투여하고 투여용량이 안정된 경우에는 1회에 최대12주(방문 시 투여분 포함)까지 처방이 가능함. ※ [421: 항악성종양제 Methotrexate 제제 "세부사항" 참조 (고시 제2016-145호, '16.8.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4] Polmacoxib 경구제 (품명: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골관절염)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 (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 (조제)하여야 함. (고시 제2022-250호, '22.11.1.)
[114] Propacetamol HCl 주사제 (품명:데노간주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통증이나 고열로 인하여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로서가. 외과 수술 후 통증에 수술 당일부터 3일 이내나. 감염성질환 및 악성질환으로 인한 발열에 경구제 및 좌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5]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Methylphenidate HCl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서방형 경구제	환자가 부담토록 함.
(품명: 콘서타 OROS	- 아 래 -
서방정 등)	' '' 가. 대상: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71000)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나. 진단: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이 전한 원자형학에 기호이역 전한증계에까글(DSMP),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
	B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결정 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라. 투여 방법
	1) 단독 투여
	2) 병용 투여
	○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단독
	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작용기전이 다른 치료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
	※ ADHD 치료제 작용기전별 분류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2) 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고시 제2019-252호, '19.12.5.)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u> </u>	
[115]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Methylphenidate HCl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일반형 경구제	- 아 래 -
(품명:페니드정	가. 수면발작
10밀리그람 등)	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1) 대상:6-18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2)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3) 기간: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4) 투여 방법
	가) 단독 투여
	나) 병용 투여
	○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단독
	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작용기전이 다른 치료제 1종을 추가
	할 수 있음.
	※ ADHD 치료제 작용 기전별 분류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2) 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고시 제2019-252호, '19.12.5.)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т с	세구간당기正 및 당표
[117]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Agomelatine 경구제	우울병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품명 : 아고틴정	- 아 래 -
25밀리그램)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우 울증 상에 대한 기준
	3가지 전형적 증상(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
	(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
	/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
	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7] Aripiprazole 주사제 (품명: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 사 300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조현병의 치료 나. 양극성장애 1형의 유지치료를 위한 단독요법:약물 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낮병동 입원은 제외함) (고시 제2019-21호, '19.2.1.)
[117] Blonanserin 경구제 (품명:로나센정 2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조현병)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180호, '17.10.1.)
[117] Bupropion 100mg 경구제 (품명: 웰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 (품명: 웰부트린서방정 등)	1. 허가사항 중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서방정인 동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일 최대 300mg 까지는 요양급여 함. 다만,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 하여 투여하여야 함. 2. 금연 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법 으로 투여 시에는 비급여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7]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Clozapine 경구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품명:클로자릴정 등)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자살 행동 위험이 있는 조현병 또는 조현정동장애
	환자의 자살 행동 위험감소
	나. 4주 이내 2가지 이상 약제를 병용 투여하여도 치료
	효과가 없는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
	다. 심한 추체외로계 부작용 또는 만발성 운동장해를
	일으키는 환자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환시(Visual hallucination) 등의 정신과적(Psychiatric)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quetiapine
	경구제 투여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나. 용법·용량
	:저녁에 한 번 투여함
	1) 초기용량: 1일 12.5mg 투여하고 12.5mg씩 주당
	2회 증량 가능하며 두 번째 주말에 최대 50mg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됨
	2) 유지용량
	가) 1일 25~37.5mg 투여.
	나) 단, 예외적인 경우에만 1일 50mg 투약을 초과
	해야 하며 최소 1주일의 기간 동안 50mg 용량으로
	치료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주의하여 12.5mg씩
	증량 가능함. 1일 최대용량 1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투여 종료: 최소 1~2주 기간 동안 12.5mg씩 점진적으로 감량함 ※ 동 약제 투여기간 중 처음 18주 동안은 매 주마다, 그 후에는 적어도 매달 1회 정기적인 백혈구 및 감별 백혈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Desvenlafaxine 경구제 (품명: 프리스틱 서방정 등)	하가사항인 우울병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 (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 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20-107호, '20.6.1.)
[117] Duloxetine 경구제 (품명: 심발타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울병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이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함이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소실,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집증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 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Thioctic acid(또는 a-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Pregabalin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의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율제(TCA: Amitrip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하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나. Pregabalin(품명: 라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진단설문지(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 (pain VAS: pain Visual Analog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4.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 보조제로 투여시에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임건은 및 방법에 관한 세우하는의 '내 보안 보안되었다. 그런 의 기원 보다 되었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III.암성동증지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인성함. (고시 제2016-263호, '17.1.1.)	一	7가지 증상(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 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Pregabalin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의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나. Pregabalin(품명: 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화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진단설문지(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 (pain VAS: pain Visual Analog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증단을 고려해야 함. 4.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투여시에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인정함.

구 분 xamine m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함.

3.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Fibromyalgia) 확진 시

나. 과민성 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에 투여 시

다.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 시 :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만 인정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해당되고 섬유근육통진단설문지 (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 (pain VAS; pain Visual Analog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에 한함.

라. 대상포진으로 인한 심한 소양증에 투여 시: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Imipramine HCl만 인정

마. 신경병증성 통증에 투여 시: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Imipramine HCl만 인정

바. 편두통 예방: Amitriptyline HCl만 인정. (고시 제2018-18호, '18.2.1.)

[117]

Fluvoxamine maleate (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품명: 그로민캡슐 등), Amitriptyline HCl (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 (품명: 센시발정), Amoxapine (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 (품명:트리티코정 등), Milnacipran HCl (품명:익셀캡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7] Levomepromazine maleate 경구제 (품명: 티세르신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조현병 나. 수면장애(취침 시 단회 투여) 다. 진통제의 효력 증가 라. 신경성 불안증 (고시 제2018-253호, '18.12.1.)
[117] Lorazepam 주사제 (품명 : 아티반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경련발작 나. 뇌전증지속상태 (고시 제2019-191호, '19.9.1.)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품명: 인베가서스티나 주사, 인베가트린자 주사, 인베가하피에라 주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〇 조현병의 치료 (고시 제2023-82호, '23.5.1.)
[117]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 (품명: 쎄로켈정 등)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 하여 투여하여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환시(Visual hallucination) 등의 정신과적(Psychiatric)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하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18호, '18.2.1.)
[117] Risperidone 주사제 (품명: 리스페달콘스타 주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급성, 만성 조현병 나. 조현병과 연관된 정동장애 다. 조현병 이외 적응증: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낮병동 입원은 제외함) (고시 제2017-180호, '17.10.1.)
Sertraline HCl (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 (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 (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 (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 (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 (품명: 렉사프로정 등),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scitalopram (품명: 렉시프로멜츠구강봉해정)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증,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증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음 - Fluoxetine HCl제제(품명: 푸로작캅셀 등)를 기면증의탈력발작(Cataplexy)에 투여한 경우에는 삼환계 약물을우선투여한후 부작용등으로투여가불가능한 경우에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③ 3가지 전형적 증상(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피곤감/활동저하)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함.
[117] Sulpiride 경구제 (품명: 설피딘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 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조현병 나. 우울병 (고시 제2017-180호, '17.10.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7] Tandospirone 경구제 (품명:세디엘정)	1. 허가사항 중 '신경증에서의 우울, 공포'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심신증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부작용 등으로 유사 효능효과 제제(Benzodiazepine계)를 투여할 수 없는 심신증(자율신경실조증, 본태성고혈압증, 소화성궤양)에서의 신체증후 및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애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 (품명: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일 용량 제제가 아니므로 처방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적 용량의 약제를 선택하여야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인정함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1일 최대 225mg까지는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여허가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한자가 부담토록함.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장기 투여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소실, 피곤감/활동저하)중 최소한 2가지와7가지 증상(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함. (고시 제2016-263호, '17.1.1.)
[117]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 (품명: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허가사항인 우울병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구 분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증, 치때,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소실,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16-263호, '17.1.1.)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③ 3가지 전형적 증상(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소실,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Alemtuzumab 주사제 (품명 : 렘트라다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 (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 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환자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나. 투여 기간: 허가사항 용법·용량의 두 번째 치료과정 까지 인정. 단, 두 번째 치료과정 이후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용법· 용량의 세 번째 치료과정까지 인정 - 다 음 - 1) 1회 이상의 재발이 있는 환자 2) 뇌 또는 척수 MRI 검사에서 새로 발생한 T2병변, 크기가 증가한 T2병변 또는 Gadolinium-조영증강 병변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환자 다. 투여 방법: 단독 요법
[119] Amantadine 경구제 (품명: 피케이멜즈정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허가사항의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파킨슨 증후군의 고령자에게 1일 100mg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Amantadine 주사제 (품명: 피케이멜즈인퓨전주)	허가사항 범위(파킨슨 증후군의 급성 악화 시에 무운동성 발작의 초기 및 단기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 (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하가시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나. 진단: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 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라. 투여 방법 1) 단독 투여 2) 병용 투여 ○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 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치료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 ※ ADHD 치료제 작용 기전별 분류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2) 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고시 제2019-252호, '19.12.5.)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Cladribine 경구제 (품명 : 마벤클라드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환자이며 외래통원이가능한(걸을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나. 투여 기간: 허가사항 용법·용량의 2차 연도 치료과정까지 인정 다. 투여 방법: 단독 요법 (고시 제2021-26호, '21.2.1.)
[119] Clonidine hydrochloride 경구제 (품명: 켑베이서방정 0.1mg)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6-17세 소아 및 청소년으로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ADHD)로 확진된 경우 나. 진단: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 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라. 투여 방법 1) 단독 투여 2) 병용 투여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치료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 ※ ADHD 치료제 작용 기전별 분류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2) 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고시 제2019-252호, '19.12.5.)
[119] Dimethyl fumarate 경구제 (품명: 텍피데라캡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McDonald(17) 진단기준 (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 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외래통원이 가능한(보행 가능한)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RRMS) 나. 투여증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다. 투여방법: 단독 요법 (고시 제2021-26호, '21.2.1.)
[119] Donepezil 경구제 (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 (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또는 20점 (23mg 경구제)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처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23-165호, '23.9.1.)
[119] Fingolimod HCl 경구제 (품명 : 피타렉스캡슐 0.5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 (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RRMS)에서 만 18세이상 성인 중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1년에 1회 이상의 재발이 있는 환자 2) 최소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인 MRI 검사에서 새로운 조영증강 병변 혹은 새로 발생하거나 크기가 증가한 T2 영상 병변이 있는 환자 3)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을 나타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환자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다. 투여방법: 단독 요법 (고시 제2021-26호, '21.2.1.)
[119] Fremanezumab 주사제 (품명: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국제두통질환분류(ICHD-3)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만성 편두통 환자 예방요법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문	지부인성기순 및 방법 - 다 음 - 1) 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투여 전 최소 6개월 이상 월 두통일수가 15일 이상이면서 그 중한 달에 최소 8일 이상 편두통형 두통인 환자 2) 투여 시작 전 편두통장애최도(MIDAS) 21점 이상 또는 두통영향검사(HIT-6) 60점 이상 3)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 - 각 약제의 최대 내약 용량으로 적어도 8주 이상투여에도 월 편두통 일수가 50% 이상 감소하지않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topiramate, divalproex, amitriptyline, flunarizine, 베타차단제(propranolol 또는 nadolol)만 해당나. 평가방법투여시작 전(최근 1개월 이내) 및 투여 후 3개월마다반응평가(두통일기, MIDAS 등)를 실시하여야함. 다. 투여중단 기준매반응평가 시,월 편두통 일수가 투여시작 전 기저치대비 50%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라. 투여기간:최대 12개월마시 Anti-CGRP(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편두통 예방약제간 교체투여는 인정하지아니함 2. 투여 및 약제관리가. 원내투여를 원칙으로하되,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이후 의사의 판단하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투여방법에 대해 적절하게교육 받았을 경우에만자가 투여를 인정하며,자가주사로 2회 분까지 처방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관리하여야 함. 3. 동 약제는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지속투여 시 3개월마다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 투여 과거력, 진료기록부, 두통일기, MIDAS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119] Galantamine 경구제 (품명: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9-21호, '19.2.1.)
[119] Galcanezumab 주사제 (품명: 앰겔러티120밀리그램/ 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 지주, 프리필드펜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라. 투여기간: 최대 12개월 마. Anti-CGRP(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편두통 예방약제 간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투여 및 약제관리가. 원내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이후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투여방법에 대해 적절하게교육 받았을 경우에만 자가 투여를 인정하며, 자가주사로 2회 분까지 처방 인정함. 나. 동약제는 자가주사제인 점을 고려하여, 투여기간 등의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요양기관이 이를 관리하여야함. 3. 동약제는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지속투여 시 3개월마다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지속투여 과거력,진료기록부,두통일기, MIDAS 등)를 반드시제출하여야함.
[119] Glatiramer acetate 주사제 (품명: 코팍손프리 필드주 20mg/1ml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 (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 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RRMS) 환자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 적인 진행 상태(Second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다. 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투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1-26호, '21.2.1.)
[119] Memantine 경구제 (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 도(Moderate)·중증(Sever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0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함).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9~21호, '19.2.1.)
[119] Modafinil 200mg 경구제 (품명: 프로비질정 등), Armodafinil 경구제 (품명: 누비질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면장애의 국제적 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 또는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적합한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가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로 나타나고, 2회 이상의 수면 개시 렘수면 (SOREMPs)이 나타남. 단, 전날 밤 실시한 수면다원 검사(나629)에서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회가 나타난 경우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1회여도 가능함 나. 뇌척수액(CSF) 하이포크레틴(hypocretin-1) 면역반응성 수치가 정상 수치의 1/3 이하 또는 110pg/mL 이하로 측정된 하이포크레틴결핍증 2.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고시 제2021-294호, '21.12.1.)
[119] Nusinersen sodium 주사제 (품명: 스핀라자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증상 발현 전이라도 SMN2 유전자 복제수가 3개이하이며 치료 시작 시점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 2)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Type 1 ~ Type 3 이며 영구적 인공호흡기 ^{주1} 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 주1) 1일 16시간 이상, 연속 21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폐렴 등 급성기 질환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제외함. 나. 평가방법 1) 이 약 치료 시작 전,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운동기를 평가하다 함.(의학 수 있는 운동기를 수 있을 2) 운동기를 평가도를	능은 환자의 연령,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능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운동기능 구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전환시점 이후로는 지 운동기능 평가결과를 3회 동안 중복하여록 함.
	생후 24개월 이하 생후 24개월	① CHOP-INTEND ② HINE-2 ① HFMSE,
	주2) ①은 주평 24개월 ² 보조평가 환자인 경 사용할 ² 다. 중단기준 1) 영구적 2) 운동기 평가와 사항으	77.2

- 단, 신경발달이 지속되는 청소년기(만18세 이하) 까지는 잠재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함. 주3) 개선이란 운동기능평가도구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을 의미한. ※ 운동기능 평가도구별 개선의 정의 ① HINE-2: kick 점수 2점 이상 증가하거나 그 외 항목 (voluntary grasp 제외)에서 1점 이상 증가 ② CHOP-INTEND(CHOP-ATEND): 총점 4점 이상 증가 ③ HFMSE: 총점 3점 이상 증가 ④ RULM: 총점 2점 이상 증가 라. 교체투여 등 다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의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 또는 동 약제와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마.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하는 경우는 추후 승인 시 종전 투여분을 소급 인정함. 2. 이 약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하여야 함. 3. 스핀라자주의 사전승인·성과관리를 위한 절차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① HINE-2: kick 점수 2점 이상 증가하거나 그 외 항목 (voluntary grasp 제외)에서 1점 이상 증가 ② CHOP-INTEND(CHOP-ATEND); 총점 4점 이상 증가 ③ HFMSE: 총점 3점 이상 증가 ④ RULM: 총점 2점 이상 증가 라. 교체투여 등 다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의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 또는 동 약제와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마.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하는 경우는 추후 승인 시 종전 투여분을 소급 인정함. 2. 이 약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하여야 함. 3. 스핀라자주의 사전승인·성과관리를 위한 절차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		까지는 잠재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함. 주3) 개선이란 운동기능평가도구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을
다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의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 또는 동 약제와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마.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하는 경우는 추후 승인 시 종전 투여분을 소급 인정함. 2. 이 약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하여야 함. 3. 스핀라자주의 사전승인·성과관리를 위한 절차·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① HINE-2: kick 점수 2점 이상 증가하거나 그 외 항목 (voluntary grasp 제외)에서 1점 이상 증가 ② CHOP-INTEND(CHOP-ATEND); 총점 4점 이상 증가 ③ HFMSE: 총점 3점 이상 증가
(- 1 112023 10124, 2311011)		다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의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 또는 동 약제와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마.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하는 경우는 추후 승인 시 종전 투여분을 소급 인정함. 2. 이 약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하여야 함. 3. 스핀라자주의 사전승인·성과관리를 위한 절차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 (품명: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면장애의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 또는 진단통계 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 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적합한 기면증으로 확진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가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로 나타나고, 2회 이상의 수면 개시 렘수면 (SOREMPs)이 나타남. 단, 전날 밤 실시한 수면다원 검사(나629)에서 수면 개시 램수면(SOREMPs)이 1회가 나타난 경우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1회여도 가능함 나. 뇌척수액(CSF) 하이포크레틴(hypocretin-1) 면역 반응성 수치가 정상 수치의 1/3 이하 또는 110pg/mL 이하로 측정된 하이포크레틴결핍증 (고시 제2021-294호, '22.2.1.)
[119] Pregabalin 서방형 경구제 (품명: 리리카 CR 서방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1)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인정하지 아니함 2)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 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9-57호, '19.4.1.)
[119] Pregabalin 일반형 경구제 (품명:리리카캡슐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ain Syndrome) 5)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III. 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6)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다.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음 - 1)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수 있는 근이완제(Cydobenzaprine 등)를 적어도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2) 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인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영향척도(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점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스케일(pain VAS: pain Visual Analog pain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함.
[119] Risdiplam 경구제 (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가. 투여대상
	5g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증상 발현 전이라도 SMN2 유전자 복제수가 3개
	이하이며 치료 시작 시점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
	2)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Type 1~
	Type 3 이며 영구적 인공호흡기 ^{주1} 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
	주1) 1일 16시간 이상, 연속 21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
	하는 경우. 다만, 폐렴 등 급성기 질환으로 인해 인공호 흡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제외함.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 투여 전과 투여 후 4개월 간격으로 임상평
	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며, 사전 승인 신청 시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의 운동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가능하며, 위원회에서 운동기능평가, 비디오
	기록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운동기능은 환자의 연령,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운동기능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운동기능
	평가도구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전환시점 이후로는
	두 가지 운동기능 평가결과를 3회 동안 중복하여 제출토록 함.
	세골노숙 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I T		세구년6기단 첫 6日
		- 다 음 -
	투여 시점 연령	운동기능평가도구 ^{주2}
	생후 24개월	① CHOP-INTEND
	이하	② HINE-2
	생후 24개월	① HFMSE,
	초과	② RULM, CHOP-INTEND, CHOP-ATEND
	24개월 초 보조평가! 환자인 경역 사용할 수 다. 중단기준 1) 영구적 또는 2) 운동기능 평가와 사항으로 결정에 - 단, 신 까지는 단토록 주3) 개선	인공호흡기 ^{주1}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의 '개선 ^{주3} (이 약 치료 시작 전의 운동기능 비교) 또는 개선 후 유지(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따름)'를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경발달이 지속되는 청소년기(만18세 이하) 는 잠재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판 를 함. 이란 운동기능평가도구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을
	① HINE-2; (voluntar ② CHOP-IN ③ HFMSE;	가도구별 개선의 정의 kick 점수 2점 이상 증가하거나 그 외 항목 ry grasp 제외)에서 1점 이상 증가 TEND(CHOP-ATEND); 총점 4점 이상 증가 총점 3점 이상 증가 총점 2점 이상 증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라. 교체투여 등 동 약제를 포함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간 교체투여 또는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스핀라자주 투여 중 개선이 확인되고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약제로의 교체투여가 필요한 임상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한번의 교체투여가 가능함. 마.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하는 경우는 추후 승인 시 종전 투여분을 소급 인정함. 2. 투여 및 약제 관리 가.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처방 시 1회 처방 용량은 퇴원 및 외래의 경우 최대 2병으로 함. 나. 약제 투여기간 및 관리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 일지'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3. 이 약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하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투여하기 전 의료전문가가 조제하여야 함. 4.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의 사전승인·성과관리를 위한 절차 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119] Rivastigmine 제제 (품명: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 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 아 대 - 가. 알츠하이머 치매
	7. 월스아이터 시대 1) 투여대상
	가) 캡슐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
	(Mild)·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패취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중등도(Moderate)·중증(Sever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평가방법
	가) 캡슐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나) 패취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
	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
	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나.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1) 투여대상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증(Mild)·중등도 (Moderate)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2)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9-21호, '19.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Satralizumab 주사제 (품명: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 지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투여대상 항이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근 2년 이내 적어도 2번(최근 1년 이내 1번 포함)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로서, - Rituximab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3개월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상 재발이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수 없는 경우2) Satralizumab 투여 시점에 확장 장애 상태 척도(Exte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 점수≤ 6.5인 경우나. 평가방법: 치료 시작후매 6개월마다 다음을모니터링하여 투여유지 여부를 평가함-다음-1)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4주마다 신경학적 기능검사 확인 2)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마다 EDSS 확인다. 중단 기준(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3개월 이상 투여 이후 재발한 경우2)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치료편의 대비 위험성이 큰경우3) EDSS ≥ 8 인 경우4)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간격모니터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WH 6171717 5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재발: 새로 발병한 신경학적인 증상 또는 기존 신경학적인 증상의 악화가 24시간 유지되는 경우 (신경학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한 객관적 변화로서 임상적 확인 또는 MRI 결과) ※ 신경학적인 증상
	1. 시신경염 2. 급성착수염 3. 설명되지 않는 딸꾹질이나 구역과 구토 4. 급성 뇌간 증후군 5. 증상성 기면증이나 급성 간뇌증후군에서 NMOSD 특징 뇌 MRI 병변이 동반 6. 증상성 뇌증후군에서 NMOSD 특징적 뇌 또는 척수 MRI 병변이 동반
	라. 동 약제는 관련 진료과(신경과, 안과) 전문의가 처방 하여야 함. 2.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경고 등)'을 참고 하여 투여하여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 대상 및 지속 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신경학적 기능검사 결과지, EDSS 점수, 진료기록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고시 제2023-229호, '23.12.1.)
[119] Teriflunomide 경구제 (품명: 오바지오필름 코팅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McDonald(17) 진단기준 (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함 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외래통원이 가능한(보행 가능한) 재발완화형 다발 경화증 환자(RRMS)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다. 투여 방법: 단독 요법 (고시 제2021-26호, '21.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21] Levobupivacaine HCl 25mg 주사제 (품명 : 카이로케인주)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기존 Bupivacaine 제제의 부작용 등으로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첨부된 경우에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21] Lidocaine HCl 주사제 (품명 : 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22] Atracurium besylate 주사제 (품명: 아트라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입원의 경우 1) 제왕절개술(C-sec), 2) 개심술, 3) 안압이 현저히 높은 환자의 수술, 4) 짧은 시간 수술(1시간 이내), 5) 노인(만 65세 이상) 및 중환자실 환자, 6) 빈혈이 있는 환자, 7) 심장 및 신장환자 수술시, 8) 빈맥이 있는 환자, 9) 만 15세 이하의 환자, 10) 인공호흡기 와의 부조화(Ventilator fighting) 시 나. 외래환자 마취 시 다. 간 또는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 (고시 제2017-193호, '17.11.1.)
[122] baclofen 주사제 (품명: 리오레살주 10mg/5mL)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경구근이완제 (baclofen 등)로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인해 경구 근이완제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로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자-484)의 급여기준」중 '라'*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적절한 경직치료(약물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경직척도 (MAS)가 하지 3등급 이상 또는 상지 2등급 이상인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경직(spasticity)으로 시험적 약물주입술에서 1등급 이상 호전된 경우 ※ 식약처장의 인정범위 리오레살주는 매우 강하게 증가된 근육 긴장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다음의 경우에 표준 약제로 치료되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않는 중증의 만성적으로 증가한 근육 긴장을 치료할 때 사용한다 다발성 경화증: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증상을 동반 하는, 뇌 및 척수의 진행성 신경질환 - 척수 또는 뇌의 손상 - 기타 척수 질환 (고시 제2022-131호, '22.6.1.)
Eperisone hydrochloride 경구제 (품명: 뮤렉스정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고시 제2022-268호, '22.1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23] Bethanechol chloride 경구제 (품명: 마이토닌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신경성방광에 최대 120mg/일까지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123] Glycopyrrolate 주사제 (품명 : 모비눌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인공호흡기 설치(Ventilator apply)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23] Oxybutynin 경구제 (품명 : 동화디트로판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의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척수수막류 (지방종)에 의한 배뇨장애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24] Hyoscine butylbromide 주사제 (품명: 프리판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하여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0-69호, '20.4.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29] Tafamidis meglumine 경구제 (품명 : 빈다켈캡슐 20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1단계*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환자(TTR-FAP: Transthyretin Familial Amyloid Polyneuropathy)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조직검사에서 아밀로이드 침착 확인
	2) 유전자검사에서 트랜스티레틴 유전자의 변이 확인 ※ TTR-FAP stages of disease(ATTReuNET) Stage 0 - Asymptomatic Stage 1 - Mild, ambulatory, symptoms at lower limbs limited Stage 2 - Moderate, further neuropathic deterioration, ambulatory but requires assistance Stage 3 - Severe, bedridden/wheelchair-bound with generalized weakness 나. 평가방법 6개월 간격으로 상기 투여기준 및 질병 Stability에 대한 평가(NIS-LL, mBMI, PND score 등)를 통한 투여 소견서 첨부 시 지속투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00호, '18.10.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31] Bilberry fruit dried ext. 경구제 (품명: 알코딘연질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고시 제2016-187호, '16.10.1.)
[131] Cyclosporin 0.05% 외용제 (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Moderate) 이상의 건조각막 결막염"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성안으로 인하여 병적인 변화가 나타난 경우 (예, 표층각막염 등) 나. 눈물막파괴시간(Tear break up time) 검사결과 6초 이하인 경우 다. 쉬르머검사(Shirmer test)결과 정상 수치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131] Cyclosporin 0.1% 외용제 (품명: 아이커비스점안액)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성안으로 인하여 병적인 변화가 나타난 경우(예: 표층각막염 등) 나. 눈물막파괴시간(Tear break up time) 검사결과 6초 이하인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쉬르머검사(Shirmer test) 결과 정상 수치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고시 제2017-109호, '17.7.1.)
[131] Dexamethasone 700μg 이식제 (품명: 오저텍스이식제 700μg)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망막 분지정맥 폐쇄(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BRVO) 후 나타나는 황반부종 1)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인 경우 2)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 황반부종은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황반두께 (Central macular thickness)가 300㎞이상인 경우나.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1) 투여대상: 점안제 이외의 스테로이드를 1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시력이 개선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2) 투여횟수: 단안당 1회(추가 투여 필요시 소견서 첨부하도록 함) 다. 당뇨병성 황반부종(Diabetic Macular Edema, DME) ○ 최단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 Ranibizumab 주사제 또는 Aflibercept 주사제 또는 Faricimab주사제 또는 Brolucizumab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31] Natamycin 외용제 (품명: 나타신점안현탁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진균성 각막염, 진균성 안검염, 진균성 결막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진균성 각막염, 안검염, 결막염 (고시 제2019-93호, '19.6.7.)
[131]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 (품명 : 에이베리스 점안액0.002%)	허가사항 범위(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1-26호, '21.2.1.)
[131] Rebamipide 0.1g/5ml 외용제 (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등, 레바아이점안액(1화용) 등)	허가사항 범위(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뮤신분비촉진제(예: Diquafosol sodium 점안액)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3-197호, '23.11.1.)
[131]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 (품명 : 비스메드점안액)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다음 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해 치료보조제 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안구건조증후군 등의 내인성질환 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질환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31] Tafluprost 외용제 (품명: 타플로탄점안액 0.0015% 등)	하가사항 범위(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31] Tosufloxacin tosylate 외용제 (품명: 동아오젝스 첨안액)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유효균종 포도상구균속, 연쇄상구균속, 폐렴구균, 장구균속, 마이크로코커스속, 모라셀라속, 코리네박테리움속, 클레브시엘라속, 엔테로박터속, 세라치아속, 프로테우스속, 모르기네라 모르가니속, 프로비덴시아속, 인플루엔자균, Hemophilus aegypticus(Koch-Weeks균), 슈도모나스속, 녹농균, 박테리아 세파시아, 스텝트로모나스(잔토모나스) 말토필리아, 아시네토박터속, 아크네균 나. 적응증 1) 세균성 결막염 2) 각막염(각막궤양을 포함) 3) 검판선염 4) 안과수술시의 무균화요법 (고시 제2013-127호, '13.9.1.)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품명 : 마카이드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최단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00 µm 이상인 경우 2) 재투여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투여하되,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행 ※ Ranibizumab 주사제 또는 Aflibercept 주사제 또는 Faricimab주사제 또는 Brolucizumab 주사제와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131] Verteporfin 주사제 (품명: 비쥬다인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전형적이거나 잠재적인 타입의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1) 형광안저 검사상 황반하 부위에 맥락막 혈관신생이나 결절맥락막병증이 있는 경우로서 신생혈관의 최대 직경이 5,400㎞ 이하의 크기인 경우 2) 치료 회수: 단안당 총 5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내 최대 치료회수: 단안당 3회) 나. 병적근시(Pathologic myopia)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1) 마이너스 5.0 디옵터 이하이거나 안구의 장축의 길이가 26.5㎜ 이상인 경우로서 형광안저 검사에서 황반하 부위에 맥락막 신생혈관이 있는 경우 2) 치료 회수: 단안당 총 3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내)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특발성황반 변성환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최대 투여 회수는 단안당 2회 이내로 하고, 2회 초과 사용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다 음 - 가. 발견시 소견보다 2개월 이상 경과된 후 소견이 악화된 모습이 1), 2)와 같이 나타날 때 1) 플루레신형광안저촬영으로 신생혈관의 크기가 명백하게 커져 있을 때 2) 안저소견상 출혈이 새로 발생했거나 증가했을 때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하이고 시력장애의 원인이 맥락막신생혈관임이 확실할 때다. 일단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된 경우
[131]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 (품명: 럭스터나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하였으며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 중 다음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RPE65 돌연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biallelic pathogenic 또는 likely pathogenic RPE65 mutations) 2) 투여 시점 기준 만 4세 이상 65세 미만 3) 양안 최대교정시력 0.3이하 또는 양안 시야 20도 미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4) 충분한 생존 망막세포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가), 나), 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후극부의 망막 두께 〉 100㎞ 나) 안저소견상 후극부 내 위축 또는 색소 변성이 없는 망막면적이 시신경유두 면적의 3배 이상 존재 다) Goldmann III4e isopter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측정한 시야가 중심 30도 이내에 남아 있는 경우 ※ 단, 시야 측정이 어려운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초점망막기능지형도검사(Multifocal Electroretinogram) 결과 등과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가), 나)만 충족하더라도 사례별로 인정함 나. 제외기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투여시작 대상에서 제외함 다 음 - 1) 최근 6개월 동안 안구 내 수술을 받은 경우 2) 안구 또는 안구 주위가 감염된 경우 다. 평가방법 1) 동 약제 투여 전(첫 번째 눈 투여 전 90일 이내)과 투여 후(양안 투여 시 두 번째 눈 투여 후) 1개월~ 3개월, 12개월 및 매 1년마다 4년까지 임상평가 (광감수성(light sensitivity), 시력, 시야 등)를 실시하여야 하고 임상평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광감수성 평가는 백색광(white light)을 이용한 전시야광역치검사(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실시함. 3) 전시야광역치검사 결과 기저치 대비 1 log unit 이상 (양안 투여 시 평균값) 개선된 경우 암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정의함. ※ 세부적용방법은 '[일반원칙]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을 참고 라. 동 약제는 단회 투여하는 유전자 대체 치료제로 안구당 평생 1회에 한하여 급여 인정 가능하며, 사전심사 운영기간 내에는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사전 심사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마. 동 약제 투여 전 해당 요양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로 부터 주기적인 반응평가 등 장기 추적조사에 대한 이행 동의서를 받아 사전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이 약은 황반 수술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망막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하여야 함. 3. 럭스터나주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방법・절차 및 위원회 구성, 사전심사 운영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고, 동 약제의 고시 적용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고시 제2024-20호, '24.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32] Ciprofloxacin HCl + Dexamethasone 외용제 (품명: 실로덱스점이현탁액)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급성 중이염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32] Fluticasone furoate 외용제 (품명: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허가사항 범위(성인 및 2세 이상의 소아에서 계절성 또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32]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 (품명: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성인 및 6세 이상 소아의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증상 치료 나.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증상 치료 (고시 제2013-127호, '13.9.1.)
[132] 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 외용제 (품명: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허가사항 범위(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2-227호, '22.10.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1] Desloratadine 경구제 (품명: 에리우스정)	허가사항 중 알레르기성 비염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41] Piprinhydrinate 제제 (품명: 푸라콩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약신경안정제(Minor tranquilizer)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41] Rupatadine 경구제 (품명: 루파핀정)	허가사항 범위(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증상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215호, '17.1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Abrocitinib 경구제 (품명: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증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함. - 다 음 - 1)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 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 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동 약제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2) 동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12주째 평가하여 E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및 dupilumab 또는 Tralokinumab 주사제와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투여는 인정하지 않음. 라. 동 약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3.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4.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NF- a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142] Baricitinib 경구제 (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가.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의 DMARDs(Di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 ы	UIHOIZIZ DI HIHI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 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 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함. - 다 음 - 1) DAS28이 5.1 초과 2)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2)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 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 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 투여에 대한 투여소건서를 첨부하여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4	
	2.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가. 투여대상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함.
	- 다 음 -
	1)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
	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
	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동 약제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
	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2) 동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16주째 평가하여 E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 하여 최초 평
	가결과가 유지되면 지 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및 dupilumab 또는
	Tralokinumab 주사제와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
	투여는 인정하지 않음.
	라. 동 약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가 처방
	하여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 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4.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5.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고시 제2024-72호, '24.5.1.)
[142] Basiliximab 주사제 (품명: 씨뮬렉트주사)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허가. Belimumab 주사제 급여. (품명: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 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토록 함. - 아 래 투여대상 1) 표준요법(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말라리아약, 면역 억제제 단독 또는 병용투여)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중인 자가항체 양성인 활동성 전신흥반루푸스 만 18세이상 성인 환자로서 다음 가), 나), 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SELENA-SLEDAI* 10 이상 나) 항dsDNA항체 양성 다) 낮은 보체(C3 또는 C4) 2) 중증의 활성 중추신경계 전신홍반루푸스, 중증의 활성 루푸스 신염 환자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투여방법 1) 최초 투약 후 24주 째 평가를 통하여 SELENA-SLEDAI*가 4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2)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24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최대 36개월). ※ SELENA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활동성 지표 (SELENA-SLEDAI: a Safety of Estrogen in Lupus National Assessment-Systemic Lupus Erythematosus Disease Activity Index) (고시 제2022-227호, '22.10.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Cyclosporine 경구제 (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1. 하가시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하가사항 중 『건선, 신증후군, 류마티스성관절염, 재생불량성빈혈』에는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건선: 기존의 전신치료제(Corticosteroid, Acitretin (티가손), MTX(Methotrexate) 등)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중증건선에 2차적으로 투여 시나. 신증후군: Steroid제에 내성(Resistant)이 있는 경우, Steroid제에 효과는 있으나, 투약을 중단했을 때재발하는 증후군(Steroid dependent nephrotic syndrome), Steroid제에 부작용이 심한 신증후군환자에게 투여 시다. 류마티스성관절염: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효과가 없는 중증(Refractory) 류마티스관절염에 2차적으로투여 시라. 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식을 할 수 없는 중증의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에게는 동 약제를 단독투여하거나, ALG(Anti Lymphocyte Globulin: 항림프구글로불린)제제 또는 ATG(Anti Thymocyte Globulin: 항흥선세포글로불린)제제와 병용투여 시기수으로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아토피성 피부염 : 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아토피성 피부염에 2차적으로투여 시나.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Corticosteroids와 Azathioprine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다. 심상성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및 유사천포창: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와부신피질호르몬(Prednisolone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A, 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 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고시 제2020-107호, '20.6.1.)
[142] Cyclosporine 주사제 (품명: 산디문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A, 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 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고시 제2020-107호, '20.6.1.)
[142] Deucravacitinib 경구제 (품명 : 소틱투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이상 성인)로 1), 2), 3) 또는 1), 2), 4)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1), 2), 3)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음 - 1)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0% 이상
	2)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3)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4)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
	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16~24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
	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마.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 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바.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142] Dimethyl fumarate 경구제 (품명: 스킬라렌스장용정 30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 전신치료제(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수 없는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투여 시*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고시 제2024-130호, '24.7.1.)
[142]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 밀리그램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성인 및 청소년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동 약제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나) 동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2) 소아 (만 6세-만 11세)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소아(만 6세-만 11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동 약제 투약개시일 4개월 이내에 국소 치료제 투여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국소치료제 투여시점에 EASI 21 이상이어야 함. 나) 동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1 이상 * 임상 사진 제출 필수: EASI 점수 측정 시 중증도 판단을 위한 환부사진이 확인되어야 함
	나) 동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1 이상 * 임상 사진 제출 필수: EASI 점수 측정 시 중증도
	 다. 평가당답 1) 동 약제를 14주간 투여 후 16주째 평가하여 E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Dupilumab 주사제와 Tralokinumab 주사제 또는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라.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하며, 퇴원 시 및 외래에서의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 분까지로 함. - 단,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함. 마. 동 약제는 자가주사제인 점을 고려하여, 투여기간 등의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요양기관이 이를 관리하여야 함. 바. 동 약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알레르기내과,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하며,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42] Everolimus 경구제 (품명: 써티칸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장이식 1) 투여대상: 경도 내지 중등도의 면역학적 위험을 가진 동종 심장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 2) 투여방법: 마이크로에멀젼 제형의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투여 나. 간이식 1) 투여대상: 간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 2) 투여방법: 타크로리무스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투여 다. 신이식 1) 투여대상: 경도 내지 중등도의 면역학적 위험을 가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동종 신장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 2) 투여 방법: 마이크로에멀젼 제형의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투여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신이식 및 심장이식 환자에 대하여 타크로리무스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3-101호, '23.6.1.)
[142] Filgotinib 경구제 (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진행이 있는 경우
	**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IJC: 탑등 단골구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함.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л ы	비타이것기즈 미 바出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동 약제를 22주 동안 투약 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
	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2.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Ozanimod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4.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5.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NF-α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142] Golimumab 주사제 (품명 : 심퍼니프리 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 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DMARDs(DiseaseModifyingAntiRheumatic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치료하였으나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치료를 중단한 환자(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다음 -가) DAS28이 5.1 초과나)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진행이 있는 경우
	 ※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③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 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다음의 경우에는 동 약제 투여에 주의해야 함 ④ 피부광화학요법(PUVA) 축적용량(Cumulative dosage) 1,000주울(Joules)을 초과하여 투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Drug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아상((1)항은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가)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흥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BASDAI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 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라.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1) 무역대성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이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기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7 1	H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Ozanimod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 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 하여야 함. 4.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와 '심퍼니오토인젝터주'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5.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와 '심퍼니오토인젝터주'의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1회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2~3회분까지 인정함. 6.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142] Guselkumab 주사제 (품명 :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 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
	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된지는 기), 디), 디) 오신글 중국이는 경구) - 다 음 -
	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다)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 [*] 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라)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12주간(3회) 투여 후 20주 이내에 평가
	가) 중 약세들 12구간(3외) 두역 우 20구 역대에 평가 하여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중앙피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Ustekinumab 주사제, Deucrav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 순용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손발바닥 농포증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가), 나) 또는 가), 다)를 충족하는 경우(단, 광선요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PPPASI(Palmoplantar Psoriasis Area Severity Index) 12 이상 나) Acitretin 또는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다)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20주간(4회) 투여 후 28주 이내에 평가하여 PPPASI가 5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일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IL-17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 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Ixekizumab, Ustekinumab, Risank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142] Ixekizumab 주사제 (품명: 탈츠프리 필드시런지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이상 성인)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L	(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다)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라)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가) 동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4	71TC071C 2 0G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
	하는 경우
	- 다 음 -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
	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 용 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만속하며, Bath 경작경 작무협의 설명 활동 지구(BASDAL)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가)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
	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홍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BASDAI7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16주째의 평가가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2. 종양과사인자알과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l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Risankizumab, Ustekinumab, Guselkuma 주사제, Tofacitinib, Upadacitinib, Deucravacitini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용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이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영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참부하여야 한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참부하여야 한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참보하여야 한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어소견서를 참보하여야 한경우에는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4.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한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가 인정함.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흥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BASDAI7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16주째의 평가 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2.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l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Risankizumab, Ustekinumab, Guselkuma 주사제, Tofacitinib, Upadacitinib, Deucravacitini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 등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여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4.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가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4.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기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여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3.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5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7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4.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4.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기
4.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힘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5.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NF-α inhibitor 사용사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Leflunomide 경구제 (품명: 아라바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Methotrexate 정제 투여가 곤란하거나 충분한 효과가 없는 경우에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투여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품명: 셀셉트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와 부신피질호르몬 (Prednisolone 등)과의 병합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심상성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 나. 장기(신장, 심장, 간장, 췌장, 폐, 소장) 이식수술 후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한 경우 1) Cyclosporine 및 Tacrolimus와 병용 투여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경우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2) 용량을 감소시켜 나가는 점감법(Tapering) 과정에서 환자상태에 따라 단독 투여 가능함. 다. 손 및 팔이식 수술 후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한 경우 1) Tacrolimus와 병용 투여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경우는 환자 상태에 따라 분독 투여 가능함. 다. 손 및 팔이식 수술 후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한 경우 2) 투여 용량: 1회 750mg 이내, 1일 2회 투여라. 루푸스신염: 1) WHO 분류 단계 Ⅲ, Ⅳ로 확진된 환자 (관해 유도 및 관해 유지) 2) WHO 분류 단계 V로 확진된 다음의 환자 (관해 유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및 관해 유지). - 다 음 - 가) 신증범위 단백뇨(>3g/24h 또는 >3g/g)가 있는 경우 나) 최소 3개월동안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1g/24h이상(또는 1g/g 이상)인 경우 마. 동종각막이식술: 1)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있거나, Cyclosporine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은 1일 2g씩 6개월간 인정하며, 사례별로 1년까지 인정함. 바. 포도막염 1) 스테로이드제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2) 스테로이드제 감량 시 재발하는 경우 3)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 4) 전신질환을 동반하고 심각한 안구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사. 조혈모세포이식 후 이식편대숙주병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은 1일 2g씩 6개월간 인정하며, 사례별로 1년까지 인정함. 바. 포도막염 1) 스테로이드제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2) 스테로이드제 감량 시 재발하는 경우 3)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 4) 전신질환을 동반하고 심각한 안구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등
	에서 이식 후 27일까지 2)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가) 투여대상: 스테로이드 저항성 또는 금기 환자 나) 투여용량: 1g 또는 15mg/kg을 1일 2회 아. 중증근무력증: Azathioprine 또는 스테로이드제에

구 부	세브이젓기주 민 바버
ı L	/비구단이기본 첫 이번
구 분	지료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자. 일차성 사구체신염(최소 변화의 신장증(Minimal change nephropathy), 국소분절사구체경화증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막성신장증 (Membranous nephropathy), 막증식성사구체신염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면역글로불린에이신장증(IgA nephropathy))에 의한 신증후군 환자로 스테로이드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 의존성으로 스테로이드제에 부작용이 심하거나 심각한 독성이 우려되는 경우 차. 경구스테로이드제 등 1차 약제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이 심한 괴사성 공막염 카. 피부경화가 진행된 미만성(Diffuse Cutaneous) 전신경화증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타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 투여 에도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mRSS(Modified Rodnan Skin Score) 12점 이상인 경우 2) 투여용량: 250~3000mg/day 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으로 진단된 환자 중 Azathioprine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파. 소아 및 청소년 (만2세~만18세) 항 MOG 항체 연관 질환 환자로서 스테로이드 치료 중 재발이 있는 경우 1) 투여용량: 600~1200mg/m2/d (최대 2g/d) 2) 투여기간: 2년 동안 재발없이 임상적으로 안정화 된 후에, 단계적인 감량 후 중단
	하. 결체조직질환 연관 간질성 폐질환

_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투여대상 간질성 폐질환이 진행 중인 환자에서 1종 이상의 타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 투여에도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45% ≦ Forced Vital Capacity(FVC) ⟨ 80%'인 경우 2) 투여용량: 250~3000mg/day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 (품명 : 마이폴틱장용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신장, 소장 이식 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와 Tacrolimus 경구제의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함. 나. 심장, 간장 이식 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의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와병용투여를 인정함.(고시 제2023-229호, '23.12.1.)
[142] Ozanimod 경구제 (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 E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나. 평가방법 동 약제를 10-20주 동안 투약 후 평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음- 1)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2)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2. 중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Tofacitinib, Filgotinib, Upad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용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4.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24-55호, '24.4.1.)
[142]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 (품명: 치모글로부린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투여용량: 1일 1-1.5mg/kg 2) 투여일수: 5일 이내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 발 및 다리이식에 투여 시 1) 투여용량: 1일 1-1.5mg/kg 2) 투여일수: 5일 이내 (고시 제2019-210호, '19.10.1.)
[142] Risankizumab 주사제 (품명: 스카이리치 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 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다)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대부인정기준 및 방법 라)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 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16주간(3회) 투여 후 평가하여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 a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Guselkumab, Ixekizumab, Secukinumab, Ustekinumab 주사제, Deucrav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 a inhibitor) 또는 IL-17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 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Ixe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142] Secukinumab 주사제 (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 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이상
	다)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라)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 회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가 75%이
	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
	하는 경우
	- 다 음 -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 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 (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가)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흥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BASDAI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16주째의 평가결 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2.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Ixe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Risankizumab 주사제, Tofacitinib, Upadacitinib, Deucrav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4.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 분까지 인정함. 5.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7 8	비디어거기즈 미 HHH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Sirolimus 경구제 (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3세 이상 신장이식 환자에서의 장기 거부반응 예방 나. 림프관평활근종증(Lymphangioleiomyomatosis) 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70% 이하인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소장이식 1) 투여대상: 소장이식 후 3개월이 지난 환자로 Tacrolimus 투여로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혈청 크레아티닌 1.5mg/dL 초과, 사구체여과율(GFR) 75mL/min 미만인 경우 2) 투여방법: Tacrolimus와 병용투여 3) 투여기간: 6개월 이내 나. 신이식 환자에 대하여 타크로리무스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투여한 경우
[142] Tacrolimus 제제 (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주사제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사용할 경우와 경구제를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주사제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사용할 경우 1) 비혈연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에부인정기군 및 명립 : 이식 1일 전부터 이식 후 20일까지 (이식일 포함 총 22일) 인정하며, 이후 이식편대숙주질한(GVHD) 악화가 없는 경우에는 경구제로 변경 투여하여야 함. 2) 타 약제에 대하여 치료불응성(Refractory)이거나 부작용이 심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 :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함. 3) 경구투여 하다가 다시 주사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3-나 주사제 지급원칙"에 따라 타당한 경우 인정함. 나. 경구제를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사용할 경우 :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효과가 없는 중증(Refractory)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췌장, 폐, 심장, 소장, 손 및 팔 이식의 경우 나. 중증근무력증 : Azathioprine 또는 Steroid제에 치료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일반형 경구제만 해당): 스테로이드 의존성(빈번 재발 포함) 또는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에 cyclosporine의 부작용이 심하여 투여가불가능한 경우 4.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발 및 다리 이식의 경우 (고시 제2019-210호, '19.10.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무인성기군 및 영법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DAS28이 5.1 초과 (2) DAS28이 3.2∼5.1이고 영상 검사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十	에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ILAR 진단기준(2001년 제정)에 부합하는 다관절형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2-17세)로서 5개 이상의부종 관절을 가지는 경우 나) 1개 이상(MTX 등)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3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치료를 중단한 환자 2) 평가방법 가) 동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활성 관절수(부종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경우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전신형소아 특발성 관절염 1) 투여대상(2-17세)다음 가), 나)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전신형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로서 아래의(1),(2)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1)연속하여 3일 이상의 발열(38도 이상)(2)1개 이상의 활성 관절(부종관절 등)나)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SAID)및 전신성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로 2주 이상 치료하였으나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38도 이상의
	열을 동반하지 않고, 활성 관절수(부종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급여를 인정함.
	라. 거대세포동맥염(Giant Cell Arteritis)('악템라피하
	주사 162 밀리그램'에 한함)
	1) 투여대상
	처음 진단 시 최신의 ACR 또는 EULAR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생검(biopsy)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거대세포동맥염이 확진된 환자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고용량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40mg/day
	기 고등당기 글구고고드디고이드(40111g/day) prednisolone-equivalent 이상) 단독 또는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와 병용요법으로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치료하였으나, 임상적으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에 필요한
	용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에 절대적 금기인 경우
	(당뇨병 치료제를 투여 중인 당뇨 환자)
	2) 평가방법 및 투여기간
	동 약제를 6개월간 투여 후 약제의 반응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6개월(총 12개월)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임상적 증상의 현저한 호전이 있음.
	나) ESR ≤ 30 mm/hr 또는 CRP ≤ 10 mg/L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4	개구단이기는 것 이미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 17세 이전에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polyarticular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 또는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systemic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만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
	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만 2세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심사함.
	나. 성인 발병성 스틸병
	1) 투여대상
	○ 성인 발병성 스틸병 환자로서,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로 총 6개월 이상 치료받았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또는 상기 약제에 금기인 환자
	2) 투여방법
	○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허가사항에 따름.
	3) 평가방법
	○ 동 약제를 3개월 간 사용 후 열, 피부반점, 임파부종,
	AST/ALT 상승 등 초기증상이 없고, 활성 관절
	(부종관절 등)이 없거나 50%이상 감소하고, ESR
	또는 CRP 또는 ferritin이 정상범위인 경우 추가
	3개월을 인정함.
	○ 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하여 계속적인 투여가
	필요할 경우 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만, 호전 시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하며 재발 시
	재 투여 할 수 있음.
	다.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투여로 인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의 관리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투여대상 ○ 성인 및 만2세 이상의 소아 2) 투여방법 ○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의 사용상주의사항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의 관리'알고리즘에 따름.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지속할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권고함)에 동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함. 4. '악템라피하주사162밀리그램'이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고려하여, 동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함. 5. '악템라피하주사162밀리그램'은 장기 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 까지로 하며, 원내 처방함을 원칙으로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 까지인정함.
[142] Tofacitinib 경구제 (품명: 젤잔즈정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5밀리그램 등)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 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의 DMARDs(Di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함. - 다 음 - 가) DAS28이 5.1 초과 나)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ESR) = 0.56 × √(TJC-28) + 0.28 × √(SJC-28) + 0.014 × VAS + 0.70 × In(ESR) DAS28(CRP) = 0.56 × √(TJC-28) + 0.28 × √(SJC-28) + 0.014 × VAS + 0.36 × I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JC: 부종 관절수 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2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 (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함.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동 약제를 16주 동안 투약 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 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나)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3) 중앙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Ozanimod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복약순용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학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이다.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1중 이상의 중앙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 또는 IL-17A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식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착추염」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 반드시 포함)의 암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Bath 강직성 착추염의 질병 활동 자수(BASDAI: Bath Ar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가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즉은 4(Sac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 나) 암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학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ted.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아침 반드시 포함)의 암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Bath 강작성 착추염의 질병 활동 자수(BASDAI: Bath Ar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 가)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 나) 암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들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e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IL-17A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 <u>L</u>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and frontal planes.) (3) 흥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작성 착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가)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흥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Ixekizumab, Secukinumab 주사제, Upadacitinib 경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3.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4.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142] Tralokinumab 주사제 (품명: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 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

자용을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 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동 약제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2) 동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14주간 투여 후 16주째 평가하여 E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Tralokinumab 주사제와 Dupilumab 주사제 또는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음. 라.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하며, 퇴원 시 및 외래에서의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 분까지로 함 단.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8~12주분 까지 인정함. 마. 동 약제는 자기주사제인 점을 고려하여,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관리하여야 함. 바. 동 약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고시 제2024-72호, '24.5.1.)

[142] 각 약제별 허가시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Upadacitinib 경구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 (품명: 린버크서방정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1.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가.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 DMARDs(Disease Modifyin,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지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 지료휼 중단한 환자(다만, MT 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의 경우 두 종류 이상의 DMARDs 사원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가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다 음 - 1) DAS28이 5.1 초과 2)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진행이 있는 경우 ※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 DAS28(ESR) = 0.56×√(TJC-28) + (0.014×VAS + 0.70×ln(ESR)) © DAS28(CRP) = 0.56×√(TJC-28) + (0.014×VAS + 0.36×ln(CRP+1) + 0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hotrexate) 포함)의 g AntiRheumatic 이상) 치료하였으나, 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X 사용이 불가능한, 에는 MTX를 제외한 용) 고위험군 환자, 악성 존 치료제(TNF 억제제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사용하여야 함. 검사 상 관절 손상의 3 joints) 0.28×√(SJC-28)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구 분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2)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 (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가. 투여대상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함. 다 음 -
	1)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 (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 (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동약제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면역억제제 투여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동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16주째 평가하여 E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및 dupilumab 또는 Tralokinumab 주사제와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 투여는 인정하지 않음. 라. 동 약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가.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IL-17A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착추염」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가)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11 CO. 1E 2 OB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흥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나. 평가방법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BASDAI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 $lpha$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Ixekizumab, Secukinumab 주사제,
	Tofacitinib 경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4. 성인의 중등 도- 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가.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함.

구 문	세무인성기순 및 방법
구 분	## ## ## ## ## ## ## ## ## ## ## ## ##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Subscore, 0 to 3 나. 평가방법 동 약제를 16주 동안 투약 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4	MT단0기단 및 0日
	- 다 음-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나)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다. 종양과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Ozanimod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5. 크론병가. 투여대상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 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 (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함.
	 ※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 (1) 1주에 설사횟수의 합 × 2 (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 (가) 관절염/관절통 (나) 홍채염/포도막염 (다) 결절성홍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라)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마) 기타 누공 (바)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괴(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7) 헤마토크리트(남:47, 여:42-환자 Hct치) × 6 (8) ((표준체중 - 환자체증)/표준체증) × 100(%) 나. 평가방법 첫 투약 후 24주 이내에 CDAI가 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의 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5.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_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고시 제2024-72호, '24.5.1.)
[142] Ustekinumab 주사제 (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다)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라)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시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병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16주간(3회 투여 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중양괴사인지알파저해제(TNF- a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주사제, Deucrav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 (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또는 IL-17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 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구 분 서부인정기준 및 방법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Ixekizumab, Guselkumab, Risank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정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전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크론병 1) 투여대상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 로이드제나 면역약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 (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 ※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 (1) 1주에 설사页수의 합 × 2 (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 (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 (7) 관설염/관절통 (나) 홍채염/포도막염 (다) 결절성홍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관)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바) 기타 누공 (바)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과(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7) 혜마토크리트(남·47, 역·42-환자 Hct시) × 6 (8) (표준제중 - 환자제증/표준제중) × 100(%)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6-20주에 CDAI가 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의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3) 중양괴사인자일파저해제 (TNF-α inhibitor: Ada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 Upad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이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택(Mayo Scoring)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6-20주에 CDAI가 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의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3) 중양괴사인자일파저해제 (TNF-α inhibitor: Ada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 Upad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6-20주에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3) 종양괴사인자일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 Tofacitinib, Filgotinib, Ozanimod, Upad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9]	 1차적으로 투약비용이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였으나
Epinastine 경구제	졸림 등 부작용이 있어 2차적으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품명 : 아르기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알레르기비염
	나. 두드러기, 습진·피부염,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痒疹),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고시 제2023-296호, '24.1.1.)
[149]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Leukotriene 조절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Montelukast 경구제	환자가 부담토록 함
(품명: 싱귤레어정 등,	- 아 래 -
싱귤레어츄정 등,	가.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싱귤레어세립 등,	1)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싱귤로드 속붕 정 등),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Montelukast 및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도 인정함
levocetirizine 복합제	2)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
(품명 : 몬테리진캡슐	(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등, 몬테리진츄정)	- 다 음 -
Pranlukast 경구제	가)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
(품명: 프라카논정,	이 있는 경우
오논캅셀 등,	나)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씨투스현탁정 등,	다)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오논드라이시럽 등),	못하는 경우
Petasites hybridus	나.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CO ₂ Extracts 경구제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품명 : 코살린정)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 시 인정 다.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149] Omalizumab 주사제 (품명 : 졸레어주사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알레르기성 천식 1) 투여대상 가)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ICS-LABA: Inhaled CorticoSteroids-Long Acting Beta-2 Agonist LAMA: 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 다 음 - (1) 치료 시작 전 면역글로불린 E의 수치가 76IU/mL 이상 (2) 통년성 대기 알러젠에 대하여 시험관 내(in vitro)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반응 또는 피부반응 양성
	(3)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4)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
	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소아(만 6세~만 12세 미만):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 LAB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치료 시작 전 면역글로불린 E의 수치가 76IU/mL
	이상
	' o (2) 통년성 대기 알러젠에 대하여 시험관 내(in vitro)
	반응 또는 피부반응 양성
	(3)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
	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평가방법
	가) 최초 투여 후 16주째 반응평가*를 하여 전반적인
	천식조절을 확인한 환자에 대한 소견서 제출 시 향후
	지속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 지속적으로 3~6개월마다 반응 평가하여
	투여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반응평가: 최대호기유속(peak expiratory flow), 주간 및 야간증상, 구원치료제(rescue
	now), 구선 및 아선증성, 구원자묘제(rescue medication) 사용, 폐활량검사(spirometry),
	증상악화(exacerbations) 등
	3) 중증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omalizumab,
	5, 5 5 5 1 1 1 1 0 1 2 0 2 1 1 1 1 (CITATION)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mepolizumab, reslizumab, benralizumab)간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4)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 (mepolizumab, reslizumab, benralizumab)에서 omalizumab으로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149] Pemirolast potassium 시럽제 (품명: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기관지천식, 다년성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 시 만 5세 미만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1] Caffeine and sodium benzoate 주사제 (품명: 메조카주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척추천자에 의한 두통 (고시 제2017-193호, '17.11.1.)
[211] Ubidecarenone 경구제 (품명: 데카키논캡슐)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인정대상:임상적으로 근육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근생검상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의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거나 유전학적으로 상기 근육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또는 nuclear DNA 변이가 확인된 경우나.인정용량:5~15mg/kg/day, 1일 최대 600mg (고시 제2019-191호, '19.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2] Arotinolol HCl 경구제 (품명: 알말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본태성 진전 나. 본태성 고혈압(경증-중등도) (고시 제2013-127호, '13.9.1.)
[212] Dronedarone 경구제 (품명 : 멀택정)	1. 허가사항 범위(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병력을 가진 현재 정상 동율동(Sinus rhythm)인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등(영구적 심방세동 환자, 심부전의 기왕력이 있거나 현재 심부전이 있는 환자 또는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환자, 분당 50회 미만의서맥 환자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18-200호, '18.10.1.)
[212] Esmolol HCl 주사제 (품명: 브레비블록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로서 마취 및 수술 중에 빈맥이 나타날 경우: 일시용량(Bolus dose)(0.5-1mg/kg)을 3회까지 인정나. 심혈관계 질환(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가진 환자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비심장 수술시: 일시용량(Bolus dose) (0.5-1mg/kg)와 유지용량(Maintenance dose)(50-300µg/kg/min)을 인정 다. 심혈관계(Open heart) 수술시: 진료의사가 판단 하여 필요시에는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 라. 수술의 경우 외에 단시간 조절을 필요로 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사용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1~2일 정도 단기간 투여 시에는 인정함 다음 - 1) 고혈압을 동반한 대동맥 박리증 2) 고혈압성 응급증 3) 급성 심근경색증 4) 불안정형 협심증 및 심근허혈과 관련된 심실 빈맥증 5) 타 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상성 빈맥증 6) 기타 긴급상황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마취 및 수술 중급격한 혈압상승이 있는 경우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12] Pilsicainide HCl 경구제 (품명 : 썬리듬캡슐)	허가사항 범위(다른 부정맥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빈맥성 부정맥) 중 심방세동에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4] Ambrisentan 경구제 (품명: 볼리브리스정 5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 사항" 및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 WHO 기능분류 단계 III에 해당하는 WHO Group I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아래 질환으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 1)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Idiopathic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2) 가족성 폐동맥 고혈압(Familial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3) 교원성혈관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llagen vascular disease) 4) 에이즈 감염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HIV infection) 5) 약물 및 독소와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drug and toxins) 6) 문맥고혈압이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portal hypertension) 7)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s)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치료 효과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다. 투여시작 전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를 측정하여야 하며, 임신 가능한 여성의 경우 투여시작 전 임신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임을 확인한 후 투여하여야 함. ※ 허가사항 중 경고와 금기사항도 반드시 확인토록 함. 라. 금기환자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2) 수유부 3) 중증의 간장애 환자(간경변을 동반 혹은 비동반한 간장애) 4) AST, ALT 수치가 기저치에서 정상치상한의 3배를 초과한 환자 5) 이 약의 성분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 (고시 제2019-93호, '19.6.7.)
[214] Azilsartan medoxomil potassium 경구제 (품명:이달비정 20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본태성 고혈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215호, '17.12.1.)
[214] Bosentan hydrate 경구제 (품명: 트라클리어정 62.5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허가사항 중 폐동맥고혈압에 투여 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대상환자
	○ WHO 기능분류 단계 Ⅲ, Ⅳ에 해당하는 WHO
	Group I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다음의 질환으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
	- 다 음 -
	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Idiopathic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나) 가족성 폐동맥 고혈압(Familial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다) 교원성혈관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llagen vascular disease)
	라)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s) 마) 문맥고혈압이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portal hypertension)
	2) 치료 효과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나. 허가사항 중 활동성 수지/족지 궤양증(digital
	ulcer)이 있는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환자
	에게 투여 시 6개월간 인정 (단, 6개월 이상 투여 시
	투여소견서 첨부하여야 함.)
	다. 투여시작 전과 그 이후로 최소한 한 달에 한번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를 측정하여야 하며, 임신 가능한
	여성의 경우 투여시작 전 임신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임을 확인한 후 투여하여야 함.
	※ 허가사항 중 경고와 금기사항도 반드시 확인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라. 금기환자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투여 시작 전 임신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2) 중등도 또는 중증의 간장애 환자(간장애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3) Cyclosporin, Tacrolimus, Sirolimus를 투여중인 환자 4) Glibenclamide를 투여중인 환자 5)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고시 제2020-217호, '20.10.1.)
[214] Doxazosin 경구제 (품명:카딜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14] Fimasartan potassium 경구제 (품명:카나브정 30mg 등)	허가사항 범위(본태성 고혈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214] Iloprost 흡입액 (품명 : 벤타비스흡입액)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및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대상환자 뉴욕심장협회(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 III, IV에 해당하는 WHO Group I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다음의 질환으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문	## ## ## ## ## ## ## ## ## ## ## ##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심한 관상동맥심장질환 또는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 지난 6개월 이내에 심근 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면밀한 의학적 관찰 하에 있지 않은 대상부전 심부전, 중증의 부정맥, 폐울혈이 의심되는 환자, 지난 3개월 이내에 뇌혈관 질환(예, 일과성 허혈성 발작,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환자 4) 정맥 폐색성 질환으로 인한 폐고혈압 환자 5) 폐고혈압과는 상관없이 임상적으로 심근기능장애를 지닌 선천성 또는 후천성 판막 결함 환자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7) 신장애환자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30mL/min 이하인 환자) (고시 제2019-93호, '19.6.7.)
[214] Macitentan 경구제 (품명: 옵서미트정 10밀리그램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 사항" 및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 WHO 기능분류 단계 Ⅲ에 해당하는 WHO Group Ⅰ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다음의 질환으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 - 다 음 - 1) 특발성 폐동맥고혈압(Idiopathic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2) 유전성 폐동맥고혈압(Heritable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3) 결합조직질환과 연관된 폐동맥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nnective tissue disorders)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s) 나. 치료 효과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다. 투여시작 전과 그 이후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를 측정하여야 하며, 임신 가능한 여성의 경우 투여시작 전 임신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임을 확인한 후 투여하여야 함. ※ 허가사항 중 경고와 금기사항도 반드시 확인토록 함.
[214] Phenoxybenzamine 경구제 (품명 : 디벤지란캡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 (Pheochromocytoma)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2)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3) 특정형태의 고혈압 4)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 (고시 제2019-171호, '19.8.1.)
[214] Selexipag 경구제 (품명: 업트라비정 200마이크로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및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WHO 기능분류 단계 III에 해당하는 WHO Group I 폐동맥 고혈압 환자 중 다음 질환으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로서 ERA 및/또는 PDE-5 inhibitor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ERA 및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모두 금기인 경우 - 다 음 - 1)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Idiopathic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2) 유전성 폐동맥 고혈압(Heritable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3) 결합조직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nnective tissue disorders) 4)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s)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대상환자 중 ERA계 및 PDE5i계 폐동맥고혈압약제에 모두 금기인 경우 동 약제의 단독투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병용요법 대상환자 및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치료 효과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약물상호작용,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214] Sildenafil 경구제 (품명: 파텐션정 20밀리그램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및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질산이소소르비드, 아밀나이트레이트, 니트로프루싯 나트륨)라도 정기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환자 3) 중증 간부전환자 4) 저혈압 (혈압 90/50mmHg 미만) 또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휴식시 수축기 혈압 170mmHg 초과, 휴식기 이완기 혈압 100mmHg 초과) 5) 지난 6개월 이내 심근경색, 뇌졸중,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등이 있었던 환자 6) 색소성 망막염(retinitis pigmentosa) 환자 (이들 환자 중 일부는 망막 포스포디에스테라제의 유전성 질환을 가짐) 7) 이전의 PDE5 저해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맥 전방허혈성시신경증(Non-arteritic anterior ischemic optic neuropathy, NAION)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이 손실된 환자 (고시 제2019-93호, '19.6.7.)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 (품명: 레모둘린 주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및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대상환자

구 분	세부인정기	l준 및 방법
	2) 기족성 폐동맥 고혈압 hypertension)	(Familial pulmonary arterial
	3) 교원성혈관질환과 관	련된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on associated with collagen
	vascular disease)	
	•	련된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n associat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s)	ii associated with congenitar
	•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1-17 1
	, ,,	l도자를 통해 폐동맥고혈압이
	확진 [*] 되고, WH() 기능분류 단계 IV에 해당
	하면서, 아래의 지	l표 중 한 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동 약제의 및	단독투여를 인정함.
	* 환자의 상태로 약	인해 우심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초음파 검사	구상 'peak tricuspid regurgitation
	velocity 3.40	(m/s)'등 폐동맥 고혈압을
	확실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0}	래 -
	지표	기준
	6분 보행거리(6MWD)	165m 미만
	운동부하심폐검사	Peak
	(Cardiopulmonary exercise	VO ₂ <11ml/min/kg(<35% pred.)
	testing)	VE/VCO ₂ slope≥45 BNP>300ng/l
	NT-proBNP plasma levels	NT-proBNP\1400ng/l
	Imaging(echocardiography,	RA area>26cm²
	CMR imaging)	Pericardial effusion
	혈류역학검사지표	RAP>14mmHg
	(Hemodynamics)	CI(2.0 1/mim/m ² SvO ₂ (60%
		JV 02\00/0

SvO₂<60%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대상환자 중 (가)의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존의 폐동맥고혈압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금기인 경우 동 약제의 단독투여를 인정함. ※ 기존의 폐동맥고혈압약제(Ambrisentan 경구제, Bosentan 경구제, Macitentan 경구제, Sildenafil 경구제, Iloprost 흡입액)에 반응하지 않아 변경 투여하는 경우에는 동 약제가 적정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기존치료제는 용량을 서서히 줄이고, 동 제제는 용량을 서서히 늘려 용량을 조절함 용량조절 기간 (최대 3개월) 동안 기존 치료제 및 동 제제 급여인정 2) 병용요법 대상환자 및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다. 치료 효과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약물상호작용,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214] Zofenopril calcium 경구제 (품명: 조페닐정7.5밀리그램,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고혈압: 경도 내지 중등도의 본태성 고혈압 나.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의 증상 또는 징후 유무에 관계없이, 혈액동력학적으로 안정하고 혈전용해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고시 제2013-127호, '13.9.1.)

л н	UIHOIZIZ II HHH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7] Efonidipine 경구제 (품명: 핀테정 등)	허가사항 범위 중 "본태성 고혈압, 신실질성 고혈압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217] Nicorandil 주사제 (품명: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경우 나.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 (고시 제2022-207호, '22.9.1.)
[217] Nifedipine 경구제 (품명: 아달라트오로스정30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조기 진통(가진통)'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임신 24주에서 36주 사이에 자궁 수축이 있고 조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용법·용량 ○ 10-30mg 투여 후 자궁수축억제 정도에 따라 10-20mg을 4-8시간마다 또는 1일 용량으로 30-120mg 투여 다. 저혈압 임신부에는 주의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20-161호, '20.8.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7] Nimodipine 경구제 (품명 : 삼진니모디핀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동맥류에 기인한 지주막하출혈 후의 뇌혈관경련에 의한 허혈성 신경장애의 예방 및 치료 나.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으로 인한 여러 증상의 개선 ○ 혈관 영상학적으로 가역적 뇌혈관 수축 소견을 보이면서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고시 제2019-132호, '19.7.1.)
[217] Nitroglycerin 주사제 (품명: 페링가니트0.1%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경우 나. 이형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 경련 유발 검사 시경련 완화다.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고시 제2022-207호, '22.9.1.)
[217] Trimetazidine 경구제 (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바스티난정 등)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성인: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 (고시 제2014-34호, '14.3.1.)

[217] Verapamil HCI 주사제 (품명 : 일성이쇼틴주사) (공미국민구선구) (공미국민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구선

구 분 [218] 허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218] 허	
(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1.	금 토록 함. - 아 래 -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투여 - 다 음 - 가.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확진된 경우*: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100mg/dL인 경우) ※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확진은 Simon Broome(2006)에서 possible 또는 Dutch(2004) 진단기준에서 probable 이상(6점이상)에 부합하는 경우임 나. 스타틴 불내성: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 (HMG -CoA reductase inhibitor 포함) 투여 후 근육 증상이 있으면서 creatine kinase(CK) 수치가 상승한 근염(Myositis) 또는 횡문근용해증(Rhabdomyolysis)이 발생한 경우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초고위험군** 성인 환자에서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70mg/dL인 경우)에 추가 투여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초고위험군
[218] Clopidogrel 경구제 (품명: 피도글정 등)	1.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 (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가.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나.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 - 다 음 - 불안정성 협심증, 비Q파 심근경색 환자 1) 약물치료 2) 경피적관상동맥증재술(PCI)(Stent 시술을 하거나하지 않은 경우) 3)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다. 한 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협인자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이낮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증을 포함한 죽상혈전증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Clopidogrel 경구제(복합제 제외)의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투여대상 :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된 소아(만 18세이하)환자나. 투여조건 1) 단독요법 : 아스피란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인 경우 2) 2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혈전위험이 있으면서 직경 5㎜이상에서 8㎜미만의 관상동맥류를 동반한 환자로서 warfar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와파란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등)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3제 요법(Aspirin + 항응고제* + Clopidogrel) : 최근 6개월 이내에 관상동맥 혈전 과거력이 있으면 서 직경 8mm 이상의 거대동맥류를 동반한 환자 ※ 혜파린, 와파린, New Oral Anti-Coagulant 등 다. 투여용량 1) 24개월 이하 소아환자: 0.2mg/kg/day 2) 24개월 초과 소아환자: 1.0mg/kg/day ※ 최대 투여용량 75mg/day 라. 투여기간 - 환자상태 및 관상동맥 확장의 호전 여부에 따라 투여 기간을 결정함. (다만, 나목 3)의 경우 Clopidogrel 경구제는 6개월까지 인정) (고시 제2020-79호, '20.5.1.)
[218] Clopidogrel + Aspirin 복합경구제 (품명 : 클로스원캡슐 등)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급성관상동맥증후군[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비Q파심근경색 환자에 있어서 약물치료 또는 경피적관상동맥증재술(PCI)(stent 시술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및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를포함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허혈)의 개선 나. 한 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이낮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함한 죽상혈전증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volocumab 주사제 (품명 :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 만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고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불충분한 경우(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70mg/dL인 경우)에 추가투여 - 다 음 - 가. 치료 전 총 콜레스테롤〉500mg/dL 혹은 LDL-C≥ 300mg/dL이면서 10세 이전에 cutaneous 혹은 tendon xanthoma가 발견되었거나 양쪽 부모님이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합당한 LDL-C수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나. 유전자검사(LDLR, LDLR-AP1, APOB, PCSK9 등)로확진된 경우 2.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투여 - 다 음 - 가.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확진된 경우**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100mg/dL인 경우) **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확진은 Simon Broome(2006)에서 possible 또는 Dutch(2004)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 E	지나는 18기는 및 8월 집단기준에서 probable 이상(6점이상)에 부합하는 경우임 나. 스타틴 불내성: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 (HMG-CoA reductase inhibitor 포함) 투여 후 근육 증상이 있으면서 creatine kinase(CK) 수치가 상승한 근염(Myositis) 또는 횡문근용해중(Rhabdomyolysis)이 발생한 경우 3.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 초고위험군' 성인 환자에서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70mg/dL인 경우)에 추가 투여 * 초고위험군 - 주요 ASCVD ¹⁾ 2개 이상이거나 - 주요 ASCVD ¹⁾ 1개와 고위험요인 ²⁾ 2개 이상인 경우 (ASCV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1) 주요 ASCVD • 최근 1년 이내 급성 판상동맥 증후군 • 심근경색 과거력(상기의 최근 1년 이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제외) • 허혈성 뇌졸증 과거력 •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ABI〈0.85인 파행의 과거력 또는 이전의 혈관재생술이나 절단) • 복부대동맥류 2) 고위험요인 • 연령 65세 이상 •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 주요 ASCVD가 아닌 관상동맥우회술이나 경피적 관상동맥증재술 과거력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당뇨병 고혈압 만성신장질환(eGFR 15-59mL/min/1.73m²) 현재 흡연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 투여에도 불구하고 LDL-C≥100mg/dL인 경우 울혈성 심부전 과거력 (고시 제2024-37호, '24.3.1.)
[218] Ezetimibe 경구제 (품명:이지트롤정 등)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경우 나.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금기인 경우 (고시 제2016-66호, '16.5.1.)
[218] Ezetimibe+Ator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 : 아토젯정 등), Ezetimibe+pita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 (품명 : 리바로젯정 등), Ezetimibe+Rosuvastatin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고시 제2021-245호, '21.10.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alcium 복합경구제 (품명: 로수젯정 등), Ezetimibe+Sim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 바이토린정 등)	
[218] Ezetimibe+Fenofibrate 복합경구제 (품명 : 에제페노정)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 고지혈증 환자 (고시 제2022-24호, '22.2.1.)
[218] Lovastatin 경구제 (품명:로바로드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에는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의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부신백질이영양증 (Adrenoleucodystrophy)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 (품명: 오마코연질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또는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의 경우로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인정함. - 다 음 - 1)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g까지 인정 2)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g까지 인정 나. 순수 고TG혈증의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 인정하며, 복합형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인정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고시 제2015-18호, '15.2.1.)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아트맥콤비젤 연질캡슐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복합형(IIb) 이상 지질혈증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Ator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2)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 (TG) 수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나)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나.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에 명시한 LDL-C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위험요인① 흡연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로수메가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1)과(2)를 모두 충족하는 복합형(IIb)이 상지질혈증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연질캡슐 등)	(1) Rosu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2)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 이드(TG) 수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나)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나.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mg/dL)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중 남자〈만 55세, 여자〈만 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⑤ 연령(남자≥만 45세, 여자≥만 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고시 제2021-152호, '21.6.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S-amlodipin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고시 제2024-130호, '24.7.1.)
[219] Abciximab 주사제 (품명: 클로티냅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환자에게 0.25mg/kg 일시(Bolus) 관상동맥주입 후 12시간동안 10μg/min 용량으로 연속 정맥주입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219] Adenosine 주사제 (품명: 아데노코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경우 나.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 (고시 제2022-207호, '22.9.1.)
[219] Alprostadil 주사제 (품명: 에글란딘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 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의한 사지궤양 및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투여기간 및 용량: 1일 5~10㎏씩 4주 범위 내에서 투여나.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 투여 시 투여기준 1) 임상증상 및 이학적소견 등 다음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은 충족되어야함 다음 - 가) 임상증상: 통증, 둔통, 경련, 지각둔화, 근육의피로감 등나) 이학적 소견 (1) 시진: 거상하수시험에 따른 혈액충만속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촉진, 청진: 혈관촉진 및 청진에 따른 맥박의 약화 및 소실, 혈관잡음 확인, 냉감, 근육약화 등다) 검사방법: (1) 침습적 검사방법(혈관조영술) (2) 비침습적 검사방법(도플러 등) 2) 외래에서 1차적으로 경구용 혈류개선제를 사용하였으나 통증이 소실되지 않아 입원하여 경구용제로 2-3회조절이 안 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타혈류개선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를 초과하여 간이식에 투여한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4.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다음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맥폐쇄병(VOD after HSCT; veno-occlusive disease after hematopoietic stem-cell transplantation) 고위험인 환자에게 저용량 헤파린을 사용할수 없는 경우(혈소판이 낮은경우,출혈경향,알러지 등)에 한하여 예방목적으로 투여한경우
[219]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 (품명: 알푸로텍스주 20마이크로그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의 사지궤양 및 안정 시 동통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동맥 내 투여는 1일 10~15µg을 3주까지 인정(동맥내주입 시 필요한 펌프는 산정할 수 없음)

7 1	WHO 12121 7 21 WW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정맥 내 투여는 1일 알프로스타딜로서 40~60μg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폐동맥폐쇄상병에 심장수술 후 발생한 폐동맥고혈압 치료목적으로 투여한 경우(0.1μg/kg/min으로 최대 10일 범위 내 인정) 나. 간이식에 허가(용법・용량)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 다. 폐이식을 위한 공여자 폐 적출 시 사용한 경우 1,000μg 까지 인정 4.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맥폐쇄병(VOD after HSCT; veno-occlusive disease after hematopoietic stem-cell transplantation) 고위험(High risk)인 환자에게 저용량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혈소 판이 낮은 경우, 출혈경향, 알러지 등)에 한하여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고시 제2022-207호, '22.9.1.)
[219] Alteplase 주사제 (품명 : 액티라제주사)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폐색전증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1) 동 약제를 반드시 투여하여야 하는 임상적 기준(Criteria) 가) 저혈압 또는 산소투여로 호전되지 않는 저산소혈증

7 H	
구 문	세부인성기준 및 방법
모 분	(hypoxemia) 나) 심초음파도상 우심실 이상운동증(dyskinesia) 다) extensive ileofemoral thrombosis ※ 위 Criteria 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투여가능 2) 투여시기, 기간 및 용량 가) 투여시기: 증상발현 후 2주 이내 나) 기간 및 용량: 허가사항대로 100㎜을 2시간에 걸쳐 정맥주입 나. 급성 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의 경우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1치료기간 중 최대 100㎜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급성 허혈뇌졸중에 증상 발현 후 4.5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0.9㎜/kg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말초혈관폐색증 나. 급성 뇌동맥혈전증의 혈전용해술 다. 두개강내 혈종의 용해목적으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 라. 폐렴주위 홍수(Parapneumonic pleural effusion)에 흥관삽관(Thoracotomy catheter)을 하였으나 중격(Septum)이 형성되어 흉수(Pleural fluid)가 잘 배액 되지 않는 경우 마. 중심혈관 카테터가 막혔을 경우 헤파린 주입(Flushing)을 반복 실시하여 효과가 없는 경우 바. 인공판막혈전증(Prosthetic valve thrombosis)의 정맥 내 혈전용해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9] Argatroban 주사제 (품명: 아가론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폐색증에서의 사지궤양, 안정 시 동통 및 냉감의 개선에 투여 시는 혜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에 의한 혈전증(Thrombosis) 환자에 한하여 1일 20mg씩 4주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23-37호, '23.3.1.)
[219] Aspirin 경구제 (품명: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투여기간 - 배란일(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임신확인 일까지 (고시 제2018-97호, '18.6.1.)
[219] Aspirin 25mg + Dipyridamole 200mg 경구제 (품명: 아디녹스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뇌의 일과성 허혈 또는 혈전에 의한 허혈성 뇌 졸중을 경험한 환자의 뇌 졸중 재발에 대한 위험성 감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18호, '18.2.1.)
[219] Citicoline 경구제 (품명 : 소마지나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중등도 - 중증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을 시작한 경우 6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19] Citicoline 주사제 (품명 : 참시티콜린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촉진. 다만, 발작 후 1년 이내에 재활 및 내복약물요법(뇌대사부활제, 뇌순환개선제 등의 투여)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하지의 마비가 비교적 약한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219] Dobesilate calcium 경구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품명 : 일성독시움정 등)	- 아 래 - 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모세혈관장애 나. 정맥기능부전,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혈전후증후군, 말초울혈성부종 (고시 제2013-127호, '13.9.1.)
[219] Ferric citrate 경구제 (품명: 네폭실캡슐 500mg)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수치가 4.0mg/dL 이상에서 인정함. ※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고하여알루미늄 함유 제제와 같이 투여해서는 안됨.
[219] Finerenone 경구제 (품명: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로서, ACE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하용(내약) 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에도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표준요법(ACE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과병용하여 투여함. 다만,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만성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는 제외함. - 다 음 - 1) uACR > 300mg/g 또는 요 시험지봉 검사(urine dipstick test) 양성(1+ 이상) 2) 25≤eGFR〈75mL/min/1.73m²인 경우 나. eGFR이 15mL/min/1.73m²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투여 중단하여야 함. (고시 제2024-20호, '24.2.1.)
[219]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 (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 Ginkgo biloba extract제제를 아세틸콜린분해역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와 병용시 1종은 본인 일부부담하고,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부담함. 나.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다. 간혈성파행증
[219] Icatibant 주사제 (품명 : 피라지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프리필드시린지)	- 아 래 - ○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HAE)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발작 시(acute attacks) 인정하며, 자가주사로 2회분까지 처방 가능함. (고시 제2021-65호, '21.3.1.)
[219] Ivabradine 경구제 (품명: 프로코라란정)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 중 동리듬(sinus rhythm)을 가지고, 심박수가 분당 75회 이상이며, LVEF가 35% 이하인 환자로서 1) 베타차단제에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 2)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를 포함한 표준치료에 병용투여하는 환자. 단, 이들 약제를 4주간 사용 후 병용하여야함. 나. 상기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LVEF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환자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19] Kallidinogenase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경구제 (품명: 카나쿨린정 등)	- 아 래 - ○ 고혈압, 메니에르증후군, 폐색성 혈관염(버거병)에 의한 말초순환장애 (고시 제2014-17호, '14.2.1.)
[219]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 (품명: 포스레놀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증 인(P) 수치가 5.6mg/d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에서 인정함. (고시 제2018-174호, '18.9.1.)
[219] Limaprost α-cyclodextrin 경구제 (품명 : 동아오팔몬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 (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 (고시 제2023-296호, '24.1.1.)
[219] L-Carnitine (품명 : 엘칸정·엘칸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카르니틴 결핍의 임상증상(Skeletal muscle weakness,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ethargy, Skeletal muscle cramps, Cardiomyopathy 등)이 있으면서 검사 상 카르니틴 결핍이 확인되는 경우 나. 생화학검사 소견과 유전자 검사(또는 효소분석)에서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이소발레린산혈증 또는 글루타릭산혈증으로 진단된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경구제에 한함)
	- 아 래 - 가. 인정대상 : 임상증상으로 근육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근생검상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의 특징 적인 소견이 관찰되거나 유전학적으로 상기 근육병 증을 유발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또는 nuclear DNA 변이가 확인된 경우 나. 인정용량 : 30~100mg/kg/day, 1일 최대 3g (고시 제2022-207호, '22.9.1.)
[219] Milrinone 주사제 (품명 : 프리마코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타약제(경구용 디기탈리스류 강심제, 이뇨제, 혈관 이완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경우에서 단기간 (2~3일간) 투여 시 인정 나. 심장수술후 저심박출량을 포함한 급성심부전에 인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9]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 (품명:사미온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뇌경색후유증 (고시 제2015-239호, '16.1.1.)
[219] Pentoxifylline 경구제 (품명: 트렌탈정400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말초동맥순환장애(간헐성파행, 휴식시 동통, 당뇨병성 혈관병증, 위축증, 혈관신경병증)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음 - 가. 투여대상:분별함수* 점수가 32점 이상인 중증알코올성 간염환자 나. 투여용량 및 기간:1회 400mg을 1일 3회, 최대 4주이내 ※ 분별함수(Maddrey's discriminant function) = 4.6×[Prothrombin time of patient - Prothrombin time of control(seconds)] + Serum bilirubin (mg/dL) (고시 제2013-127호, '13.9.1.)
[219]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 (품명 : 엔트레스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필름코팅정 50mg 등)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하여 투여함. - 단,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 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3-120호, '23.7.1.)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 (품명: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 (품명: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인(P) 수치가 4.0mg/dL 이상에서 인정함. (고시 제2018-174호, '18.9.1.)
[219] Sodium ozagrel 주사제 (품명 : 키산본에스주)	허가사항 범위 중 '뇌혈전증(급성기)에 수반하는 운동장애의 개선'에 급성기 치료로서 1주일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219]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 (품명: 벨포로츄어블정)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인(P) 수치가 6.0mg/d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에서 인정함. (고시 제2019-240호, '20.1.1.)
[219] Tenecteplase 주사제 (품명 : 메탈라제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성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의 경우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1치료 기간 중 최대 50mg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19] Tirofiban HCl (품명 : 아그라스타트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적응증 1) 불안정형 협심증(Unstable angina)(Post-infarction angina 포함) 또는 비ST상승 심근경색(Non-ST elevation MI, non-Q-wave MI)으로서 2) 흉부동통(Chest pain) 및 Troponin(or CK-MB) level 상승 또는 흉부동통(Chest pain) 및 심전도 (EKG) 변화가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헤파린과 병용하여 총 72시간 (최대 3일) 이내(중재적시술을 하는 경우도 포함)인정.
[219] Tolvaptan 경구제 (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가. 저나트륨혈증의 치료 1) 투여대상: 심부전,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 (SIADH)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혈량성 (hypervolemic) 또는 정상혈량성(euvolemic)인 저나트륨혈증의 치료로서, 기존 치료(수분제한, 고장성 생리식염수 또는 이뇨제 투여 등)를 할 수 없거나 반응하지 않는 혈청 나트륨 농도가 125mEq/L 미만인 경우 2) 투여기간: 30일 이내 3)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함. 나. 만 18세 이상 성인의 상염색체우성 다당신장병 (ADPKD, autosomal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ase)에 낭종의 생성 및 신기능 저하 진행의 지연 1) 투여대상: 성인의 상염색체우성 다당신장병(ADPKD) 환자로서 다음 가),나),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최초 투여 시 만성 신질환 (Chronic Kidney Disease) 2-3단계에 해당하면서, 나) 빠르게 진행하는(rapid progression) ADPKD로 진단된 환자로서, 다) 식약처 위해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신장내과 전문 의에 의하여 동 약제 투여 시 ※ 빠르게 진행하는(rapid progression) ADPKD 진단법 ・ Mayo class 1C, 1D, 1E에 해당하는 경우(MRI 또는 CT 촬영 후 ellipsoid 공식 적용) 2) 투여기간: 첫 투여 18개월 동안은 1회 처방 시 최대 30일까지, 그 이후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이 약의 최초 투여 개시 전과 투여 기간 첫 18개월 동안은 매월, 그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와 총빌리루빈 수치 및 전해질 수치 (혈청 나트륨 농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진료비 청구 시 모니터링에 따른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함. 4) 투여 중단 기준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투약을 영구히 중단토록 함 - 다 음 - ○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5배를 초과하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고 총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2배를 초과(또는 국제 정상화비율이 1.5 초과)하는 경우 ○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고 간손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나) 약제 투약 중 CKD 5단계로 진행되는 경우 (고시 제2022-250호, '22.11.1.)
[219] Vericiguat 경구제 (품명: 베르쿠보정 2.5mg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jection Fraction)이 45% 미만인 환자로서 4주이상의 표준치료 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다음 - 1) 6개월 이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3개월 이내심부전 악화로 외래에서 정맥 내이뇨제를 투여한경우(단, 정맥 내이뇨제 투여는 충분한 내약 용량의경구이뇨제 사용 후 투여하는 경우에 한함) 2) 동리듬(sinus rhythm)인 경우 BNP≥ 300 pg/mL또는NT-proBNP≥ 1,000 pg/mL,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인경우BNP≥ 500 pg/mL또는NT-proBNP≥ 1,600 pg/mL *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차단제 또는 Sacubitril · Valsartan를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단, 부작용 또는금기 등으로 상기약제를 투여할수 없는 경우에는투여소견서 첨부시 사례별로 인정함.)
[219] vitis vinifera ext. 경구제 (품명: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2.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황반부종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이하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당뇨 원인요법과 병용하여 보조제로 투여 (고시 제2022-56호, '22.3.1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0] 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품명 : 플루티폼흡입제)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고시 제2014-34호, '14.3.1.)
[220]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품명: 렐바엘립타)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나. 만성폐쇄성폐질환 1)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경우 또는 2)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 소견서 참조하여 인정 ※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악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재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고시 제2016-66호, '16.5.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1] 허 Caffeine citrate 요 주사제 (품명: 네오카프주 등) Caffeine citrate 액제 (품명: 네오카프액)	기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가가 부담함. - 아 래 - 가. 미숙아의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에 투여한 경우 1) 투여대상: 가) 일반적인 피부자극에도 무호흡(20초 이상)이 재발하는 경우 나) 20초 미만인 경우에는 청색증이나 서맥을 동반하는 경우에 투여 가능함 2) 중단시기: 무호흡(Apnea-free period)이 5~7일간 없는경우 나. 인공호흡기(침습적 방법 및 비침습적 방법 포함)를이탈하는 과정에서 투여한경우 1) 투여대상: 인공호흡기를 이탈하는 과정에 있는교정연령 33주 미만의 미숙아 2) 투여시기: 인공호흡기를 이탈하기 24시간 전부터,혹은 갑작스럽게이탈이 된 경우에는 6시간이내 3) 중단시기: 성공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고 무호흡(Apnea-free period)이 5~7일간 없는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2] Acetylcysteine 주사제 (품명: 뮤코스텐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 중 점액용해 목적의 고용량 정맥주사 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 유사효능의 투여비용이 저렴한 정맥용 주사제에 불응성 이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6-223호, '16.12.1.)
[222] Acetylcysteine 흡입액 (품명: 뮤코미스트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가습기에 혼합하여 흡입(Inhalation)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22] Ambroxol HCl 주사제 (품명: 앰브로주사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만성 호흡기질환: 만성 기관지염, 천식성 기관지염, 기관지천식의 급성 발작 나. 수술 전·후 폐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고시 제2017-193호, '17.11.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2]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 (품명: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나. 만성폐쇄성폐질환 1) FEV1(1초 강제호기량,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경우 또는 2)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 소견서 참조하여 인정 ※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222] Ciclesonide 외용제 (품명: 알베스코흡입제 160,80)	허가사항 범위(기관지 천식의 예방적 치료) 및 [일반 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2]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품명: 아뉴이티 100엘립타 등)	허가사항 범위(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천식의 유지 치료) 및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8호, '18.3.1.)
[222] Formoterol fumarate	각 약제의 규격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기재토록 함. 나. 만성폐쇄성폐질환 1)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경우 또는 2)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참조하여인정 생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참조하여인정 생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경우를 말함.
[222]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 (품명: 푸로스판 시럽등)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적용을 예외함. (고시 제2019-21호, '19.2.13.)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2] Salbutamol 경구제 (품명 : 부광살부타몰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의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안면견갑상완형 근이영양증(Fascioscapulohumeral muscular dystrophy)' 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22]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품명 : 벤토린흡입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세기관지염 등 소아의 하기도질환'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22]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품명: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단, 3~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나. 만성폐쇄성폐질환 1)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경우 또는 2)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소 견서 참조하여 인정 ※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고시 제2015-205호, '15.12.1.)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그 브	세브이저기즈 미 바버
十 正	세구한경기판 및 정비
만성폐쇄성폐질환	제부인정기준 및 방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유지요법 ※ 대상 약제: [단일제] · Aclidinium bromide 흡입제 · Indacaterol maleate 흡입제 · Umeclidinium 흡입제 [복합제] · Formoterol fumarate + Aclidinium bromide 흡입제 · Indacaterol male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 · Olodaterol + Tiotropium 흡입제 · Vilanterol + Umeclidinium 흡입제 (고시 제2022-56호, '22.3.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9]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흡입제 (품명: 트림보우흡입제100/6/ 12.5)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만성폐쇄성폐질환 ○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병용요법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중증의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FEV1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인 경우 또는 2)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입원으로 이어진 악화가 1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투여 소견서 참조하여 인정 ※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2. 천식 ○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중증의 악화 경험이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천식환자의 유지요법 (고시 제2023-296호, '24.1.1.)
[229] Benralizumab 주사제 (품명: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1), 2)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CS-LABA: Inhaled CorticoSteroids-Long Acting
	Beta-2 Agonist
	LAMA: 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 다음 -
	1)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 cells/@ 이상이면서
	-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4번 이상 발생하였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prednisolone 5mg/day 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2)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 이상이면서
	-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1년마다 평가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서, 전반적인 천식조절을
	확인한 환자에 대한 투여 소견서 제출 시 지속 투여를 인정함.
	(단,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이더라도 치료효과를
	평가할 수 있음.)
	병기일 구 있급.) - 다 음 -
	- 나 금 - 1) 천식 급성악화의 빈도가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1) 전적 급경역와의 번도가 지표 시작 전 내미 50% 약정 감소
	2) 지속적인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환자의 경우 천식증상 조절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면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을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 3. 중증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omalizumab, mepolizumab, benralizumab, reslizumab)간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4. 교체투여 가.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 (mepolizumab, benralizumab, reslizumab)간 교체투여 및 동 약제에서 omalizumab으로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omalizumab 주사제 투여 후 동 약제로의 교체투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투여소견서 첨부 시사례별로 급여 인정함 다 음 - 1) omalizumab 주사제를 3-6개월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동 약제의 투여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229] Indacaterol acetate+ Glycopyrronium bromide+ Mometasone furoate 흡입제 (품명: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중증의 악화 경험이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천식환자의 유지요법 (고시 제2021-234호, '21.9.1.)

구 분	UITOIAJA UI HEH
<u> </u>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9] Indacaterol acetate +Mometasone furoate 흡입제 (품명: 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80 마이크로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 및 만12세 이상 청소년 천식환자 단, 3~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고시 제2021-234호, '21.9.1.)
[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품명: 서팩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다 음 - 1) 환아의 호흡곤란증상이 뚜렷하고, 2) 흉부방사선 소견: 호흡곤란증후군(RDS)의 특징적소견(양 폐에 미만성의 망상과립상음영, 공기. 기관지음영과 연무상이 출현하는 경우)이 있으며, 3) 기계적 환기 요구도: 적정한 혈중산소분압(50-80mmHg)을 유지시키기 위한 인공호흡기의 흡입산소농도가 40%(FiO₂)0.4)를 초과하는 경우 ※ 인공호흡기(침습적 방법 및 비침습적 방법 포함)사용은 환아의 전반적인 상태(체중, 폐기능 상태, 기타 신체 장기들의 상태 등)를 고려하여 의학적판단하에 시행되어야 함. 2. 미숙아에 대한 조기투여 요법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 ## ## ## ## ## ## ## ## ##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장기들의 상태 등)를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18-280호, '19.1.1.)
[229] mepolizumab 주사제 (품명: 누칼라주)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 성인 증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1), 2)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CS-LABA: Inhaled CorticoSteroids-Long Acting Beta-2 Agonist LAMA: 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 다 음 - 1)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 cells/교 이상이면서 -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4번 이상 발생하였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prednisolone 5mg/day 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2)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교 이상이면서 -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교 이상이면서 -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2) 지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현중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교 이상이면서 -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1년마다 평가하여 다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서, 전반적인 천식조절을 확인한 환자에 대한 투여 소견서 제출 시 지속 투여를 인정함.
	(단,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이더라도 치료효과를 평가할 수 있음.) - 다 음 - 1) 천식 급성악화의 빈도가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 2) 지속적인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천식증상 조절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면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을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 3. 중증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omalizumab,
	mepolizumab, reslizumab, benralizumab)간 병용 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4. 교체투여 가.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 (mepolizumab, reslizumab, benralizumab)간 교체투여 및 동 약제에서 omalizumab으로의 교체 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omalizumab 주사제 투여 후 동 약제로의 교체투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투여소견서 첨부 시사례별로 급여 인정함. - 다음 - 1) omalizumab 주사제를 3-6개월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동 약제의 투여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9] Pirfenidone 경구제 (품명: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 고해상 흉부전산화단층촬영(HRCT)과/또는 수술적폐조직 생검(surgical lung biopsy)으로 확진된 특발성폐섬유증 환자로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 다음에 해당하는경우 - 단, 교원성 질환 또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는 간질성폐질환은 제외함. - 다음 - 1) Predicted forced vital capacity(FVC) 90% 이하이거나 Predicted 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DLco) 80% 이하2) Predicted FVC 90% 초과하면서 Predicted DLco 80% 초과한 환자 중 아래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경우 - 아 래 - 가)폐기능 저하연간 Predicted FVC 감소량이 10% 이상 이거나연간 Predicted FVC 200ml 이상 감소나 임상증상 악화다 흥부영상 악화소견
[229] Reslizumab 주사제 (품명 : 싱케어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구 분
一

	WHOISIS SLUW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 교체투여 기 공공 호기구리 원리 회기에 가오된도 개무하고 개개
	가.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
	(mepolizumab, reslizumab, benralizumab)간
	교체투여 및 동 약제에서 omalizumab으로의 교체 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omalizumab 주사제 투여 후 동 약제로의 교체투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급여 인정함.
	- 다 음 -
	1) omalizumab 주사제를 3-6개월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동 약제의 투여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시 제2024-130호, '24.7.1.)
[229] Roflumilast 경구제 (품명: 닥사스정500 마이크로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증상악화 병력이 있고 만성기관지염을 수반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1)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인 경우 또는 2)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소 견서 참조하여 인정 ※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필요한 경우를 말함. 나. 투여방법: 지속성 기관지확장제(LABA 또는 LAMA) 1종과 병용 투여 (고시 제2021-270호, '21.11.1.)
[229]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 (품명: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 0/25마이크로그램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의 천식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고시 제2019-191호, '19.9.1.)
[229]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 (품명: 엘라스폴100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아래 1), 2), 3), 4)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의 경우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체온〉38℃ 또는 〈36℃ 나) 심박수〉90회/분 다) 호흡수〉20회/분 또는 PaCO₂〈32mmHg 라) 백혈구수〉12,000/ݛ, 〈4,000/ݛ, 또는 간상 호중구〉10% 2) 급성폐손상의 경우 이하의 전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기능 저하(PaO₂/FiO₂ 200 이상 300mmHg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이하로 기계적 인공호흡 관리하)가 있고 나) 흉부 X선 소견에서 양측성 침윤음영이 있으며 다) 폐동맥 쐐기압이 측정된 경우에는 폐동맥 쐐기압 ≤18mmHg,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좌심방 상승의 임상소견이 없는 경우 3) 해당연령:만16세-75세 4) 폐를 포함하여 손상 장기수가 3개 이하 나. 제외대상 (아래 1), 2), 3) 조건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 하는 경우) 1) 열상 및 외상을 수반하는 급성폐손상 환자 2) 고도의 만성호흡기질환을 합병하는 환자 3) 원인질환에 대한 유효한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 다. 투여기간:14일 이내 (고시 제2013-127호, '13.9.1.)
[229] Tiotropium 흡입제 (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 등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 강제 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 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유지요법 다.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지속성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악화 경험이 있는 천식환자의 병용 유지요법 (고시 제2022-56호, '22.3.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229]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 (품명: 트렐리지엘립타 등)	지부인정기준 및 방법 각 약제별 허가시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중등도 이상의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단,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 제외) 가.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복합요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 다 음 - 1)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경우 또는 2)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 ※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 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나.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합요법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2.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중증의 악화 경험이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천식환자의 유지요법 3. 각 개별고시를 만족하여 동 약제와 동일 함량인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Umeclidinium 흡입제를 동시에 투여 중인 환자가 동 약제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여 동 약제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고시 제2024-37호, '24.3.1.)

치과구강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1] 가글 용제 (품명: 헥사메딘가글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입원환자 및 암환자: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 나. 외래환자 1) 인정용량:100ml 2) 인정용량 초과한 경우: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231] Doxycycline hyclate 20mg 경구제 (품명: 덴티스타캡슐)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치주염상병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 아 래 - ○ 치주소파 이상의 처치 후 투여 (고시 제2022-160호, '22.7.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 (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 (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 (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 (품명: 넥시움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단,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 20mg',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 40mg', Esomeprazole 10mg은 제외)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232]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Pantoprazole sodium (품명: 판토록주사 등), Esomeprazole (품명: 넥시움주 등)	1. Pantoprazole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1일 80mg씩 3일 이내 인정 2)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 치료(Chemoradiation therapy) 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4	게 무슨이기는 것 이번
	가) 투여대상 :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
	톤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
	2)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
	3)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mg/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함.
	2. Esomeprazole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
	으로 하며, 허가사항 중「식도염이 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및 식도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경우」
	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H2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
	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1) 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 치료(Chemoradiation therapy) 후 가) 투여대상 :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증상이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시인정 2)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주입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투여 시인정 3)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mg/day 용량으로 투여시최대 3일 급여인정함.
[232]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스티렌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고시 제2014-75호, '14.6.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2] Bismuth 경구제 (품명: 데놀정)	1. 허가사항 범위(위·십이지장 궤양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내에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나.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라.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2) 위축성 위염 3)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 E	세구간이기한 첫 이미
[23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Fexuprazan 경구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품명 : 펙수클루정	환자가 부담토록 함.
40밀리그램 등)	- 아 래 -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고시 제2023-23호, '23.2.1.)
[232]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H ₂ 수용체 길항 주사제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H ₂ receptor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antagonist),	- 아 래 -
cimetidine	가. 조혈모세포이식 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
(품명:타가메트주 등),	치료(Chemoradiation therapy) 후
Famotidine	1)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품명: 가스터주 등),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Ranitidine HCl	2) 투여용량 및 기간
(품명 : 잔탁주 등)	가)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
	나) 투여기간은 H ₂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
	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
	나. H ₂ 수용체 길항 주사제 중 Ranitidine HCl
	1) 투여대상상부 소화관 출혈(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염, 십이지장염, 식도염 등에 의한 출혈)
	2) 투여용량 및 기간
	가) 공복상태에서 1회 2앰플(100mg) 1일 3-4회 투여한
	경우에도 인정
	나) 투여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그 이후는 상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한 고위험군 환자의 스트레스성
	궤양예방
	1) 투여 대상
İ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가) 인공호흡기(Mechanical ventilation) 적용환자 나) 혈액응고장애(Coagulopathy) 환자 다) 두부외상 환자 라) 중증의 화상환자 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다발성 외상(Multiple trauma) 또는 패혈증(Sepsis) 또는 급성신부전(Acute renal failure)이 있는 환자 2) 투여기간: 2주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투여할 수 있음.
[232] Ilaprazole 경구제 (품명 : 놀텍정)	1. 허가사항 범위(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위궤양의 단기치료, 미란성식도염의 단기치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H.pylori)에 감염된 위·십이지장궤양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 급여까지 급여 인정함. (고시 제2018-58호, '18.4.1.)
[232] Irsogladine maleate 경구제 (품명: 가스론엔정 2mg 등, 4mg)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위궤양 나. 하기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2] Lafutidine 경구제 (품명: 스토가정10mg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나.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병변의 개선 다. Helicobacter pylori에 감염된 소화성 궤양 라. 마취전 투약 마. 역류성 식도염 치료 (고시 제2013-210호, '14.1.1.)
[232] Polaprezinc 경구제 (품명: 프로맥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에서의 위점막 병변 (미란, 출혈, 발적, 부종) (고시 제2019-252호, '19.12.1.)
[232] Roxatidine acetate HCl 경구제 (품명: 록산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위·십이지장궤양 나. 위산이 흡인될 위험(Mendelson's syndrome)이 있는 환자의 마취전 투여, 특히 분만중인 환자의 마취전 투여 다.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급성악화기의 위점막 병변 (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라. 역류성 식도염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2] S-pantoprazole 경구제 (품명 : 레토프라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급여까지 급여 인정함. (고시 제2018-174호, '18.9.1.)
[232] Sodium alginate 경구제 (품명 : 라미나지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내용액제 포함) - 아 래 - ○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고시 제2022-268호, '22.12.1.)
[232] Sulglycotide 경구제 (품명: 글립타이드정 200밀리그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위·십이지장염'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32] Tegoprazan 경구제 (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의 치료 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라.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고시 제2023-120호, '23.7.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5] 항구토제 (Aprepitant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의 "항구토제"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3. 소아 및 청소년에 투여 시는 각 약제별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참조하여 투여토록 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235]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 (품명 : 다클렉틴장용정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임신 16주(16주+6일) 이내 나. 임신 16주 이후 구역, 구토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서 다른 질환에 의한 발생이 배제된 경우 (고시 제2024-100호, '24.6.1.)

¬ 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8] 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 (품명: 루칼로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2종 이상의 경구 완하제(부피형성 완하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완화에 실패한 만성변비 환자에게 투여함. 단, 4주간 투여 후 증상 호전을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함. (고시 제2020-79호, '20.5.1.)
[238] Sodium docusate, D-sorbitol 복합 제제 (품명: 알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위·장관수술 또는 검사를 위한 장내용물의 배설, 불응성 변비에 투여용량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당 1병(67.5㎡)만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9] Beclomethasone dipropionate 경구제 (품명:클리퍼지속성 장용정 5mg)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경증 또는 중등도의 활동성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기존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부작용 등이 나타난 환자 (고시 제2013-127호, '13.9.1.)
[239] Calcium polycarbophil 경구제 (품명: 실콘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일당 2~6정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6정을 초과하여 8정까지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239] Dexpanthenol 주사제 (품명: 덱스테놀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복부수술 후 마비성 장애환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39] E.Coli strain Nissle 1917 동결건조물 14mg 경구제 (품명: 뮤타플로캡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 방지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5-Aminosalicylic acid 등의 심한 부작용으로 투여 할 수 없는 경우 나. 임산부, 수유부 (고시 제2017-193호, '17.11.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9] Mesalazine 제제 (품명: 펜타사 좌약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베체트장염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239] Migalastat 경구제 (품명: 갈라폴드캡슐)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환자가 부담토록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순응변이가 확인된 만 16세 이상의 파브리병환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순응변이 목록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www.galafoldamenabilitytable.com의 순응변이목록표에서확인함 다음 - 1)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①~⑨항 중 최소 1개)에해당하는 파브리병관련임상 증상 또는 징후를보이며, 기타원인이 배제된(감별진단된)환자로서, 2) 백혈구 또는 피부섬유아세포등에서 α-galactosidase A활성도가 감소하고 유전자검사로 파브리병이확진된 경우(단,특징적인임상 증상을 보이지만α-galactosidase A의활성도 감소가확인되지않는여성환자의경우유전자검사로 확진할수있음)			
	항목 요건			
	① 사구체 여과율 감소			
	신장* (30≦eGFR⟨90ml/min/1.73m²(adjusted			
	for age〉40)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② 미세알부민뇨(>30mg/g)
		남성	(최소 24시간 간격 2회 이상 검출)
			③ 알부민뇨(>20μg/min)
			(최소 24시간 간격 2회 이상 검출)
			④ 단백뇨(>150mg/24hr)
			⑤ 진행의 임상적 증거를 동반한 단백뇨
		여성	(>300mg/24hr)
		6 MI	RI나 심초음파로 입증된 좌심실 비대
		(좌	심실벽 두께〉12mm)
	심장	(단	,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동 약제
	심성	투여	여 전 최소 6개월의 혈압 치료가 선행되어야
		함)	ᆼ
		⑦ 임성	상적으로 유의한 부정맥 및 전도장애 등
	신경	⑧ 객된	^관 적 검사로 입증된 뇌졸중이나 일과성
	^{'신'} '정	허형	혈발작 등
		⑨ 항3	되전증약과/또는 최대용량의 진통제
		(NS	SAIDs 등)를 사용함에도 조절되지 않는
	통증	만/	성 신경병증성 통증(지속 투여를 위해
		진호	문기록 등을 통해 약제 효과가 지속적
			로 입증되어야 함) 등
	_		기타 원인과의 감별진단을 위해 생검을
	통한	확진을	권장함.
	3	8) 12개유	월 이상 효소대체요법을 실시한 경우 또는
	효소대체요법이 불가능한 경우(효소 약제에 대해 알러지 또는 과민반응이 있거나 효소대체요법을 위한 혈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나. 투여방법 ○ 효소대체요법(agalsidase alfa, agalsidase beta)과		
	ㅂ	병용투여	는 인정하지 아니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평가방법 ○ 이 약 치료 시작 전 최초 평가를 실시하며, 이후 매 6개월 간격으로 신기능 검사(사구체여과율 포함), 심기능 검사(EKG 포함), Lyso-Gb3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 약제의 최초 투여 시점에 비해 질병상태가 유지되거나 개선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라.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 부터 6개월 이후에 질병상태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일분까지 인정함. (고시 제2021-245호, '21.10.1.)
[239]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 (품명:이리보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인정 (고시 제2020-17호, '20.2.1.)
[239] Somatostatin acetate 주사제 (품명 : 소마토산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식도정맥류에 의한 급성출혈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통상 치료기간(48-72시간)동안 투여한 경우 나.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되어 4일 이상 투여한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뇌하수체호르몬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41]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품명:미니린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차성 야뇨증(5세 이상) (단, '녹더나설하정 25마이크로그램, 50마이크로그램'은 제외) 나. 이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아간뇨 증상의 치료(성인에 한함) (단, '녹더나설하정 25마이크로그램, 50마이크로그램'은 특발성에 한함) ○ 배뇨일지(Frequency volume chart)등으로 야간 다뇨로 인한 야간뇨가 확진된 경우에만 인정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요붕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주사제 및 비강분무(Nasal spray)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0-107호, '20.6.1.)
[241] 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 (품명 : 미니런주사액)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만성 신부전 또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급성 출혈 또는 시술 전 급성 출혈예방을 위해 투여 (고시 제2018-253호, '18.1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241]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품명: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용량 및 기간 1)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1) 투여대상 (가)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나)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다) 해당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2) 투여용량: ○ 주당 0.66mg/kg (3) 투여기간 ○ 역연령 만 3세 이상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나)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예: 뇌하수체절제술, 방사선 치료 등) (1) 투여대상 (가) 뇌하수체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1가지 이상
	(1) 투여대상
	경우: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 (2) 투여용량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나. 장기투여원칙 성장호르몬제를 6개월간 투여해도 별 반응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담당 의사는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조건 1)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가)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예: 성장호르몬 유발검사 및 염색체검사 등)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자체 검사하여 진단·처방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나) 방사면역측정법(RIA)에 의한 검사 등은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처방한 경우에도 인정함 2) 최초 진단·처방한 요양기관에서 추적관리 하면서약제처방만 의원에서 받는 경우는 인정라. 성장흐르몬제는 자가주사로 처방 가능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에 의거하여 인정함.
[241]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 (성장호르몬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품명: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 ## ## ## ## ## ## ## ## ## ## ##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나. 장기투여원칙 성장호르몬제를 6개월간 투여해도 별반응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담당의사는 성장호르몬제 투여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함 다.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조건 1)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가)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 (예: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 (예: 성장호르몬 유발검사 및 염색체검사 등를 실시할수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자체 검사하여 진단·처방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나) 방사면역측정법(RIA)에 의한 검사 등은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처방한 경우에도인정함 2) 최초 진단·처방한 요양기관에서 추적관리하면서 약제처방만 의원에서 받는 경우는 인정라 성장호르몬제는 자가주사로 처방 가능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 투여하는경우에는 "[일반원체]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에의거하여 인정함.
[241] Somatropin 주사제 (성장호르몬제) (품명: 유트로핀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가) 투여대상 (1)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2)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3)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나) 투여용량 ○ 주당 0.5 - 0.71 IU/kg 다) 투여기간 ○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2)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 경우(예: 뇌하수체절제술, 방사선 치료 등) 가) 투여대상 (1) 뇌하수체절제술을 시행한 경우:한 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 (2)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 경우:두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
	2)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 경우(예: 뇌하수체절제술, 방사선 치료 등) 가) 투여대상 (1) 뇌하수체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한 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
	경우:두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나) 투여용량 ○ 키가 크더라도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는 전체 용량 (Full dose), 그 다음엔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용량으로 인정 다) 투여기간 ○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л ы	UIHOIZIZ DI HIHI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나. 터너증후군
	1) 투여대상
	○ 진찰소견에서 터너증후군의 특징을 갖춘 자로서
	염색체 검사로 확진된 자
	2) 투여용량
	○ 주당 1.0 IU/kg
	단, 동 투여용량에 충분한 반응이 없는 경우,
	'노디트로핀노디플렉스주'에 한해 허가사항에 따라
	주당 1.4 IU/kg까지 인정함.
	3) 투여기간
	○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
	하나 골연령 14-15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153㎝ 초과
	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다. 소아만성신부전
	1) 투여대상
	가) 연간 신장증가속도가 4cm미만이거나
	나)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2) 투여용량
	○ 주당 0.9 - 1.5 IU/kg
	3) 투여기간
	○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
	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내에 포함
	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부담
	라.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1) 투여대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는	제부인정기준 및 방법 가) 유년기 개시형 결핍증(Childhood onset) 유년기에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는 골단이 막혔거나, 역연령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넘어 성장이 거의 끝났다고 판정하였을 때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 성장호르몬 결핍증임이 확인되어야 함. 나) 성인기 개시형 결핍증(Adult onset)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호르몬 결핍증(프로락틴 제외)이 진단되어야 하며, 적절한 대체요법을 받고 있어야 함. 2) 성장호르몬 결핍증 진단 기준 ○ 성장호르몬 결핍증 진단 기준 ○ 성장호르몬 분비 자극검사(인슐린 부하검사(ITT), GHRH 자극검사, L-dopa 자극검사, Arginine 자극검사, Clonidine 자극검사, 글루카곤(Glucagons)]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여 자극된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5ng/ml(또는 5㎏/L) 이하로 진단된 경우 (단, 인슐린 부하검사(ITT)를 한 경우는 1가지 검사 만으로도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5ng/ml (또는 5㎏/L) 이하이면 인정) 3) 투여용량 ○ 1일 0.018 IU/㎏ ~ 최대 1일 0.036 IU/㎏ 4) 투여기간 ○ 3년간 투여 후 다시 자극검사를 시행(기질적 원인에 의한 범뇌하수체 기능저하증으로 확진된 경우는 제외)하여 성장호르몬 결핍이 있으면 연장 가능 (투여소견서와 검사결과를 첨부) 5)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구 분	비타이저기즈 미 바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치료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소 2-4주 간격으로
	시행한 인슐린양 성장인자-I(IGF-I)의 수치로
	성장호르몬의 투여용량의 증감을 결정하며 3개월
	이후에는 1-3개월 간격으로 인슐린양 성장인자
	-I(IGF-I)을 포함한 대사항목을 검사하여 효과에
	대한 판정기준으로 함.
	마. 프라더윌리증후군(허가사항에 따라 '지노트로핀주',
	'지노트로핀고퀵펜주', '싸이트로핀에이카트리지주',
	'유트로핀주', '유트로핀펜주', '유트로핀에스펜주'만
	해당)
	1) 투여대상
	가) 임상증상 및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자
	나) 중증의 비만, 중증의 호흡장애를 가진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음.
	다) 성장속도가 연간 1㎝ 이하 및 골단이 거의 폐쇄된
	소아에는 투여하지 않음.
	2) 투여용량
	○ 각 약제별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함.
	단, 1일 최대 2.7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3) 투여기간
	○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
	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
	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cm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부담
	바.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small for gestational
	age: SGA) 저신장 소아
	1) 투여대상
	○ 각 재태기간(주수)에 출생 체중 또는 신장이 3퍼센타일
	이하"인 소아 중 만 4세 이후에도 신장이 3퍼센타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가. 성장호르몬 분비 자극검사[인슐린 부하검사(ITT), GHRH 자극검사, L-dopa 자극검사, Arginine 자극검사, Glucagons 검사, Clonidine 자극검사 (추가)]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여 자극된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3ng/ml(또는 3///)에 이하로 진단된 경우 역연령 35세까지 요양 급여하며, 35세 이후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 나. 투여용량, 투여기간,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성인성장 호르몬 결핍증과 동일 3. 장기투여원칙 성장호르몬제를 6개월간 투여해도 별 반응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담당의사는 성장호르몬제 투여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함. 4.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조건가.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함. 나.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예 : 성장호르몬 유발검사 및 염색체검사 등)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자체 검사하여 진단처방시 인정함. ○ 방사면역측정법(RIA)에 의한 검사, 터너증후군 진단을 위한 염색체 검사 및 프라더윌리증후군 진단을 위한 염색체 검사 및 프라더윌리증후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처방한 경우에도 인정다. 최초 진단·처방한 요양기관에서 추적관리 하면서 약제처방만 의원에서 받는 경우는 인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에 의거하여 인정함. (고시 제2022-268호, '22.12.1.)
[241]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 (품명: 글라이프레신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41] Vasopressin 20U 주사제 (품명: 한림 바소프레신 주사액)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식도정맥류 출혈: 1일 400단위 투여, 2주 이내나. 자궁근종절제술중 20단위 투여다.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자426)중 20단위 투여(고시 제2017-193호, '17.11.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243]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품명: 테리본피하주사)	제부인정기준 및 방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Bisphosphonate, SERM 제제. 단, SERM 제제는 ① 전신성 과민반응 ② 중증 신부전 (eGFR 〈 30mL/min) ③ 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④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Bisphosphon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중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음 - 1)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으로 측정한 골밀도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 다 음 - 1)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으로 측정한 골밀도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나. 투여기간 최대 72주. 한 환자의 일생에서 72주 과정을 반복해 서는 안됨.
	다.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와 교체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효과가 없는 경우란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하고 새로운 골절 [*] 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고시 제2022-207호, '22.9.1.)
[243] Teriparatide 주사제 (품명: 포스테오주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Bisphosphonate, SERM 제제. 단, SERM 제제는 ① 전신성 과민반응 ② 중증 신부전 (eGFR 〈 30mL/min) ③ 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④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Bisphosphon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중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65세 이상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투여기간 최대 24개월. 한 환자의 일생에서 24개월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됨. 다.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테리본피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주사)와 교체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효과가 없는 경우란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고시 제2022-207호, '22.9.1.)
[243] Thyrotropin 주사제 (품명: 타이로젠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원격 전이가 없는 분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 (total 또는 near total)을 시행한 환자에서 잔재 갑상선 조직 제거 시 ○ 인정횟수: 1회 나.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¹³¹ [치료를 받은 환자의추적 검사 시 ○ 인정횟수: 1회 다. 단. 뇌하수체 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상기 가., 나. 의경우에 인정횟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19-171호, '19.8.1.)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244] Oxymetholone 경구제 (품명: 셀트리온 옥시메톨론정)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허가사항 범위(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섬유증에 의한 골수의 소모상태)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245 부신호르몬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12	MIT COME & OB
[245]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궤양성 대장염, 직장항문염 상병에
Budesonide	투여 시 스테로이드제 국소투여가 요구되는 객관적 사유와
(micronized) 2.3mg 제제	투여소견서 첨부시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품명 : 엔토코트)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22-160호, '22.7.1.)
[245]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Deflazacort 경구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품명: 캘코트정 등)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소아 신증후군 환아의 경우
	○ 소아신증후군 환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동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인정함
	나. 골다공증이 심한 이식환자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기 투여하는 환자 중에서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검사결과 T-Score가
	2.5 이하로 확인된 경우)에게 1차적으로 동 약제를
	투여한 경우에 인정함.
	다.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중
	타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1) 당뇨병이 병발한 경우
	2) 피부선조(Striae), 들소형육봉(Buffalo hump) 등이
	보이는 쿠싱증후군(Cushing syndrome)인 경우
	3) 무혈관성 골괴사증후군(Avascular necrosis of
	bone)인 경우
	4) 소아에서 성장지연이 현저한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라. 상기 조건에 해당되어 만성신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신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소아 포도막염, 성인 만성포도 막염(3개월 이상 지속) 환자 (고시 제2019-252호, '19.12.1.)
[245]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품명: 젝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 크로그램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가 투여를 목적으로 투여 시, 1회 처방당 최대 2개까지 요양 급여를 인정함. 단, 재처방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 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동 약제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아나필락시스 치료 후 퇴원 처방 시 나. 아나필락시스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 시 (고시 제2019-313호, '20.1.1.)
[245] Epinephrine 제제 (품명: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소아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 (크룹, Croup)의 흡입 요법"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9-93호, '19.6.7.)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45]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 (품명 : 솔루메드롤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전두부탈모증 (Alopeciatotalis) 치료(Steroid pulse therapy)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45]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품명: 트리암시놀론주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47] Danazol 경구제 (품명 : 영풍 다나졸캡슐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자궁내막증 1) 복강경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 2) 초음파검사 또는 자기공명영상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난소, 직장, 방광에 생긴 경우 나. 유전성 혈관부종에 투여한 경우 2. 허가사항의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스테로이드치료 또는 비장절제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ITP) 나. 표준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각한 불응성 혈소판 감소증이나 용혈성 빈혈을 동반하는 일부 난치성 혈액질환[PNH(발작성 야간 혈색소증), IMF(특발성 골수섬유화증), MDS(골수이형성증후군), AIHA (후천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등] (고시 제2018-253호, '18.12.1.)
[247] Dienogest 경구제 (품명:비잔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자궁내막증 가. 복강경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초음파검사 또는 자기공명영상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난소, 직장, 방광에 생긴 경우 (고시 제2018-253호, '18.12.1.)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 (품명: 프레다정1mg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 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247]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품명: 프로기노바28정1밀리 그램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 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선기능저하, 난소기능부전으로 인한 저에스트로겐증환자(예: 터너증후군 등)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47]	나. 투여연령 만 11세 이상 여성 환자 ※ 동 약제 투여 시에는 환자의 연령, 성장 속도, 성성숙도 (Tanner stage) 등을 고려하여 담당진료의사의 전문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투여하며,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소아에 대한 투여 등)을 반드시 참고 하여 신중히 투여하도록 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 [일반 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3-184호, '23.10.1.)
[247] Levonorgestrol 제제 (품명:미레나 20mcg)	1. 허가사항 중 월경과다증, 월경곤란증, 에스트로겐 대체 요법시 프로게스틴의 국소적용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월경과다증으로 확진된 경우 나. 생리주기 당 1~2일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월경곤란 증인 경우 다.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시 경구 프로게스틴(Progestin) 제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간 등의 대사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피임 목적으로 투여 시에는 비급여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47]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품명: 프로베라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개. 자궁내막증에 고용량 투여(60mg/일) 나. 임파관평활근종증(Lymphangioleiomyomatosis) 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급여 인정 범위 이내에서 투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최]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에 의거하여 인정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생식술에 Human menopausal gonadotropin hMG (menotrophin))과 병용 투여한 경우 병용 약제의
2. \$\frac{1}{2}\$	* 용량은 600IU/day 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Follitropin delta와 병용 투여할 경우에는 Follitropin delta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일 용량으로 이 약 10마이크로그램을 투여받은 환자의 대부분에서 일일 용량으로 폴리트로핀알파 150IU 투여 시 얻어진 것과 유사한 난소반응을 나타냄.)을 참고하여 병용 약제의 인정 총 용량범위 내에서 투여하여야 함. 하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10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mm 10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49]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hCG) 주사제 (품명: 아이브이에프씨주 5000IU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7-180호, '17.10.1.)
[249] Clomiphene citrate 경구제 (품명 : 영풍 클로미 펜시트르산염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허가용량 투여로 배란유도에 실패한 경우 1일 최대 250mg까지 인정 나. 남성 불임증(과소약정자증·비폐쇄성 무정자증) 3. 상기 1. 2.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7-180호, '17.10.1.)
[249] Darbepoetin alpha 주사제 (품명: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 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된 환자는 제외함) 1)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 (Hct) 30% 이하인 경우(투석을 받고 있지 않는 환자는 사구체여과율(GFR) 30mL/min/1.73㎡ 미만인 환자에 한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다만, 동 조건에 해당하여 약제를 투여하다 중단한
	경우 Hb 10-11g/dL(또는 Hct 30-33%)의 유지를
	위하여 재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Hb 11g/dL 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
	야 함.
	나.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 환자의 빈혈치료
	1) Hb 10g/dL 이하 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
	2)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
	하여야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이면서 Erythropoietin 500mU/ml 이하인
	IPSS risk category low 또는 Intermediate-1 환자
	나.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
	하여야 함.
	○ 8주 투여 후 매 2주마다 반응평가를 하여 감량하는
	등 용량을 조절해야함
	※ IPSS: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
	(고시 제2019-57호, '19.4.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249] Erythropoietin 주사제 (품명 : 에포카인주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된 환자는 제외함) 1)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 (Hct) 30% 이하인 경우(투석을 받고 있지 않는 환자는 사구체여과율(GFR) 30mL/min/1.73㎡ 미만인 환자에 한함) - 다만, 동 조건에 해당하여 약제를 투여하다 중단한 경우 Hb 10-11g/dL(또는 Hct 30-33%)의 유지를 위하여 재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 2) Hb 11g/dL 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나.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 환자의 빈혈치료 1) Hb 10g/dL 이하 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 2)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 (Hct) 30% 이하이면서 Erythropoietin 500mU/ml 이하인 IPSS risk category low 또는 Intermediate-1 환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Hb 12g/dL 또는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 8주 투여 후 매 2주마다 반응평가를 하여 감량하는 등 용량을 조절해야 함 ※ IPSS: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 (고시 제2019-38호, '19.3.1.)
[24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 (품명: 퍼고베리스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WHO Group I))으로 진단받은 여성 1) 폐경여성 성선자극호르몬(Human menopausal gonadotropin)을 이용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유도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2) 약물과민반응 등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투여 시인정 나. LH결핍 환자의 보조생식술에 2바이알/day까지 투여한경우 2. 허가시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에 투여한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상기 1, 2.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급여기준」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49] GnRH antagonist 주사제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체외수정 시술 환자 중 저반응군에서 조기난포 성장억제를 위해 투여한 경우 나. 체외수정 시술 환자 중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예방을위해 투여한 경우 ※ 대상약제: Cetrorelix acetate(품명: 세트로타이 드주0.25밀리그램 등), Ganirelix acetate(품명: 오가루트란주0.25mg/0.5ml 등)
[249]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 (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 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9-210호, '19.10.1.)
[249] Lutropin alpha (r-hLH) 주사제 (품명 : 루베리스주 75IU)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 (WHO Group I))으로 진단받은 여성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폐경여성 성선자극호르몬(Human menopausal gonadotropin)을 이용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유도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2) 약물과민반응 등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투여 시 인정 나. LH결핍 환자의 보조생식술에 150IU/day까지 투여한 경우 다. 상기 가. 나. 조건에서 병용 투여한 난포자극호르몬 (FSH) 주사제는 인정 라. 상기 가. 나.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24-55호, '24.4.1.)
[249] Menotrophin 주사제 (품명: 아이브이에프엠 주 75IU 등) Menotrophin HP 주사제 (품명: 아이브이에프엠 에이치피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생식술에 난포자극호르몬 (FSH)과 병용 투여한 경우 병용 약제의 총 용량은 600IU/day 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단, Follitropin delta와 병용 투여할 경우에는 Follitropin delta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일 용량으로 이 약 10마이크로그램을 투여 받은 환자의 대부분에서 일일 용량으로 폴리트로핀알파 150IU 투여 시 얻어진 것과 유사한 난소반응을 나타냄.)을 참고하여 병용 약제의 인정 총 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야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무배란성 여성불임증 치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1cycle 당 최대 18앰플(75IU 기준)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월단위), 가) 초기용량 투여로 배란유도에 실패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용법・용량)하여 1일 최대 6앰플(75IU 기준)까지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나) 1cycle당 최대 72앰플(75IU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보조생식술 ○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에 투여한 경우 3. 상기 1. 2.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22-111호, '22.5.1.)
[249]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 (품명: 미쎄라프리필드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된 환자는 제외함) 1)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 (Hct) 30% 이하인 경우(투석을 받고 있지 않는 환자는 사구체여과율(GFR) 30mL/min/1.73㎡ 미만인 환자에 한함) - 다만, 동 조건에 해당하여 약제를 투여하다 중단한 경우 Hb 10-11g/dL(또는 Hct 30-33%)의 유지를 위하여 재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Hb 11g/dL 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 하여야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 (Hct) 30% 이하이면서 Erythropoietin 500mU/ml 이하인 국제예후점수체계 위험 분류의 저위험군(IPSS risk category low 또는 Intermediate-1) 환자 나.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 야 함. ○ 8주 투여 후 매 2주마다 반응평가를 하여 감량하는 등 용량을 조절해야 함 ※ IPSS: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 (고시 제2019-38호, '19.3.1.)
[249] Octreotide 주사제 (품명 : 산도스타틴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 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항암제 투여 후 분비성 설사에 고용량의 지사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설사가 지속되는 중증 불응성인 경우 5일 이내 인정 나. 소아의 고인슐린혈증의 저혈당증(Persistent Hyperinsulinemic Hypoglycemia of Infancy;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HHI)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2~3주 동안 diazoxide 투여 후에도 고인슐린 혈증의 저혈당증이 조절되지 않는 췌장절제 예정인 환자로서 투여소견서 첨부 시 수술 시행 전까지 인정 · 투여 용량 및 방법: 5-25 / (g/kg/day을 6~8시간 마다 피하주사하거나 지속적 정맥주입 (2) 췌장절제술 시행 후 고인슐린혈증의 저혈당증이 교정되지 않아 diazoxide 투여한 후에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 다. 유미흥(Chylothorax), 유미복수(Chylous ascites)에 1일 0.3 mg씩 7~14일간 투여한 경우(소아의 경우 적의 증감가능)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위·장관계 수술 후 문합부위 누출에 치료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나. 췌장관련 수술 후 합병증 치료에 투여한 경우
[249] Pasireotide pamoate 주사제 (품명:시그니포 라르 주사 20,40,60 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이 적절하지 않거나 수술로 치료되지 않은 말단 비대증 환자로서 다른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30mg 또는 Lanreotide 120mg)를 최소 24주간 투여 하였으나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다음의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다 음 평균 성장호르몬(GH, Growth hormone) 수치가 2.5μg/L 이상이고, 인슐린성 성장인자(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이 정상범위상한 (ULN)의 1.3배 이상 (고시 제2017-193호, '17.11.1.)
[249] Pegvisomant 주사제 (품명: 소마버트 10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 및/또는 방사선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인(만18세 이상) 말단비대증 환자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30mg 또는 Lanreotide 120mg)를 최소 24주간 투여하였으나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다음의 경우 - 다 음 - - 인슐린성 성장인자(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가 정상범위상한(ULN)의 1.3배 이상 (고시 제2021-234호, '21.9.1.)

Methylergonovine 허	러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러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자궁근종절제술 후 출혈의 방지 및 치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59]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 (고시 제2019-240호, '19.11.8.)
[259] Alfuzosin 경구제 (품명: 자트랄엑스엘정10밀리 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59] Atosiban 주사제 (품명: 트랙토실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정대상 1) 갑상선 기능항진, 고혈압, 부정맥, 당뇨, 폐성고혈압상병으로 치료중인 환자 2) 선천성 혹은 후천적 심장질환, 임신 중 고혈압질환, 자궁내 감염이 아닌 타부위의 감염으로 체온이상승한 경우 3) 임신 중 폐부종 발생의 위혐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량의 수액 투여, 다태아) 4) 기존약제(Ritodrine 제제) 사용 후 심계항진, 빈맥 등 심혈관계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 나. 인정주기:최대 3주기 ※ 1주기:연속적인 3단계용법으로 투여시간은 48시간을 넘지 않음
[259]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품명: 듀오다트캡슐)	허가사항 범위(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다. 투여 시작시 이약의 사용상의 주의사항(기립성 저혈압등)을 고려하여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
[259] Fesoterodine fumarate 경구제 (품명: 토비애즈서방정 4mg, 8mg)	허가사항 범위(절박뇨, 빈뇨, 절박성 요실금과 같은 과민성 방광 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59] Mirabegron 경구제 (품명: 베타미가서방정 등)	허가사항 범위(성인의 과민성 방광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박뇨, 빈뇨 및/또는 절박요실금 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0-107호, '20.6.1.)
[259] Naftopidil 경구제 (품명: 플리바스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153호, '17.9.1.)
[259] Potassium citrate 경구제 (품명 : 유로시트라케이 10mEq서방정)	허가사항 범위(칼슘결석이 있는 신세뇨관 산증, 저구연산염 뇨성 수산칼슘 신결석증 및 칼슘결석 유무에 상관없이 요산 결석증 처치)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9-191호, '19.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59] Potassium citrate, Citric acid 경구제 (품명: 유로시트라씨산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내시경하쇄석술 또는 절석술(절개 후 제거) 시행 후 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나. 요로결석이 동반된 통풍 다. 요로결석이 동반된 신세뇨관 산증 라. 저구연산뇨증[24시간 소변 검사결과 구연산(Citrate) 320mg 미만]을 동반한 요로결석 (고시 제2019-191호, '19.9.1.)
[259] Silodosin 경구제 (품명: 트루패스캡슐 4mg 등)	1. 허가사항 범위(전립선 비대증에 수반하는 배뇨장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62호, '17.4.1.)
[259] Solifenacin 경구제 (품명: 베시케어정 등)	허가사항 범위(절박성 뇨실금, 빈뇨, 요절박과 같은 과민성 방광 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6-223호, '16.12.1.)
[259] Tamsulosin HCl 경구제 (품명: 보령염산탐스로신캡슐0 .2밀리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59] Terazosin HCl 경구제 (품명 : 일양하이트린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 방광'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259] Tolterodine 경구제 (품명: 디트루시톨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의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척수수막류 (지방종)에 의한 배뇨장애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외피용살균소독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61] Povidone iodine	화상처치시 살균 등의 치료목적에 다량 사용시는 별도 산정 가능함.
외용제 (품명: 포타딘연고 등)	(고시 제2011-163호, '12.1.1.)
(60.19002 0)	

화농성질환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63] Mafenide acetate 외용제 (품명:메페드크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세균감염이 심한 3° 화상에서 안면, 수부, 관절부위에 3주 이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263]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500mcg (6×10 ⁵ IU) 외용제 (품명:이지에프외용액 0.005%)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정용량은 6주에 20째로 하고, 6주 치료 후 당뇨병 성 족부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계속 투여를 인정함. 나. 인정기간은 최대 12주까지 인정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64]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 각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 나.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사용한 경우 ※ 외용약제 Dictofenac Diethylammonium,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함. ※ Capsaicin 외용제는 "세부사항" 참조
[264]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 및 소아의 백반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투여부위: 얼굴, 목, 손 등 노출부위에 발생한 백반증 나. 투여방법: 각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용법·용량)에 따름 (단, 전신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밀봉요법은 피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대상약제: alclometasone dipropionate, amcinonide, betamethasone valerate, budesonide, clobetasol propionate, clobetasone butyrate, desonide, desoxymethasone, dexamethasone propionate, diflorasone diacetate, diflucortolone valerate, diflupredinate, fluocinonide, fluticasone propionate, halcinonide, hydrocortisone, hydrocortisone acetate, hydrocortisone butyrate, hydrocortisone valerate,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mometasone furoate, prednicarbate, prednisolone valeroacetate, triamcinolone acetonide 성분의 액제, 크림제, 연고 제, 로션제, 겔제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 단, 점막 부위 투여를 위한 제형의 약제(안연고, 구강용 연고 등)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성분 외의 성분 (예: gentamicin sulfate, isoconazole nitrate 등)과의 복합제는 제외함. ※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연속 투여 가능기간 및 기간 당 사용 가능한 약제의 총량)과 '사용상 주의사항'('1.다음 환자(부위)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및 '이상 반응' 항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함.
[264] Ammonium lactate 외용제 (품명: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 - 아 래 - ○ 심상성어린선 (고시 제2019-210호, '19.10.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64] Buprenorphine 패취제 (품명: 노스판패취 5μg, 10μg, 20μg)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만성하부요통) 가)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심한 통증에 7일당 20μg/h까지 인정함나)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264] Capsaicin 외용제 (품명 : 다이악센크림 등)	1. 허가사항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이외의 허가사항에는 '진통·진양· 수렴·소염 외용제'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인정함. - 아 래 - 가. 당뇨병성 신경증 나.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 다. 류마치스성 관절염 2.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에 따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64] Lidocaine 패취제 (품명: 리도탑 카타플라스마 등)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에는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캡슐 등) 또는 Pregabalin 경구제 (품명: 리리카캡슐 등)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 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6-31호, '16.3.1.)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265] Fluconazole 외용제 (품명: 후코날크림 0.5%)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피부사상균에 의한 표재성 피부진균 감염증의 국소적 치료: 족부백선, 체부백선, 고부백선, 어루러기 (고시 제2018-253호, '18.12.1.)

피부연화제(부식제를 포함)

u	
수 문	세무인성기순 및 방법
구 분 [266] Imiquimod 12.5mg 외용제 (품명:알다라크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허가사항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외부 생식기, 항문주위 사마귀/첨형 콘딜로마의치료에 기존요법으로 병변이 재발하여 재치료하는경우 나. 수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표재성기저 세포암의 일차치료 (고시 제2016-49호, '16.4.1.)
	(고시 제2016-49호, '16.4.1.)

기타의 외피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6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Calcipotriol 외용제	Steroid 연고제 등과 병용 시에는 2~3주 투여를 인정함.
(품명 : 다이보넥스)	(고시 제2013-127호, '13.9.1.)
[269]	허가사항 범위(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내에서
Penciclovir 외용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품명: 펜시비어크림)	(고시 제2020-244호, '20.11.1.)
[269] Pimecrolimus 외용제 (품명:엘리델크림 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국소 steroid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충분한 반응 또는 재발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 나.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의 백반증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투여부위: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한 백반증 2) 투여방법: 1일 2회 환부에 도포(전신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밀봉요법은 피함). (고시 제2019-57호, '19.4.1.)
[269]	타 약제로 4주 이상 사용하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Tacalcitol 20.87mcg/g	2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외용제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품명 : 본알파하이연고)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69] Tacrolimus 외용제 (품명: 프로토픽연고 0.1%, 0.03%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국소 steroid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충분한 반응 또는 재발한 성인 피부홍반 루푸스와 성인 국소경피증 나. 성인의 얼굴 및 접합부(겨드랑이, 사타구니, 생식기) 건선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여 2차 약제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투여대상: 건선에 허가 받은 Steroid 외용제 및 Vit. D 외용제(calcitriol, calcipotriol, tacalcitol 등)에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2) 투여방법: 1일 2회 3) 투여기간: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까지 인정함. ※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함. 다. 성인 및 만 2세 이상 소아의 백반증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투여부위: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한 백반증 2) 투여방법: 1일 2회 환부에 도포(전신흡수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밀봉요법은 피함). 단, 만 2세 이상 만 15세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0.03% 제제에 한하여 인정함. (고시 제2020-79호, '20.5.1.)

311 비타민A 및 D제

л 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11] Calcitriol 경구제 (품명 : 본키연질캡슐 등)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환자가 부담토록함. - 아 래 - ○ 혈중 Calcitriol이 감소되어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유발할 때로서, 1) 사구체여과율(GFR)이 40ml/min/1.73㎡ 이하이면서,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소견이 있는 경우(혈청 부갑상선호르몬(Intact PTH)이 200pg/㎡ 이상) 2) 사구체여과율(GFR)이 25ml/min/1.73㎡ 이하인경우 3. 허가사항 중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Calcitriol 주사제 (품명 : 본키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적응증 및 인정기준 1) 혈청 부갑상선호르몬(iPTH: intact PTH)가 200pg/配 이상 일 때 2) 골생검에서 조직학적으로나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측정 등으로 신성골이영양증이 증명되었을 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경구 Calcitriol 투여 시 부작용으로 고칼슘혈증이나 고인산혈증이 발생할 때 4) 경구 Calcitriol에 대한 반응(Compliance)이 나쁠 때 나. 투여용량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함. 다. 방법 1) 유지요법: 저용량투여 2) 이차성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여러 증상이 있는 경우: 고용량 투여하다가 증상이 소실되면 저용량으로 투여하거나, 경구 Calcitriol 또는 타 활성화 비타민 D 제제로 변경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311] Paricalcitol 주사제 (품명: 젬플라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 중 투석을 받는 환자로서 Calcitriol 주사제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를 투여하기 전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pg/mL 이상인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0-161호, '20.8.1.)

혼합비타민제(비타민A,D 혼합제를 제외)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16]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급여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322 무기질제제

[322] 혀	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품명: 헤모콤액 등) 부	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 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 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 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Hb) 11g/dL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 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라. 8세 미만의 소아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 1차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하며, 미숙아의 경우는 예 방 투여 시에도 인정함. (고시 제2020-79호, '20.5.8.)
[322] 철분주사제 (품명: 베노훼럼주, 페린젝트주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 1)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수술, 출산 등으로 인한 출혈로 신속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 나. 투석중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고,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다만,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 다.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다만,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주사제는 제외)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1) 혈액투석환자는 Serum ferritin 200ng/mL 미만 또는

л ы	베티이저기즈 미 바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3)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라.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로서 1)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미만인 경우2)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미만인 경우 : 대상약제 ・ iron hydroxide sucrose complex 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주사제(품명: 페린젝트주) (고시 제2024-72호, '24.5.1.)
[322] Iron acetyl-transferrin 200mg 경구제 (품명: 알부맥스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WHO 12121 2 2 1 1 1 1 1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25] 경장영양제 (품명 : 엔커버액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거나 경구 영양시 소화기 장애(구토, 설사 등)등으로 적절한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 (예시 : 공장루, 위루 설치 환자(Feeding jejunostomy or Feeding gastrostomy) 등) 나. 정맥영양요법(Parenteral nutrition)을 받고 있는 환자가 소화 기능 회복 단계에서 소량 필요한 경우 다. 고칼로리 수액의 적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광범위열상 등) 라. 크론병으로 확진된 입원 환자의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엔커버액에 한함) - 아 래 - ○ 관해 유도가 필요한 중등도 ∽ 중증 소아청소년 크론병환자 (PCDAI: 30 이상)에서 -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trition)으로 2주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PCDAI가 25% 이상 감소 등) 최대 8주간 인정함. ※ PCDAI(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고시 제2019-93호, '19.6.7.)
[325] 단백아미노산 제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가.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 공급이 필요한 경우 나. 총정맥영양법(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고시 제2013-151호, '13.10.1.)
[325] A액(Glucose), B액(Amino-acid), C액(Intralipid) 주사제 (품명 : 스모프카비벤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하여 1일 최대 1 Bag을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나. 호흡기능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다. 포도당(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라.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마.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바.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경구 또는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 환자개별상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이 첨부된 경우 인정(고시 제2019-240호, '19.11.1.)
[325] Glycyl-L-glutamine 주사제 (품명 : 글라민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정맥영양법(TPN)이 필요한 중환 자실(ICU) 입원환자·무균치료실 입원환자(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한함) 중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가. 고위험수술(식도절제술, 위전절제술 등) 후의 환자나. 다발성 외상 환자다. 이식환자(골수이식, 간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등)라. 항암치료 환자마. 중등도 이상의 화상 환자바. 패혈증 환자사. 중증급성췌장염 환자아. 장절제술 환자자. 신생아 외과 환자다만, 암환자 및 이식환자의 경우 중환자실(ICU) 입원이후에도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 시 최대 2주까지 추가투여를 인정함. ※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 경구 또는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
[325] L-leucine, L-phenylalanine, L-methionine 등 주사제 (품명: 클러니믹스85주사)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당 투여용량은 2리터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325] N(2)-L-alanyl-L-g lutamine 주사제 (품명: 디펩티벤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정맥영양법(TPN)이 필요한 중 환자실(ICU) 입원환자·무균치료실 입원환자(조혈모세포이 식 환자에 한함) 중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 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가. 고위험수술(식도절제술, 위전절제술 등) 후의 환자나. 다발성 외상 환자다. 이식환자(골수이식, 간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등)라. 항암치료 환자다. 충등도 이상의 화상 환자바. 패혈증 환자사. 중증급성췌장염 환자사. 중증급성췌장염 환자자가. 신생아 외과 환자다만, 암환자 및 이식환자의 경우 중환자실(ICU)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시 최대 8일까지 인정함. ※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고시 제2019-240호, '19.11.1.)	
[325] α-Keto-DL-isoleuci ne calcium 67.0mg외 9종 경구제 (품명: 케토스테릴정)	저단백 식이와 병용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1일 식이 단백 섭취량이 40g 이하(성인기준)로 제한되어 있는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환자로서 가. 투석 전 환자 중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5.0mg/dL인 환자 나. 혈액투석 환자 중 알부민 수치가 4.0g/dL 이하이면서 고인산혈증(5.5mg/dL 초과) 환자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29] Lipid 주사제 (품명: 스모프리피드 20%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필수지방산 공급목적으로 투여 시 주 2회 인정함. 나. 칼로리 공급목적으로 투여 시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에 투여 시 인정함. - 다 음 - 1)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2) 호흡기능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3) 포도당(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4)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5)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6)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 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 환자 개별상 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이 첨부된 경우 인정 (고시 제2019-240호, '19.11.1.)

¬ н	IIIHAIZIZ DI HLHI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선천성 제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 환자로서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음의 중출혈(중추신경계 출혈 또는 위장관 출혈 또는영상학적으로 확인된 관절병증)이 있는 경우 2) 혈액응고 7인자 활성도(FactorVII:c)가 2% 미만인경우다. 투여 용법·용량: 30μg/kg 이내, 주 3회 투여 시(고시 제2019-252호, '19.12.1.) 	
	(±^\) \(\ \)\(\)\(\)\(\)\(\)\(\)\(\)\(\)\(\)\(
[332] Gelatin sponge 외용제 (품명: 큐탄플라스트스폰지 등)	1. 수술 시 결찰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색전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51호, '13.10.1.)	
[332] Idarucizumab 주사제 (품명: 프락스바인드주사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프라닥사캡슐(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투여 환자에서 다음과 같이 항응고효과의 긴급 역전이 필요한 경우 - 다 음 - 1) 8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긴급 처치 시 2)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 발생 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치명적 출혈, 증상이 있는 두개강 내 출혈, 5g/dL 이상의 헤모글로빈 감소 또는 4 단위 이상 의 혈액 또는 농축 적혈구 수혈을 요하는 출혈, 승압제 투약이 필요할 정도의 저혈압을 초래하는 출혈, 수술이 필요한 출혈 나. 투여횟수: 1회(5g) (고시 제2019-21호, '19.2.1.) 	
[332]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품명: 써지셀(오리지날) 등)	수술 시 결찰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3-37호, '23.3.1.)	
[332] P-aminomethyl benzoic acid 주사제 (품명:에스빅스주 등)	허가사항 범위(수술 중 및 수술 후의 출혈 예방 및 치료, 특히 전립선 수술 시, 분만 시의 출혈, 월경과다 및 미란성 출혈, 백혈병 및 간경변 시의 출혈, 위장, 폐, 췌장 및 전립선 부위의 전이성 출혈, 수혈에 의한 사고 시의 출혈, 혈우병에 의한 출혈, 섬유소 용해제 치료 시의 해독제)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332] Thrombin 제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식도정맥류 출혈에 경화요법(비관혈적) 실시 시 사용 하는 경우 5000단위 1병 범위 내에서 인정 나. 외과적 수술(관혈적)시에는 결찰법이나 직접압박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등 통상의 지혈방법으로는 지혈이 곤란하여 동 약제 사용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트롬빈 5,000 단위 2병 범위 내에서 인정 2. 상부 위장관(Upper gastrointestinal) 출혈시 동 약제의 경구투여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332] Tranexamic acid 경구제 (품명: 도란사민캅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접촉성 피부염, 습진, 두드러기, 감염이 심한 백선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혈액응고저지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333] Apixaban 경구제 (품명: 엘리퀴스정 등)	해부인정기준 및 방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선택적 고관절 혹은 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다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 비만(BMI≥30kg/㎡), 에스트로겐 치료, 하지정맥류, 고령(60세 이상), 장기간의 부동(1주일 이상의 침상안정이 필요한 경우), 울혈성심부전, 호흡부전, 악성종양, 중심 정맥 카테터 삽입, 항암화학요법, 중증감염증, 정맥혈전색전증의 과거력 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위험 감소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위험 감소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 투여시 인정 - 다 음 - 1)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2)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환자 또는 3) 아래와 같은 시술 시행(또는 예정)이 진료기록부 상확인된 경우 - 아 래 - 가) 전기적 심율동전환술(Electrical Cardioversion):시술 3주 전부터 시술 4주 후까지 투여 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내) 도자절제술(Catheter Ablation):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8주 후까지 투여 시 ※ 전기적 심율동전환술: 자588 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 도자절제술: 자654가(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냉각풍선절제술 다.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 ○ 투여기간 1)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 초기: 7일 이내 2)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 6개월 이내 단, 특발성, 원인불명인 경우의 재발, 위험인자가 교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속투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2-184호, '22.8.1.)
[333] Dabigatran 경구제 (품명: 프라닥사캡슐 110밀리그램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 투여 시 인정 - 다 음 - 1)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또는 3) 아래와 같은 시술 시행(또는 예정)이 진료기록부 상확인된 경우 - 아 래 - 가) 전기적 심율동전환술(Electrical Cardioversion):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4주 후까지 투여 시나) 도자절제술(Catheter Ablation):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8주 후까지 투여 시※ 전기적 심율동전환술: 자588 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 도자절제술: 자654가(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자654나(2) 삼차원 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자654나(2) 삼차원 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냉각풍선절제술나.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이투여기간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초기치료 이후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 6개월 이내단, 특발성, 원인불명인 경우의 재발, 위험인자가교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속투여를 인정함. 하가사항 중 용법·용량을 참조하여 최소 5일간의비경구 항응고제 사용 후 투여해야함. 2.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임상적으로유의한 출혈환자, 중증 신장애 환자(CrCl(30ml/min)등에는 투여하지 말아야함.	
	<u> </u>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33] Dalteparin sodium 주사제 (품명: 프라그민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3일 아내의 급성기 또는 진행성 뇌경색증에 투여 시, 투여용량과 기간은 1일 1바이알 (2500 IU)을 2회씩 10일로 함. 나.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나)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다)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 2) 투여방법 -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 투여함. 3) 투여기간 - 임신 기간(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분만 후 6주 까지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투여대상 -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을 제외한 선천성 혈전성항증으로 인하여,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 나. 투여방법 -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 투여함. 다. 투여기간 - 배란일(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임신확인일까지

세부인정기·	준 및 방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가. 성인 간정맥폐쇄병	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래 - 6년 제정)*에 부합하면서,
	우 이식 병동에 입원한 날의 은 최적의 이뇨 치료를 받은 목 이상 만족하는 경우 음 -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격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가. 성인 간정맥폐쇄병 1) EBMT 진단기준(201) ※ 성인 EBMT 진단기준(201) ※ 성인 EBMT 진단기준(201) ② 함밀라면 2mg/dl.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을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 통증을 동반한 간비대 · 기저치 대비 체증증가 5% 초과 · 복수 * 체중 기저치는 전처치를 시작하며 측정이 불가능했을 경제중 사용 가능, 체중 측정후 이루어져야 함 2) 다음 기준을 2개 항목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항목	기준
	총 빌리루빈 (mg/dL)	5 이상
	빌리루빈 kinetics	48시간 이내에 2배 이상 증가
	아미노전이효소 (AST 또는 ALT)	정상치의 5배 초과하여 증가
	신장기능	이식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대비 1.5배 이상 증가
	나. 소아 간정맥폐쇄병 (만	19세 미만)
	1) EBMT 소아 진단기준(2 ※ 소아 EBMT 진단기준	017년 제정)*에 부합하면서, -
	아래 조건을 2가지 이상 만족 - 아 · 원인 불명의 소모성, 수혈 · 기저치 대비 체중증가 5% 를 불구하고 3일 연속 체중증 되지 않는 경우 · 간비대 (영상의학 검사) · 복수 (영상의학 검사) · 총빌리루빈 3일 연속 기저 내 2mg/dL 이상	래 - 불응성 혈소판 감소증 초과 또는 이뇨제 사용에도 가가 다른 원인으로 설명
	- 다	
	항목	기준
	불응성 혈소판감소증 (refractory thrombocytopenia)	7일 초과
	총 빌리루빈 (mg/dL)	2 이상
	빌리루빈 kinetics	48시간 이내에 2배 이상 증가
	아미노전이효소 (AST 또는 ALT)	정상치의 5배 초과하여 증가

신장기능

(고시 제2019-93호, '19.6.7.)

이식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대비 2배 초과하여 증가

л 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33]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Edoxaban Tosilate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Hydrate 경구제	부담토록 함.
(품명 : 릭시아나정	- 아 래 -
15밀리그램 등)	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 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 투여
	시 인정
	- 다 음 -
	1)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2)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또는
	3) 아래와 같은 시술 시행(또는 예정)이 진료기록부 상
	확인된 경우
	- 아 래 -
	가) 전기적 심율동전환술(Electrical Cardioversion):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4주 후까지 투여 시
	나) 도자절제술(Catheter Ablation):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8주 후까지 투여 시
	※ 전기적 심 율동 전환술: 자588 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 도자절제술: 자654가(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심방세동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냉각풍선절제술
	나.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
	○ 투여기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 (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 6개월 이내 단, 특발성, 원인불명인 경우의 재발, 위험인자가 교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속투여를 인정함. ※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을 참조하여 최소 5일간의 비경구 항응고제 사용 후 투여해야 함. (고시 제2022-184호, '22.8.1.)
[333] Enoxaparin sodium 주사제 (품명: 크렉산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1) 항인지질항체증후군 2)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3)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 나. 투여방법 -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 투여함. 다. 투여기간 - 임신 기간(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분만 후 6주 까지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을 제외한 선천성 혈전성 향증으로 인하여,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 나. 투여방법 -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 투여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투여기간 - 배란일(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임신확인 일까지 (고시 제2018-97호, '18.6.1.)
[333] Fondaparinux sodium 주사제 (품명: 아릭스트라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관절 골절수술, 슬관절 및 고관절 대체수술을 받은환자(단, 체중 50kg 이상의 환자)에서의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나. 응급 침습적 치료가 적용되지 않는 보존적 치료를받는환자의 불안정형협심증 또는 비-ST분절상승심근경색의 치료 다. 복부수술을받은환자 중혈전색전증합병증의 위험이높다고 판단되는환자(단, 체중 50kg 이상의환자)에서의 정맥혈전색전증의예방 - LMWH, heparin에 금기이거나 부작용 등으로사용할수 없는경우에한함. (고시 제2019-191호, '19.9.1.)
[333] Heparin 주사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돌발성 난청에 시행한 헤파린화(Heparinization)의 경우 2주정도 인정하며, 재발 시에도 인정 나. 장기유치용 혈관 카테터 주입(Flushing)에 사용한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33] Nadroparin 주사제 (품명 : 후락시파린주 등)	1. 허가시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시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뇌졸중 증상 발현후 2-3일 이내의 급성기 또는 진행성 뇌경색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용량과 기간은 1일 1바이알(5700 IU)을 2회씩 10일로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333] Rivaroxaban 경구제 (품명: 자렐토정 2.5밀리그램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중에서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 고위험군의 기준비만(BMI≥30kg/㎡), 에스트로겐치료, 하지정맥류, 고령(60세 이상), 장기간의 부동(1주일 이상의 침상안정이 필요한 경우), 울혈성심부전, 호흡부전, 악성종양, 중심 정맥카테터 삽입, 항암화학요법, 중증감염증, 정맥혈전색전증의과거력 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위험 감소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 투여시 인정 - 다음 - 1)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2)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환자 또는
	3) 아래와 같은 시술 시행(또는 예정)이 진료기록부 상
	확인된 경우
	- 아 래 -
	가) 전기적 심율동전환술(Electrical Cardioversion):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4주 후까지 투여 시
	나) 도자절제술(Catheter Ablation):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8주 후까지 투여 시
	※ 전기적 심율동전환술: 자588 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 도자절제술: 자654가(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심방세동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냉각풍선절제술
	다.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
	○ 투여기간
	1)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 초기:
	3주 이내
	2)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 6개월 이내
	단, 특발성, 원인불명인 경우의 재발, 위험인자가
	교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속투여를 인정함.
	※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 환자, 임상적 연관성이 있는 출혈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혈액응고장애와 관련된 간질환 환자
	등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함.
	라. 허혈성 사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관상동맥질환 또는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 성인 환자에서 Rivaroxaban
	2.5mg 과 Aspirin의 병용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투여대상
	가) 만 65세 이상으로 최근 심근경색 발병 이후 1년
	초과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 환자
	나)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환자
	(1)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관상동맥질환
	(Coronary Artery Disease) 환자
	- 다 음 -
	(가) 최근 심근경색 발병 이후 1년 초과
	(나)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다) 다혈관 관상동맥중재술(PCI)
	(라) 다혈관 관상동맥우회술(CABG)
	*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증상이 있거나 안정/불안정
	협심증 병력이 있으면서, 2개 이상의 관상동맥에
	서 적어도 50%의 협착(stenosis)이 존재
	(2)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말초동맥질환
	(Peripheral Artery Disease) 환자
	- 다 음 -
	(가) 대동맥-대퇴동맥 우회술(aorto-femoral bypass
	surgery), 사지 우회술(limb bypass surgery)
	또는 장골동맥(또는 서혜부하방동맥)의 경피
	경관혈관성형술(PTA)
	(나) 동맥혈관질환으로 사지 또는 족부 절단
	(다) 간헐적 파행(intermittent claudication)이
	동반되고, 발목상완지수(ABI) 0.90 미만 또는
	말초동맥협착(≥50%: angiography 또는
	duplex ultrasound로 확인)인 경우
	(라) 경동맥의 혈관재형성술 (revascularization)
	또는 무증상 경동맥 협착(≥50%: angiography
	또는 duplex ultrasound로 확인)인 경우
	2) 제외대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가) 높은 출혈 위험성 나) 1개월 이내의 뇌졸중 다) 출혈성 또는 열공성 뇌졸중 병력 라) Ejection fraction 30% 미만 또는 NYHA classification III/IV의 중증 심부전 마) GFR(15 mL/분 바) 항혈소판 병용(2제)요법, 비아스피린 항혈소판 지료, 경구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사) CYP3A4와 P-glycoprotein의 강한 저해제 또 CYP3A4의 강한 유도제의 전신 치료환자 (고시 제2022-184호, '22.8.3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39] Cilostazol 경구제 (품명: 프레탈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간헐성 파행을 동반한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등) 나. 뇌경색(심인성뇌색전증 제외) 발증 후 재발억제 및 간헐성 파행을 동반하지 않은 만성동맥폐색증은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고시 제2014-210호, '14.12.1.)
[339] Damoctocog alfa pegol 주사제 (품명: 지비주 500 IU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150일 이상의 노출기간)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A형 혈우병 환자나. 투여 방법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함. -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20-25 IU/kg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 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시 인정함 나) 투여횟수 (1) 매4주 첫 번째 내원 시는 4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 시는 3회분(중증 환자*는 4회분)까지 인정하여 매4주 총 7회분(중증 환자*는 8회분)까지 인정 -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7회분(중증 환자*는 8회분)까지 인정 가능함. (2) 다만, 매4주 7회분(중증 환자*는 8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 하여야 함. (3)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투여분을 포함 * 중증(severe) 환자: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환자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 (품명 :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환자 2) 투여개시 - 혈소판수 20,000/₩ 이하 또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3) 투여중단 및 재치료 - 1일 최대 용량으로 4주간 투여 후에도, 투여개시 시점 대비 다음의 반응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 • 혈소판수 20,000/₩ 이하인 경우: 혈소판수가 20,000/₩ 호과 •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이 멈추고 투여개시 당시 혈소판수보다 증가 4)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나.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인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1) 투여대상: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 (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 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에서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 절대호중구 수(ANC) 500/₩ 이하 -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수 60x10 ⁹ /L 이하 - 혈소판 수 20,000/₩ 이하 2) 투여개시 - 최소 6개월 이상의 ATG(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와 Cyclosporine의 병용요법에 불응인 경우. 단, 고령, 감염 등의 사유로 ATG 투여가 어려운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Cyclosporine

7 8	비디어거기즈 미 HHH
一	제구인성기군 및 병합
구 분 [339] Emicizumab 주사제 (품명: 헴리브라 피하주사 30mg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응고인자 활성도가 1%미만) A형 혈우병 환자가. 투여대상항 하체역가가 5BU(Bethesda unit)/mL 이상의 이력이었으면서 다음의 경우 - 다음 - 1) 만12세 이상: 가)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 또는 나)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2) 만1세이상 만12세미만: 가)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 또는
	나)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나. 투여 시 고려사항 ○ 의료진은 상기 1. 투여대상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허가사항의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항목 등)에 따른 위험성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역관용요법을 포함한 치료법과 동 약제 투여 와의 연관성 등에 대하여 해당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이후, 동 약제 투여에 대하여 해당 환자(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투여하도록 함(진료기록부에 설명·동의서 별도 작성·보관). 다. 투여중지 기준 1) 동 약제 투여 전 치료법과 비교하여 출혈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투여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하여 투여 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치료법 대비 50% 이상의 출혈건수 감소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2. 만 1세 이상의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응고 인자 활성도가 1% 미만) A형 혈우병 환자 가. 투여대상
	1) 중추신경계, 기도 및 폐출혈 등 입원을 동반한 중증출 혈 병력이 확인된 환자
	2) 24주 이상 지속적으로 8인자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중 최소 20 노출일(Exposure Day: ED) 이상 달성한 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8인자제제를 20 노출일 이상 달성한 시점에 만 2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8인자제제의 지속적인 투여
	기간이 24주 미만이더라도 의료진이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여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는 경우 인정
	- 다 음 -
	가) 최근 24주간 진료기록에 확인된 출혈건수가 6회
	이상(만12세 미만은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나) 혈우병성 관절병증이 현재 단순엑스선 상 확인되고 진행성인 경우
	다) 관절초음파 혹은 MRI상 확인되고, 기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소견서 첨부) 소아의 만성 활액막염
	나. 투여 시 고려사항
	의료진은 상기 2. 투여대상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허가사항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위험성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8인자제제에 대한 면역관용
	(tolerance) 획득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이후, 동 약제 투여에 대하여
	환사에게 중문이 실명한 이후, 중 약제 두띠에 내아버 해당환자(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투여하도록 함.
	에 3년시(포오시기 3 기원 3 무대 무역이고득 됨. (진료기록부에 설명·동의서 별도 작성·보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투여중지 기준 해당 약제 투여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하여 ABR*(자발 출혈 또는 일상생활 관련 출혈)이 5 이상일 경우 * ABR(Annualized bleed rate) = 출혈횟수/(치료일수 /365.25) 라. 8인자제제와 동시 처방 ○ Emicizumab 유지요법 중인 환자에서 8인자제제의 처방은 출혈이 있어 내원 시 원내에서의 투여분과 외래에서의 20-25 IU/kg 2회분 처방에 한해 인정함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3. 투여방법 부하용량 투여 기간 동안 원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기간 동안 자가투여에 대한 교육 후 최소 1회 이상 성공적인 자가투여를 병원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해 1회 내원 시 최대 4주분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후 처방은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한 일지를 환자 및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한 경우에 한함. 4. 1년 이상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혈액종양 내과 전문의 또는 5년 이상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소아청소년과/내과 전문의의 처방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339] G-CSF 주사제 filgrastim (품명 : 그라신프리필드 시린지주 등), Lenograstim	 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허가사항 중 호중구감소증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경우 투여를 시작하여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품명 : 뉴트로진주)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나.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이식 후 투여를 시작하여 호중구수가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다. 암 환자(항암화학요법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등)의 호중구감소증의 경우에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인정 3. Lenograstim(품명: 뉴트로진주)은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간 이식 후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호중구 감소증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339] Hydroxyethyl starch 함유 제제 (품명: 볼루벤주,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 헥스텐드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술 중 또는 수술과 관련한 대량출혈(Massive bleeding)으로 순환혈액량(Circulating blood volume)의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나. 혈액응고장애를 지닌 환자에서 혈액량 부족증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 다. 혈장증량과 함께 순환혈액의 삼투압 유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라. 개심술시나 외상(Trauma) 환자 등에서 혈장 증량 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동 약제를 반드시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 E	세구분이기는 첫 이번
[339] Pentastarch 제제 (품명: 제일펜타스타치 10%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술 중 또는 수술과 관련한 대량출혈(Massive bleeding)으로 순환혈액량(Circulating blood volume)의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나. 혈액응고장애를 지닌 환자에서 혈액량 부족증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 다. 혈장증량과 함께 순환혈액의 삼투압 유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라. 개심술시나 Trauma 환자 등에서 혈장 증량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마. 백혈구성분채집술(Leukapheresis)에 사용 시 바. 기타 동 약제를 반드시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고시 제2017-193호, '17.11.1.)
[339] Plerixafor 주사제 (품명 : 모조빌주 등)	1.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량, 투여 횟수)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및 투여 시기 1) 성인(만18세 이상) 가)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기존의 가동화 방안 (항암제와 과립세포군촉진인자(G-CSF)의 병용 또는 G-CSF 단독)으로 실패하여 조혈모세포가 충분히 채집되지 않은 경우* ※ 비호지킨림프종: 3일간 채집량이 2.0 × 10 ⁶ CD34+cell/kg 미만인 경우 다발성골수종: 2일간 채집량이 2.0 × 10 ⁶

구 분	세부인정기	준 및 방법
구 분	CD3 나) 비호지킨림프종 및 방안(항암제와 과립서 또는 G-CSF 단독) 해당하여 조혈모세포 채집기간 중 선제적 - 다 비호지킨림프종 ① 말초혈액 CD34+ cell count 〈 10 cell/µL*	34+cell/kg 미만인 경우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가동화 베포군촉진인자(G-CSF)의 병용 시행 중 다음의 ① 또는 ②에 . 채집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으로 투여 시 음 -
	⟨ 0.7 × 10 ⁶ CD34+cell/kg	⟨ 1.0 × 10 ⁶ CD34+cell/kg 으로 가동화한 경우, G-CSF
	투여 4-5일째	
	"G-CSF+항암화학요법"으	로 가동화한 경우, WBC 〉
	3000/uL 일 때	
	2) 소아(만1세~만18세 및	/
	,,	양 환자에서 기존의 가동화방안
		군촉진인자 (G-CSF)의 병용
		으로 실패하여 조혈모세포가
	충분히 채집되지 않	= '
	※ 덤프종: 3일간 재십号 미만인 경우	}∘] 2.0 × 10 ⁶ CD34+cell/kg
		- <u>간</u> 채집량이 2.0 × 10 ⁶
		1 세엽영의 2.0 × 10 64+cell/kg 미만인 경우
		종양 환자에서 가동화 방안
		군촉진인자 (G-CSF)의 병용
		시행 중 다음의 ① 또는 ②에
		채집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채집기간 중 선제적	으로 투여 시

구 분	세부인정기	준 및 방법
	- 다	미o -
	림프종	고형악성종양
	① 말초혈액 CD34+ cell count 〈 10 cell/μL*	15 cell/μL* ② 조혈모세포 채집 첫째 날 채집량
	* 측정 시기: "G-CSF 단독"	으로 가동화한 경우, G-CSF
	투여 4-5일째	
	"G-CSF+항암화학요법"으	로 가동화한 경우, WBC 〉
	3000/uL 일 때	
	나. 투여 횟수	
		단, 모조빌 2회 투여를 포함한
	–	채집 전 기간(Plerixafor 투
		포함) 동안 채집된 CD34 양성
		10 ⁶ CD34+cell/kg 이상이면
		4+cell/kg 미만인 경우 추가
	1회(총 3회) 투여를	
		·처 허가 범위 내에서 인정함. ŀ, 용량, 투여 횟수) 내이나,
		r, 용당, 두역 왓ㅜ/ 네이다, 및 투여 시기' 또는 '나. 투여
		로 구의 제가 그는 의. 구의 F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_ ,,, _ , , , , , ,	수를 초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여 횟수 :	
		실패가 예상되지 않고, 실패
		조혈모세포 채집량을 늘리기
	위해 투여하는 경	
	(고	시 제2024-130호, '24.7.1.)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 무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Beroctocog alfa (품명: 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 (품명: 고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 (품명: 고린진에프주 등), Ti회 투여용량(1회분): 20-25 IU/kg 다만, 중등도 (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천부 시 인정함 가)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나)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투여 후 48시킨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 나. 투여횟수 1)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중증 환자*는 6회분)까지 매4주 총 10회분(중증 환자*는 12회분)까지 인정 -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10회분(중증 환자*는 12회분)까지 인정 가능함. 2) 다만, 매4주 10회분(중증 환자*는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원내투여분을 포함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WII 주사제 (품명: 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 (품명: 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 (품명: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20-25 IU/kg 다만, 중등도 (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가)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나)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 나. 투여횟수 1)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중증 환자 는 6회분)까지, 매4주 총 10회분(중증 환자 는 12회분)까지 인정 -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10회분(중증 환자 는 12회분) 까지 인정 가능함. 2) 다만, 매4주 10회분(중증 환자 는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환자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고시 제2023-146호, '23.8.1.)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W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20-25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가)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나)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투여 후 72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 나. 투여횟수 1) 매4주 첫 번째 내원시는 4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시는
	1) 매4수 첫 번째 내원시는 4회문까지, 누 번째 내원시는 3회분(중증 환자 [*] 는 4회분)까지 인정하여 매4주 총 7회분(중증 환자 [*] 는 8회분)까지 인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7회분(중증 환자 [*] 는 8회분) 까지 인정 가능함. 2) 다만, 매4주 7회분(중증 환자 [*] 는 8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원내투여분을 포함 * 중증(severe) 환자: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환자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주사제 (품명:베네픽스주)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39 IU/kg(소아는 42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65 IU/kg (소아는 최대 70 IU/kg) -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나. 투여횟수 1) 매4주 첫 번째 내원시는 4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시는 3회분(중증 환자*는 4회분)까지 인정하여 매4주 총 7회분(중증 환자*는 8회분)까지 인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7회분(중증 환자 [*] 는 8회분)까지 인정 가능함. 2) 다만, 매4주 7회분(중증 환자 [*] 는 8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원내투여분을 포함 * 중증(severe) 환자: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한자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albumun fusion protein Albutrepenonacog α 주사제 (품명: 아이델비온주 250 IU 등)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23 IU/kg(소아는 30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9 IU/kg(소아는 최대 50 IU/kg) -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시 인정함 나. 투여횟수 1) 매4주 첫 번째 내원시는 2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시는 1회분(중증환자*는 2회분)까지 인정하여 매4주 총 3회분까지 인정(중증환자*는 4회분까지 인정) -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3회분까지 인정 가능함(중증환자*는 4회분) 2) 다만, 매4주 3회분(중증환자*는 4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1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원내투여분을 포함 * 중증(severe)환자: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환자(고시 제2024-130호, '24.7.1.)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Fc fusion protein Eftrenonacog α 주사제 (품명 : 알프로릭스주 250 IU 등)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30 IU/kg(소아는 42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50 IU/kg(소아는 최대 70 IU/kg) -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투여횟수 1) 매4주 첫 번째 내원시는 2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시는 1회분(중증 환자*는 2회분)까지 인정하여 매4주 총 3회분 (중증 환자*는 4회분)까지 인정 -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3회분(중증 환자*는 4회분)까지 인정 가능함. 2) 다만, 매4주 3회분(중증 환자*는 4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1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원내투여분을 포함 * 중증(severe) 환자: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환자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 B항체 환자의 면역관용 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Nonacog gamma 주사제 (품명: 릭수비스주)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33 IU/kg(소아는 42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55 IU/kg (소아는 최대 70 IU/kg) -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시 인정함 나. 투여횟수 1) 매4주 첫 번째 내원시는 4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시는 3회분(중증 환자*는 4회분)까지 인정하여 매4주 총 7회분(중증 환자*는 8회분)까지 인정 -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7회분(중증 환자*는 8회분)까지 인정 가능함. 2) 다만, 매4주 7회분(중증 환자*는 8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원내투여분을 포함 * 중증(severe) 환자: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환자
[339] Romiplostim 주사제 (품명: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 크로그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환자 2) 투여개시 - 혈소판수 20,000/uL 이하 또는 - 혈소판수 20,000-30,000/uL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3) 투여중단 및 재치료 - 1일 최대 용량으로 4주간 투여 후에도, 투여개시 시점 대비 다음의 반응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 • 혈소판수 20,000/씨 이하인 경우: 혈소판수가 20,000/씨 이하인 경우: 혈소판수 20,000~30,000/씨 이더라도 임상적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제 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임상적의의가 있는 출혈이 멈추고 투여개시 당시 혈소판수보다 증가 4)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나. 면역억제요법에 불응이거나 면역억제요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인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1) 투여대상: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 (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결과에서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절대호중구 수(ANC) 500/씨 이하-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수 60x109/L 이하 - 혈소판 수 20,000/씨 이하 2) 투여개시 - 최소 6개월 이상의 ATG(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와 Cyclosporine의 병용요법에 불응인 경우. 단. 고령, 감염 등의 사유로 ATG 투여가 어려운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Cyclosporine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만독요법에 불응인 경우 3)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2. 허가사항(효능·효과)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I 正	세구분이기는 첫 이번
[339] Susoctocog alfa 주사제 (품명: 오비주르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 1) 투여 대상 가) 항체 역가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나) 항체 역가 5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다) 최근에 항체 역가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어 오비주르주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 2) 투여 방법가 입원 및 외래환자에게 원내 투여함. 나)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등)을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3) 동 약제는 혈액질환 관련 전문의(혈액종양 내과/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가 진단하고 처방하여야 함.
[339] Ticlopidine HCl 경구제 (품명 : 유유크리드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대상에서 "[일반원칙] 경구 항혈전치료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에 따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혈관수술 및 혈액체외순환에 따른 혈전·색전의 치료 및 혈류장애의 개선 나. 만성 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동통 및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

인공신장관류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41] 복막투석액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41] L-methionine 외 복막투석액 (품명 : 뉴트리닐 피디-4액)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투석과 동시에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이므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동 약제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 E	세구분이기는 첫 이번
[34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Calcium chloride 외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음
(안내수술용	- 아 래 -
평형염액)	가. 인정수술
(품명:비에스에스액 등)	1)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자511-가, 자511-나, 자
	511-라)
	2) 유리체절제술(자512-가, 자512-나)
	3) 망막주위막제거술(자514-1)
	나. 인정용량
	수술 당 최대 500ml(1병). 다만, BSS Plus액사용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349]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D-mannitol +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인정
D-sorbitol	하지 않음.
(품명 : 유로솔액 등)	- 아 래 -
	가. 경요도적 방광 내 수술(자351다 또는 자351마)
	나. 관혈적 또는 경요도적 수술 후 합병증(출혈)이 있어
	내시경을 통한 전기소작
	다.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자330-1)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자궁경시술 시 자궁확장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2Bags(6L)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0-265호, '20.12.1.)

T	u	
Lamivudine 100mg 요양급여를 인정함. 경구제 - 아 래 - (품명: 제픽스정 등) ○ 만성 B형간염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HIV-1 감염 동 약제를 '칵테일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1] Lamivudine 100mg 경구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만성 B형간염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세부인정기준및 방법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 HIV-1 감염 동약제를 '칵테일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2] 구형흡착탄 경구제 (품명: 크레메진세립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투석 전 환자 중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 5.0mg/dL인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22-131호, '22.6.1.)
[392] Betaine anhydrous 180g 경구제 (품명: 시스타단산 1그램)	호모시스틴뇨증이 확진된 환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화학적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2차적으로 투여 한 경우 - 다 음 - 가. Pyridoxine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나. Pyridoxine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사. Pyridoxine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가. 시스타단은 호모시스틴뇨증 환자에서 상승된 혈중 Homocysteine 수치의 감소에 사용됨. 이는 다음 요소의 결핍증 또는 장애에 따른 호모시스틴뇨증을 포함함. 1) Cystathionine Beta-Synthase(CBS) 2) 5,10-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 (MTHFR) 3) Cobalamin cofactor metabolism(cbl) 나. 시스타단에 대한 환자의 반응 정도는 Homocysteine의 혈중농도를 통해 모니터 될 수 있음. 반응은 대개 1주 안에 나타나며, 1달 안에 항정상태(Steady state)가 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2] Deferasirox 경구제 (품명: 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소아등 정기적 수혈양이 적은 환자(연간 농축적혈구 8Unit 이하)로서 만성 철분축적의 임상증거(혈청페리틴〉1,000㎏/L)가확인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392] Flumazenil 주사제 (품명: 아넥세이트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환자 치료 1) 벤조디아제핀계(Benzodiazepine) 약물중독의 확진 및 해독 2) 원인불명으로 의식불명 시 Benzodiazepine계 약물, 다른 약물 또는 뇌손상에 의한 것인지의 감별을 위한 진단 3) 약물과량 사용 시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중추 진정작용에 대한 특정역전(자발호흡 및 의식을 회복 시킴으로써 삽관법을 불필요하게 하거나 발관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에 사용한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역전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우. 단, 빠른 회복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1) 산소를 공급함에도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O2 saturation)를 90%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시술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모순적 반응 (paradoxical reaction)이 발생한 경우 -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중추진정작용을 역전시키기 위해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투여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7-35호, '17.3.1.)
[392] Leucovorin calcium 주사제 (품명:페르본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효능·효과 및 용법·용량)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메타놀(Methanol) 중독에 투여한 경우 나. 조혈모세포이식후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예방을 위해 MTX(Methotrexate) 투여 시 동 약제를 다음과 같이 투여한 경우 ○ MTX와 동일한 용량의 Leucovorin을 하루 4번씩 2일간 투여하여 MTX 4회 주입에 Leucovorin 총 32회 투여 (고시 제2013-127호, '13.9.1.)
[392] Sodium thiosulfate 주사제 (품명 : 아메톡스주 25%)	1. 허가사항(효능·효과) 중 "시안중독"의 경우에는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효능·효과) 중 "시스플라틴 유발성 신독성 예방"의 경우에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392] Zinc acetate 경구제 (품명: 윌리진캡슐 25밀 리그램, 50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윌슨병)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통풍치료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4] 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베쳇증후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10.510.0)	(고시 제2013-127호, '13.9.1.)

395 효소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		**************************************
[395]	1. 허가시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Agalsidase alfa 3.5mg	요양급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
주사제	자가 .	부담토록 함.
(품명 : 레프라갈주)		- 아 래 -
	가. 투	트여대상
	1)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①~⑨항 중 최소 1개)에 해당
	ō	하는 파브리병 관련 임상 증상 또는 징후를 보이며,
	フ	기타 원인이 배제된(감별진단 된) 환자로서,
	2) 🖫	백혈구 또는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α-galactosidase A
		활성도가 감소하고 유전자검사로 파브리병이 확진된 경우
		(단, 이 중 α-galactosidase A의 활성도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여성 환자의 경우 유전자 검사로 확진할 수 있음)
		- 다 음 -
	⇒ 1 □	. –
	항목	요건 ① 사구체 여과율 감소
		(15≤eGFR⟨90ml/min/1.73m²(adjusted for
		age〉40)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② 미세알부민뇨(>30mg/g)
	 신장 [*]	(최소 24시간 간격 2회 이상 검출)
		남성 ③ 알부민뇨(>20@/min)
		(최소 24시간 간격 2회 이상 검출) ④ 단백뇨(>150mg/24hr)
		여성 ⑤ 진행의 임상적 증거를 동반한 단백뇨
		$\langle 300 \text{mg}/24 \text{hr} \rangle$
		⑥ MRI나 심초음파로 입증된 좌심실 비대(좌심실벽
		두께〉12mm)(단,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동 약제 투여 전 최소 6개월의 혈압 치료가 선행
	1 13 N	당 약세 구역 전 최오 6개월의 월립 지묘가 전행 되어야 함) 등
		⑦ 임상적으로 유의한 부정맥 및 전도장애 등
	신경	⑧ 객관적 검사로 입증된 뇌졸중이나 일과성허혈발작 등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통 나. 평 이 6-: 심; 대한 2. 허가사 대상이	요건 ③ 항뇌전증약과/또는 최대용량의 진통제(NSAIDs 등)를 사용함에도 조절되지 않는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지속 투여를 위해 진료기록 등을 통해 약제 효과가 지속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등 장의 경우, 기타 원인과의 감별진단을 위해 생검을 한 확진을 권장함.
[395] Agalsidase \$\beta\$ 37mg 주사제 (품명:파브라자임주 등)	요양급 환자기 가. 투 1) 다 다 2) 변 ((마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다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다 부담토록 함 아 래 - 여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①∼⑨항 중 최소 1개)에 해 당하는 파브리병 관련 임상 증상 또는 징후를 보이 며, 기타 원인이 배제된(감별진단 된) 환자로서, 백혈구 또는 피부섬유이세포 등에서 α-galactosidase A 활성도가 감소하고 유전자검사로 파브리병이 확진된 경우 단, 이 중 α-galactosidase A의 활성도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여성 환자의 경우 유전자 검사로 확진할 수 있음) - 다 음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항목	요건	
		① 사구체 여과율 감소	
		(15≦eGFR⟨90ml/min/1.73m²(adjusted	
		for age〉40)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② 미세알부민뇨(>30mg/g)	
	신장*	(최소 24시간 간격 2회 이상 검출)	
		남성 ③ 알부민뇨(>20μg/min)	
		(최소 24시간 간격 2회 이상 검출) ④ 단백뇨(>150mg/24hr)	
		⑤ 진행의 임상적 증거를 동반한 단백뇨	
		여성 ()300mg/24hr)	
		⑥ MRI나 심초음파로 입증된 좌심실 비대(좌심실벽	
		두께〉12mm)(단,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심장	동 약제 투여 전 최소 6개월의 혈압 치료가 선행	
		되어야 함) 등	
		⑦ 임상적으로 유의한 부정맥 및 전도장애 등	
	신경	⑧ 객관적 검사로 입증된 뇌졸중이나 일과성하혈발작 등	
		⑨ 항뇌전증약과/또는 최대용량의 진통제(NSAIDs	
	통증	등)를 사용함에도 조절되지 않는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지속 투여를 위해 진료기록 등을 통해 약제	
	w 117h	효과가 지속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등	
		의 경우, 기타 원인과의 감별진단을 위해 생검을	
	_	확진을 권장함.	
	나. 평	가방법	
	0]	약 치료 시작 전 최초 평가를 실시하며, 이후 매	
	6-	-12개월 간격으로 신기능 검사(사구체여과율 등) 또	
	느	· 심기능 검사(EKG 등) 등을 통해 약제 투여 효과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함.	
		P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상기 '가.투여	
	대상'이	게 해당하는 소아 파브리병 환자에 '나.평가방법'에	
	따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0-17호, '20.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5] Alglucosidase alfa 주사제 (품명:마이오자임주), Avalglucosidase alfa 주사제 (품명:넥스비아자임주)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 폼페병 (infantile-onset form Pompe disease) 및 후기 발병형 폼페병(late-onset form Pompe disease) - 후기 발병형은 투여개시 1년 후 증상이나 삶의 질 개선정도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함. ○ 마이오자임주 투여 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넥스비아자임주로 교체투여(Switch)하는경우급여로 인정하며,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함.
[395] Asfotase alfa 주사제 (품명: 스트렌식주 40mg/mL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면서 PLP(Pyridoxal-5'-phosphate)가 정상 범위 초과 2) 치료 시작 전 방사선사진에서 저인산효소증의 특징적인 골 증상 확인 3) 치료 시작이 만 19세 미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4	ر ادما ر	
	나. 투여 시	
		작 시 아래 각 환자군에 따른 투여 시작 기준을
	만족하	
		- 아 래 -
	환자군	투여 시작 기준
	만 1세 미만 발병환자	저인산효소증으로 확진된 경우
	만 1세 이상 발병 만 1세-4세 환자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발달 평가(K-DST(한국형 영유아 발달선별 검사) 대근육 발달부분)에서 해당 나이의 운동발달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근골격계 통증이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PedsQL; Pediatric Quality of Life inventory)을 주거나 두 종류 이상의 진통제에도 불구하고 완화되지 않는 경우
	만 1세 이상 발병 만 5세-18세 환자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다른 사람이나 보조 기구의 도움이 없이 300m 이상은 걸을 수 없는 등 운동성의 제한을 보이는 경우(Bleck Ambulation Efficiency Scoring 1~6) 2)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근골격계 통증이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PedsQL)을 주거나 두 종류 이상의 진통제에도 불구하고 완화되지 않는 경우
	마다 인 보행기 라. 투여 중 1) 치료 시	작 시, 치료 후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6개월]상평가(키, 체중, 호흡기능, 운동발달단계, 능, 통증 등)를 하여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환자군	투여 중지 기준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단, 투여 5년 후에는 연령별 중지 기준에 따름) 1)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2)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진행성 질환으로 진단 받은 경우 3) 치료 시작 2년 이후에도 호흡보조장치를 유지하는 경우
	그 외 만 18세 이하 환자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키의 소실이 일어나거나 백분위선 내에서의 성장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5% 이상 감소) 2) 6분보행검사에서 개선이 없거나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치료 전 검사 대비 (25m 또는 (10% 증가) 혹은 Bleck 점수가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3) 진통제 투여 횟수의 유의한 감소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PedsQL로 측정한 삶의 질에서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만 19세 이상 환자	 3) 진통제 투여 횟수의 유의한 감소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삶의 질 개선의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삶의 질 개선의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Brief Pain Inventory 2점 이하 개선이면서 EQ-5D-5L 0.15점 이하 개선
	, ,	기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 타당성 가안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투여 및 약제 관리 가. 원내투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투여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 받았을 경우에만 자가 투여를 인정하며,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까지로 함. 나. 약제 투여기간 및 관리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고시 제2024-55호, '24.4.1.)
[395] Elosulfase alfa 5mg 주사제 (품명:비미짐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효소 검사, 뇨 검사, 돌연변이 검사 모두에서 MPS IVA형(모르퀴오 A 증후군)이 확진된 환자 나. 투여중지 기준 1) 12개월 동안 2번(6개월마다 1번)의 임상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치료 시작 후 1년 마다 다음 5가지 평가를 실시하여 5가지 중 최소 4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단, ①, ②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③, ④, ⑤ 중 최소 2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① 6분 보행 검사가 치료 시작 시점 대비 최소 10% 개선(치료 시작 1년 후부터는 치료 시작 시점의수치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함.) ② FVC(forced vital capacity) 또는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1) 수치가 치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시작 시점 대비 5% 이상 개선(치료 시작 1년 후 부터는 치료시작 시점의 수치가 최소한 유지 되어야 함.) ③ 뇨 중 KS(keratan sulfate) 수치가 치료 시작 시점 대비 20% 감소 ④ 심장초음파로 측정한 박출계수(ejection fraction)가 치료 시작 시점 대비 10% 이하로 감소 ⑤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FIM(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score가 치료 시작 시점 대비 개선 또는 유지 ※ FIM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사 소견서를 첨부 하여야 함. 다. 제외 대상 1) 생명을 위협하는 진행성 질환(암, 다발성 경화증 등)이 있는 경우
	 2)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보조기에 의존하는 환자 3) 관련 모니터링에 불응하는 경우 (고시 제2016-83호, '16.6.1.)
[395] Galsulfase 주사제 (품명 : 나글라자임주)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뮤코다당증 V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5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 시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395] Idursulfase 주사제 (품명 : 엘라프라제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뮤코다당증 I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만 5세 미만(Idursulfase-beta의 경우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 시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5] Rasburicase 주사제 (품명: 패스터텍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Allopurinol 제제 또는 Rasburicase 투여에도 불구하고 중양용해증후군에 의한 고뇨산혈증이 확진된 경우 나. 항암제 치료에 의한 오심 구토가 심하여 경구용 Allopurinol 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 신기능장애 또는 종양에 의한 신장 침범이 있는 환자에서 종양용해증후군에 의한 고뇨산혈증이 확진된 경우 라. 악성 종양 환자 중 종양용해증후군 발생 고위험군 ○ 투여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버킷림프종, 림프모구림프종 2) 10cm 이상의 소아 고형암 3) 백혈구 50,000/uL 이상인 급성 백혈병 4) 골수 침범이 있는 림프종 5) 자연발생 종양용해증후군 또는 요산 수치 상승(단, 성인 고형암 제외) 6) 신기능 장애 또는 종양에 의한 신장 침범이 있는 경우(단, 성인 고형암 제외) ○ 투여용량: 최대 6mg (고시 제2018-253호, '18.1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6] 당뇨병용제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각 성분의 단일제를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 제로 전환하는 경우 ※ 대상약제 · Gemigliptin + Rosuvastatin · Metformin + Atorvastatin · Metformin + Rosuvastatin (고시 제2018-174호, '18.9.1.)
[396] Dapagliflozin 경구제 (품명: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 [*] 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고시 제2024-20호, '24.2.1.)
[396] Empagliflozin 경구제 (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고시 제2024-20호, '24.2.1.)
[396] Metformin 경구제 (품명 : 다이아벡스정 등)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7-180호, '17.10.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6] Pioglitazone 경구제	제무인정기는 및 영법 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하가시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7-180호, '17.10.1.)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9] 4:1 w/w mixed hydrogel of sodium hyaluronate gel crosslinked by divinyl sulfone and sodium hyaluronate 주사제 (품명: 레시노원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고시 제2022-56호, '22.3.1.)
[399]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 (품명: 이모튼캡슐)	허가사항 범위(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1-194호, '21.7.23.)
[399]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품명: 시노비안주,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원샷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 (Kellgren -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고시 제2020-79호, '20.5.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9] Bromocryptine mesylate 경구제 (품명: 팔로델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황체자극호르몬 (Prolactin)치가 높은 간성혼수, 조울정신병, 치매상병 등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상 필요치 않는 단순한 모유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399] Burosumab 주사제 (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및 시작기준 기존 치료제(활성형 vitamin D 제제 등)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세 ~만 12세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XLH) 구루병 환자(단, 만 12세 초과 만 18세 미만인 경우 방사선학적 검사로 골성장 진행이 확인되어 약제 반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포함)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임상 증상(하나 이상 만족) - 성장지연, 치아이상, 하지골변형, 두개골 조기융합, 두개골 내 압력 상승 등 2) 방사선학적 검사 - RSS(rickets severity score) 2점 이상 3) 생화학적 검사(모두 만족) - 적인산혈증(3.0mg/dL 미만) - 신장 인 소실 확인(TmP/GFR 참고치 미만) - 정상 혈청 크레아티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 유전자 검사
	- PHEX gene mutation 확인
	나. 제외대상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투여시작 대상에서 제외함
	- 다 음 -
	1) Tanner stage ≥ 4점
	2) 신장(Height) > 연령 및 성별에 대한 50번째 백분위수
	3) 12개월 이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
	4) 부갑상선호르몬(Parathyroid hormone) > 19 pmol/L
	(180 pg/mL)
	5) 저칼슘혈증, 고칼슘혈증
	6) Grade 4 이상의 신석회증(nephrocalcinosis)
	다. 평가방법
	매 12개월마다 반응평기(RSS, 방사선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라. 중지기준
	1) 치료 시작 후 매 12개월 간격의 반응평가 결과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RSS(rickets severity score)
	(1) 1차 반응평가(치료시작 후 12개월)에서 RSS 점수가
	치료시작 시점보다 개선되지 않은 경우 또는
	(2) 이후 반응평가에서 1차 반응평가 시의 개선된
	RSS 점수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나) 생화학적 검사 결과가 치료시작 기저치 대비 개선
	되지 않은 경우(하나 이상 해당)
	(1) 혈청 인 수치 감소 (2) Tan PICER 가장
	(2) TmP/GFR 감소 다) 보기사사기노하기조(Laurannanathanathiana)
	다) 부갑상선기능항진증(hyperparathyroidism)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라) 신석회증(nephrocalcinosis) 마) 방사선학적 평가로 새로 발생한 골절 또는 가골절 확인 2) 지속투여 중 만 18세가 된 성인 환자 3) 기타 위원회에서 투여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사전신청서 제출후 즉시 투여하는 경우는 추후 승인 시 종전 투여분을 소급 인정함. 2. 투여 및 약제 관리가. 원내투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의시는 자가투여 적용의 타당성(즉각적인 용량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을 판단하여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에서 투여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 받았을 경우에만 자가 투여를 인정하며,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 분까지로 함. 나. 약제 투여기간 및 관리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3. 크리스비타주의 사전승인을 위한 방법·절차 및 위원회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고, 동약제의 고시 적용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399] Cabergoline 경구제 (품명: 카버락틴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상 필요치 않는 단순한 모유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18-58호, '18.4.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 E	세구근증기한 첫 증납
[399]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Carglumic acid 경구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품명 :	환자가 부담토록 함.
카바글루확산정200mg)	- 아 래 -
	가. NAGS(N-acetylglutamate synthase) 결핍으로 인한
	고암모니아혈증
	나. 이소발레르산혈증 또는 메틸말론산혈증 또는 프로
	피온산혈증으로 인한 고암모니아혈증의 응급상황에
	투여한 경우 투여소견서(혈중 암모니아 농도 또는
	encephalopathy 소견 등 포함)를 참조하여 인정함.
	- 다만, 치료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투여
	중단하여야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환자
	1) 투여대상 : 혈청암모니아 수치 150μmol/L이상으
	로써 의식변화를 동반한 환자
	2) 투여기간:5일 이내
	* 카바글루는 대사이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진료의의 감독아래 처방되어야 함
	(고시 제2020-69호, '20.4.1.)
[39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Cinacalcet HCl 경구제	
(품명:레그파라정 등)	
	- 아 래 -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중인 만성신
	부전 환자로서 동 약제를 투여하기 전 혈청칼슘이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9.0mg/dL 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pg/mL 이상인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81호, '18.5.1.)
[399] Denosumab 주사제 (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80mg/cm²이하인 경우 3)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나. 투여기간 1)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2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6회)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mg/cm²이하)로 약제투여가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2) 다만, 가. 투여대상 1)에 해당하여 투여후, 추적검사에서가. 투여대상 1)에 따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2.5〈T-score≤-2.0)에 해당될 경우 1년(2회) 추가투여를 급여 인정하며, 이후에도 T-score가 -2.5 초과 -2.0이하(-2.5〈T-score≤-2.0)에 해당될 경우 1년(2회)의 추가투여를 급여 인정하며, 이후에도 T-score가 -2.5 초과 -2.0이하(-2.5〈T-score≤-2.0)에 해당될 경우 1년(2회)의 추가투여를 급여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2.5⟨T-score≤-2.0 범위에서 연속투여는 2년(4회) (1년(2회) + 1년(2회))까지 인정하며, 2년 내에서 Raloxifene,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개별 성분, 동 약제 사이에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교체투여 가능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고시 제2024-72호, '24.5.1.)
[399] Diazoxide (품명: 아이벡스프로글리셈 현탁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다음 질병과 관련된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의치료 - 성인: 수술 불가능한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암종이나췌장외악성종양 - 유아 및 소아: 류신 감수성, 췌도세포과형성증, 췌장외악성종양,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샘종증이나취장외악성종양,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샘종증이 의약은 수술 전에 임시조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술후저혈당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위 증상(질병) 중 하나로 인한 저혈당증으로 진단되었을때만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특정 치료법 또는 수술이 실패했거나 불가능한경우 프로글리셈을 사용한 치료가 고려되어야함.
[399]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 (품명 : 다이놀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가. X선 소견에서 뼈의 파제트병(Paget's Disease) 및 이상 부위 골화 (Heterotropic ossification)가 확인 된 경우 나. 골다공증에 투여 시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 인정 (고시 제2017-193호, '17.11.1.)
[399] Eliglustat tartrate 경구제 (품명: 세레델가캡슐 84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CYP2D6 유전형 검사 상 CYP2D6 느린 대사자 (PM, Poor metabolizer), 중간 대사자(IM, Intermediate metabolizer) 혹은 빠른 대사자(EM, Extensive metabolizer) 로서 1형 고셔병(GD1, Gaucher disease 1) 성인 환자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399] Lactulose 경구제 [전문의약품] (품명: 듀파락시럽 등) [일반의약품] (품명: 듀파락-이지시럽 등)	[전문의약품]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 만성 문맥계 뇌증(Chronic PSE)에 있어서의 간성혼수의 치료 및 예방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을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음 - ○ 간성혼수에 관장요법으로 경구투여와 동시 투여[일반의약품]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 변비(만성변비, 영·유아 및 소아의 변비, 분만 후의 변비)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음 - 가. 소아변비에 1일 1ml/kg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 시 2ml/kg 용량까지 인정나. 만성신부전 환자의 만성변비에 투여 시 1일 60ml용량까지 인정
[399] Miglustat 경구제 (품명: 자베스카캡슐 100밀리그램)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제1형 고셔병(Gaucher disease)으로 다음 기준을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음 - 1) 성인(18~70세)으로 경증-중등도의 증상을 보이는경우 2) 혈액하적 검사결과 헤모글로빈이 9.0g/dL 이상이고혈소판 수치가 50,000/μL 이상인 경우3) 효소대체요법이 불가능한 경우(효소 약제에 대해알러지 또는 과민반응이 있거나 효소대체요법을 위한혈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나. C형, 니만-피크병(Niemann Pick Type C, NPC)1) 유전하적 검사(molecular genetic test of NPC1 and/or NPC2 genes)에 대해가) 유전자 NPC1, NPC2 모두에서 pathogenic mutation이 있으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있거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유전자 NPC1 또는 NPC2 중 1개의 pathogenic mutation만 있는 경우 피부섬유모세포배양을 통한 필리핀 염색법(filipin staining in fibroblasts cultured from skin biopsy)으로 확진되고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환자 2) 치료의 유효성을 6개월마다 평가하고 치료 지속 여부는 1년 후 재평가해야 함 3) 신생아기 초기에 발현하는 경우와 말기 상태의 중증 신경학적 장애(severe neurological impairment)를 보이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높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9-21호, '19.2.1.)
[399] Nafamostat 주사제 (품명: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췌염의 급성증상(급성췌염, 만성췌염의 급성악화기, 수술 후의 급성췌염, 췌관조영술 후 급성췌염, 외상성 췌염)의 개선 목적으로 급성기에 사용시 인정(허가사항에 따라 '주사용후탄 등'만 해당) 나. 파종혈관내응고증(DIC)에 급성기 사용시 인정 다. 혈액투석(Hemodialysis, 자702) 또는 혈액관류 (Hemoperfusion, 자704)를 행하는 "출혈성 병변이 있는 환자이거나, 수술 전후의 환자, 혈소판수 50,000/mm³ 미만의 저혈소판증 환자"에게 사용시인정 라. 지속적정정맥 또는 동정맥혈액투석(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dialysis, 자703),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diafiltration, 자705-1)에 사용 시 인정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부분체외순환(ECMO)의 관류혈액 응고방지 (고시 제2020-161호, '20.8.1.)
[399] Nitisinone 경구제 (품명 : 올파딘캅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유전성 타이로신혈증 타입1의 치료에서 타이로신과 페닐알라닌 식이제한 요법에 보조 (고시 제2013-127호, '13.9.1.)
[399] Pamidronate 제제 (품명: 파노린주사 등)	 허가사항 중 골다공증에 투여 시에는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골형성부전증 소아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정형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에 의해서 골형성부전증으로 진단된 여자 만 15세, 남자 만 17세 이하의 소아로서가. 3회 이상 방사선학적으로 입증된 장관골의 골절이 있는 경우 나. 2마디 이상의 척추압박골절이 있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만 2세 이하 소아로 다발성골절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8-253호, '18.12.1.)
[399]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 (품명: 세레브로리진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고시 제2020-107호, '20.6.1.)
[399] Romosozumab 주사제 (품명: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기존 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투여기간: 일생에서 1개월 간격으로 총 12회까지만인정 다. 평가방법: 동 약제 투여 종료 후 골밀도검사를 실시하여기저치 대비 동일 또는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골흡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억제제로 전환 투여 인정 라. 골흡수억제제(Alendronate 경구제 또는 Denosumab 주사제)로 전환 투여는 동 약제 투여 종료 후 마지막 투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여를 시작하고, 최대 12 개월까지 인정 마.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지난 1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 효과가 없는 경우란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고시 제2022-207호, '22.9.1.)
[399] S-adenosyl-L-met 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 (품명:사데닌정 등)	허가사항 범위(우울증) 내에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22-56호, '22.3.11.)
[399] Sodium alendronate 시럽제 (품명:마시본액 등)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사항" 적용을 예외함. (고시 제2020-133호, '20.7.1.)
[399]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품명 : 히루안플러스주 등)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2) 견관절주위염 나. 투여횟수 1) 슬관절의 골관절염: 재투여 시점은 1주기 투여 후 효과가 있을 경우에 최소 6개월 경과한 후 투여 시 인정 2) 견관절주위염: 1주기 투여 인정 ※ 1주기: 1주에 1회씩 3주간 연속 투여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399]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 (품명: 하이알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 2) 견관절주위염 나. 투여횟수 1)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 : 재투여 시점은 1주기 투여 후 효과가 있을 경우에 최소 6개월 경과한 후 투여 시 인정 2) 견관절주위염: 1주기 투여 인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주기: 1주에 1회씩 5주간 연속 투여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고시 제2020-79호, '20.5.1.)
[399] Thioctic acid 주사제 (품명: 부광치옥타시드주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임상증상과 이학적 및 신경학적 진찰을 포함한 임상적 검사가 있으면서, 2) 다음 중 한 가지 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병성 다발성신경병증이 확진된 환자 - 다음 - 가) 신경전도검사(NCS; Nerve Conduction Study)나) 정량적 감각기능검사(QST; Quantitative sensory Test) 다) 자율신경계 이상검사(Autonomic nervous System Function Test) 나. 병용투여 ○ Thioctic acid 주사제와 Thioctic acid(또는 αーlipoic acid)경구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음. 다. 투여기간: 상기 투여대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이후에는 경구 투여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품명: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 (품명: 대응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X선 소견에서 확인된 골파제트병(Paget's disease)나. 골다공증에 투여 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투여 시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 80mg/c㎡이하인 경우 다)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2) 투여횟수 및 기간: 1회/년 가)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 다)에 해당하는 경우 3회 인정하며, 추적검사상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mg/cm²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총 6회까지 인정함나) 다만, 1) 투여대상 가)에 해당하여 투여후, 추적검사에서 1) 투여대상 가)에 따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2.5〈T-score≤ -2.0)에 해당될 경우 1년 추가투여를 급여 인정하며, 이후에도 T-score가 -2.5 초과 -2.0이하(-2.5〈T-score≤ -2.0)에 해당될 경우 1년의 추가투여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2.5⟨T-score≤-2.0 범위에서 연속 투여는 2년(1년 + 1년)까지 인정하며, 2년 내에서 Raloxifene, Bazedoxifene 제제, Denosumab 주사제, Bisphosphonate 타 성분 및 동 약제 사이에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교체투여 가능하며, 동 약제 총투여횟수는 2) 투여횟수 및 기간 가), 나)를 통틀어총 6회까지 인정함. 3)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환자의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1) 투여대상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가) 폐경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T-score*〈-1.5 나) 폐경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Z-score*〈-3.0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제외))을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측정해야한다. 2) 투여 횟수 - 1회 인정하며,추적검사에서 1) 의 기준이 유지되고약제 투여가계속 필요한 경우에 총 6회까지 인정함. (고시 제2024-72호, '24.5.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399] 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경구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와 병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6-31호, '16.3.1.)

л 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21] 상황균사체엑스 경구제 (품명 : 메시마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 중 '소화기암, 간암 환자의 절제수술 후 화학요법 병용에 의한 면역기능의 항진'에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중 '자궁출혈 및 대하, 월경불순, 장출혈, 오장 및 위장기능 활성화, 해독작용'에는 약값 전액을환자가 부담토록함.
[421] 5-fluorouracil 주사제 (품명: 중외 5-에프유 주 등)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녹내장에 결막하 주사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421] 6-Mercaptopurine 경구제 (품명: 푸리네톤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염증성 장질환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421] Cyclophosphamide 제제	 허가사항 및「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허가사항의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아 래 - 가. 전신성홍반성당창(SLE) 나. 타 치료에 실패한 류마토이드 관절염에 투여 시 다. 성인의 신증후군(Minimal change): Steroid 치료후 사용하는 경우 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ITP): 스테로이드치료, 비장 절제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마. 베켓증후군 바. 급성 진행성 사구체신염, 막성 신증후군, 원발성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신염 사: 중증 초그-스토라우스 증후군(Churg-Strauss 증후군) 아. 괴사성 공막염 자. 다발성 근육염 및 피부근육염: Steroid 치료에 실패 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의 예방을 위하여 투여하는 경우 카. 자가면역성뇌염(Autoimmune encephalitis) 환자 중 Human immunoglobulin G(IVIg)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금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A, 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 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421] Etoposide 제제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의 상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스테로이드치료, 비장절제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ITP) (고시 제2013-127호, '13.9.1.)
[421] GnRH agonist 주사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약제성분: Goserelin, Leuprolide, Triptorelin 나. 급여범위: 각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1) 자궁내막증 - 복강경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 - 초음파검사 또는 자기공명영상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난소, 직장, 방광에 생긴 경우 2) 중추성사춘기조발증 가) 투여대상 (1) 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이상이면서골연령이 해당 역연령보다 증가되고, (2)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자극검사에서황체형성호르몬(LH)이 기저치의 2-3배 증가되면서최고 농도는 5 IU/L 이상인 경우. 나) 투여기간 (1) 투여시작: 역연령 여아 9세(8세 365일),남아는 10세(9세 365일) 미만 (2) 투여종료: 역연령 여아 11세(11세 364일),남아는 12세(12세 364일)까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성장호르몬제와의 병용
	(1) 성장호르몬결핍증이 동반된 경우 GnRH(생식
	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agonist 주사제와
	병용된 성장호르몬주사제도 인정함.
	(2)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주사제로
	인한 성장속도 감소의 경우,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3) 자궁근종
	가) 가임여성 중 임신을 원하는 경우(자궁보존이
	필요한 경우)
	나) 수술 전 자궁근종의 축소목적 또는 대량출혈 등
	으로 당분간 수술이 곤란한 경우 등
	2. 전립선암, 유방암:「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조
	3.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혈우병환자에서 월경으로 인한 과다출혈 예방(무월경
	유도)이 필요한 경우
	1) 투여대상 : 타 약물치료(경구피임제, Progestin제제
	등)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2)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산부인과 협진(Consult)을 반드시 실시하여
	계속 투여여부 결정
	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특발성혈소판감소증, 혈액암 등
	치료 중 혈소판감소증 혹은 골수 억제가 심하여 월경
	으로 인한 과다출혈 예방(무월경 유도)이 필요한 경우
	1) 투여대상:타 약물치료(항혈소판용해제, 프로게스
	토겐 제제 등)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투여소견서 첨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투여방법: 각 약제별 허가사항 중 '자궁내막증 치료'의 용법용량에 의거 투여 3) 투여기간: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여 6개월 이내로 함. 4. 보조생식술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보조생식술 급여 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약제성분: Goserelin 3.6mg, Triptorelin 0.1mg, Triptorelin 3.75mg, Leuprolide 14mg 나. 급여 범위 1) 조기배란방지 가) Long protocol: 황체기 중반에 투여 (1) goserelin 3.6mg 또는 triptorelin 3.75mg 1회 투여 (2) triptorelin 0.1mg 또는 leuprolide 1mg를 배란 유도 직전까지 투여(투여용량은 감량 가능) 나) Short protocol (1) 월경주기 초반에 triptorelin 0.1mg 또는 leuprolide 1mg를 투여 시작하여, 배란유도 직전까지 투여 (투여용량은 감량가능) 다) Ultra-short protocol (1) 월경주기 3일부터 5일까지 triptorelin 0.1mg 또는 leuprolide 1mg를 투여(투여 용량은 감량가능) 2) 배란유도(ovulation trigger) 또는 황체기 보강 목적으로 투여하는 leuprolide, triptorelin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л н	
구 군	세무인성기군 및 방법
구 분 [421] Interferon α-2a 주사제 (품명: 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일성분 약제 중 보다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를 우선 사용토록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 활동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만성 활동성 B형간염 상병 1) 500~600만 단위를 주3회 6개월간 투여 2) 500~600만 단위를 매일 4개월간 투여 3) 1000만 단위를 주3회 4개월간 투여 4)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 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나, ○ Interferon α-2a 주사제와 Hepatotonics 약제 중한 가지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함. 나. 만성 C형간염 1) 유전자 1형인 경우 가)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함. 나) 치료전에 정량검사를 시행하고, 치료 12주에는 C형간염 RNA(HCV RNA) 정량 검사 등을 시행하여 초기 바이러스반응(Farly virological response)이 확인된 경우에만 12개월까지 투여를 인정(휴약기간 제외) 다) HCV RNA가 100Copies/ml (50IU/ml)이하로 감소되지 않거나 또는 기저치로부터 최소 100배 이상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유전자 1형이 아닌 경우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투여를 인정함(휴약기간 제외). 3)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 (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 투여는 인정하나, ○ Interferon α-2a 주사제와 Hepatotonics 약제 중한가지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함. 3. 허가사항(효능·효과)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카사바흐-메리트 증후군에 Steroid제 등 타 치료방법으로 반응이 없는 경우 나. 베쳇증후군에 의한 후방 포도막염 (Posterior uveitis)혹은 전포도막염 (Panuvieits)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 1) 기존 치료에 불응하여 시력 저하, 안압 상승 등과같은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2) 1개월 이상의 기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포도막염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3) 면역억제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재발할 경우. 4. 신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항암요법"범위 내에서 인정함. (고시 제2015-118호, '15.7.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21] Interferon a-2b 주사제 (품명: 인트론에이멀티도스펜)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일성분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를 우선 사용토록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 활동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감소되지 않거나 또는 기저치로 부터 최소 2log (100배) 이상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토록 함. 2) 유전자 1형이 아닌 경우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투여를 인정함 (휴약기간 제외). 3) 혈중 ALT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 (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 Interferon α-2b 주사제와 Hepatotonics 약제 중한 가지 약제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3. 급성 B형간염은 보존적 치료로 충분함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4.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 등)를 초과하여 소아의 만성 B형 간염 상병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가 정상의 2배 이상 증가하고 나. B형간염 DNA(HBV-DNA)와 B형간염e항원(HBeAg)이 양성인 경우 다. 다만, 1세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6-110호, '16.7.1.)
[421] letrozole 경구제 (품명: 페마라정 등)	 유방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투여 대상 1) clomiphene 배란유도로 자궁내막이 얇아진 경우 (자궁 내막 〈 7mm)
	2) clomiphene 배란유도에 실패한 다낭성난소증후군 (PCOS) 환자
	3)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 중 clomiphene 배란유도 시 과도한 난소반응을 보이거나 다태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 과배란유도 목적으로 clomiphene 등 배란유도제에 반응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투여 용법·용량
	○ 1일 2.5mg~5mg을 5~10일간 복용 (고시 제2019-93호, '19.6.7.)
[421] Megestrol acetate (품명: 메게이스내복현탁액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암환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의 암환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대상: 재발성·전이성 암 환자 나. 증상: 식욕부진, 악액질, 체중감소 (고시 제2013-127호, '13.9.1.)
[421] Methotrexate 제제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허가사항 중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투여 시(경구제)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 正	에누인정기는 및 정답 일반 소염진통제, 항류마티스성 제제 등 1차 약제에 효과가 없는 부득이한 중증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2차 약제로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 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다만, 주사제의 경우에는 경구제 복용이 불가능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나.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주사제 투여 시에는 경구제 복용이 불가능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주사제의 경우 크론병에 관해 유도 시 25mg/week, 관해 유지 시 15mg/week 으로 투여 시 인정함. 라. 조혈모세포이식 후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예방을 위하여 이식 후 4회(1, 3, 6, 11일째) 투여하는 경우마. 주사제를 자궁외 임신 상병에 투여 시 1) 투여대상 혈류역학적(Hemodynamic)으로 안정(Stability) 상태이고 복강 내에 난관 파열 등으로 인한 출혈 소견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단, 동 약제 금기대상은 제외) - 다 음 - 가) 임신 6주 이하 나) 혈청 사람용모성성선자극호르몬(β-hCG)가 15,000mIU/ml 이하 다)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의 종괴가 3.5㎝ 이하 라) 초음파검사에서 태아 심박동이 없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투여요법 가) 복합요법(Methotrexate 1mg/kg/day와 Leucovorin 0.1mg/kg/day를 교대로 근주, 각각 4일) 나) 단일요법(Methotrexate 50mg/㎡ 근주) 바. 아토피성 피부염 ○ 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2차적으로 투여 시 ※ 동 고시는 분류번호 [421: 항악성종양제]에 해당하는 약제에 한함. [114: 해열·진통·소염제]에 해당하는 Methotrexate 주(품명: 메토젝트주)는 "세부사항" 참조. (고시 제2018-253호, '18.12.1.)
[421] Mitoxantrone HCl 주사제 (품명: 미트론주)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투여 대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총 투여용량: 120~140mg/㎡ 다만, 동 약제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골수 억제 및 심근 독성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 터링하며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투약할 수 있으며, 약값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로 진단된 환자 중 재발한 경우 (고시 제2021-26호, '21.2.1.)
[421] Rituximab 주사제 (품명: 맙테라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인정 나.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 TNF-α inhibitor요법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다 음 - 가) TNF-α inhibitor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2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여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2) 재투여 요건 직전 코스 투여 16주 후 반응평가에서 최초 투여시점 보다 DAS28이 1.2 이상 감소하는 반응을 보인 이후, 직전 코스 투여 후 최소 6개월 경과 재투여시 직전 코스 평가 DAS28보다 0.6 이상 악화된 경우 ※ 1코스: 1회 1,000mg씩 2주 간격 2회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다른 TNF-a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경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항호증구세포질항체(ANCA: Anti 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ies) 양성인 베게너육아종증 (Wegener's granulomatosis)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Microscopic polyangiitis) ○ 투여 대상: 표준치료(고용량 스테로이드 등)에 불응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또는 주요장기를 침범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인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ABO 혈액형 부적합 신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에 375mg/㎡ 용량으로 1회 나. 패널반응성항체(Panel reactive antibody)〉50%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투여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2) 재투여 요건 직전 코스 투여 16주 후 반응평가에서 최초 투여시점 보다 DAS28이 1.2 이상 감소하는 반응을 보인 이후, 직전 코스 투여 후 최소 6개월 경과 재투여시 직전 코스 평가 DAS28보다 0.6 이상 악화된 경우 ※ 1코스: 1회 1,000mg씩 2주 간격 2회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다른 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경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항호중구세포질항체(ANCA: Anti 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ies) 양성인 베게너육아종증 (Wegener's granulomatosis)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Microscopic polyangiitis) ○ 투여 대상: 표준치료(고용량 스테로이드 등)에 불응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또는 주요장기를 침범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인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ABO 혈액형 부적합 신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에 375mg/㎡ 용량으로 1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또는 교차반응검사에서 양성에 해당하는 고도 감작된 신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에 375mg/㎡ 용량으로 1호다. 면역글로불린/혈장반출술 등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신이식 후 발생한 급성 체액성 거부반응에 375mg/m 용량으로 1회라. 면역억제제 감량에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발생한 림프증식성 질환(Post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ease)에 375mg/㎡ 용량으로 4회다. 소장이식후 거부반응 치료시에 375mg/㎡ 용량으로 1회다. 소장이식후 거부반응 치료시에 375mg/㎡ 용량으로 1회다.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으로 진단된 환자 중 Azathioprine 또는 Mycophenolate mofeti 경구제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자가 면역 수포성 질환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자가 면역 수포성 질환이 당치성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흉터) 유사천포창, 후천성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로서 아래의 가),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375mg/㎡/주씩 4주까지 또는 1000mg/회씩 2회까지 인정가 20mg/일 이상의 Prednisone 투여에도 2번 이상 재발하거나 1.5mg/kg/일 용량으로 8주간 투여한 대발하거나 1.5mg/kg/일 용량으로 8주간 투여한
신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에 375mg/㎡ 용량으로 1호다. 면역글로불린/혈장반출술 등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신이식 후 발생한 급성 체액성 거부반응에 375mg/m용량으로 1회라. 면역억제제 감량에 반응하지 않는이식 후 발생한림프증식성 질환(Post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ease)에 375mg/㎡ 용량으로 4회다. 소장이식후 거부반응 치료시에 375mg/㎡ 용량으로1회라.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으로 진단된환자 중 Azathioprine 또는 Mycophenolate mofeti경구제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사. 자가 면역 수포성 질환1) 중증의 난치성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흥터) 유사천포창, 후천성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로서 아래의 가),나) 조건을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375mg/㎡/주씩 4주까지 또는1000mg/회씩 2회까지 인정가) 20mg/일 이상의 Prednisone 투여에도 2번 이성
Prednisone에 불응인 경우 또는 Steroid에 금기인 경우 나) 기존 면역억제제(Azathioprine등)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2) 유지요법: 중중의 난치성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성 천포창 환자는 상기 1)의 투여 12개월 후 6개월 간격으로 500mg/회씩 2회 인정 아. 자가면역성뇌염(Autoimmune encephalitis) 환지

л ы	비타이것기즈 미 바出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Human immunoglobulin G(IVIg)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금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자.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 1) 투여대상 가) 스테로이드 의존성(빈번 재발형 포함)인 난치성 신증후군에서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 (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 투여에도 빈번재발 (Frequent Relapser)을 보이는 경우 나) 스테로이드 저항성인 난치성 신증후군에서 스테 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 투여에도 관해(Remission)를 보이지 않거나 빈번재발(Frequent Relapser)을 보이는 경우 다)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 투여에지 (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를 금기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신증후군 환자 유형의 일반적 정의(Common Definitions of Patients With Nephrotic Syndrome) (1) 스테로이드 의존성 신증후군(Corticosteroid dependent): 스테로이드 김량 중 재발하거나, 스테로이드 치료 중단 2주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Relapse during tapering or within 2 weeks of discontinuation of corticosteroid therapy) (2)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Corticosteroid resistant): 4주간의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관해를 보이지 않는 경우 (Inability to induce a remission within 4 weeks of daily corticosteroid therapy) (3) 빈번 재발형 신증후군(Frequent relapser): 초치료 후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재발하구나, 12개월 이내에 4회 이상 재발하는 경우(≥2 Relapses within 6 months after initial therapy or ≥4 relapses in any 12-month period)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 관해(Remission): 'Urine protein: creatinine ratio' (0.2 이거나, 소변 Dipstick 검사에서 3일 연속 음성 혹은 약양성을 보이는 경우('Urine protein: creatinine ratio' (0.2 or dipstick negative or trace reading for 3 consecutive days) 2) 투여방법 - 375mg/m2(최대 500mg) 용량으로 1회 투여를 인정하며, 투여 3~6개월 후 1회 추가 투여를 인정함 (1년간 최대 2회) - 이후 재발 시 재투여할 수 있음. 3) 제외 대상 가) 만성 혹은 급성 감염이 있는 경우
	나) 생백신 투여 1개월 이내인 경우 다) 호중구감소증(ANC: 500/mm³ 이하)이 있는 경우 3.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만성 저항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Chronic refractory ITP)에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Anti-D 항체, Vincristine, Danazol, Azathioprine, Cyclophosphamide 등 약제치료에 실패하고 비장 적출술에 불응 또는 금기인 경우
	4.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A, 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 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2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	부담토록 함.
(품명:	- 아 래 -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가. 항암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스테로이드불응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1) 투여대상: 만12세 이상 스테로이드 불응 이식편대숙주
	질환
	가) 급성: MAGIC criteria(2016)의 Grade II~IV
	나) 만성: NIH consensus(2014)의 moderate to
	severe
	※ 스테로이드 불응 기준
	(1) 급성: Bone Marrow Transplant: 2018;53(11):1401-1415.
	(2) 만성: 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15;21(8):1343-1359. ※ 이식편대숙주질환 진단기준
	(1) 급성: 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16;22(1):4-10.
	(2) 만성: 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15;21(3):389-401.
	2) 지속투여 및 투여기간
	가) 지속투여
	(1) 급성: 개시 후 2주, 4주, 6주, 8주, 이후 1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 환자
	(2) 만성: 개시 3개월 이후 1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
	환자
	※ 1일 용량 10mg 이하이고 부분반응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만성 환자에 한해 최대 3개월 단위로 평가
	가능하며, 호전되어 중지한 환자의 재투여는 인정함
	※ 반응의 기준
	(1) 급성: MAGIC criteria(2016) 평가
	가) 완전반응: 평가가능한 모든 장기의 평가결과가 0점으로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추가 전신치료 없이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모든 증상과 징후가 해소된 상태 나) 부분반응: 추가 전신치료 없이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증상 및 징후가 있는 1개 이상 장기의 1 stage 이상 개선(타 장기 진행 없음) (2) 만성: NIH consensus(2014) 평가 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15;21(6):984-999. 가) 완전반응: 추가 전신치료 없이 평가기능한 모든 장기에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모든 증상과 징후가 해소된 상태 나) 부분반응: 추가 전신치료 없이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증상 및 징후가 있는 1개 이상 장기의 1점 이상 개선(4~7점 척도), 2점 이상 개선(10~12점 척도) (타 장기 진행 없음) ※ 반응 평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사 만응 평가 확인을 위해 만드시 신료가목 응을 세울하여야 함 나) 최대투여기간: 급성 최대 6개월, 만성 최대 3년 ※ 급성 투여 종료 후 만성 투여, 급성과 만성 증상이 겹치는 경우, 호전되어 중지한 환자가 재발하여 최대투여기간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는 사례별 인정함. 3) 중지기준 가) 이식편대숙주질환 진행(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 발현)
	나) 투여 불가능한 이상반응 다) 스테로이드 및 calcineurin 억제제를 제외한 다른 전신 치료제 사용 ※ 최초 투여시 허가사항의 혈구수 측정 모니터링 지침을 따라야함. (고시 제2023-197호, '23.11.1.)
[421] Tamoxifen 경구제 (품명: 놀바덱스정 등)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을 초과하여 여성형유방 (Gynecomastia)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421] Vincristin sulfate 주사제 (품명: 빈크란주 등)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ITP), 베쳇증후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기타의 종양치료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29] Anagrelide acetate (품명:아그릴린캅셀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1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투여개시 1) 혈소판수가 150만/μL 이상 또는 2) 혈소판수치 45만/μL 이상으로써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만 60세 이상인 환자 나) 혈소판증가증의 관련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 다) 혈소판증가증 관련 증상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나. 투여기간 혈소판수치가 40만/μL 이하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증량하여 투여하고 이후 반응이 유지되도록 최저 유효량을 조정하여 투여함. (고시 제2019-240호, '19.11.1.)
[429] Selumetinib 경구제 (품명: 코셀루고캡슐10, 25밀리그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투여 대상 ○ 병변이 매우 침습적이거나, 신체 주요 기관에 밀접하거나, 혈관구조가 복잡하여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N, 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의 만 3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머리 또는 목 주변에 위치하여 기도 장애나 큰 혈관으 손상 위험이 있는 경우 2) 주요 신경 주변 또는 신경 자체(상완 또는 요천추신경 총 등)에 발생하여 신경 압박 및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3) 중요한 혈관 또는 주요 장기(대동맥, 복부 동맥, 간문맥 착추 주변 등)를 감싸고 있어 심부 주요 기관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운동 기능 또는 감각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5)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생활에 지장이 있는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6) 1) ~ 5) 에 준하는 상태로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별 인정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 투여 시작 시(투여 전 4주 이내)와 투여 후 매 6개월마다 반응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 대상(다학제 통합진료 관련 진료기록부 MRI 판독소견서 등) 및 지속투여 시 반응 평가(MR 판독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반응평가는 3차원 자기공명영상진단(3D MRI volumetric analysis)을 통해 표적병변 1개에 대한 전체 부피 변화를 확인하고, 기저치 대비 20% 이상 부피기 감소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구 분	이상 만 18세 이하 소아환자로 해당 병변이 다음 중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머리 또는 목 주변에 위치하여 기도 장애나 큰 혈관의 손상 위험이 있는 경우 2) 주요 신경 주변 또는 신경 자체(상완 또는 요천추신경 총 등)에 발생하여 신경 압박 및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3) 중요한 혈관 또는 주요 장기(대동맥, 복부 동맥, 간문맥, 척추 주변 등)를 감싸고 있어 심부 주요 기관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 현저한 신체 변형(사지, 안와 주변 등)을 유발하여 운동 기능 또는 감각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5)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5)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를 보용함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6) 1) ~ 5) 에 준하는 상태로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별 인정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 투여 시작 시(투여 전 4주 이내)와 투여 후 매 6개월마다 반응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 대상(다학제 통합진료 관련 진료기록부, MRI 판독소견서 등) 및 지속투여 시 반응 평가(MRI 판독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반응평가는 3차원 자기공명영상진단(3D MRI volumetric analysis)을 통해 표적병변 [*] 1개에 대한 전체 부피 변화를 확인하고, 기저치 대비 20% 이상 부피가 감소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단, MRI 금기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을 따름. (고시 제2023-296호, '24.1.1.)
[429] Thymomodulin 경구제 (품명 : 로이콘시럽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연속 2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백혈구수가 3,000개 이하이거나 과립구수가 800개 이하인 때 백혈구 감소증 치료제로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31] 에프도파18F (품명 : 도파체크주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에프도파-PET) 검사 시 사용되는 동 약제는 허가범위 내에서 종양에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파킨슨병과 파킨슨병을 제외한 파킨슨증의 감별진단을 위해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431] 3,3-Diphosphono-1, 2-Propane Dicarboxylate(DPD), Tetrasodium 주사제 (품명: 테세오스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환자 1명당 사용량은 1/3vial로 산정하며, 동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고시 제2014-166호, '14.10.1.)
[431] Chromium(51Cr) edetate 1mCi (품명: 새한크롬이디티에이주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환자 1명당 사용량은 1/7vial(1mCi/vial)로 산정하며 동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431] Exametazime 주사제 (품명: 스타빌라이지드세레텍주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 검사 시 사용된 표지화합물과 방사성동위원소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다만, 응급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시에 여러 환자를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염증스캔-백혈구 1회당 HMPAO는 1 vial, Tc-99m은 20mci 범위 내에서 인정 (고시 제2019-21호, '19.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31] Indium chloride(111In) 3.3mCi, Pentetreotide 10mcg 주사제 (품명: 목트레오스캔주사)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기존의 진단방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뇌하수체종양이나 내분비췌장 종양에 선택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431] Strontium chloride (Sr-89) (품명: 메타스트론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431] Thallium-201 주사제 (품명: 한국원자력의학원염화 탈륨(TI-201)주사액 등) 1.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하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를 초과하여 만성 간질환에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Porto-systemic shunt index)가 필요하여 추적 검사 시 Tallium 201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용량은 0.5~1mCi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39]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 (품명:케라힐-알로)	해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심부 2도 화상에서 1) 적용 대상 가. 성인 및 소아의 재상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1개 프리필드시린지(100㎡) 인정 나. 소아의 경우,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부위인 경우로 흉터(Scar) 형성의 우려가 있을 때1개 프리필드시린지(100㎡) 인정 다.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이상)인 경우에는 2개 프리필드시린지(총 200㎡)까지인정 2) 치료기간 동안 동 약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 적용 시에는 각 약제별급여기준 범위 내에서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하여급여인정-다만, 1) 적용대상 다.의 경우에는 동 약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와 사람유래 각질세포(품명: 칼로덤)총 112㎡까지 적용도 인정
[/00]	(고시 제2018-115호, '18.6.9.)
[439]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품명: 칼로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부 2도 화상 1) 적용 대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가) 성인 및 소아의 재상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총 112cm²까지 인정 나) 소아의 경우,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 부위인 경우로 흉터(Scar) 형성의 우려가 있을 때 총 112cm²까지 인정 다)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총 224cm²까지 인정 2) 치료기간 동안 동 약제와 동종 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케라힐-알로) 적용 시에는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하여 급여 인정 - 다만, 1) 적용대상 다)의 경우에는 동 약제 총 112cm² 이내와 동종 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케라힐-알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cm²)까지 적용도 인정 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1) 적용대상: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 소견이 없는 전층 피부결손 2) 적용기간: 1주 1회 4주 투여 후, 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6주까지 인정 3) 투여용량: 총 150cm² 까지 인정 (고시 제2019-191호, '19.9.1.)
[439] 자가유래연골세포 (품명 : 콘드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대상 질병: 대퇴과(Femur condyle)의 연골손상나. 연골손상의 크기 1)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 2) 2㎡ 이상 4㎡ 이하의 단독 또는 다발성 병변: 관절경하 시술(Chondroplasty, Debridement 등) 또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수술적 복원술(Subchondral bone stimulation - abrasion, Multiple drilling, Microfracture 등)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았을 경우(통증, 기능저하 등) - 다만, 수술적 복원술을 한 경우 6개월 이상의 관찰 기간 후 투여하여야 함 다. 연골손상의 상태: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 손상 (Outerbridge III~IV)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I ~ II)로서 체증 부하 방사선 촬영(weight-bearing radiography) 상 슬관절 간격이 50%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라. 연령: 만 15세 ~ 만 55세마. 투여 용량: 시술당 1개	
[439]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품명: 큐피스템주)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1), 2)를 모두 충족하는 환자로 중증 (CDAI 450 이상)의 활동성 크론병 환자는 제외함. 1) 난치성(3개월 정도의 통상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또는 재발성 크론성 누공환자 2) 누공 유형: 복잡형 치루이며 통상적인 수술로 괄약근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나. 투여 용량:배양된 약제 1회 사용량(total quantity basis)으로 인정 다. 투여 횟수: 첫 번째 투여(first injection)에 한하여 인정 라. 병용 투여:누공치료에 동일 목적으로 사용 시, infliximab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3-210호, '14.1.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문 [439] Abatacept 주사제 (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 시린지 125밀리그램)	세무인성기순 및 방법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허가사항에 따라 '소아 특발성 관절염'은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만 해당)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DAS28이 5.1 초과 (2) DAS28이 5.1 초과 (2)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II.AR 진단기준(2001년 제정)에 부합하는 다관절형 또는 확장성 소수 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6-17세)로서 5개 이상의 부종 관절을 가지는 경우 나) 1개 이상(MTX 등)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3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부종 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만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종양과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Tocil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제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계
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 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구 분	세브이저기즈 및 바버	
十 正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polyarticular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6세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이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4.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은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최대 8~12주분 까지 인정함.	
[439] Adalimumab 주사제 (품명 : 휴미라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DAS28이 5.1 초과	

	IIIH 0171717 - 51 IIIIII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나)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소아 특발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ILAR 진단기준(2001년 제정)에 부합하는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다관절형 관절염(2-17세): 5개 이상의 부종관절이	
	있는 경우	
	(허가사항에 따라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밀리그램', '아달로체프리필드펜주40밀리그램'의	
	경우 4-17세에 해당)	
	(2)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6-17세)	
	나) 1개 이상(MTX 등)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3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단,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은	
	1개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1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인정함.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부종	
	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가)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다 음 -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나) 피부광화학요법(PUVA) 축적용량(Cumulative dosage)	
	1000주울(Joules)을 초과하여 투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함.	

¬ н	IIIHOIZIZ II HIH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3개월 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최초 투약 후 6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호전상태(최초 투여시점 보다 30%이상 감소된 경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 3개월의 사용을 인정함. 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추가투여를 인정함. 라.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가)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E	제구인정기군 및 정답 2) 평가방법 가) 투여 3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Bath 강직성척추염 활성도(BASDA)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추가투여를 인정함. 마. 크론병 1) 투여대상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 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단, 소아 환자의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완전장관영양법 (Exclusive enteral nutrition) 등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크론병 (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 단, 소아 환자의 경우	
	소아크론병활성도 (PCDAI) 30이상) ※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 (1) 1주에 설사횟수의 합 × 2 (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 (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 (가) 관절염/관절통 (나) 홍채염/포도막염 (다) 결절성홍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라)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마) 기타 누공 (바)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괴(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7) 헤마토크리트(남:47, 여:42-환자 Hct치) × 6 (8) ((표준체중 - 환자체중)/표준체중) × 100(%) ※ 소아 크론병 활성도(PCDAI: 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 Hyams JS,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1991 May:12(4):439-47. 참조	
	 2) 평가방법 가) 첫 투약 후 4주 이내에 CDAI가 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의 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나)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PCDAI가 12.5점 이상 감소 또는 총 PCDAI score의 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바.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4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환자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 (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다) MTX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 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라)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수 없는 경우 ※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가) 동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사.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이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WHAIRIR RUWW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동 약제를 용법·용량대로 8주 투약 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 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나)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아. 베체트 장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가) 베체트병으로 진단된 환자 ⁻	주 내시겨 드이리
	장 궤양이 확인된 경우	
	나)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역	약제:코르티코스테
	로이드제, 5-ASA/ sulfasalazine	e,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	자요 드0ㄹ 치ㄹ르
		70 0
	중단한 환자	
	2) 평가방법	
	○ 첫 투약 후 12주 이내에 베체트 장	염 활성도(DAIBD)가
	20점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 ^c	며 지소전이 트여름
	인정함.	
	 ※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 Disease A	Activity Index for
	Intestinal Behcet's Disease)	,
	Item	Score
	General well-being for 1 week	
	Well	0
	Fair	10
	Poor	20
	Very poor	30
	Terrible	40
	Fever	
	⟨ 38℃	0
	$\geq 38^{\circ}$ Extraintestinal manifestations	10 5 par itam
	Abdominal pain in 1 week	5 per item
	None	0
	Mild	20
	Moderate	40
	Severe	80
	Abdominal mass	
	None	0
	Palpable mass	10
	Abdominal tenderness	_
	None	0
	Mildly tender	10
	Moderately or severely tender	20
	Intestinal complications†	10 per item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No. of liquid stools in 1 week 0 0 1-7 10 8-21 20 22-35 30 ≥ 36 40 * 구강 궤양(oral ulcer), 음부 궤양(genital ulcer), 안구 병변(eye lesion), 피부 병변(skin lesion), 관절통(arthralgia)은 각 5점. 혈관 침범(vascular involvement), 중추 신경계 침범(central nervous system involvement)은 각 15점. † 누광(fistula), 천광(perforation), 농양(abscess), 장 패색(intestinal obstruction) 자. 화농성 한선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다)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화농성 한선염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으로, 나)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며, 다)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Hurley stage III) 환자 ※ Hurley Stage III: 전체적인 부위에 결쳐 흩어지거나 거의 흩어진, 또는 다수의 서로 연결된 공동 및 농양 (Diffuse or near-diffuse involvement or multiple interconnected tracts and abscesses across the entire area)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농양(abscess) 또는
	가)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농양(abscess) 또는 배출 누관(draining-fistula) 개수의 증가가 없으며,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total abscess and inflammatory- nodule count)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24주마다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차. 비감염성 포도막염 1) 투여대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난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 포도막염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주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면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십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과사인자알파작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24주마다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차. 비감염성 포도막염 1) 투여대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반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 포도막염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주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 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유지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차. 비감염성 포도막염 1) 투여대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반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 포도막염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주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과사인자알파저해제(TNF- a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차. 비감염성 포도막염 1) 투여대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반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 포도막염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주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 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24주마다 최초 평가 결과가
1) 투여대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난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 포도막염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주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 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s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유지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난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 포도막염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주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 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Ⅲ/Ⅳ) 환자 4. 다른 중양괴사인자일과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차. 비감염성 포도막염
난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 포도막염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주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 중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중앙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1) 투여대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포도막염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주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 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주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 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중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 동 약제를 6주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 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과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이후 동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약제를 사용한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감염이 있는 환자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4. 다른 종양괴사인자일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일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일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 a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3.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일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사례별 심사함.
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과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3. 금기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III/IV)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4. 다른 중양괴사인자일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감염이 있는 환자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Ⅲ/Ⅳ) 환자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 $lpha$ inhibitor: Etanercept,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Ozanimod, Deucrav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5.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6. 장기처방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함. 7.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439] Aflibercept 주사제 (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한자. 2) 제외기준가)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나)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다)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단안시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구 분	제부인정기준 및 방법 경우 사례별로 인정) 라)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 병용투여 하는 경우 3) 초기 3회 투여 후 치료 효과판정에 따른 투여 방법 가)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다른 항체 치료제* 중 1품목에 한해 교체투여 가능함 (투여소견서 첨부 및 투여간격 준수). 교체한 약제로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약제불문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 치료효과가 있는 경우(초기 3회 투여 혹은 교체 후 3회 투여 포함) 약제를 선택(교체 포함)하여 지속 투여 할 수 있음. * 다른 항체 치료제: Brolucizumab, Ranibizumab, Faricimab 나.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헤모글로빈A1C(HbA1C) 10% 이하 나) 최단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µm 이상인 경우 2) 제외대상 가) 황반부 위축, 손상, 또는 경성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나) 황반부종이 국소적이며 황반중심부 부종이 영구적인
	가) 황반부 위축, 손상, 또는 경성삼출물 등이 심하여
	3)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Ranibizumab, Faricimab, Broluc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다.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BRVO) 황반부종 1) 투여대상
	가)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상실 실명)인 경우 나)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2) 투여횟수: 단안당 총 5회 이내(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황반부종은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황반두께 (Central macular thickness)가 300㎞이상인 경우라.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 투여 횟수:단안당 총 5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내) (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439] Anakinra (품명 : 키너렛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류마티스(자가염증질환) 증상의 경감 ○ 만성 유아 신경 피부 및 관절 증후군(CINCA; Chronic Infantile Neurologic Cutaneous and Articular Syndrome)으로 확정된 환자 (고시 제2013-127호, '13.9.1.)
[439] Brolucizumab 주사제 (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환자.

2) 제외기준 가)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 나)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 다)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라)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 병용투여 하는 경우 3) 초기 3회 투여 후 치료 효과판정에 따른 투여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른 항체 치료제* 중 1품목에 한해 교체투여 가능함 (투여소견서 첨부 및 투여간격 준수). 교체한 약제로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약제불문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 치료효과가 있는 경우 (초기 3회 투여 혹은 교체후 3회 투여 포함) 약제를 선택(교체 포함)하여 지속 투여 할 수 있음. * 다른 항체 치료제: Aflibercept, Ranibizumab, Faricimab 나.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음 - 가) 헤모글로빈A1C(HbA1C) 10% 이하	구 분	2) 제외기준 가)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 나)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 다)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라)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 병용투여 하는 경우 3) 초기 3회 투여 후 치료 효과판정에 따른 투여 방법 가)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다른 항체 치료제* 중 1품목에 한해 교체투여 가능함 (투여소견서 첨부 및 투여간격 준수). 교체한 약제로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약제불문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 치료효과가 있는 경우 (초기 3회 투여 혹은 교체 후 3회 투여 포함) 약제를 선택(교체 포함)하여 지속 투여 할 수 있음. * 다른 항체 치료제: Aflibercept, Ranibizumab, Faricimab 나.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해모글로빈A1C(HbA1C) 10% 이하 나) 최단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µm 이상인 경우 2) 제외대상 가) 황반부 위축, 손상, 또는 경성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나) 황반부종이 국소적이며 황반중심부 부종이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 등 3) 투여횟수: 환자 당 총 14회 이내(Ranibizumab,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39] Etanercept 주사제 (품명: 엔브렐주사 등)	지나한당기군 및 공립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DAS28이 5.1 초과 (2)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나) 두 가지 종류 이상(MTX 포함)의 DMARDs (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 (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다만 MTX(Methotrexate)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2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에부인정기준 및 방법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소아 특발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ILAR 진단기준(2001년 제정)에 부합하는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다관절형 관절염(2-17세): 5개 이상의 부종관절이 있는 경우 (2) 확장성 소수 관절염(2-17세) (3) 건선성 관절염(12-17세) (4)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12-17세) 나) 1개 이상(MTX 등)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3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단,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은 1개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1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인정함.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부종 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가)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一	(각 3개월 이상)치료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함. 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약제 투여에 주의해야함 (1) 피부광화학요법(PUVA) 축적용량(Cumulative dosage) 1000주울(Joules)을 초과하여투여받은적이 있는 경우 (2) 울혈성심부전(Congestive Cardiac Failure: CCF)/심장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가있는경우(New York Heart Association(NYHA) grade 3/4CCF) 2) 평가방법가 등약제를 3개월간 사용후활성 관절수가최초투여시점보다 30%이상감소된경우추가 3개월간의사용을인정함. 나)최초투약후 6개월째 평가를통하여호전상태(최초투여시점보다 30%이상감소된 경우가 유지되는경우에는추가 3개월의 사용을인정함. 다)이후에는 6개월마다평가하여첫 3개월째의평가결과가유지되면지속적인투여를인정함.라.증증의강직성최추염1)투여대상두가지종류이상의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혹은DMARDs로 3개월 이상치료를하였으나치료효과가미흡하거나,상기약제들의부작용등으로치료를중단한,중증의활동성강직성 최추염환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가)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 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가) 투여 3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BASDAI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마.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환자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 (UV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4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다) MTX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
	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라)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가) 성인
	(1)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소아
	(1)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기간에 대한 위 지침을
	따라야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다른 중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 a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Deucrav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용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4.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5. 장기 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 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 까지 인정함. 6.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NF- a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439] Faricimab 주사제 (품명 : 바비스모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
	(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2) 제외기준
	가)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
	나)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
	다)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라)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 병용투여 하는 경우
	3) 초기 3회 투여 후 치료 효과판정에 따른 투여 방법
	가)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다른 항체 치료제* 중 1품목에 한해 교체투여 가능함
	(투여소견서 첨부 및 투여간격 준수). 교체한 약제로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약제불문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 치료효과가 있는 경우(초기 3회 투여 혹은 교체
	후 3회 투여 포함) 약제를 선택(교체 포함)하여 지속
	투여 할 수 있음.
	* 다른 항체 치료제: Aflibercept, Ranibizumab,
	Brolucizumab
	나.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헤모글로빈A1C(HbA1C) 10% 이하
	나) 최단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 제외대상
	가) 황반부 위축, 손상, 또는 경성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황반부종이 국소적이며 황반중심부 부종이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 등 3)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Aflibercept, Ranibizumab, Broluc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439] Infliximab 제제 (품명:레미케이드 주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크론병 1) 투여대상 가)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 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단, 소아 환자의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트제, 면역억제제,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trition) 등 적어도 2가지이상의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 단, 소아환자의 경우 소아크론병활성도(PCDAI) 30이상) ※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1) 1주에 설사횟수의 합 × 2(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가) 관절염/관절통(나) 홍채염/포도막염
	(다) 결절성홍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라)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마) 기타 누공 (바)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괴(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7) 헤마토크리트(남:47, 여:42-환자 Hct치) × 6 (8) ((표준체중 - 환자체중)/표준체중) × 100(%)
	 ※ 소아 크론병 활성도(PCDAI: 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 Hyams JS,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1991 May:12(4):439-47. 참조
	나)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치료법: 항생제, 배출법, 면역억제 치료 등)에 반응이 없는 누공성 크론병 2) 평가방법 가) 누공이 없는 경우(CDAI 220이상) (1) 첫 투약 후 2주 내에 CDAI가 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의 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 (2)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PCDAI가 12.5점 이상 감소 또는 총 PCDAI score의 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 나) 누공성 크론병
	3회 투약 후 누공의 개수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 나.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가)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 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흥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2회(0, 2주) 투여 후 6주(3회째 투여 전) 까지 평가를 하여 Bath 강직성척추염 활성도 (BASDA)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2회(0, 2주) 투여 후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인정함. 다.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지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지료를 중단한 환자(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 다 음 - 가) DAS28이 5.1 초과 나)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2) 평가방법
	2) 평가당법 가)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라.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가)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다 음 -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나) 피부광화학요법(PUVA) 축적용량(Cumulative dosage)
	1000주울(Joules)을 초과하여 투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함.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3개월
	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최초 투약 후 6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호전상태(최초
	투여시점 보다 30%이상 감소된 경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 3개월의 사용을 인정함.
	경구에는 구기 3개별의 시중을 인경함. 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마.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
	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다) MTX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
	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라)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Ultraviolet 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 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14주간(4회 투여) 사용 후 평가하여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바.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단, 18세 이하 소아 환자의 경우 내시경적으로
	진단된 궤양성 대장염으로 소아궤양성대장염활성도
	(PUCAI: Pediatric Ulcerative Colitis Activity Index) 45 초과)
	muex/ 4) 소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동 약제를 3회 투약 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단, 18세 이하소아 환자의 경우 소아궤양성대장염활성도(PUCAI)가 기준보다 20점 이상 감소한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누한성시한 및 정립
	- 다 음 -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
	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나)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사. 베체트 장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다)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만 19세 이상
	나) 베체트병으로 진단된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 궤양이 확인된 경우
	다)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코르티코스테
	로이드제, 5-ASA/ sulfasalazine,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2) 평가방법
	○ 첫 투약 후 14주 이내(3회 투여 이후)에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가 20점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 Disease Activity Index for
	Intestinal Behcet's Disease)
	Item Score General well-being for 1 week
	Well 0
	Fair 10
	Poor 20
	Very poor 30
	Terrible 40 Fever
	rever ⟨38℃ 0
	≥ 38°C 10
	Extraintestinal manifestations* 5 per item

Abdominal pain in 1 week None 0 Mild 20 Moderate 40 Severe 80 Abdominal mass None 0 Palpable mass 10 Abdominal tenderness None 0 Mildly tender 10 Moderately or severely tender 20 Intestinal complications † 10 per item No. of liquid stools in 1 week 0 0
1-7 10 8-21 20 22-35 30 ≥ 36 40 * 구강 궤양(oral ulcer), 음부 궤양(genital ulcer), 안구 병변(eye lesion), 피부 병변(skin lesion), 관절통(arthralgia)은 각 5점. 혈관 침범(vascular involvement), 중추 신경계 침범(central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7세) 누공성 크론병에 인정
	○ 3회 투약 후 누공 개수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 인정
	다.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유형 모두 포함)
	1) 투여대상: 정맥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환자
	2) 투여용량: 5mg/kg 1회 투여에 한하여 인정
	- 단, 정맥용 면역글로불린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생백신 투여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에게
	투여는 권장하지 않음.
	※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AHA 가이드라인의
	"Incomplete KD"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함.
	3. 금기환자
	가. 결핵 및 다른 중증 감염(패혈증, 농양 등), 기회감염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Ⅲ/Ⅳ)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Ozanimod, Deucrav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5.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 '램시마펜주', '셀트리온램 시마펜주'가 자가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7.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 '램시마펜주', '셀트리온램 시마펜주'의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함. (고시 제2024-130호, '24.7.1.)
[439]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 (품명: 졸겐스마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SMN1(Survival motor neuron 1) 유전자에 이중대립 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2) SMA 1형의 임상적인 진단이 있거나, 증상 발현 전이 라도 SMN2 유전자의 복제수가 2개 이하 3) 투여시점 기준 생후 9개월 미만의 환아 다만, 생후 9개월 이상에서 생후 12개월까지 환아에서는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나. 제외기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투여시작 대상에서 제외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다 음 - 1) 영구적 인공호흡기 ^{주1} 사용이 필요하거나 기관절개
(tracheostomy)을 받은 경우 2) 심각한 근육 쇠약, 완전한 사지마비 등 중증으로 질병 진행한 경우 3) 항-AAV9 항체 역가가 1:50 초과인 경우 4) 급성 또는 만성의 조절되지 않는 활성 감염을 동변 경우 주1) 급성, 가역적 질병상태를 제외하고 인공호흡기 하루 16시간 이상, 연속 14일 이상 사용 시다. 평가방법 1) 동 약제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6개월마다 5년까지 임평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하여하고 임상평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변평가 비디오 기록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2) 운동기능은 CHOP-INTEND(Children's Hospi of Philadelphia Infant Test of Neuromuscul Disorder)를 사용하여 총점으로 평가하여 제출함. 다환자의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HFMSE(Hammersm Functional Motor Scale Expanded)로 전환필요한 경우 전환시점 이후로는 두 가지 운동기명가결과를 모두 제출토록함.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 투여 실패정의함. 다 음 - 가) 영구적 호흡기 사용 ^{추1} 또는 사망나) 동 약제 투여에도 CHOP-INTEND 점수가 약제 투전 기저지 대비 4점 이상 개선 ^{주2} 되지 않은 경우다 나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지속적 다기나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지속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반응평가에서 2회 연속하여 CHOP-INTEND 4점 이상 또는 HFMSE 3점 이상 감소된 경우(직전 평가시점의 운동기능 평가와 비교) 주2)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Minimal Clinically Importance Difference)을 의미함. (CHOP-INTEND 4점 이상, HFMSE 3점 이상) 라. 교체투여 동 약제 투여 후 다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투여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마. 동 약제는 단회 투여하는 유전자 대체 치료제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인정함. 단, 사전신청서 제출후 즉시 투여 하는 경우는 추후 승인 시 소급하여 인정함. 바. 동 약제 투여 전 해당 요양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주기적인 반응평가 등 장기 추적조사에 대한 이행 동의서를 받아사전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이 약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하여야 함. 3. 졸겐스마주의 사전승인 등을 위한 방법·절차 및 위원회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정하고 동 약제의 고시 적용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정하고 동 약제의 고시 적용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따름.
[439] Ranibizumab 주사제 (품명: 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 (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2) 제외기준 가)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 나)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 다)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라)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 병용투여 하는 경우 3) 초기 3회 투여 후 치료 효과판정에 따른 투여 방법 가)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다른 항체 치료제* 중 1품목에 한해 교체투여 가능함 (투여소견서 첨부 및 투여간격 준수). 교체한 약제로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약제불문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 치료효과가 있는 경우 (초기 3회 투여 혹은 교체 후 3회 투여 포함) 약제를 선택(교체 포함)하여 지속 투여 할 수 있음. * 다른 항체 치료제: Aflibercept, Brolucizumab, Faricimab 나.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헤모글로빈AIC(HbAIC) 10% 이하 나) 최단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µm 이상인 경우 2) 제외대상 가) 황반부 위축, 손상, 또는 경성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나) 황반부종이 국소적이며 황반중심부 부종이 영구적인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 등 3)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Aflibercept, Faricimab, Broluc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다.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BRVO) 황반부종 1) 투여대상 가)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인 경우 나)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2) 투여횟수: 단안당 총 5회 이내(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황반부종은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황반두께(Central macular thickness)가 300㎞이상인 경우라.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 투여 횟수: 단안당 총 5회 이내(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진단 후 12개월 이내) (고시 제2024-130호, '24.7.1.)
[439] Vedolizumab 주사제 (품명: 킨텔레스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구 분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텐(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Subscore, 0 to 3	구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이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4주 이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다 음 -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나)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나. 크론병 1) 투여대상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활성 크론병 (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
	※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 (1) 1주에 설사횟수의 합 × 2 (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 (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 (가) 관절염/관절통 (나) 홍채염/포도막염 (다) 결절성흥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라)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마) 기타 누공 (바)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괴(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7) 헤마토크리트(남:47, 여:42-환자 Hct치) × 6 (8) ((표준체중 - 환자체중)/표준체중) × 100(%)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4주 이내에 CDAI가 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의 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2. 중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Adalimum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n 주사제, Tofacitinib, Filgotinib, Ozanimod, Upadaciti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전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환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전서를 첨부하여야 3.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가 자가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자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4.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의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가전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가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면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 (고시 제2024-55호, '24.4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1] Benzathine penicillin G 주사제 (품명: 몰다민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 매독 ○ 류마티스열의 재발 예방 ※ 식약처장의 인정범위 ○ 유효균종: 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임균, 포도구균, 디프테리아균, 매독트레포네마 ○ 적응증: 편도염, 인후두염, 기관지염, 폐렴, 세균성심 내막염, 성홍열, 매독, 류마티스열의 재발 예방, 부비 동염, 중이염, 류마티스성 심장질환과 급성사구체 신염의 예방 (고시 제2017-136호, '17.8.1.)
[611] Daptomycin 주사제 (품명: 펜토신주 350밀리그램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Methicillin 내성 균주에 의한 right-side 심내막염을 포함하는 Staphylococcus aureus 균혈증에 투여 시 vancomycin이나 teicoplanin에 실패한 경우 또는 두 약제의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고시 제2021-161호, '21.6.7.)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1] Linezolid 경구제 (품명: 자이복스정 등), Linezolid 2mg/ml 주사제 (품명: 자이복스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혈액배양검사(Blood culture) 또는 무균적체액(CSF, Ascites, Pleural effusion 등)에서 반코마이신저항성 엔테로코커스 패슘(Enterococcus faecium)이 증명된 경우에 인정 나.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에 투여 시에는 Vancomycin이나 Teicoplanin 투여 시 임상적 및 이학적 검사상 반응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 하고 두 약제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투여 시에도 인정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환자 상태에 따라 용량 증감 가능함)
[611] Tedizolid 경구제 (품명: 시벡스트로정 200mg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에 투여 시에는 Vancomycin이나 Teicoplanin 투여 시 임상적 및이학적 검사상 반응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하고 두 약제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투여 시에도인정

Teicoplanin 주사제 요양급여를 인정함. (품명: 타고시드주 등) - 여	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아 래 - L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반드시 사전에 미상 Methicillin 또는 상구균(MRSA,ORS) 음성 포도상구균에 증인 경우, 베타락팀 과민반응을 보이는 의미있는 감염증인 (반드시 약제 감수 다. 다음과 같은 경험적 사전 투여 없이 등 요양급여를 인정하다 따라 약제를 변경 - 1 1) 신경외과 수술 즉 2) 대체삽입물(Pros) 3) 인공호흡기(Vent) 4) 계속적복막관류를 5) 그람양성균 감염의 환자(악성종양, 기서의 중증 감염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 여 정상 신기능을 가진 성	다 음 - 후 중추신경계감염 sthesis) 관련 골수염 또는 관절염 ntilator) 관련 폐렴 술(CAPD)으로 인한 복막염 의 고위험 요인 있는 심한 면역저하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용 등)에 응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를 인정함. - 아 래 - 남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정하지 아니함. 는지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ethicillin 또는 Oxa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포도 '구군(MRSA, ORSA)이나 혈장응고효소(Coagulase) '성 포도상구군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나우, 베타락탐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민반응을 보이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미있는 감염증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반드시 약제 감수성 결과지를 첨부토록함) 음과 같은 경험적 치료의 경우에는 다른 항생제의 '전 투여 없이 동 약제를 바로 투여했을 때에도 요양 '여를 인정하며, 원인균이 동정되면 감수성결과에 '라 약제를 변경 투여하여야 함. - 다 음 - 신경외과 수술후 중추신경계 감염
미있는 감염증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반드시 약제 감수성 결과지를 첨부토록함) 음과 같은 경험적 치료의 경우에는 다른 항생제의 전 투여 없이 동 약제를 바로 투여했을 때에도 요양 여를 인정하며, 원인균이 동정되면 감수성결과에 라 약제를 변경 투여하여야 함.
· –
면역김

구 분	부인정기준 및 방법
[612] Amikacin sulfate 주사제 (품명: 아미킨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12] Aztreonam 주사제 (품명 : 메작탐주사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약제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하여야 함. 동 약제의 특·장점 및 효능·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그람음성균 감염환자,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20-161호, '20.8.1.)
[612] Colistimethate 주사제 (품명: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1차 약제(Quinolone계 항생제 등) 투여로 증상이 호전 되지 않는 방광염, 신우신염 환자에게 투여 시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 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Acinetobacter baumanii) 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녹농균 (Pseudomonas aeruginosa) (고시 제2017-193호, '17.11.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3] Kanamycin sulfate 주사제 (품명: 동아카나마이신 황산염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간경변 시 시행하는 관장(High retention enema)용으로 장내세균이상 발효 억제를 위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613] Rifabutin 경구제 (품명:마이코부틴캅셀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다제내성 결핵으로 동 약제에 감수성이 있는 경우 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환자의 결핵 치료에서 비뉴클레오시드역전사효소억제제(NNRTI: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와 단백분해효소억제제(PI: Protease Inhibitors)와 단백분해효소억제제(PI: Protease Inhibitors) 계열의 항바이러스제제(Antiretroviral agent)와 병용 시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해 Rifampicin과 병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장기이식 환자의 결핵 치료에서 칼시뉴린억제제 (Calcineurin Inhibitor)계열의 면역억제제 (Cyclosporine 등)와병용 시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해 Rifampicin과 병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투여기간 6개월간 인정하며, 6개월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 에는 투여소견서 등을 첨부 시 사례별로 요양급여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비결핵항산균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 비결핵항산균 치료제"에 의거하여 인정함. (고시 제2014-34호, '14.3.1.)
[613] Rifampicin 경구제 (품명:리팜핀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메티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알균 (MRSA) 또는 혈장응고효소 음성포도알균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 - 다만, MRSA 또는 MRCNS 감염이 의심되나 배양으로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 전문가 자문하에 투여 시 인정 나. 투여방법 ○ 적절한 타 항생제와 병용투여 시 인정함 다. 투여용량 ○ 1일 최대 900mg까지 인정 (고시 제2018-174호, '18.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4]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Azithromycin 경구제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품명 : 지스로맥스정 등)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나. Mycoplasma genitalium에 의한 비임균성 단순
	생식기 감염
	○ 투여방법
	1) 초치료 시
	- 1g 한 번 투여
	- 첫 날 500mg 1일 1회, 둘째 날부터 1일 1회 250mg을
	4일간 투여 (총 투여량 1.5g)
	2) 치료 실패 또는 재발 시
	가) 초치료로 azithromycin을 투여한 경우
	- 1주간의 doxycycline 또는 minocycline 투여 후,
	첫 날 1g 1일 1회, 둘째 날부터 1일 1회 500mg을
	3일간 투여 (총 투여량 2.5g)
	나) 초치료로 doxycycline 또는 minocycline을 투여한
	경우
	- 첫 날 1g 1일 1회, 둘째 날부터 1일 1회 500mg을
	3일간 투여 (총 투여량 2.5g)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고시 제2024-55호, '24.4.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4] Erythromycin 경구제 (품명: 보령에릭캡슐)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가. 투여용량: 400~600mg/day 나.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고시 제2018-174호, '18.9.1.)
[614] Roxithromycin 경구제 (품명: 루리드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가. 투여용량: 150~300mg/day 나.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고시 제2018-174호, '18.9.1.)

615 주로 그람음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Doxycycline 50, 2. 3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Doxycycline 50, 2.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품명: 국제독시사이클린하이 7 클레이트수화물캡슐100 밀리그램 등) 나	다. 요도염에 1일 200-300mg, 상기도염에 1일 200mg 투여 다. 마크로라이드 불용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1) 투여대상: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12세 미만 소아 2) 용법용량: 2~4mg/kg/일, 2회 분복(최대 200 mg/일) 3) 투여기간: 7~14일 이내 ※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치아착색 등 이상반응에 대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및 동의 후 사용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보조생식술 중 난자채취 시 1일 2회, 최대 5일까지 복용 (고시 제2023-252호, '23.12.20.)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6]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 (품명: 화이자펜타미딘이세티 온산염주 300mg)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주폐포지충폐렴(Pneumocystis jiroveci(Formerly P. carinii) pneumonia) 예방이 필요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 중증 단백 영양실조, 장기이식, 지속적인 CD4〈200/㎢, 암이나 교원성혈관성질환(Collagen vascular disease) 등의 치료를 위해 세포독성 혹은 면역억제 치료 중인 환자 나. 투여기준: 1) 심한 골수억제(절대호중구수〈1,000/㎢ 이면서 혈소판 수〈50,000/㎢ 인 경우)를 보이는 경우 2) Trimethoprim-sulfamethoxazole(TMP-SMX)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3) Sulfonamide 과민성 등을 보이는 경우 다. 투여용량・용법: 300mg(1바이알)을 3-4주마다 네블 라이저(초음파) 흡입 (고시 제2018-158호, '18.8.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7] Bleomycin HCl 주사제 (품명 : 브레오신주 등)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사마귀 치료 시 병변 내 주입요법'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617] Mitomycin-C 점안액 (조제실 제제에 한함)	익상편 수술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04-28호, '04.5.1.)
[617] Mitomycin-C 주사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녹내장 누공수술(Trabeculectomy 등) 후 반흔성 유착방지를 위하여 공막부위 또는 Filtering bleb내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8]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 (품명: 오구멘틴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투여 기준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Imipenem + Cilastatin 또는 Meropenem과 병용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고시 제2024-55호, '24.4.1.)
[618] Cefazolin sod. 주사제 (품명: 세파졸린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비강내분무(Intranasal spray)'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Ceftazidime 주사제 (품명 : 포텀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녹농균이 증명되었을 때, 임상적으로 녹농균 감염이의심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과서적 근거에 의한경험적 치료 나. 동 제제를 포함한 3세대 Cephalosporin에 대한감수성이 있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8] Ceftazidime + Avibactam 주사제 (품명 : 자비쎄프타주)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복잡성 복강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과 원내 감염 폐렴(Hospital-acquired and ventilator-acquired pneumonia)에 Carbapenem계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이나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함. (고시 제2024-20호, '24.2.1.)
[618] Ceftolozane + Tazobactam 주사제 (품명: 저박사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복잡성 복강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과 원내 감염 폐렴(Hospital-acquired and ventilator-acquired pneumonia)에 Carbapenem계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이 증명된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함. (고시 제2022-227호, '22.10.1.)
[618] Ertapenem 주사제 (품명 : 인반즈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아래와 같이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나. 수술 혹은 경피적 배액술이 필요한, 지역사회 획득성 복잡성 복부내감염(Community-acquired 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에 단독요법으로 투여한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Gentamicin sulfate 주사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내인성감염의 예방을 위해 경구 투여로 위장관멸균(G-I sterilization) 나. 뇌 척수액에 농(Pus)이 증명된 경우 경막외(Epidural space)에 국소 투여 다. 골수염에 부골절제술(Sequestrectomy)시 삽입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Imipenem + Cilastatin 제제 (품명: 티에남주 등), Meropenem 제제 (품명: 유한메로펜주 등), Doripenem 제제 (품명: 피니박스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및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 인정 가능함. 3. Imipenem+Cilastatin, Meropenem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 투여 기준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투여하는 경우 (고시 제2024-55호, '24.4.1.)
[618] Rifaximin 경구제 (품명: 노르믹스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그람양성 및 그람음성균에 의한 급성장염 혹은 장내세균상의 이상으로 인한 설사(여름철 설사, 여행자설사, 소장결장염)에 사용시에는 동일 효능 타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의 보조요법 혹은 위장관 수술 전후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618] Tigecycline 주사제 (품명: 타이가실주)	감염 전문가의 자문 하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및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 (고시 제2018-28호, '18.3.1.)

기타의 항생물질 제제(복합항생물질제제를 포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문 [619]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세무인정기준 및 방법 1. 하가시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5)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 까지] 2) 위축성 위염 3)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다.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고시 제2022-111호, '22.5.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문 [621]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 (품명:설파디아진정)	세무안정기는 및 영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톡소플라즈마 감염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연성하감, 트라코마, 봉입체결막염, 노카르디아증, 요도염 (원발성 신우신장염, 신우염, 방광염) 폐쇄성 요로병증 또는 이물질과 무관하며, 아래와 같은 감수성 있는 균종에 의한 감염인 경우: Escherichia coli, Klebsiella 종, Enterobacter 종, Staphylococcus aureus, Proteus mirabilis, P. vulgaris. 설파디아진은 좀 더 잘 녹는 설폰아미드계 약물이 실패했을 경우에만 요도염에 사용함 면역결핍신드롬 인/아닌 톡소포자충증 뇌염 피리메타민과 병용하여 보조적 요법으로 사용클로로퀸에 내성을 가진 Plasmodium falciparum 중에 의한 말라리아 보조적 요법으로 사용수막구균성 수막염의 예방 가족 또는 폐쇄성 집단(Closed group)에서 설폰아미드 감수성 그룹 A이 유행인 경우 (그룹 B또는 C 감염이 유행인 경우, 설폰아미드의 예방적 투여의 효용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 없으며, 폐쇄성 집단에서 해가 될 수도 있음.) 감수성을 나타내는 균에 의한 수막구균성 수막염 Haemophilusinfluenza에 의한 급성 중이염 적당량의 페니실린과 병용투여 류마티스성 열의 재발 예방-스트렙토마이신 주사와 병용하여 보조적 요법으로 사용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1] Sulfamethoxazole 400mg, Trimethoprim 80mg 경구제 (품명: 셉트린정, 셉트린시럽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주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jiroveci (formerly P. carinii) pneumonia) 고위험군(이식, AIDS, 항암화학요법 등 면역기능저하 환자)에 예방목적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고시 제2018-158호, '18.8.1.)
[621] Sulfasalazine 경구제 (품명: 사라조피린이엔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항염증 약물(NSAIDs) 투여에도 호전되지않는 경우나. 베체트장염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622]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 (품명: 서튜러정 100mg)	지부인정기준 및 방법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는 질병관리청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함([붙임] 참조)) - 아 래 - 가. 허가시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장기요법 가) 24주 이내 또는 초과 투여 시 나) Delamanid 경구제와 동시투여는 A, B, C군 약제로 약제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 단기요법 BPaL 요법(Bedaquiline, Pretomanid, Linezolid), BPaLM 요법(Bedaquiline, Pretomanid, Linezolid, Moxifloxacin) 3) 상기 1), 2) 요법시 병용투여하는 Linezolid 제제 용량의
	<u>, </u>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다 음 - 가) 동 약제의 24주 초과투여 나) Delamanid 경구제 투여 후 동 약제의 연속투여 다) Delamanid 경구제와 동시투여 (고시 제2024-55호, '24.4.1.)
[622] Delamanid 경구제 (품명: 델티바정 50mg)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는 질병관리청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함([붙임] 참조)) - 아 래 - 가.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1) 장기요법 가) 24주 이내 또는 초과 투여 시 나)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 투여 후 동 약제의 연속투여 시 다)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와 동시투여는 A, B, C군 약제로 약제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 단기요법 MDR-END 요법(Delamanid, Linezolid, Pyrazinamide, Levofloxacin) 3) 상기 1), 2) 요법시 병용투여하는 Linezolid 제제 용량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증감 가능 4) 만 18세 미만 환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 - 다 음 - 가) 동 약제의 24주 초과투여 나)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 투여 후 동 약제의 연속투여 다)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와 동시투여 (고시 제2024-55호, '24.4.1.)
[622] Pretomanid 경구제 (품명: 도브프렐라정 200mg)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는 질병관리청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함([붙임] 참조)) - 아 래 - 가. 허가사항(성인의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및 치료 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에 대한 베다퀼린과 리네졸리드와의 병용요법)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플로오르퀴놀론 및 아미카신 등 주사제의 내성이 있는 환자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베다퀼린과 리네졸리드* (+목시플록사신)와의 병용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병용투여하는 Linezolid 제제 용량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증감 가능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 준 [623] Dapsone 경구제 (품명: 태준답손정 25mg 등)	지수인정기는 및 정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안면파종상속립성 루푸스(LMDF: Lupus Miliaris Disseminatus Faciei)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기타의 화학료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에이즈치료제	1. 에이즈 치료 시 약제를 동시에 병합 투여하는 '칵테일요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에이즈 관련 증상이 있는 HIV감염인 나. 증상이 없는 경우 1) CD4 Count 〈 350/㎡ 2) 혈장 바이러스 수(Viral load) 〉 100,000Copies/㎖ [by RT-PCR(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인 경우 3) 그 외 감염내과 전문의가 치료제의 투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인 다. 초기 급성 HIV 감염 치료 시 2. 상기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신중인 감염인, 감염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HIV에 노출된 의료종사자(주사침 등에 찔리는 등),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에게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에이즈치료제(단독 혹은 복합)는 인정함. ※ Rilpivirine(제품명: 에듀란트정)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사항 참조하여 혈장 바이러스 수(Viral load)≤100,000 copies/㎖ 환자에게 권고함.
[629] Acyclovir 제제 (품명 : 조비락스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단, acyclovir 구강부착정은 제외) - 아 래 - 가. 경구제의 경우 바이러스성 포도막염(Viral uveitis)에 투여 시 인정하며 2~3개월 정도 투여한 후에도 치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효과가 없을 시는 타 치료방법을 모색함이 바람직함. 나. 망막과시는 대부분 바이러스(Virus)가 원인으로 단시간에 실명에 이르게 되는 드문 질환이므로 항바이러스 제제인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1개월 정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전정신경염(Vestibuloneuritis)은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Adeno virus)나 단순포진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가 원인이므로 전정신경염이 확진된 경우에는 인정함. 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포진바이러스(Herpes virus)등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경구약제는 이식 전 1주일과 이식 후 4주, 그 이후 11개월까지는 경구약제투여를 인정함.
[629] Balofloxacin 100mg (품명 : 큐록신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순요로감염증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하며 단독으로 투여 시 3-5일 정도 인정함. 1) 성인: 1회 100mg을 1일 2회 2)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40ml/min 이하의 심한 신기능 장애 환자): 1회 100mg을 2일 1회 나. 골반내 감염증, 자궁경관염 1) 1차 약제(Ofloxacin경구제 등)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타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함. 3) 투여기간 7일간 인정하며, 골반내감염증의 경우 증상개선 정도에 따라 14일까지 인정함. 4) 투여용량 가) 성인: 1회 200mg을 1일 2회 나)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40ml/min이하의 심한 신기능 장애 환자): 1회 200mg을 2일 1회 (고시 제2017-77호, '17.5.1.)
[629] Ciprofloxacin 경구제 (품명: 사이톱신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신우신염), 위장관감염증 나.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 시에도 인정함. (고시 제2017-77호, '17.5.1.)
[629] Darunavir ethanolate 433.64mg 경구제 (품명: 프레지스타정 400mg)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치료경험이 없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지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agent)와의 병용요법. 단, 이 약은 항상 Ritonavir 100mg과 함께 투여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Darunavir ethanolate 650.46mg 경구제 (품명: 프레지스타정 600mg)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agent) 치료 경험이 있고, 다른 Protease inhibitors의 사용에 실패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성인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른 Antiretroviral agent와 병용요법 (고시 제2016-31호, '16.3.1.)
[629] Darunavir ethanolate + Cobicistat silicon dioxide 복합제 (품명: 프레즈코빅스정)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치료경험이 없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agent)와의 병용요법 (고시 제2016-31호, '16.3.1.)
[629] Elbasvir + Grazoprevir 경구제 (품명: 제파티어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및 투여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투여방법·기간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폐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이 약 12주 기료에 실패한 환자 이전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 린+HCV NS3/4A 단백분해 효소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 아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폐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12주 아전자형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폐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12주 기료에 실패한 환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투여방법·기간 이전 페그인터페론알파/리바비 린+HCV NS3/4A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 이 약 12주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기요에 실패한 환자 이 약 12주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기요에 실패한 환자 16주 ※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증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629] Etravirine 경구제 (품명: 인텔렌스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Antiretroviral agent 치료 경험이 있는,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저해제(NNRTI) 및 다른 Antiretroviral agent 사용에 실패한 제1형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1) 감염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른 Antiretroviral agent와 병용요법 (고시 제2013-127호, '13.9.1.)	
[629] Famciclovir 250mg 경구제 (품명: 팜비어정 250mg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유사효능의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 투여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대상포진 감염증과 재발성인 생식기포진 감염증의 치료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 단순포진에 의한 재발성 각막감염시 기존의 Antiviral agent(Acyclovir)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어려운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629] Ganciclovir 주사제 (품명: 싸이메빈정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중 "거대세포바이러스(CMV; Cytomegalovirus) 질환 감염 위험이 있는 장기(臟器)이식 환자의 CMV 질환의 예방"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 장기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 혈증(CMV antigenemia) (혈액내 CMV 항원 검출)가 1회 이상 확인되거나 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에서 1회 이상 양성 으로 확인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나. 예방적 투여(Universal prophylaxis therapy 또는 Prophylactic therapy) 1) 장기이식술 전 공여자가 거대세포바이러스 혈청 면역글로불린G(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 2) 장기이식술후 면역억제제로 ALG(Antilymnphocyte Globulin), ATG(Antithymocyte Globulin), Orthoclone OKT3(올소클론)를 투여한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Gemifloxacin mesylate 경구제 (품명: 팩티브정)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돈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예: 폐렴) 나.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시에도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629] Glecaprevir + Pibrentasvir 경구제 (품명:마비렛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 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함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 만성 C형			
	(1) 있음 기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대상 환자: 4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 간염 환자 중	소년 만성 C형	투여 방법·기간
	0 -1 -1 -1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간경변 없음	이 약 8주
	유전자형 2,4,5,6형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 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유전자형 3형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 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이 약 16주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		
		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2,4,5,6형 환자 이전 NS5A 저해제 치료	·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이 약 12주
		경험이 없고,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주1}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	간경변 있음	
	간 또는 신장이 의식 환자	이전 NS3/4A 단백분해 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 ^{주2}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2,3,4,5,6형 환자		
		이전 NS3/4A 단백분해 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 ^{주2}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형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이 약 16주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 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3형 환자	간경변 있음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대상 환자: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 만성 C형 반법·기간 간염 환자 중 방법·기간 주1: 시메프레비르 및 소포스부비르 또는 시메프레비르, 보세프레비르 또는 텔라프레비르와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병용요법 주2: 레디파스비르 및 소포스부비르 또는 다클라타스비르와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병용요법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증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 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21-65호, '21.3.1.)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 (품명: 하보니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성인 및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만성 C형 간염환자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 ※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부반안, 재발,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투여 방법 및 기간 1)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_ =	세부인정기준		HHH
T 正	세누인경기군	芝	ᆼ 급

환자군			투여 방법·기간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유전자형 1형	이전 치료	간경변 없음	이 약 12주 또는 이약+리바비린 12주
1 %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24주 또는 이 약+리바비린 12주
		}태와 관계없이] 간경변 환자	이 약+리바비린 12주
유전자형 1, 4형	간 이식 후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리바비린 12주
유전자형 2, 4, 5, 6형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2)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 만성 C형 간염 환자

환자군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1형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12주
유전자형 2, 4, 5, 6형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다.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9-171호, '19.8.1.)
[629] Letermovir 경구제 (품명: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Letermovir 주사제 (품명: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혈청양성[R+] 성인으로 투여시작 전 5일 이내 혈청 CMV 검사(PCR)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 나. 투여방법: 이식 당일 및 이식 후 28일 이내 투여를시작하며, 이식 후 100일까지 투여다. 투여중지 기준 1) CMV 질환이 발생한 경우 2)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가 필요한 경우: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 혈증(CMV antigenemia)(혈액내 CMV 항원 검출)이 1회 이상 확인되거나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에서 1회 이상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629] Levofloxacin 경구제 (품명: 레보펙신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 신우신염) 나.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회 3) 투여기간: 7~14일 이내 ※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근골격계 등 이상반응에 대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및 동의 후 사용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 다음 - 1)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2) 위축성 위염 3)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립프종 환자에게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629] Levofloxacin 주사제 (품명: 크라비트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1) 투여대상: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 2) 용법용량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5세 미만: 16~20 mg/kg/일, 12시간 간격 (최대 750mg/일) ○ 5세 이상: 8~10 mg/kg/일, 1일 1회 (최대 750mg/일) 3) 투여기간: 7~14일 이내 ※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근골격계 등 이상반응에 대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및 동의 후 사용 (고시 제2023-252호, '23.12.20.) 		
[629] Lomefloxacin 경구제 (품명 : 로맥사신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예: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629] Maribavir 경구제 (품명: 리브텐시티정200밀리 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CMV) 감염 및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고 동 약제 투여시작 전 5일 이내 혈청 CMV-PCR 검사결과 양성으로확인된 성인 환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다음 - 1) 최소 2주 이상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 투여후에도 거대세포바이러스 양(viral load)이 기저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대비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는 경우 2) 염기서열분석 검사 결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거대 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가 1개 이상 확인된 경우 3) 심각한 혈액학적 부작용 등으로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의 지속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나. 투여중지 기준: 동 약제 투여 후 2주째의 혈액 CMV-PCR 검사 결과 거대세포바이러스 양(viral load)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경우 다.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4-55호, '24.4.1.)
[629] Moxifloxacin 경구제 (품명: 아벨록스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치료 실패가 PCR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투여용량과 투여기간 - 400mg 1일 1회, 14일 이내 (고시 제2021-26호, '21.2.1.)	
[629] Nelfinavir mesylate 경구제 (품명: 비라셉트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신규 소아환자(만16세 이하) 동 약이 포함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말 것(현재치료중인 소아환자는 계속 사용가능) 나. 신규 임산부 환자동 약이 포함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말 것(현재치료 중인 임산부는 대체치료제로 변경하여 치료하며,다른 대체치료방법이 없는 임산부는 이 약제 계속사용 가능) (고시 제2017-215호, '17.12.1.)	
[629] Ofloxacin 제제 (품명: 타리비드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결핵치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 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 내성균이 확인된 경우 나. 간기능장애로 인해 기존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629)	7 H		
Oseltamivir 경구제 (품명:타미플루캡슐 등)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현객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품명 : 타미플루캡슐 등)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제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현액질환 - 현액질환	[629]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만 9세 이하의 역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만 65세 이상면 명주 이내 산모면 역저하자면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심장질환(Cardiac disease) 제질환(Pulmonary disease)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간질환면 액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Oseltamivir 경구제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실경철한 및 신경발달 장애	(품명 : 타미플루캡슐 등)	부담토록 함.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아 래 -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제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실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세장의(Cardiac disease) - 세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만 9세 이하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심장질환(Cardiac disease)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다 음 -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만 9세 이하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심장질환(Cardiac disease)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심장질환(Cardiac disease)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만 9세 이하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만 65세 이상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면역저하자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간질환혈액질환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간질환	
		- 혈액질환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7-193호, '17.11.1.)
[629] Palivizumab 주사제 (품명 : 시나지스주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다음 중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생후 6개월 이하(당해 4월1일 이후 출생)이면서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나)다음 감염 위험인자를 모두 만족하는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1) RSV 계절(10-3월) 출생 (2) 1명 이상의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있는 경우 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계절(10월-3월) 시작시점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기관지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splasia) 치료가 필요했던만 2세 미만(24개월+0일)의 소아 3)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유의한 선천성심장질환이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만 2세 미만(24개월+0일)의 소아 - 다음 - 가)울혈성 심부전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받고 있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다) 청색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나. 투여횟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계절(10월-3월)에 5회 이내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계절 시작 전(9월)부터 투여 시에도 5회에 포함하여 인정 (고시 제2017-246호, '18.1.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Raltegravir potassium 경구제 (품명: 이센트레스정,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이센트레스정 ○ 제1형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성인 및 최소 체중 25kg 이상의 만 6세 이상의 소아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요법 나.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 제1형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성인 및 최소 체중 40kg 이상의 소아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요법 (고시 제2018-174호, '18.9.1.)
[629] Sofosbuvir 경구제 (품명 : 소발디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투여 방법·기간 이 약+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리바비린+ - 단,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는 인정하지 아니함 페그인터페론 알파 12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 20 12 2 00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또는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와 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간경변 없음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Daclatasvir 12주
	없는 경우(예: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선정된 있음 비대상성 간경변 있음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등)」로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 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페그인터 페론/라바비린 요법 포함)	간 이식 후 환자	이 약+ Daclatasvir+ 리바비런 12주
	유전자형 2형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간경변 없음	이 약+ 리바비린 12주
	-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에 실패한 환자 또는 - 간 이식 후 환자 또는 - 간 이식 대기 중인 환자	간경변 있음 (대상성 또는 비대상성)	이 약+ 리바비린 16주
	유전자형 3형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Daclatasvir 12주 또는 이 약+ 리바비린 24주*
		간경변 있음 (대상성 또는 비대상성) 간 이식 후	이 약+ Daclatasvir+ 리바비린 12주
	유전자형 4형 - 단,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는 인정	환자 한자하지 아니함	이 약+ 리바비린+ 페그인터페론 알파 12주 또는 이 약+ 리바비린 24주
	대상 환자: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 간염 환자 중]만 만성 C형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2형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를 이전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에 실		이 약 + 리바비린 12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유전자형 3형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에 실패한 환자 ※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증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629]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 (품명: 엡클루사정)	(고시 제2022-227호, '22.1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및 만 12세 이상이고 체증 30㎏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및 만 12세 이상이고 체증 30㎏ 투여 방법·기간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강경변이 없거나 이 약대상성 12주 1,2,3,4,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및/또는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 있음 기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 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22-250호, '22.11.1.)
[629]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경구제 (품명:보세비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발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방법·기간 유전자형 이전 NS5A 저해제 ^{주1} 치료에 있거나 이약 12주
[629] Tenofovir disoproxil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경구제 (품명:비리어드정 등)	- 아 래 - 가. HIV-1 감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약제를 '칵테일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함 나. 만성 B형간염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세부인정기준및 방법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629] Tenofovir disoproxil + Emtricitabine 경구제 (품명: 트루바다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HIV-1 감염 동 약제를 '칵테일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의거하여 인정함. 나.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의 HIV-1 노출 전 감염위험 감소 ○ 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고시 제2019-93호, '19.6.7.)
[629] Tosufloxacin 경구제 (품명: 오젝스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예: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629] Valacyclovir HCl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신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경구제 (품명:발트렉스정 250밀리그람 등)	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 신장이식술 전 공여자가 거대세포바이러스 혈청면역 글로불린(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의 예방적 투여(Universal prophylaxis therapy 또는 Prophylactic therapy) (고시 제2013-127호, '13.9.1.)
[629] Valganciclovir 경구제 (품명: 발싸이트정 450밀리그람 등, 발싸이트액제용분말)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거대세포바이러스(CMV; Cytomegalovirus) 감염질환 치료 (고시 제2023-229호, '23.12.1.)
[629] Zabofloxacin 경구제 (품명: 자보란테정)	허가사항 범위(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기염, 폐기종 포함)의 급성 악화)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5-239호, '16.1.1.)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시항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31]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2.5I.U(or Whole-virus rabies antigen)주사제 (품명:베로랍주)	광건병 노출 후 투여 시 요앙급여를 인정하며, 노출 전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에는 비급여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이 약은 백신임 1) 노출전 이 약은 광건병에 노출될 고위험군에 있는 대상자에게 광견병 예방을 위해 추천됨. 광견병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진단, 조사, 생산하는 실험실 관계자와 같은 장기위험에 있는 대상자들은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6개월 마다 혈청반응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며, 항체가가 0.5 IU/ml 이하인 경우에 추가접종을 해야 함.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군은 다음과 같음 수의사, 사냥터관리인(Qamekeeper), 사냥꾼, 삼림 감시원, 도살장 직원(Slaughterhouse personnel), 동굴탐험가, 박제사 동물의 풍토병에 노출된 대상자와 이 지역을 방문한소아, 성인, 여행자 2) 노출 후 노출되었다고 의심되거나 확인된 후, 광견병 바이러스에 오염될 위험이 약간이라도 있을 시에는 즉시 접종이 이루어져야 함. 치료는 상처의 종류와 동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F 문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 (품명: 디스포트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로서 1) 투여대상 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존 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경우 나) 만 7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다만, 만 7세 이상이더라도 다음과 같이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마취나 수술에 금기 사항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근육긴장이상증(Dystonia)이 주증상으로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수술이 상대적금기사항인 경우 2) 투여방법 가) 투여용량: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2호의투여용량과 합하여 1회 최대 1,000U까지나)투여간격은 최소 3개월은 경과하여야함. 나. 수정애쉬워드 경직척도(MAS: Modified Ashworth Scale) 2, 3등급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의 뇌졸중의 상지근육경직(어깨 제외)환자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급여 인정함.

1) 투여용량:1회 최대 1000U까지 급여인정함 2) 투여기간: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 6회까지 투여를 인정하며 투여간격은 최소 4개월은 경과 하여야 함 다. 반측안면경련 환자에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소견서 첨부) - 아 래 - ○ 투여방법: 최소 3개월(12주) 간격을 두고 투여함. 라. 경성사경 환자에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 투여방법: 최소 3개월(12주) 간격을 두고 투여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하지변형에 투여한 경우 1) 투여용량: 1호의 투여용량과 합하여 1회 최대 1,000U까지 2) 투여간격은 최소 3개월은 경과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상지 변형에 투여한 경우 나. 연축성 발성장애에 투여한 경우 나. 연축성 발성장애에 투여한 경우 4. 동 약제의 '사용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참고하여 처방(조제) 하여야 함.

※ 수정애쉬워드 경직척도(MAS: Modified Ashworth Scale) 0: 근긴장도의 증가가 없음(No increase in muscle tone) 1: 약간의 근긴장도 증가, 이환부위의 굴곡 혹은 신전시, 삼힙과 퍼집운동을 시킬 때 관절가동범위의 끝부분에서 약간의 저항이 감지(Slight increase in muscle tone, manifested by a catch and release or by minimal resistance at the end range of motion when the part is moved in flexion or extension/abduction or adduction) 1+: 약간의 근긴장도 증가, 잡힙현상과 가동범위 1/2 범위에서 약간의 저항(Slight increase in muscle tone, manifested by a catch, followed by minimal resistance throughout the remainder (less than half) of the range of motion) 2: 대부분의 관절범위에서 현저히 증가된 근 긴장도를 보이지만 이환부위가 쉽게 움직임(More marked increase in muscle tone through most of the range of motion, but the affected part is easily moved) 3: 근 긴장도의 심각한 증가로 수동관절 운동이 힘듦 (Considerable increase in muscle tone, passive movement is difficult) 4: 이환부위가 굴곡 혹은 신전상태로 강직됨(Affected part is rigid in flexion or extension)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 보톡스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가) 투여대상 : 수정애쉬워드 경직척도 (MAS: Modified
	Ashworth Scale) 2.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나) 투여기간 및 횟수 :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 6회
	다) 투여용량 : 1회 최대 300U
	라) 투여간격 : 최소 3개월
	2) 상기 1)에서 MAS등급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추가 3년 내에 최대 6회 투여를 인정함(뇌졸중
	발병 후 최대 6년까지)
	* MAS등급 개선 : 최초 확인 MAS등급 대비,
	뇌졸중 발병 3년 내 마지막 투여 후 MAS등급이
	1이상 호전된 경우
	다. 방광기능장애환자에게 배뇨일지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설문지를 첨부토록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
	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허가사항에 따라
	'보톡스주'만 해당)
	- 아 래 -
	1) 적절한 보존요법(행동치료) 및 항콜린제 투여에 실
	패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 과민성 방광환자
	2) 최초 투여 후 증상 호전이 있는 경우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투여간격은 최소 24주는 경과하여야 함
	라. 경부근긴장이상(cervical dystonia) 환자에 허가된
	약제에 한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투여방법 : 최소 3개월(12주) 간격을 두고 투여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increase in muscle tone through most of the range of motion, but the affected part is easily moved)	구 분
3 : 근 긴장도의 심각한 증가로 수동관절 운동이 힘들 (Considerable increase in muscle tone passivemovement is difficult) 4:이환부위가 굴곡 혹은 신전상태로 강직됨(Affected part is rigid in flexion or extension) (고시 제2022-160호, '22.7.1.	

항독소 및 렙토스피라혈청류

혈액제제류

[634] Albumin 주사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을 치료 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3.5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 시필요하여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Volume deficit) 치료 나. 적응증 1) 쇼크(Shock) 2) 화상(Burns): 30%~50% 이상 중증화상인 경우 24시간 이후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단, 24시간 이전 이더라도 crystalloids를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인정 3) 성인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4) 심폐우회술(Cardiopulmonary bypass) 5) 신생아용혈병(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 6) 급성 신증(Acute nephrosis) 가) 유효순환혈액량 부족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나) 고용량 이뇨제 투여에도 저항성을 보이는 급성	[634]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을 치료 시 혈증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3.5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 시 필요하여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일반원칙 1)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 치료 2)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혈장 또는 혈량결핍 (Plasma or Volume deficit) 치료 나. 적응증 1) 쇼크(Shock) 2) 화상(Burns): 30%~50% 이상 중증화상인 경우 24시간 이후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단, 24시간 이전 이더라도 crystalloids를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인정 3) 성인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4) 심폐우회술(Cardiopulmonary bypass) 5) 신생아용혈병(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 6) 급성 신증(Acute nephrosis) 가) 유효순환혈액량 부족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나 고용량 이뇨제 투여에도 저항성을 보이는 급성 신증의 부종 치료에 이뇨제와 병용투여 시 단기간

7) 이그성 ㄸㄴ 마성 기다배청곳(C\
7)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Subacute or chronic hypoproteinemia)(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등)로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의 치료 ※ 급성합병증의 예 : ① 쇼크(Shock) ②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호흡곤란(Dyspnea) ③ 부종(Edema) ④ 치료적 복수천자(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불안정(Circulatory instability)이 있는 경우등):복수 3L~5L 천자 시 1병(20% 100mL), 5L이상 천자 시 2병(20% 100mL), 인정⑤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진단 시 1.5g/kg, 3일째 1g/kg투여 인정. 단, serum creatinine〉1mg/dL또는 BUN〉30mg/dL 또는 total bilirubin〉4mg/dL이어야함⑥ 간신증후군(Hepatorenal syndrome): Type I에혈관수축제와 병용 시 첫날 1g/kg, 이후2~15일동안 20~40g/day 인정단,④치료적 복수천자,⑤자발적 세균성복막염,⑥간신증후군은혈증 알부민수치에 관계없음다.급기사항(Contraindication) 1) 순환혈장당의 증가에 따른 위험환자(예: 심부전,페부종, 핍뇨가 동반된 신부전등) 2) 심한 빈혈(Severe anemia)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	WH013151.7 BL WW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도플러(Doppler),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으로 Vasospasm(뇌혈관 연축)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혈증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1-1.5g/kg/day 용량으로 7일까지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상 투여가 필요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 토록 함. 나. 개심술시 Osmorality(삼투압) 유지목적 또는 심근보호 목적으로 충전액이나 심정지액(Cardioplegic sol.)에 추가하는 경우 통상 1~2병(함량 관계없이 100㎡/1병 포장단위)을 인정함. 다. 혈장교환(Plasma exchange)시 사용한 알부민은 인정함[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시 Eval Filter 사용하면 Albumin은 인정하지 아니함]. 라. 신이식술시 Plasmanate 대용으로 5% 알부민주 투여시는 알부민 수치와 관계없이 수술 당시에 2~3병 정도 인정함. 마. 개심술 후 48시간 이내에 20% 100mL/1일 사용한 경우 바. 간이식 및 간절제 수술 후 혈증 알부민 검사치가 3.0 초과 3.5 이하인 다음과 같은 경우 3주까지 인정함 - 다음 - 1) 중등도(grade 3) 이상의 요혼부종(pitting edema)이 있는 경우 또는 2) 1일 복수 배액량이 300mL 이상 나오는 경우 (고시 제2016-145호, '16.8.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34]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품명:훼이바주)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제8인자 및 제9인자 항체환자 1)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 2) 5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3) 최근에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훼이바 혹은 노보세븐 투여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 나. 투여 용량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가) 투여용량 - 1회 투여 시 85단위/kg 나) 투여횟수 - 1회 내원 시 최대 6회분까지, 매4주 총 12회분 까지 인정 - 다만, 매4주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 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투여분을 포함 다) 투여 방법 - 자가투여에 대한 교육 후 최소 1회 이상 성공 적인 자가투여를 병원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후 처방은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한 일지를 환자 및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한 경우에 한함.

[634]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품명: 안티트롬빈III 주 등) - 아 래 - 가. 항 트롬빈III검사(나-158)결과 항 트롬빈 III 결핍이 확인되어 유사효능의 타약제(예: Heparin sodium주 등 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반드시 필요하여 동 약제 투여의 필요성에 대해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나. 급성기 파종성 혈관내응고(DIC)상병 1) 약제투여가 필요한 안티트롬빈-III 검사수치가 라텍스응집반응을 이용한 면역화학측정법: 20㎜/d(이하(신생아: 18㎜/d(이하)나) 활성도 측정법:70%이하(신생아: 60% 이하)	¬ н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품명 : 안티트롬빈III 주등)	サーゼ	세누인성기운 및 방법
가) 투여원칙: 파종성 혈관내응고(DIC) 임상증상이 있고, 안티트롬빈-III 검사수치가 70%(20㎜/៧)이하 신생아 60%(18㎜/៧) 이하로 감소되어 있을 때투여를 시작하여, 1회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수치 참조 2~3일 정도 인정하며, 총 투여기간은 5일간만 인정함 나) 채혈이 불가능(특히, 신생아의 경우)하거나 불가피하게 안티트롬빈-III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혈 후 결과가 나오기 전 기간에는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하여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급성 파종성 혈관내응고(DIC)가 아닌 만성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품명 : 안티트롬빈III 주	- 아 래 - 가. 항 트롬빈III검사(나-158)결과 항 트롬빈 III 결핍이 확인되어 유사효능의 타약제(예: Heparin sodium주 등) 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반드시 필요 하여 동 약제 투여의 필요성에 대해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나. 급성기 파종성 혈관내응고(DIC)상병 1) 약제투여가 필요한 안티트롬빈-III 검사수치가 라텍스응집반응을 이용한 면역화학측정법: 20mg/dl이하(신생아: 18mg/dl이하)나) 활성도 측정법:70%이하(신생아: 60% 이하) 2) 투여기준 가) 투여원칙: 파종성 혈관내응고(DIC) 임상증상이 있고, 안티트롬빈-III 검사수치가 70%(20mg/dl)이하, 신생아 60%(18mg/dl) 이하로 감소되어 있을 때투여를 시작하여, 1회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수치 참조 2-3일 정도 인정하며, 총 투여기간은 5일간만 인정함 나) 채혈이 불가능(특히, 신생아의 경우)하거나, 불가피하게 안티트롬빈-III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혈 후 결과가 나오기 전 기간에는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하여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투여용량 가) 성인: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함 나) 소아: 1일 150-250IU/kg 다. 간이식환자의 간동맥혈전의 예방 및 치료 1) 생체부분간이식수술 후 간동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요법시에는 7-10일간 인정함. 2) 뇌사자 전간(全肝)이식의 경우 혈전예방의 목적으로 투여 시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간동맥혈전의 위험이 높아 동 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안티트롬빈-III의 검사결과치를 참조하여 7일이내로 인정함. (고시 제2014-166호, '14.10.1.)
[634]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품명: 정주용 헤파빅주 등)	1. 투여대상 : 허가사항 범위(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의 예방) 내 필요·적절히 투여 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HBc Ab positive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투여용량 :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1) 수술 중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20,000 IU 이내1회 투여,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10,000 IU이내 1회 투여 (2) 수술 후 1주일까지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20,000 IU 이내/day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10,000 IU이내 /day (3) 수술 후 1달까지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20,000 IU 이내/week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10,000 IU이내 /week (4) 수술 후 1달이후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20,000 IU 이내/month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10,000 IU이내 /month (고시 제2015-134호, '15.8.1.)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WI 250I.U, 500I.U 주사제 (품명: 그린에이트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250I.U, 500I.U, 1,000I.U (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 (품명:이뮤네이트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고시 제2023-296호, '24.1.1.)
[634]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 (품목: 코아가덱스주250IU 등)	1. 입원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유전성 X인자 결핍이 확인된 환자로서 1) 응고인자 활성도 〈5 IU/dL (5%) 미만인 경우 또는 2) 응고인자 활성도 〈10 IU/dL (10%) 미만이면서 중증출혈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 나. 1회 투여용량(1회분): 만 12세 미만 40 IU/kg, 만 12세 이상 25 IU/kg 다. 투여횟수 1) 1회 내원 시 최대 4회분을 인정하며,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8회분까지 인정 2) 원내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원내투여분을 포함 3) 다만, 매4주 8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진료기록부 상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1. 투여 대상: 유전성 X인자 결핍인 성인과 아동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사용
 - 출혈 사건 감소를 위한 예방
 - 출혈 시 치료
- 수술기 전후의 출혈 관리
- 2. 투여 용량
- 투여량 및 지속 기간은 X 인자 결핍증의 심각성, 출혈의 부위 및 범위, 환자의 연령(12세 이상 또는 미만)과 환자의 임상 조건에 따라 다르다.
- 각 환자의 임상 반응에 기초하여 투여량 및 빈도를 결정 한다. 하루에 60 IU/kg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

출혈의 예방		
연령	최초 투여량	추가 관리
어린이: 12세 미만	주 2회 40 IU/kg	환자 간 및 환자 내 변동성으로 인해, 특히 요법의 첫 주 또는 투여량 변경 후 간헐적으로 X 인자의 최저
성인 및 청소년: 12세 이상	주 2회 25 IU/kg	혈액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 임상 반응 및 X 인자의 최저 수준(최소 5 IU/ dL)으로 투여 요법을 조정한다. 최고치인 120 IU/dL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출혈의 치료 및 조절		
연령	최초 투여량	추가 관리
어린이: 12세 미만	30 IU/kg	출혈의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나면 코아가덱스를 주입
성인 및 청소년: 12세 이상	25 IU/kg	한다 [임상 시험 경험 (3.1) 참조] 출혈이 멈출 때까지 24시간 간격으로 반복 투여한다.

수술 전후 출혈 관리		
연령	최초 투여량	추가 관리
어린이:	'투여량' 공식 (2.1)에 표시된	지혈 수준을 달성하고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12세	인수 0.6을 사 용 하여	위해 각 환자의 수술 전후에 주입 후 혈장
미만	투여량(IU)을 계산한다.	X 인자 수준을 측정한다.
	X 인자의 증가는 1.7의 체내	수술 전: 혈장 X 인자 수준을 70-90 IU/dL
	회복가를 사용하여 예상할 수	까지 상승시키기 위해 코아가덱스의 투여량을
	있다(상기 공식 참조).	계산한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성인 '투여량' 공식 (2.1)에 표시된 무술 후: 환자에게 더 이상 수술로 인한 출혈 인수 0.5을 사용하여 통여량(IU)을 계산한다. 12세 X 인자의 증가는 2.0의 체내 이상 회복기를 사용하여 예상할 수 있다(상기 공식 참조).
	(고시 제2022-268호, '22.12.1.)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품명: 아이비글로 불린에스엔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 혈증 포함) 1) 투여대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 불린혈증 포함)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반복적인 감염증상이 있고 항체결핍소견을 보이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나. 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 1) 대상 환자 가) 보조기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흡인(Aspiration)과 관련된 연하곤란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2) 투여용량 : 400mg/kg/day × 5일 또는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1g/kg/day × 2일 3) 재투여 인정 기준 다음의 "치료와 연관된 변동(Treatment related fluctuation, TRF)"에 해당하는 경우, 길랑바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	
	증후군의 첫 증상발현 후 8주 이내에 1회 재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투여 후,
	길랑바레증후군 장애 스케일(GBS disability
	scale)이 1점 이상 또는 Medical Research
	Council 합계 점수(MRC sum score)가 5점 이상
	호전되었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4)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과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의 동시 투여는 인정 하지 아니함.
	아시 아니임. 다.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과 병용 시
	다. 중등심심등에 왕생물질과 청용 시 1) 투여대상
	1) 구역네경 가) 중증 패혈증
	(1) 중증품열증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과
	다음과 같은 장기 부전(감염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이 1개 이상 확인된 경우
	- 다 음 -
	기 면 (가) 신장: 충분한 수액 공급에도 불구하고 급성
	핍뇨증(적어도 2시간 동안 소변량(0.5ml/kg/h)인
	경우
	(나) 호흡기: 급성 저산소혈증(PaO2/FiO2〈300)
	(다) 혈액: 혈소판〈100,000/μL
	(라) 대사: Hyperlactatemia(>2mmol/L)
	(2) 임상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
	등과 같은 가역성이 희박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
	니함.
	나) 신생아패혈증
	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면역기능이 현저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1) 급성 ITP에서 출혈경향이 심하거나 중추신경 계의 출혈의 위험성이 있을 때, 또한 심한 혈소판 감소증(20,000/㎜'이하)이 있을 때 (2) 급·만성 ITP 환아가 외과적 수술을 요할 때 (3) 급·만성 ITP 환아가 심한 외상을 입었을 때 (4) Steroid제제를 2-4주간 투여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5) ITP 환아가 감염이 합병되었을 때 (6) 5세 이하의 어린이가 만성 ITP로 심한 혈소판 감소증(80,000/㎜'이하)으로 비장적출을 연기하고자 할 때 (7) 비장적출이 요구될 때 (8) 경태반 모체 항체로 인한 급성 혈소판 감소증인 신생아 나) 용량 및 인정기간: 400mg/kg/day를 5일간 투여하거나,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1g/kg/day로 2일간 또는 2g/kg/day로 1일간투여[※주: 만성 ITP란 발병 6개월내에 관해 (Remission)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해 마. 가와사키병 1) 투여대상: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유형 모두포함)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관상동맥합병증 발병위험이 있다고 진료의사가 판단하여 투여하는 경우 2) 투여용량 : 400mg/kg씩 5일까지 또는 2g/kg/day×1일 단, 1차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불응성 가와사키병(Refractory Kawasaki)은 2차투여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AHA 가이드라인 (2017)의 "Incomplete KD" 진단기준에 따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실시해야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에 투여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메가 참기
	1) 대상 환자
	가)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이 Biopsy로 증명 되고,
	거고, 나) 적어도 4-6개월 기존의 치료제(Prednisone
	단독 또는 Prednisone 병용투여 등)투여 후
	부작용이 있거나 치료되지 않는 중증상태인
	경우로서
	다) 혈청크레아티닌키나제(CK; Serum creatine
	kinase)가 지속적으로 상승된 경우
	2) 투여용량: 400mg/kg/day ×5일 (또는 2g/kg/day
	×1일, 1g/kg/day ×2일)을 매월 반복하여 3개월
	까지 투여가능하며 투여 후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재투여 가능함.
	나. 중중근무력증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가) 표준치료(Cholinesterase inhibitors, Corticosteroids,
	Azathioprine 등)에 불응성이거나 심각한 부
	작용 등으로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고
	나) 폐활량이 1L 미만이거나 Predicted forced
	vital capacity(FVC) 50% 미만이고, 흡인
	(Aspiration)과 관련된 연하곤란이 있으며,
	다) 도움 없이 100 feet(30m) 이상 걷지 못하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경우
	ਰ 2) 투여 용량: 400mg/kg/dayx5일 (또는 2g/kg/day을
	2-5회 분할투여)
	다. 골수이식(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포함)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격주로 500mg/kg, 그 후
	6개월까지 매월 500mg/kg을 요양급여하며,
	특이사례 발생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라. 신생아 면역 용혈성 질환
	1) 투여대상: ABO 또는 Rh 불일치로 인한 면역
	용혈성 황달로서, 광선요법(Phototherapy)에도
	호전되지 않아 교환수혈 위험이 있는 경우
	2) 투여용량: 0.5-1g/kg(1회 투여 이후 효과가 불
	충분한 경우 12시간 내 재투여 가능함)
	마.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흉터) 유사천포창,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1) 대상 환자
	생검(Biopsy)으로 확진되고, 면역형광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경구용 스테로이드와
	기존의 면역억제제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1.5~2g/kg을 2~5일에 걸쳐 투여하며 2~4주
	간격으로 3회까지 인정하며, 그 이후 투여횟수부터는
	전액본인부담함.
	바. 독성 표피 괴사증후군(Toxic Epidermal Necrosis,
	TEN) 또는 체표면적이 10%이상 침범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SJS)이

구 분	베브이저기즈 미 바버
一 一 正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확진된 경우 총 2g/kg 범위 내에서 투여
	사.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ultifocal Motor Neuropathy,
	MMN)에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투여용량 및 기간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를 인정하고 이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투여할 수 있음.
	아.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CIDP;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
	에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가) 임상적 기준과 생리적 기준을 모두 만족하거나
	병리적 기준에 의해 확진되고,
	나) Prednisone 또는 Azathioprine을 금기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약제에 불응성, 재발성인 환자로서
	mRS* ≥ 3점인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를 인정하고,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mRS* ≥ 3점 또는 1점 이상 증가)에는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 후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6개월간 투여할 수
	있음.
	7)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과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의 동시 투여는 인정
	하지 아니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자. 급성파종성 뇌착수염(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으로 진단된 환자 중 corticosteroid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총 2g/kg 범위 내에서 인정. 차. 자가면역성뇌염(Autoimmune encephaltis) 환자 중 mRS* 3점 이상 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 가 단기 기억 상실, 의식 상태 변화(altered mental status), 또는 정신회적 증상(psychiatric symptoms) 중 한 가지 이상이 3개월 이내 발현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 새로운 국소적 증추신경계 병변을 시사하는 임상 소견 (2) 이전에 알려진 경련성 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련 (3) 뇌척수액 검사 상 백혈구 수가 5cells/mm³ 이상 (4) 뇌염을 시사하는 MRI 소견다) 바이러스성 뇌염 등 다른 원인을 배제 2) 투여용량 및 기간 이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를 인정하고 이후 추가 투여 필요시 4주 간격으로 1g/kg을 2일에 걸쳐 투여 가능함 ※ Modified Rankin Scale(mRS) 0 - No symptoms at all 1 - No significant disability despite symptoms; able to carry out all usual duties and activities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 Slight disability: unable to carry out all previous activities, but able to look after own affairs without assistance 3 - Moderate disability; requiring some help, but 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4 - Moderate severe disability; un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and unable to attend to own bodily needs without assistance 5 - Severe disability; bedridden, incontinent, and requiring constant nursing care and attention 6 - Dead 7. 아데노바이러스벡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추정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환자 가) 혈소판 5만이하 (≦ 50 x 10³/uL) 또는, 나) 주요장기 출혈이 동반되고 혈소판 10만이하 (≦ 100 x 10³/uL) 2) 투여용량: 1g/kg/day × 2일 ※ "추정" 또는 "확진"의 정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발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안내서(의료인용)」에 따름. 타. 전신성홍반성루프스(SLE; Systemic Lupus erythematosus)와 관련된 급성 혈소판감소증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와 타 면역억제제 (Cyclophosphamide 등)에 불응인 SLE 관련 급성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一	해무인정기는 및 영법 혈소판 감소증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corticosteroid 불응인 환자에도 급여 인정함.) - 다음 - (1) 심한 혈소판감소증(20,000/㎢이하) (2) 중증의 출혈이 있을 때(ex: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등) (3)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4) 비장적출수술의 전처치 (5) 임신 30주 이상의 임산부가 분만에 대비하고자할 때 (6) 면역글로불린(Human immunoglobulin G주사제)으로 치료가 있었던 환자에서 증상재발 시 2) 용법 및 인정기간: 400mg/kg/day × 5일 (또는, 1g/kg/day × 2일, 2g/kg/day × 1일)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 아래 - 가. 말초혈액 NK(natural killer) cell 분율이 12% 이상이며,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한 경우 - 투여방법 및 기간: 400mg/kg, 3∼4주 간격으로배란일(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14주나. 중증근무력증 1) 근력 약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MGFA classification llb 또는 lll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이나 출산 전 투여 2) Corticosteroid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면역억제제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불응 또는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난치성 환자의 유지요법 4.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A, 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 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고시 제2022-56호, '22.3.1.)
[634]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1. 입원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횟수 1) 1회 내원 시 최대 2회분까지 인정 2) 원내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원내 투여분을 포함 나. 1회 투여용량 ○ 매4주마다 40 IU/Kg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투여 대상 제 13인자의 선천적 결핍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출혈성 소질,출혈 및 상처 치유에서의 장애 ○ 투여 용량(1회분) 1) 일반적인 예방요법 - 초기용량: 최저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가 대략

л н		H이거기즈 미 비베	
구 분	세	부인정기준 및 방법	
	투여용량 조 수치와 환지	구지되도록 매 28일마 조절은 최저 혈액응고 ·의 임상적 상태에 따 III activity assay를	¹ 제13인자 활성 사름
		사 최저 활성수치(%)	용량 변화
		가 5%보다 작은 경우	5 IU/kg 증가
		├ 5~20%인 경우	용량 변화 없음
		l가 20%보다 큰 경우	5 IU/kg 감소
		l가 25%보다 큰 경우	5 IU/kg 감소
	 2) 수술 전 예약	 방적 조치	
	, , , –	이 ' ㅡ ' 막 예방적 용량 투여	며 이후,
	21일~28일 사이에 수술 예정	전체 예방적 용량을 수술 하고 28일 후에 다음 여	
	8일~21일 사이에 수술 예정	추가적인 용량(전체 또는 투여할 수 있음 - 용량은 환자의 혈액응고 및 임상적 상태에 따 가민의 반감기에 따	2 제13인자 활성수치 나라 정하고 피브로
	7일 이내에 수술 예정	추가적 용량은 필요하	지 않을 수 있음
	큰 수술과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	정상 범위(건강한 사람: 내의 값을 목표로 함	0.7 - 1.4 IU/ml)
		(고시 제2021	-65호, '21.3.1.)
[634]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품명 : 펜타글로빈주)	면역글로불린M(IgM		일요한 중증 감염증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一 正	세구간정시한 및 정답
[634]	1. Rho(-)형 산모에게 투여 시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Immunoglobulin	인정함.
anti-D(Rh) 600,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1500, 5000IU 주사제	(ITP)의 치료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품명 :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윈로에스디에프주)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
	만성 ITP,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에 의한
	이차적인 ITP
	1) 적응증
	가) 심한 혈소판감소증(20,000m²/이하)
	나) 중증의 출혈이 있을 때(ex : 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등)
	다)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라) 비장적출수술의 전처치
	마) 임신 30주 이상의 임산부가 분만에 대비하고자 할 때
	" 바) 면역글로불린(I.V. globulin)으로 치료가 있었던
	환자에서 증상 재발 시
	2) 용법·용량 및 인정기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2일간 투여
	나. 소아(16세미만 소아에 적용)
	급성 또는 만성 ITP,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에 의한 이차적인 ITP
	1) 적응증
	가) 급성 ITP에서 출혈경향이 심하거나 중추신경계의
	출혈의 위험성, 심한 혈소판 감소증(20,000/㎢
	이하)이 있을 때
	나) 급·만성 ITP 환아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급·만성 ITP 환아가 심한 외상을 입었을 때라) Steroid제제를 2-4주간 투여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마) ITP 환아가 감염이 합병되었을 때바) 5세 이하의 어린이가 만성 ITP로 심한 혈소판 감소증(80,000㎡/이하)으로 비장적출을 연기하고자 할 때사) 비장적출이 요구될 때아) 경태반 모체 항체로 인한 급성 혈소판 감소증인 신생아 2) 용법·용량 및 인정기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최대 2일간 투여 [※ 주:만성 ITP란 발병 6개월 내에 관해(Remission)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634]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품명:메갈로텍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공여자가 거대세포바이러스 혈청면역글로불린G (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의 CMV 감염의 임상 증상 예방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정대상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 후 면역저하 환자에서 다음에 해당되어 거대세포바이러스 폐렴(CMV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neumonia)로 확진된 경우로서 Ganciclovir 주사제와 병용 투여한 경우 1) 폐 조직검사에서 CMV 감염이 확인된 경우 2) 흉부방사선(CT 포함)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확인 되고 혈액이나 호흡기 검체(Bronchoalveolar lavage, BAL fluid)로 시행한 거대세포바이러스 배양검사 (CMV culture), 거대세포바이러스 중합연쇄반응 (CMV PCR),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분석(CMV antigen assay)검사 중 하나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나. 인정용량 및 기간 1) 조혈모세포이식: 가) 1일, 2일, 7일째(3회): 4ml/kg 나) 14일째(1회): 2ml/kg 다) 필요시 21일째(1회): 2ml/kg 2) 고형장기이식: 1ml/kg의 용량을 48시간 간격으로 2주간 투여
[634]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 (품명 : 세프로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정맥 혈전증 환자 1) 타 항응고제(해퍼린, 외파린, New Oral Anti-Coagulant 등)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타 항응고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중증의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환자의 정맥 혈전증 치료 2) 타 항응고제 투여가 불가능한 중증의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환자의 정맥 혈전증 예방(외과적 수술, 임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생부인정기준 및 방법 등 한정된 기간에 한함) 나. 전격성자반증 환자의 예방 및 치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증의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성자반의 치료 및 예방(대체치료법) (고시 제2019-93호, '19.6.7.)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35]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품명: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 3에스에스아이/APC)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대상에서 결핵피부반응 검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호흡기계통의 증상(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으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나. 결핵 고위험군으로 의사가 진료 시 필요하여 치료 전에 시행하는 결핵 감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 결핵 고위험군 1) 규폐증, 위절제, 장 우회로술, 만성 신부전증, 스테로이드를 과량 투여한 환자 2) 여러 형태의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장기간 사용자 포함), 암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인간면역 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장기 이식환자 3) 활동성 폐결핵 환자에게 노출되어 잠복결핵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부	세부이정기주 민 방법
l Œ	세구분이 기본 및 이번
구 분 [636] Rabies human immunoglobulin 300 I.U 주사제 (품명: 캄랍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KamRAB-공수병면역 글로불린(휴먼)은 이미 예전에 공수병백신으로 면역을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공수병 항체역가를 가지고 있어한번의 백신이 필요한 자를 제외하고 공수병에 감염된, 특히심각하게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개인에게 투여함(고시 제2013-127호, '13.9.1.)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1) 호증구수 0.5 X 10^9/L 미만 (2) 혈소판수 20 X 10^9/L 미만 (3) 망상적혈구(Reticulocyte) 25 X 10^9/L 미만 (4) 증증의 골수 제세포성(Bone marrow hypocellularit 다)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급성 골수성 백혈병 또 고위협성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등)을 동반하고 있어 장기적인 예후에 치료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 환자 라) 치료에 대한 반응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다 의학적 상태의 존재 3) 치료 효과 평가치료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함 가) 모니터링 자료 (1) 6개월 간격 제출 자료 (기) 유산탈수효소(LDH: Lactate dehydrogenas (나) 전체 혈구수와 망상 적혈구 (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수혈 현황 (라) 철 시험 (마) 요소, 전해질 및 사구체여과율(eGFR) (바) 최근 임상 병력 (2) 12개월 간격 제출 자료 (가) 수막구균 백신 접종 확인 증명서 (나) 처음 적합성의 근거가 된 임상 증상에 대한 경보고서 (다) 삶의 질 (라)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로 측정한 과립구를 크기 나) 투여 유지 기준 평가 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투여를 지속 수 있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I 4	개 다이기는 첫 이번
	- 다 음 -
	(1)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12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Eculizumab 주사제 투여를
	6개월에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3) Eculizumab 주사제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H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LDH 검사 주기는 2~4주로 함). 단, 임신 및 산후
	3개월 이내 환자의 경우 적용 제외하며, 그 외 수술,
	감염, 혈관외 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Eculizumab 주사제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Eculizumab 주사제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혈전이 발생한 경우(단, 1년 이내에 발생한
	혈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6) 6개월 및 12개월 모니터링 시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호 중구 수 0.5 x 10^9/L미만
	(나) 혈소판수 20 x 10^9/L미만
	(다) 망상적혈구(reticulocyte) 25 x 10^9/L미만
	(7)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을 시행
	하여 PNH관련 증상이 호전된 경우
	(8) 12개월 모니터링 시 과립구 크기가 10% 미만이며
	LDH가 정상 상한치 이하인 경우(Eculizumab
	주사제 투여를 6개월 중단하고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9) 기타 위원회에서 투여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종조혈모세포이식(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 치료 방법인 이식을 고려하여야 함. 4)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나.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1) 투여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 경우
	- 다 음 - 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 (TMA: Thrombotic Microangiopathy) (1) 혈소판수: 해당 요양기관의 정상 하한치 미만 (2) 분열적혈구(schistocytes)
	(3) 해모글로빈〈 10g/dL (4) lactate dehydrogenase(LDH): 정상 상한치의 1.5배 이상 나) 다음에 해당되는 신장손상 (1) 기존의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eGFR 20% 이상 감소 (2) 기존의 신장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 혈청 크레아 티닌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정상 상한치 이상 ※ 추가적으로 다음의 기관 손상 유무 확인 (가)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손상 (나)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인한 심장 손상 (다)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인한 소화기계 손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라)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인한 폐 손상 등 다) 혈장교환 또는 혈장주입을 하기 이전의 혈액 샘플에서 ADAMTS- 13 활성이 10% 이상 단, ADAMTS-13 활성 결과 확인 전 혈소판 수 30×109/L 이상 및 혈청 크레아티닌 150µmol/L (또는 1.7㎜/dl)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신청서 제출 후 투여 가능하며, ADAMTS-13 활성 결과 10% 미만인 경우 이후 투여 분부터는 불인정라) 대변 STEC(Shiga toxin-producing E.Coli) 결과 음성 2)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혈전미세혈관 병증(TMA)가) Shiga toxin으로 인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나) 활동성 악성종양다) 활동성 HIV 감염라) 이식(단, 신장이식의 경우는 예외로함)마) 약물(항암제, 면역억제제, 퀴닌, 고용량의 칼시뉴린 저해제, 항혈소판제제, sirolimus, anti-VEGF agents등)바)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혈관염 또는 감염사) 섬유소 혈전증(파종성혈관내응고증, 헤파린으로인한 혈소판감소증, 헬프증후군(HELLP: Hemolysis, Elevated Liver enzymes, Low Platelets), 발작성 약간혈색소뇨증, 파국적 항인지질 증후군(Catastrophic Antiphospholipid Syndrome))아) 패혈증자)기타 이차성 용혈성 요독 증후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MILCONE 2 01
	(1) 2개월간의 CBC, 혈소판, LDH, haptoglobin,
	reticulocyte 수치
	(2) 혈청 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eGFR)
	(3) anti-CFH antibody 검사결과
	(4) 유전자검사 결과
	(5) 수막구균 백신 접종 확인 증명서
	(6) 지난 2개월 동안의 수혈 현황
	(7) 가족력
	(8) 최근 임상 병력
	나) 유지기 모니터링 자료(치료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투여유지 여부를 평가함)
	(1) 6개월간의 CBC, 혈소판, LDH, haptoglobin,
	reticulocyte 수치
	(2) 혈청 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eGFR)
	(3) 지난 6개월 동안의 수혈 현황
	(4) 최근 임상 병력
	다) 투여 유지 기준
	(1) 효과 평가
	(가) 혈소판수, haptoglobin, LDH 중 2가지 이상의
	정상화 (1) 디오에 헤다워도 시자기도 제시
	(나) 다음에 해당하는 신장기능 개선
	○ 투여 직전 측정한 eGFR 보다 25%를 초과한 호전
	○ 신장기능이 악화 되지 않은 경우(투여 직전 측정한
	eGFR ± 25%)
	(2) 투여기간
	(가) Eculizumab 주사제 투여가 필요한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이전에
	수차례 재발하였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2년간 지속 투여를 인정하며, 추가 투여가 필요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경우 매회 실시한 모니터링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함.
	(나) 유전자 변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환자의
	지속투여는 매회 실시한 모니터링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함.
	라) 투여 중단 기준
	(1) 신장투석을 유지해야 하며, 신장 합병증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2) Eculizumab 주사제를 투여 받은 6개월 중 4개월간
	신장투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장 이외 합병증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3)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간격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Eculizumab 주사제
	투여를 6개월에 3회 이상 누락된 경우(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위원회에서 투여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재투여 기준
	Eculizumab 주사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어 중단한
	이후 재발되어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서
	(ADAMTS-13, STEC 결과 생략 가능) 제출 후 즉시
	투여 가능함
	4) 신장이식과 혈장교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요양기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
	에서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하는 경우는 추후 승인 시 종전 투여분을 소급 인정하며, 위원회에서 증상이 호전되어 투여를
	조급 인성하며, 위원회에서 등성이 오선되어 무역들 중단한 대상자로 결정·통보한 경우는 이후 재발로
	이 한번 게 6세도 살 6 '중도반 성부는 위우 세월도
	I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4	게 무슨이 선 것 이 법
	나)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마다 EDSS 확인 3) 중단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개월 이상 투여 이후 재발한 경우 나)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치료편의 대비 위험성이 큰경우 다) EDSS ≥ 8 인 경우 라)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간격 모니터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재발: 새로 발병한 신경학적인 증상 또는 기존 신경학적인 증상의악화가 24시간 유지되는 경우(신경학적인 검사를 통해확인한객관적 변화로서 임상적확인 또는 MRI 결과) ※ 신경학적인 증상 1. 시신경염 2. 급성칙수염 3. 설명되지 않는 딸꾹질이나 구역과 구토 4. 급성 뇌간 증후군 5. 증상성 기면증이나 급성 간뇌증후군에서 NMOSD 특징 뇌MRI 병변이 동반 6. 증상성 뇌증후군에서 NMOSD 특징적 뇌 또는 척수 MRI병면이 동반
	4) 동 약제는 관련 진료과(신경과, 안과) 전문의가 처방 하여야 함. 5)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경고 등)'을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하며, 투여 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신경학적 기능검사 결과지, EDSS 점수, 진료기록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Eculizumab 주사제는 중대한 수막구균(Meningococcus) 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므로 모든 환자가 투약 최소 2주전에 수막구균 백신을 투여 받아야 하며 최신의 백신 접종지침에 따라 재접종해야 함. 단, Eculizumab 주사제를 즉시 투여해야 하는 경우 수막구균 백신을 동시에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투여하며 항생제치료를 병행할 수 있음. 3. Eculizumab 주사제의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 · 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고, 동 약제를 사전승인함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단,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MOSD)의 경우, 사전승인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고시 제2024-55호, '24.4.1.)
[639] Interferon β-1a 주사제 (품명: 레비프프리필드 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 Peginterferon β-1a 주사제 (품명: 플레그리디펜주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 적인 진행 상태(Second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다. 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투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1-26호, '21.2.1.)
[639] Interferon β-1b (품명: 베타페론주사)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짜중(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짜중(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 2) 이차 진행성 다발경화증 환자 3)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탈수초성 Brain MRI 소견이 있고 뇌 또는 척수에 2개 이상의 lesion을 가진 경우로서, 다발경화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CIS 환자(Clinically isolated syndrome, 임상적으로 단발성 병변이 있는 증후군)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neuro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1-26호, '21.2.1.)
[639] Interferon- γ 주사제 (품명: 인터맥스감마주 200만단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만성골수성백혈병) 투여 시 요양 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성 육아종성 질환 나.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 다. 악성골화석증 (고시 제2016-21호, '16.2.1.)
[639] Natalizumab 주사제 (품명: 티사브리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 (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 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고활성인 만 18세 이상 성인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RRMS) 중 1)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경험이 없고 빠르게 진행하는 중증 환자 2) 인터페론 베타 치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질병 활성을 나타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환자나. 투여방법: 단독 요법 (고시 제2021-26호, '21.2.1.)
[639] Peginterferon alfa-2a 주사제 (품명: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성C형 간염 1) 유전자 I 형(Genotype I)인 경우 가) 치료 12주에 C형간염 RNA(HCV RNA) 정량검사 등을 시행하여 완전 초기 바이러스반응(Complete Early virological response)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나머지 치료과정 (총 12개월 혹은 48주, 휴약기간 제외)까지 인정하며, HCV RNA 수치가 기저치로부터 2log(100배) 미만 감소 시에는 치료를 중단토록 함. 나) 치료 12주째 검사에서 부분 초기 바이러스 반응 (Partial Early virological response)*을 보일 때는 치료 24주째 한번 더 평가하여, HCV RNA가 검출되지 않으면 나머지 치료과정 (총 12개월 혹은 48주, 휴약기간 제외)까지 인정하고, 검출되면 치료를 중단토록 함. ※ 부분 초기 바이러스 반응: HCV RNA 수치가 기저치로부터 2log (100배) 이상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검출 2) 유전자 2,3형(Genotype 2,3형)인 24주까지 인정함. 3) 기존 인터페론(표준 인터페론) 치료 종 있었으나, 재발이 확인된 경우에는 Pe 제제 투여를 인정함. 4) 혈증 ALT(Alanine Transaminase)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 (Cardu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 Peg interferon α-2a와 Hepatotoni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든 나. 만성B형 간염 1) 투여대상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Transaminase)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성 활동성 B형간염 가) HBeAg(+)로서 HBV-DNA≥20 또는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Transaminase)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성 활동성 B형간염
대상부전 간 질환(Hepatic decomp 3) 투여방법 가) 단독요법
나) 혈중 ALT수치 증가 등 환자 Hepatotonics(Carduus mari Ursodeoxycholic acid, DDB 함 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 Peg interferon α-2a와 Hepatoton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 투여기간 ○ 48주(휴약기간 제외) (고시 제2016-66호, '16.5.1.)
[639] Ravulizumab 주사제 (품명 : 울토미리스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으로 측정한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과립구 클론크기(PNH granulocyte clone size)가 10% 이상이고, 유산탈수효소(LDH: Lactate dehydrogenase)가 정상 상한치의 최소 1.5배 이상인 만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혈전증: 치료적 항응고제 요법이 필요했던 혈전 또는 색전증 기왕력 (2) 페부전: 정상적인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는 흉통, 숨가쁨(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 폐동맥고혈압 확진 (3) 신부전: 신부전 병력(eGFR≤60mL/min/1.73㎡) (4) 평활근 연축: 입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 나) Eculizumab 주사제를 6개월 이상 투여하고 있는 환자로서 유산탈수효소(LDH)가 정상 상한치의 1.5배 이하인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제외 대상
	가) 과립구 클론(Granulocyte clone) 크기가 10%
	미만인 환자
	나) 재생불량성 빈혈에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1) 호중구수 0.5 X 10^9/L 미만
	(2) 혈소판수 20 X 10^9/L 미만
	(3) 망상적혈구(Reticulocyte) 25 X 10^9/L 미만
	(4) 중증의 골수 저세포성(Bone marrow hypocellularity)
	다)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급성 골수성 백혈병 또는
	고위험성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등)을 동반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예후에 치료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
	라) 치료에 대한 반응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다른
	의학적 상태의 존재
	마) 임신 및 산후 3개월 이내
	3) 치료 효과 평가
	치료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함
	가) 모니터링 자료 (1) 6개월 간격 제출 자료
	(가) 유산탈수효소(LDH: Lactate dehydrogenase)
	(나) 전체 혈구수와 망상 적혈구
	(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수혈 현황
	(라) 철 시험
	(마) 요소, 전해질 및 사구체여과율(eGFR)
	(바) 최근 임상 병력
	(2) 12개월 간격 제출 자료
	(가) 수막구균 백신 접종 확인 증명서
	(나) 처음 적합성의 근거가 된 임상 증상에 대한

경과보고서 (다) 삶의 질 (라)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로 측정한 과립구 클론 크기 나) 투여 유지 기준 평가 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투여를 지속할수 있음 - 다 음 - (1)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12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으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오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다) 삶의 질 (라)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로 측정한 과립구 클론 크기 나) 투여 유지 기준 평가 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투여를 지속할수 있음 - 다 음 - (1)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12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와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라)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로 측정한 과립구클론 크기 나) 투여 유지 기준 평가 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투여를 지속할수 있음 - 다 음 - (1)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12개월 모니터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울토미리스주 투여틀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으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오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글론 크기 나) 투여 유지 기준 명가 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투여를 지속할수 있음 - 다 음 - (1)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12개월 모니터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의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함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검사주기는 6~10주로함). 단, 수술, 감염, 혈관외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심의토록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나) 투여 유지 기준 명가 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투여를 지속할수 있음 - 다 음 - (1)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12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H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H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외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평가 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투여를 지속할수 있음 - 다 음 - (1)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12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오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수 있음 - 다 음 - (1)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12개월 모니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외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 다 음 - (1)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12개월 모니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외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1)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12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H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H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외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오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외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비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외 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비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외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와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F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외 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오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F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오 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검사 주기는 6~10주로 함). 단, 수술, 감염, 혈관오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심의토록 함.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신장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열전이 발생한 경우(단, 1년 이내에 발생한 혈전어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6) 6개월 및 12개월 모니터링 시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호 중구 수 0.5 x 10^9/L미만
(나) 혈소판수 20 x 10^9/L미만
(다) 망상적혈구(reticulocyte) 25 x 10^9/L미만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7)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을 시행하여 PNH관련 증상이 호전된 경우 (8) 12개월 모니터링 시 과립구 크기가 10% 미만이며 LDH가 정상 상한치 이하인 경우(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 중단하고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9) 기타 위원회에서 투여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종조혈모세포이식(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 치료 방법인 이식을 고려하여야 함. 4)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 울토미리스주는 중대한 수막구균(Meningococcus) 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므로 모든 환자가 투약 최소 2주전에 수막구균 백신을 투여 받아야 하며 최신의 백신 접종지침에 따라 재접종해야 함. 단, 울토미리스주를 즉시 투여해야 하는 경우 수막구균 백신을 동시에 투여하며 항생제치료를 병행할 수 있음. 3. 울토미리스주의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방법 및 위원회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고, 동 약제를 사전승인함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결정에 따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41] Atovaquone 250mg, Proguanil HCl 100mg 경구제 (품명: 말라론정)	1. 클로로퀸(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로 진단 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다만,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의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는 비급여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641] Metronidazole 주사제 (품명: 트리젤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41] Pyrimethamine (품명 : 다라프림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톡소플라즈마 감염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는 비급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톡소플라즈마증 치료:이 약은 설폰아마이드제제와 병용으로 투여 시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톡소플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즈마증 치료에 권장됨 2) 급성 말라리아 치료: 이 약은 급성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됨. 급성 말라리아 치료 시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급성 말라리아 치료 시 클로로퀸 또는 퀴닌과 같은 신속히-작용하는 Schizonticides 가 사용되며 선호됨. 그러나, 설폰아마이드 (예를 들면, 설파독신)와 이 약의 병용투여는 Plasmodia의 감수성 있는 종의 전달 조절과 억제를 시작함 3) 말라리아의 화학적예방: 이 약은 Plasmodia의 감수성 있는 종에 대한 말라리아의 화학적 예방에 사용됨. 그러나, 피리메타민에 대한 내성은 전세계적으로 퍼져있음. 모든 지역의 여행자에게 예방 제제로서 적당한 것은 아님 (고시 제2013-127호, '13.9.1.)
[641] Pyrimethamine + Sulfadoxine 복합경구제 (품명 : 팬시다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클로로퀸 (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는 비급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의 예방과 치료 1) 예방:클로로퀸 저항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가 풍토병인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예방(단, 열대열원충(Plasmodium falciparum) 균주가 본제에 대해 내성을 가질 수도 있음) 2) 치료:클로로퀸에 내성이 있는 환자의 열대열 말라리아 (Plasmodium falciparum malaria) 치료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yronaridine + Artesunate 복합경구제 (품명: 피라맥스정)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클로로퀸(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원충(Plasmodium falciparum)이나 삼일열원충(Plasmodium vivax) 말라리아로 진단 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단, 20kg 이상 체중인 환자)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721] Barium sulfate 제제 (품명:솔로탑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황산바리움 현탁액(70%)을 대장조영촬영에 사용 시는 250~500ml 범위 내에서 인정토록 함.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비뇨계통의 종양 질환(Tumor)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림프조영, 침샘조영 나.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시행 시 사용다. 난임 진단 검사 중인 여성에서의 자궁난관조영: 1회에한하여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간암 진단목적의 간동맥조영술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721] PEG3350외 (품명 : 코리트산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대장경검사 및 대장수술시 전처치용 하제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대장경검사: 나766 결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 대장수술: 자267 결장절제술, 자292 직장 및 에스장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절제술, 자292-1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자279 장루 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 - 단, 허가사항에 따라 PEG3350 200그램 외(품명: 쿨프렙산 등), PEG3350 150그램 외(품명: 쿨리파액 등), PEG3350 160그램 외(품명: 크린뷰올산), PEG3350 140그램 외(품명: 플렌뷰산)는 대장경검사 시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729] Corticorelin trifluoroacetate (품명 : 씨알에이치페링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령(65세 이상) 나. 경련성질환(뇌전증 등),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뇌졸중 등) 환자 및 동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9-191호, '19.9.1.)
[729] Perfluorobutane 주사제 (품명 : 소나조이드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주3'에 해당하는 조영증강초음파 검사 중 동 약제 허가범위(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 시 조영증강) 내에서 투여 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2-181호, '22.8.1.)
[729] Somatorelin acetate (품명: 지에이치알에이치페링)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령(65세 이상) 나. 경련성질환(뇌전증 등),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뇌졸중 등) 환자 및 동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9-191호, '19.9.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811] Paracetamol 250mg, Ibuprofen 200mg, Codeine phosphate 10mg 복합 제제 (품명: 마이폴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처방 시 4주, 1일당 최대 6캅셀 범위 내에서 인정함(4주 이상 연속 투여 시 불인정).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6캅셀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8-253호, '18.1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821] Alfentanil HCl 주사제 (품명: 알페닐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초과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821] Fentanyl citrate 주사제 (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7 4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라.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에 사용하는 경우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 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 마취(무통분만)에 투여된 경우 2) 내시경 검사·치료시 의식하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단,「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9-171호, '19.8.1.)
[821] Oxycodone HCl 주사제 (품명 : 옥시넘주사 등)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암성통증:「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III.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나. 비암성통증(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1)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2)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고시 제2017-193호, '17.11.1.)
[821] Remifentanil 주사제 (품명 : 울티바주 등)	하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 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마취유도 및 마취유지의 진통에 투여 시 1) 2시간 이내 사용량 2) 간신부전환자, 심장뇌질환자, 암환자, 희귀난치성질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나. 기계적 환기를 실시중인 중환자의 진통 및 진정(18세 이상)에 투여시 ○ 3일 이내 사용량(1일 최대 15mg)까지 인정함 (고시 제2016-203호, '16.11.1.)
[821] Sufentanil citrate 주사제 (품명: 수펜탈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초과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한약제제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같은 날에 2가지 이상 기준처방 동시 투약시 인정여부	같은 날에 2가지 이상 서로 다른 상병에 대하여 치료목적을 달리하는 기준처방 한약제를 투약하는 경우에 2종 이내에서 인정함. (고시 제2011-10호, '11.2.1. 시행)
	급여 한약제의 제형 변형에 따른 인정 범주	68종 엑스산제의 56개 처방은 고제, 환제로 제형 화하여 투여시도 인정함. (고시 제2005-61호, '05.9.15. 시행)
	처방별 적응증	한방의 56개 기준처방시 [별첨1]의 처방별 적응증을 참조하여 가장 유사한 상병명을 기재함. (고시 제2009-214호, '10.1.1. 시행)

처방별 적응증

처방명	적응증
1. 가미소요산	월경 전 및 월경기의 다양한 심신 증상, 월경통, 과다 월경, 빈발월경, 희발월경, 불규칙월경, 산후 우울한 기분 및 우울증, 갱년기및 폐경기의 다양한 심신 증상, 소양감, 구내염, 입안마름, 수면장애, 어지러움, 피로, 권태, 식욕부진, 오한과 발열의 교대, 수족냉증, 상세불명의 발열 및 열감, 온 몸이 쑤시고 아픔, 어깨 결림, 두통, 수면중의 과다 발한, 귀속의 통증, 가슴과 유방 및 복부의 팽창감, 소변이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증상, 피가 섞인 가래, 심인성 기침, 신경증
2. 칼근탕	감기, 몸살, 뒷목과 등이 뻣뻣하게 아픔, 머리와 얼굴이 아픈 증상, 갈증, 설사, 피부 발진, 비염, 부비동염, 급성 기관지염, 급성 후두염, 성홍열, 대장염
3. 갈근해기탕	인체 내부의 열증(양명경병)으로 인한 안구 통증 및 비강 내 건조감, 수면 장애, 감기, 인플루엔자, 알레르기성 비염, 위축성 비염, 급성 부비동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다형홍반
4. 구미강활탕	온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 감기, 인플루엔자, 타박상, 각종 관절염 및 관절통, 각기
5. 궁소산	임신 중 혹은 산후에 발생한 감기, 몸살, 기침, 천식, 인플루엔자, 기관지염
6. 궁하탕	각종 병적 수분 정체(담음)를 동반한 질환으로 인한 소화불량, 복수, 복통, 협통, 흉통, 관절염 및 관절통, 요각통, 정신 불안 증상, 늑막염, 폐쇄성 폐질환

처방명	적응증
7. 내소산	식체, 소화 불량, 구역, 구토, 복부 팽만, 명치 끝이 답답하고 아픈 증세, 변비, 설사, 복통, 식욕 부진, 요통, 식도염, 식도의 궤양, 급만성 위십이지장염, 위십이지장궤양, 대장염, 과민성 장증후군, 장중첩증, 만성 담낭염, 알코올성 위염, 알코올성 간질환, 인후부의 결절, 갑상선 결절, 우울한 기분, 심신증, 매핵기(히스테리구)
8. 당귀연교음	치통, 구취 및 구취를 유발하는 구강내 질환, 구강과 입술의 건조, 구내염, 치은염, 치주염, 아구창, 구각 궤양, 입술 단순 헤르페스
9. 당귀육황탕	수면 중 과다 발한, 식은 땀, 출산 후의 과다 발한, 산후풍으로 인한 발한과다, 체액의 소실을 동반한 열감, 변비, 소변이 진하고 혀가 붉으며 맥박이 빠른 상태, 안면부 발적, 가슴 및 손발의 번열감, 갱년기 및 폐경기의 다양한 심신 증상, 권태감, 피로감, 두통, 현기증, 편두통, 심신증, 자율 신경 장애, 빈혈, 만성 소모성질환으로 인한 체력저하
10. 대시호탕	헛소리, 딸꾹질, 비만, 변비, 소갈, 흉통, 두근거림, 원인 미상의열, 주기적인 발열, 혈뇨, 구취 및 구취를 유발하는 구강내 질환, 설통, 감기, 몸살, 고창, 구역, 구토, 유행성 각결막염, 급성 결막염, 구내염, 치주염, 설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급성 기관임,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급성 인후두염, 중이염, 부비동염, 인플루엔자, 폐렴, 천식, 폐의 괴저 및 괴사,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염, 담낭염, 담관염, 소화성 궤양, 급성 충수염, 급성 췌장염, 대장염, 복막염, 과민성 장 증후군, 소화기계통 악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정신분열증, 해리 장애
11. 대청룡탕	발열, 오한, 신체동통, 땀은 나지 않으면서 가슴이 답답하여 안정하지 못하는 경우, 감기, 몸살, 천명,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급성 기관염,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급성 후두기관염,

처방명	적응증
	급성 폐쇄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 급성 인후두염, 인플루엔자, 폐렴,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부종, 급성 부비동염. 급성 결막염, 단독
12. 대화중음	식체, 식욕 부진, 소화불량, 고창, 복부 팽만감, 복강내 종괴감, 변비, 설사, 알코올 중독, 위십이지장염, 식도염, 대장염, 장관 흡수 장애, 위십이지장궤양, 소화성 궤양, 유문 연축증, 위의 급성 확장, 소화기 계통 처치 후 장애
13. 대황목단 피탕	변비, 복통, 급성 충수염, 장 및 충수의 염증, 체력이 있는 사람의 소화성 궤양, 치질, 골반 염증성 질환, 월경통
14. 도인승기탕	변비, 하복부의 강한 긴장감, 검은 색의 대변,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증상, 혈뇨, 코피, 두통, 중풍전조증 및 중풍, 원인 미상의열, 고열로 인한 의식 불명, 헛소리, 월경통, 과소월경, 골반 염증성질환, 만성 신염 증후군, 방광염, 알코올 중독, 해리 장애, 정신분열
15. 반하백출 천마탕	소화불량, 소화기능의 약화에 동반된 이명, 현기증, 두통, 편두통, 메스꺼움, 답답함, 숨참, 구역, 구토, 안륜 색소 침착, 만성 위염
16. 반하사심탕	명치 밑이 그득하지만 아프지 않은 경우, 감기 및 기타 감염으로 열이 나고 명치 밑이 그득하면서 구토하는 경우, 구내염, 숙취, 소화불량, 식욕부진, 구역, 구토, 위의 급성 확장, 위하수, 속쓰림, 트림, 위십이지장궤양, 소화성 궤양, 식도염, 신경성 위염, 위십이지장염, 대장염, 고창, 소화기계통의 처치 후 장애, 날문연축증, 장관 흡수장애, 묽은 변 혹은 설사,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신경증
17. 반하후박탕	소화불량, 식욕부진, 구역, 구토, 고창, 복부 팽만감, 위염, 위궤양, 신경성 기침, 매핵기(히스테리구), 쉰 목소리, 입인두의 기타 부분 양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권태감, 피로감, 현기증, 동계, 우울한 기분, 불안신경증, 입덧, 갱년기 및 폐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심신 증상

처방명	적응증
18. 백출탕	가래가 많은 기침, 만성 기관지염, 숨가쁨, 병후의 체력저하, 피로감, 만성 설사, 식욕부진, 몸이 무겁고 아픈 경우,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통증, 구토와 설사가 오래되어 갈증이 심하고 경련이 발생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다갈증,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 과도 발한, 임신, 출산, 산후기에 합병된 설사 이질과 같은 소화기계통 질환
19.보중익기탕	소화불량, 복통, 식욕 부진, 기능적 설사, 위십이지장염, 위궤양, 위하수, 창자의 만성 혈관성 장애, 병후의 체력저하, 피로증후군, 권태감, 피로감, 다한증, 식은땀, 과로 혹은 영양장애로 몸에 열이 나고 속이 답답하며 식은땀이 나고 피곤한 경우, 기운이 없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 방광염, 만성 신염 증후군, 오랜 기침, 만성 후두기관염, 급성 후두염, 딸꾹질, 상지 마비, 하지 마비, 수족 마비, 증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신경 손상, 엉덩신경의 병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상하부의 기능 장애, 대마비, 사지마비, 과다 월경, 빈발 월경,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후유증 및 회복기 치료, 요실금, 여성 생식기 탈출, 자궁 하수, 대하, 음취, 임신 중 당뇨, 자연유산, 조기 임신 중 출혈, 산과적 외상, 분만 중 회음부 열상, 외음부 및 회음부의 비염증성 장애, 임신, 출산, 산후기의 소화기계통 장애, 기질적 장애 또는 질병에 의하지 않은 성기능 이상, 젖흐름증, 난청, 이명, 만성 고막염, 몸통의 피부 고름집, 종기, 불안, 긴장, 흥분
20. 보허탕	산후풍, 산후의 각종 질환, 출산 시 출혈로 인한 빈혈, 지속성 신체형 동통 장애, 임신 중 혹은 산후기의 감염성 질환, 수유와 관련된 유방 장애
21. 복령보심탕	가슴 및 손발에서 땀이 나는 경우, 권태감, 피로감, 피로 증후군, 홍조, 손발의 번열, 과도한 정서적 긴장 및 스트레스로 피를 토하거나 땀을 흘리는 경우, 코피, 다음 다갈증, 구역, 구토, 위장관 출혈,

처방명	적응증
	빈혈, 고혈압, 저혈압, 결핵, 갱년기 및 폐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심신 증상, 기분 장애, 불안 장애, 인지기능 및 각성에 관한 기타 증상 및 징후,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성 질환
22. 불환금 정기산	구역, 구토, 설사, 맞지 않은 물과 음식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증상, 곽란, 오한과 발열의 교대, 기침, 식도염, 위십이지장염, 대장염, 기능적 창자 장애, 이질, 식중독, 감기, 인플루엔자, 후두기관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각기
23. 삼소음	기침, 콧물, 재채기, 코막힘, 풍한감모 후유증에 의한 불수의적 이상 운동, 주기적 발열, 원인 미상의 발열, 정서적 요인에 의한 가슴 답답함, 감기, 인플루엔자, 급성 후두기관염, 임신 혹은 산후기에 합병된 피부 및 피부 밑 조직의 질환, 담낭염, 기관, 기관지, 폐, 종격동의 악성 혹은 양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24. 삼출건비탕	소화기계가 약한 사람의 소화기능의 개선, 소화불량, 식욕부진, 신경성 식욕부진, 고창, 복부팽만, 위십이지장궤양, 소화성 궤양, 식도염, 위십이지장염, 대장염, 장관 흡수 장애, 기능적 설사, 설사를 동반한 과민성 장증후군, 분문 이완불능증, 식도의 수축, 식도의 운동장애, 식도의 악성 및 양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날문연축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25. 삼호작약탕	갈증, 심신불안정, 식욕부진,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거나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급성 신염 증후군, 급속 진행성 신염 증후군, 만성 신염증후군,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신증후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 장애, 상세불명의 요도 증후군, 상세불명의 비뇨기계통 장애, 급성전립샘염, 요도협착, 급성방광염, 사이질성 방광염, 기타 만성 방광염, 감기 및 기타 감염증후 잔존한 발열

처방명	적응증
26. 삼황사심탕	체력이 있는 사람의 안면홍조, 불안, 변비, 고혈압 수반증상(어깨결림), 이명, 두중, 불면, 명치 밑이 답답하고 단단하게 느껴지나 만지면 부드러운 경우, 심장 기능의 약화,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원인 미상의 발열, 코피, 파를 토하는 경우, 재발성 구내염, 혀 유두의 비대, 심통, 소양증
27. 생맥산	여름철의 건강증진, 여름철의 무기력, 여름철의 배탈, 열사병, 피로, 권태감, 숨이 차고 입이 마르며 땀이 많이 나는 증상, 급성 인두염, 기침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증상, 성대 및 후두 질환의 대증요법
28. 소시호탕 (삼금탕)	입이 쓰고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그득함, 식욕부진, 구역 및 구토, 식은 땀, 수면 중 과다 발한, 오한과 발열의 교대, 눈앞이 아찔아찔함, 난청, 감기가 나은 후에도 열이 지속되는 경우, 편도 및 아뎨노이드의 만성질환, 인플루엔자, 급성 기관지염, 급만성 후두기관염, 심인성기침, 천식, 기관지 확장증, 위염, 급성 담낭염, 급성 췌장염, 식도염, 분문 이완불능증, 식도의 수축, 식도의 운동장애, 식도의 악성 및 양성신생물의 대증요법, 임신 중 간기능 장애, 임신 및 산후기에 합병된 바이러스 감염, 급만성 바이러스 간염, 늑막염, 가로막의 장애, 무월경 혹은 폐경과 동반된 열감이나 발열과 오한의 교대, 월경 전 증후군, 월경통, 월경 기간 중의 발열, 출산 후의 발열, 산욕열, 급성 자궁목의 염증 및 난소염, 자궁목을 제외한 자궁의염증성 질환, 여성의 급성 골반염, 늑간신경병증, 심신증, 급성 진행성신염증후군,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만성 신염 증후군, 급성 세뇨관-사이질성 신염, 만성 세뇨관-사이질성 신염, 망광염,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 생식기관의염증성 장애, 상세불명의 혈뇨, 신증후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사구체장애, 섬망, 우울병 에피소드

처방명	적응증
29. 소청룡탕	감기, 콧물, 재채기, 기침, 숨 쉴 때의 가슴통증, 명치 통증, 딸꾹질, 구역, 구토, 갈증이 있고 설사를 하면서 아랫배가 답답한 증상, 관절통, 비염, 급만성 인두염, 인플루엔자, 천식, 폐렴, 늑막염, 폐부종, 기타사이질성 폐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슴막삼출액, 가슴막판, 기타 가슴막의 병태, 상세불명의 호흡기능 상실, 상세불명의 호흡기장애, 기관, 기관지 및 폐 악성신생물의 대증요법, 가슴샘 악성신생물의 대증요법, 심장, 종격동 및 가슴막 악성신생물의 대증요법,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의 대증요법, 기관 기관지 및 폐 양성신생물의 대증요법, 상세불명의 호흡기계통 양성신생물의 대증요법, 가슴샘 양성신생물의 대증요법, 급성결막염
30. 승양보위탕	설사, 점액변, 혈변, 위장관 출혈, 이급후중, 몸이 무겁고 마디가 쑤시고 아픔, 입이 쓰고 마름, 식욕부진, 권태감, 피로감,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봄, 양기가 부족하여 안색이 나쁘며 춥고 몸이 떨리는 경우, 장관 흡수장애, 이질, 위장염, 대장염, 위 악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췌장 악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기타 소화기관 악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위 양성신생물의 대증요법, 췌장 양성신생물의 대증요법
31. 시경반하탕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가슴이 그득하고 옆구리가 아픈 경우, 가래가 끓는 기침, 급성기관염, 급성후두기관염, 인플루엔자, 폐렴, 소화기의 악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32. 시호계지탕	감기, 오한과 발열의 교대, 복통,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함, 두통, 항강통, 땀이 많이 나고 헛소리를 하며 물을 많이 마심, 늑간 신경병증, 소화성궤양, 급만성 바이러스간염, 담낭염,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 심신증

처방명	적응증
33. 시호소간탕	식체 혹은 타박상으로 인해 옆구리가 아픈 경우, 발열과 오한의 교대, 늑막염, 늑간신경병증, 췌장의 기타 질환, 심신증, 우울증 에피소드
34. 시호청간탕	분노, 화나 짜증을 잘 냄, 귀 뒷목 유방 옆구리 가슴의 통증, 오한과 발열의 교대, 급성 간염, 늑막염, 신경질을 잘 내는 소아의 만성 편도선염, 습진, 아토피성 피부염, 자극과민성, 심신증
35. 안태음	임신 중 복통, 임신 중 출혈, 자연유산, 습관적 유산, 조기 진통
36. 연교패독산	감기 등 급성 상기도 감염, 이하선염, 종기로 인한 오한 발열 두통, 부종
37. 오림산	배뇨장애, 혈뇨,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방광염, 신장 및 요관의 결석 등으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농뇨 혈뇨 결석 하복통 음경통이 동반되는 경우, 급성 진행성 신염증후군, 만성신염 증후군
38. 오적산	요통, 요각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낙침, 감기, 두통, 두풍증, 구안와 사, 신경통, 월경통, 냉, 대하, 구역, 구토, 소화불량, 안구 피로, 산후 풍, 요부 염좌, 엉덩관절증, 발목 염좌, 두경부 염좌, 각기, 근육의 분리, 윤활막염. 건초염, 관절염, 파젯병의 대증요법, 대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독성 뇌병증의 대증요법, 신경병증, 갱년기 및 폐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심신 증상, 월경 전 긴장증후군, 자궁근종의 대증요법, 여성생식기의 악성 종양의 대증요법, 외음부·질·자궁경부·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염증성 질환의 보조요법, 과민성 장증후군, 각결막염, 우울병 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성 장애, 기분부전증, 급성스트레스 반응, 적응 장애, 건강염려증, 신경쇠약증, 심신증

처방명	적응증
39. 이중탕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지만 갈증이 나지 않는 경우, 구역, 구토, 감각 장애, 냉증, 근육의 긴장, 요통, 요각통, 허약한 사람의 기침, 위십이지장염, 위궤양, 대장염, 기능적 설사, 과민성 장증후군, 임신 혹은 산후의 호흡기계 질환, 엉덩관절증
40. 이진탕	기혈 순환이 순조롭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 소화불량, 구역, 구토, 가벼운 입덧, 현기증, 두근거림,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 증상, 몸의 여기저기가 돌아다니면서 아픈 증상, 만성 위염, 임신 및 출산후의 소화기계통 질환, 두경부 염좌,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후유증, 늑막염
41. 익위승양탕	기혈 손상으로 인한 피로권태감의 개선, 대출혈 혹은 만성 출혈 후의 원기 회복, 심번불안, 과다월경, 빈발월경, 불규칙 월경, 자궁 및 난소의 기능 장애로 인한 과다 출혈, 자궁내막 증식증, 유산 혹은 자궁외 임신 및 기태 임신에 따른 합병증
42. 인삼패독산	오한을 동반한 고열, 두통, 안구통증, 전신통, 기침, 코막힘, 몸살, 근육의 과사용으로 인한 통증, 감기, 급성기관염, 급성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폐렴
43. 인진호탕	황달, 구갈, 변비, 두드러기, 간염, 구내염
44. 자음강화탕	기침, 객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음, 체액 소실에 수반되는 발열, 홍조, 식은 땀, 체중감소, 식욕 부진, 만성후두기관염,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우울증 에피소드, 반복성 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장애

처방명	적응증
45. 조위승기탕	변비나 변비로 가슴이나 배가 답답한 증상, 헛소리를 하면서 설사하는 경우, 주기적인 발열, 복통을 동반한 점액변 혹은 농혈변, 소갈, 급성 충수염, 다형홍반, 섬망, 정신분열병, 분열형장애,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46. 청상견통탕	두통, 안면통, 현기증, 기타 불안장애
47. 청서익기탕	여름 타는 것, 다한, 더위로 인한 권태감 및 피로감, 갈증, 식욕부진, 열감, 설사, 이질, 여름철의 감기, 인플루엔자
48. 청위산	위(胃)에 열이 쌓여서 발생하는 재발성 구강 아프타, 구내염, 치통, 치은염, 치주염
49. 팔물탕	허약한 사람의 피로, 무력감, 식욕부진, 이명, 병후 회복, 빈혈, 저혈압,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 저림, 신경통, 신경염, 혈뇨, 월경 과소, 희발 월경, 과다 월경, 빈발 월경, 불규칙 월경, 월경통, 사춘기 지연, 무월경,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기타 뇌혈관 질환,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기타 심장성 부정맥, 악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50. 평위산	급만성 식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증상, 소화불량, 위의 급성 확장, 고창, 복부팽만, 속쓰림, 복통, 구역, 구토, 설사, 임신 및 산후에 발생하는 구역·구토·식체·설사, 권태감, 피로감, 기침, 요통, 요각통, 위식도 역류 질환, 식도염, 위십이지장염, 위십이지장궤양, 소화성 궤양, 대장염, 과민성 장증후군, 장관 흡수 장애, 분문의 이완불능증, 식도의 운동장애, 여름철의 감기, 식도 및 위장관 악성신생물의 대증요법

처방명	적응증
51. 행소탕(산)	감기, 기침, 가래, 만성 후두기관염
52. 향사평위산	소화불량, 설사, 구역, 구토, 속쓰림, 복통, 급·만성 식체에 수반되는 다양한 증상, 식도염, 위십이지장염, 여름철의 감기, 우울병 에피소드
53. 황금작약탕	혈변, 복통을 동반한 발열, 이질, 감염성 대장염으로 인한 점액변, 위십이지장염, 충수염
54. 황련해독탕	비교적 체력이 강한 사람의 각종 발열과 염증성 소견을 동반하는 질환, 감염에 의한 고열, 경련, 의식 혼탁, 불면증, 기침, 코피, 구내염, 설염, 이명, 어지러움, 동계, 알코올성 위염, 알코올성 간질환, 자극성 접촉 피부염, 단독, 급성 결막염,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 장애, 해리 장애, 신경증
55. 형개연교탕	코막힘, 콧물, 코의 소양감, 기침, 천식, 귀의 통증, 외이의 수포나염증, 감기, 인플루엔자,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부비동염, 인두염, 편도염, 세기관지염, 기관지염, 기관염, 후두기관염, 백일해, 중이염, 고막염
56. 회춘양격산	변비, 손발의 번열, 코피, 두통, 혀가 갈라짐, 복통, 안면 홍조, 여드름, 원인 불명의 발열, 소갈, 구내염, 설염, 아구창, 치은염, 치주염, 인두염,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 갱년기 및 폐경기에 동반 되는 각종 심신증상

심사지침

심사지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 만성 호흡기 질환에 장기 투여된 macrolide 계열 제제 인정여부	만성호흡기질환에 저용량 장기 투여(low-dose, long-term therapy)된 macrolides계열 제제는 내성균 출현이나 균교대현상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식약청 허가사항(용법·용량)도 초과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1. 3. 1. 진료분 부터)
[심사지침]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상병에 투여하는 프라그민(주)의 인정기준	1. 저분자량 헤파린(low molecular weight heparin, LMWH) 제제인 프라그민(주)는 식약청 허가사항 및 관련 임상근거 문헌에 의거하여 현행 허가사항대로 심사함. 2. 다만,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DVT)에 대한 통상적인 항응고제 치료는 국제표준단위(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 수치가 2 이상 될 때까지 적어도 5일간 헤파린 또는 LMWH를 투여후 경구 와파린으로 교체 투여하는 것이므로 프라그민(주)의 투여 기간은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치료에 1 ~ 2주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함.
[심사지침] 류마티스질환에서 TNF-α inhibitor 제제 (품명: 엔브렐주사 등)를 휴약 후 재 투여 시 적용기준	류마티스질환(류마티스관절염, 건선성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에서 TNF-α inhibitor(품명: 엔브렐주사 등) 제제를 투여 중 의학적 사유 등으로 휴약 후 재 투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심사함. - 다 음 - 가. 최초평가 실시 이전에 휴약한 환자의 재 투여는 최초 투여 인정기준에 해당 시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최초평가 후 지속 투여 중인 환자가 휴약한 경우 1) 휴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속 투여로 인정함 2) 휴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① 마지막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20%이상 악화된 경우 인정함. ② 마지막 평가 자료가 없으면 최초 투여 인정기준에 해당 시 인정함. 다. 평가 시점에 의학적 사유(감염 등)로 평가하지 못한 경우는 4주 이내에 평가 하여야 함. (2011. 3. 1. 진료분 부터)
[심사지침] 폐계면활성제(Lung surfactant) 주사제의 인정기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에 lung surfactant 주사제를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상태와 적정 투여시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심사함. - 아 래 - 가. 1차 투여 ○ 투여시기: 출생 후 RDS가 발현되어 진단된 시기- 최초 투여 시기는 생후 8시간 이내가 바람직함 - 다만, 환아의 이송시간이 소요된 경우나 최초 임상 기준의 발현이 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8시간 이후에도 투여가 가능함 나. 2차 투여 ○ 환자상태 - 1차 투여 후에 RDS가 호전되었다가 재발되어 임상 기준을 보이는 경우 - 1차 투여 후에 RDS가 지속되어 임상기준을 보이는 경우 ○ 투여시기: 1차 투여 6시간 이후부터 생후 48시간 이내 다. 3차 투여 이상(진료의사의 투여소견서 첨부)

○ 환자상태 - 전회 투여 후에 RDS가 호전되었다가 재발되어 임상 기준을 보이는 경우 - 전회 투여 후에 RDS가 지속되어 임상기준을 보이는 경우 ※ RDS의 재발이나 지속에 관련되는 질환(예: 폐부종, 동맥관 개존, 폐출혈, 폐렴, 기타질환)의 동반 시이에 대한 치료는 병행되어야 함 ○ 투여시기: 전회 투여 6시간 이후부터 생후 96시간 이내 (2011. 3. 1. 진료분 부터)

[부록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0호(2024. 6. 25.)

□ 병용금기 성분(제4조 관련)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	acemetacin	diflunisal	
2	acemetacin	methotrexate (분류번호 : 421)	methotrexate 1주에 15mg 이상 투여시
3	acetazolamide	methazolamide	
4	acetazolamide	topiramate	
5	acitretin	doxycycline	
6	acitretin	methotrexate	
7	acitretin	minocycline	
8	acitretin	oxytetracycline	
9	acitretin	tetracycline	
10	adefovir	emtricitabine + tenofovir	
11	adefovir	tenofovir	
12	alfacalcidol	calcifediol	
13	alfacalcidol	calcitriol	
14	alfacalcidol	calcitriol + alendronate	
15	alfacalcidol	paricalcitol	
16	almotriptan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17	almotriptan	frovatriptan	24시간 이내 병용금기
18	almotriptan	naratriptan	
19	almotriptan	sumatriptan	
20	almotriptan	zolmitriptan	
21	alprazolam	itraconazole	
22	alprazolam	ketoconazole	
23	altretamine	pyridoxine	
24	amantadine	bromperidol	
25	amantadine	chlorpromazine	
26	amantadine	perphenazine	
27	amantadine	dronedarone	
28	amantadine	mizolastine	
29	amantadine	pimozide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30	amantadine	toremifene	
31	amiloride	spironolactone	
32	amiloride	triamterene	
33	aminocaproic acid	thrombin	
34	amiodarone	erythromycin(정맥주사용)	
35	amiodarone	mizolastine	
36	amiodarone	pentamidine(비경구형)	
37	amiodarone	quinidine	
38	amiodarone	ritonavir	
39	amiodarone	sotalol	
40	amiodarone	sparfloxacin	
41	amiodarone	amantadine	
42	amiodarone	amitriptyline	
43	amiodarone	dolasetron	
44	amiodarone	dronedarone	
45	amiodarone	imipramine	
46	amiodarone	nortriptyline	
47	amiodarone	pimozide	
48	amiodarone	toremifene	
49	amisulpride	amiodarone	
50	amisulpride	bromocriptine	
51	amisulpride	pramipexole	
52	amitriptyline	moclobemide	
53	amitriptyline	selegiline	
54	amoxapine	selegiline	
55	amrinone (inamrinone)	dobutamine	
56	anastrozole	estrogen	
57	anastrozole	tamoxifen	
58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roxithromycin	
59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atazanavir	
60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clarithromycin	
61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erythromycin	
62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frovatriptan	24시간 이내 병용금기
63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indinavir	
64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itraconazole	
65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lopinavir + ritonavir	
66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nelfinavir	
67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ritonavir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68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sumatriptan	
69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voriconazole	
70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zolmitriptan	24시간 이내 병용금기
71	apraclonidine	moclobemide	
72	apraclonidine	selegiline	
73	articaine + epinephrine	amoxapine	
74	aspirin	methotrexate	methotrexate 1주에 15mg 이상 투여시
75	aspirin + dipyridamole	methotrexate (분류번호 : 421)	methotrexate 1주에 15mg 이상 투여시
76	atazanavir	dihydroergotamine	
77	atazanavir	ergotamine	
78	atazanavir	lovastatin	
79	atazanavir	methylergometrine (methylergonovine)	
80	atazanavir	pimozide	
81	atazanavir	simvastatin	
82	atazanavir	irinotecan	
83	atomoxetine	moclobemide	
84	atomoxetine	selegiline	
85	atorvastatin	itraconazole	
86	atorvastatin	ketoconazole	
87	auranofin	hydroxychloroquine	
88	avanafil	atazanavir	
89	avanafil	chloramphenicol	
90	avanafil	clarithromycin	
91	avanafil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92	avanafil	darunavir	
93	avanafil	indinavir	
94	avanafil	isosorbide dinitrate	
95	avanafil	isosorbide mononitrate	
96	avanafil	itraconazole	
97	avanafil	lopinavir + ritonavir	
98	avanafil	mirodenafil	
99	avanafil	molsidomine	
100	avanafil	nelfinavir	
101	avanafil	nicardipine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02	avanafil	nicorandil	
103	avanafil	nitroglycerin	
104	avanafil	nitroprusside	
105	avanafil	posaconazole	
106	avanafil	ritonavir	
107	avanafil	sildenafil	
108	avanafil	tadalafil	
109	avanafil	udenafil	
110	avanafil	vardenafil	
111	avanafil	voriconazole	
112	azithromycin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113	benserazide + levodopa	halothane	
114	blonanserin	lopinavir + ritonavir	
115	blonanserin	nelfinavir	
116	bosentan	tacrolimus (분류번호 : 142)	
117	brimonidine	moclobemide	
118	brimonidine	selegiline	
119	bromperidol	bromocriptine	
120	bromperidol	epinephrine	
121	buprenorphine	morphine	
122	buspirone	moclobemide	
123	buspirone	selegiline	
124	calcifediol	calcitriol + alendronate	
125	calcifediol	paricalcitol	
126	calcitriol	calcifediol	
127	calcitriol	paricalcitol	
128	carbamazepine	moclobemide	
129	carbamazepine	selegiline	
130	carbamazepine	voriconazole	
131	chlorpromazine	epinephrine	
132	chlorprothixene	epinephrine	
133	chlorthalidone	lithium carbonate	
134	citalopram	moclobemide	
135	citalopram	pimozide	
136	clarithromycin	mizolastine	
137	clarithromycin	pimozide	
138	clenbuterol	epinephrine	생딍읩장제
139	clenbuterol	norepinephrine	생딍않황제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40	clomipramine	moclobemide	
141	clomipramine	selegiline	
142	cyclosporine	tacrolimus	
143	dapoxetine	moclobemide	
144	dapoxetine	nelfinavir	
145	dapoxetine	selegiline	
146	dapoxetine	sumatriptan	
147	darunavir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148	darunavir	dihydroergotamine	
149	dexamethasone	sparfloxacin	
150	dexketoprofen	ciprofloxacin	
151	dexketoprofen	methotrexate (분류번호 : 421)	methotrexate 1주에 15mg 이상 투여시
152	diethylpropion	mazindol	
153	diethylpropion	moclobemide	
154	diethylpropion	phendimetrazine	
155	diethylpropion	phentermine	
156	diethylpropion	selegiline	
157	diflunisal	indometacin	
158	dihydroergotamine	almotriptan	24시간 이내 병용금기
159	dihydroergotamine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24시간 이내 병용금기
160	dihydroergotamine	azithromycin	
161	dihydroergotamine	clarithromycin	
162	dihydroergotamine	frovatriptan	24시간 이내 병용금기
163	dihydroergotamine	lopinavir + ritonavir	
164	dihydroergotamine	posaconazole	
165	dihydroergotamine	telithromycin	
166	dihydroergotamine	efavirenz	
167	dihydroergotamine	erythromycin	
168	dihydroergotamine	indinavir	
169	dihydroergotamine	itraconazole	
170	dihydroergotamine	nelfinavir	
171	dihydroergotamine	ritonavir	
172	dihydroergotamine	roxithromycin	
173	dihydroergotamine	sumatriptan	
174	dihydroergotamine	voriconazole	
175	dihydroergotamine	zolmitriptan	
176	divalproex	meropenem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77	dothiepin	moclobemide	
178	dothiepin	selegiline	
179	doxepin	moclobemide	
180	doxepin	selegiline	
181	doxycycline	isotretinoin	
182	〈삭제〉		
183	dronedarone	amitriptyline	
184	dronedarone	dolasetron	
185	dronedarone	imipramine	
186	dronedarone	nortriptyline	
187	dronedarone	toremifene	
188	efavirenz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189	efavirenz	midazolam	
190	efavirenz	voriconazole	
191	ephedrine	moclobemide	
192	ephedrine	epinephrine	생딍유황째
193	ephedrine	selegiline	
194	ephedrine	norepinephrine	생딍옯황쩨
195	ergotamine	indinavir	
196	ergotamine	itraconazole	
197	ergotamine	nelfinavir	
198	ergotamine	ritonavir	
199	ergotamine	voriconazole	
200	erythromycin	lovastatin	
201	erythromycin	chloramphenicol	
202	erythromycin	clindamycin	
203	erythromycin	lincomycin	
204	erythromycin	mizolastine	
205	erythromycin	pimozide	
206	esomeprazole	atazanavir	
207	ezetimibe + simvastatin	atazanavir	
208	ezetimibe + simvastatin	darunavir	
209	ezetimibe + simvastatin	erythromycin (분류번호 : 614, 615)	분류번호 : 614, 615 중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제제에 한함
210	ezetimibe + simvastatin	indinavir	
211	ezetimibe + simvastatin	Itraconazole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212	ezetimibe + simvastatin	ketoconazole (분류번호 : 629, 641)	
213	ezetimibe + simvastatin	lopinavir + ritonavir	
214	ezetimibe + simvastatin	nelfinavir	
215	ezetimibe + simvastatin	telithromycin	
216	fenoterol	epinephrine	생딍읩황쩨
217	fenoterol	norepinephrine	생딍꿃황째
218	flecainide	mizolastine	
219	fluconazole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220	fluconazole	dihydroergotamine	
221	fluconazole	triazolam	
222	fluoxetine	moclobemide	
223	fluvoxamine	moclobemide	
224	fluvoxamine	selegiline	
225	fluvoxamine	tizanidine	
226	formoterol	epinephrine	생딍유황째
227	formoterol	norepinephrine	생딍읇황쩨
228	gentamicin	furosemide	
229	glibenclamide	bosentan	
230	gliclazide	miconazole	
231	glipizide	miconazole	
232	haloperidol	epinephrine	
233	hemocoagulase	thrombin	
234	hexoprenaline	norepinephrine	생딍읇황쩨
235	hexoprenaline	epinephrine	생딍유황째
236	hydrochlorothiazide	erythromycin(정맥주사용)	
237	hydrocortisone	sparfloxacin	
238	ibuprofen	methotrexate	methotrexate 1주에 20mg 이상 투여시
239	ilaprazole	atazanavir	
240	imipramine	moclobemide	
241	imipramine	selegiline	
242	indinavir	amiodarone	
243	indinavir	lovastatin	
244	indinavir	midazolam	
245	indinavir	rifampicin (rifampin)	
246	indometacin(경구)	triamterene	
247	iobitridol	metformin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248	iodixanol	metformin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249	iohexol	metformin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250	iomeprol	metformin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251	iopamidol	metformin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252	iopromide	metformin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253	iotrolan	metformin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254	ioversol	metformin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255	ioxaglate	metformin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256	isoproterenol	epinephrine	생딍읩황쩨
257	isosorbide dinitrate	sildenafil	
258	isosorbide mononitrate	sildenafil	
259	isotretinoin	minocycline	
260	isotretinoin	oxytetracycline	
261	isotretinoin	tetracycline	
262	isotretinoin	tretinoin	
263	itraconazole	lovastatin	
264	itraconazole	methylergometrine	
	Itraconazoic	(methylergonovine)	
265	itraconazole	midazolam(경구용)	
266	itraconazole	pimozide	
267	itraconazole	quinidine	
268	itraconazole	simvastatin	
269	itraconazole	triazolam	
270	itraconazole	vardenafil	75세 이상 남성
271	ketoconazole	lovastatin	
272	ketoconazole	midazolam(경구용)	
273	ketoconazole	triazolam	
274	ketoconazole	isoniazid	
275	ketoconazole	rifampicin	
276	ketoprofen	ciprofloxacin	
277	ketoprofen (분류번호 : 114)	methotrexate (분류번호 : 421)	methotrexate 1주에 15mg 이상 투여시
278	ketorolac	aceclofenac	
279	ketorolac	acemetacin	
280	ketorolac	aspirin	
281	ketorolac	celecoxib	
282	ketorolac	clonixin	
283	ketorolac	dexibuprofen	
284	ketorolac	dexketoprofen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285	ketorolac	diclofenac	
286	ketorolac	diflunisal	
287	ketorolac	etodolac	
288	ketorolac	etofenamate	
289	ketorolac	fenoprofen	
290	ketorolac	flufenamic acid	
291	ketorolac	flurbiprofen	
292	ketorolac	ibuprofen	
293	ketorolac	indometacin	
294	ketorolac	ketoprofen	
295	ketorolac	lornoxicam	
296	ketorolac	loxoprofen	
297	ketorolac	meclofenamate	
298	ketorolac	mefenamic acid	
299	ketorolac	meloxicam	
300	ketorolac	nabumetone	
301	ketorolac	naproxen	
302	ketorolac	nimesulide	
303	ketorolac	oxaprozin	
304	ketorolac	pentoxifylline	
305	ketorolac	piroxicam	
306	ketorolac	pranoprofen	
307	ketorolac	salsalate	
308	ketorolac	sulindac	
309	ketorolac	tenoxicam	
310	ketorolac	tiaprofenic acid	
311	ketorolac	zaltoprofen	
312	lansoprazole	atazanavir	
313	levomepromazine	moclobemide	
314	levomepromazine	selegiline	
315	lovastatin	darunavir	
316	lovastatin	lopinavir + ritonavir	
317	lovastatin	telithromycin	
318	mazindol	moclobemide	
319	mazindol	selegiline	
320	meloxicam	methotrexate (분류번호 : 421)	methotrexate 1주에 15mg 이상 투여시
321	melphalan	nalidixic acid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322	menatetrenon	warfarin	
323	metacycline	acitretin	
324	metacycline	isotretinoin	
325	metacycline	tretinoin	
326	metformin	iodised oi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27	metformin + glibenclamide	iobitrid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28	metformin + glibenclamide	iodised oi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29	metformin + glibenclamide	iodixanol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30	metformin + glibenclamide	iohexol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31	metformin + glibenclamide	iomeprol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32	metformin + glibenclamide	iopamidol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33	metformin + glibenclamide	iopromide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34	metformin + glibenclamide	iotrolan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35	metformin + glibenclamide	ioversol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36	metformin + glibenclamide	ioxaglic acid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37	metformin + gliclazide	iobitrid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38	metformin + gliclazide	iodised oil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39	metformin + gliclazide	iodixan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40	metformin + gliclazide	iohex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41	metformin + gliclazide	iomeprol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42	metformin + gliclazide	iopamidol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43	metformin + gliclazide	iopromide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44	metformin + gliclazide	iotrolan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45	metformin + gliclazide	iovers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46	metformin + gliclazide	ioxaglic acid	48시간이내 병용금기
347	metformin + glimepiride	iobitridol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48	metformin + glimepiride	iodised oil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49	metformin + glimepiride	iodixan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50	metformin + glimepiride	iohex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51	metformin + glimepiride	iomepr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52	metformin + glimepiride	iopamid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53	metformin + glimepiride	iopromide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54	metformin + glimepiride	iotrolan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55	metformin + glimepiride	iovers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56	metformin + glimepiride	ioxaglic acid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57	metformin + pioglitazone	iobitrid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58	metformin + pioglitazone	iodised oi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59	metformin + pioglitazone	iodixan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360	metformin + pioglitazone	iohex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61	metformin + pioglitazone	iomepr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62	metformin + pioglitazone	iopamid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63	metformin + pioglitazone	iopromide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64	metformin + pioglitazone	iotrolan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65	metformin + pioglitazone	iovers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66	metformin + pioglitazone	ioxaglic acid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67	metformin + rosiglitazone	iobitrid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68	metformin + rosiglitazone	iodised oi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69	metformin + rosiglitazone	iodixan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70	metformin + rosiglitazone	iohex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71	metformin + rosiglitazone	iomepr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72	metformin + rosiglitazone	iopamid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73	metformin + rosiglitazone	iopromide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74	metformin + rosiglitazone	iotrolan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75	metformin + rosiglitazone	iovers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76	metformin + rosiglitazone	ioxaglic acid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77	metformin + sitagliptin	iobitrid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78	metformin + sitagliptin	iodised oi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79	metformin + sitagliptin	iodixan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80	metformin + sitagliptin	iohexol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81	metformin + sitagliptin	iomeprol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82	metformin + sitagliptin	iopamid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83	metformin + sitagliptin	iopromide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84	metformin + sitagliptin	iotrolan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85	metformin + sitagliptin	iovers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86	metformin + sitagliptin	ioxaglic acid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87	metformin + vildagliptin	iobitrid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88	metformin + vildagliptin	iodised oi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89	metformin + vildagliptin	iodixan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90	metformin + vildagliptin	iohex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91	metformin + vildagliptin	iomepr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92	metformin + vildagliptin	iopamid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93	metformin + vildagliptin	iopromide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94	metformin + vildagliptin	iotrolan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95	metformin + vildagliptin	ioversol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396	metformin + vildagliptin	ioxaglic acid	48시간 이내 병 8금 기
397	methoxyphenamine	epinephrine (분류번호 : 245)	생딍읇황쩨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398	methoxyphenamine	norepinephrine	생딍욻황제
399	methylergometrine (methylergonovine)	nelfinavir	
400	methylergometrine (methylergonovine)	ritonavir	
401	methylergometrine (methylergonovine)	sumatriptan	
402	methylergometrine (methylergonovine)	zolmitriptan	
403	methylphenidate	moclobemide	
404	methylphenidate	selegiline	
405	methylprednisolone	sparfloxacin	
406	metolazone	lithium	
407	metronidazole + spiramycin	mizolastine	
408	midazolam(경구)	atazanavir	
409	midazolam(경구)	darunavir	
410	midazolam(경구)	lopinavir + ritonavir	
411	midazolam(경구)	nelfinavir	
412	midazolam(경구)	ritonavir	
413	midecamycin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414	midecamycin	dihydroergotamine	
415	〈삭제〉		
416	〈삭제〉		
417	minocycline	tretinoin	
418	mirodenafil	isosorbide dinitrate	
419	mirodenafil	isosorbidemononitrate	
420	mirodenafil	molsidomine	
421	mirodenafil	nicorandil	
422	mirodenafil	nitroglycerin	
423	mirodenafil	nitroprusside	
424	mirodenafil	tadalafil	
425	mirodenafil	udenafil	
426	mirodenafil	vardenafil	
427	mirtazapine	moclobemide	
428	mirtazapine	selegiline	
429	mizolastine	roxithromycin	
430	mizolastine	metronidazole	
431	moclobemide	dextromethorphan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432	moclobemide	morphine	
433	moclobemide	nortriptyline	
434	moclobemide	paroxetine	
435	moclobemide	pethidine(meperidine)	
436	moclobemide	pseudoephedrine + triprolidine	
437	moclobemide	selegiline	
438	moclobemide	sertraline	
439	moclobemide	sumatriptan	
440	moclobemide	tramadol	
441	moclobemide	venlafaxine	
442	molsidomine	sildenafil	
443	naratriptan	sumatriptan	
444	naratriptan	zolmitriptan	
445	naratriptan	frovatriptan	24시간 이내 병용금기
446	nelfinavir	amiodarone	
447	nelfinavir	lovastatin	
448	nelfinavir	quinidine	
449	nelfinavir	rifampicin(rifampin)	
450	netilmicin	furosemide	
451	nicorandil	sildenafil	
452	nisoldipine	itraconazole	
453	nisoldipine	ketoconazole	
454	norepinephrine	isoproterenol	
455	nortriptyline	selegiline	
456	octreotide	bromocriptine	
457	omeprazole	atazanavir	
458	oxapium iodide	sodium iodide(131I)	1주 이내 병용금기
459	oxatomide	atropine	
460	pantoprazole	atazanavir	
461	paricalcitol	calcitriol + alendronate	
462	paroxetine	selegiline	
463	pentamidine	amisulpride	
464	pentamidine	zalcitabine	
465	perphenazine	epinephrine	
466	pethidine(meperidine)	selegiline	
467	phendimetrazine	mazindol	
468	phendimetrazine	moclobemide	
469	phendimetrazine	phentermine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470	phendimetrazine	selegiline	
471	phentermine	mazindol	
472	phentermine	moclobemide	
473	phentermine	selegiline	
474	pimozide	amitriptyline	
475	pimozide	dronedarone	
476	pimozide	escitalopram	
477	pimozide	fluoxetine	
478	pimozide	fluvoxamine	
479	pimozide	imipramine	
480	pimozide	mizolastine	
481	pimozide	nortriptyline	
482	pimozide	paroxetine	
483	pimozide	posaconazole	
484	pimozide	quinidine	
485	pimozide	ritonavir	
486	pimozide	sertraline	
487	pimozide	telithromycin	
488	pimozide	toremifene	
489	pimozide	voriconazole	
490	piroxicam	methotrexate (분류번호 : 421)	methotrexate 1주에 15mg 이상 투여시
491	posaconazole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492	posaconazole	lovastatin	
493	posaconazole	simvastatin	
494	potassium chloride	amiloride	
495	potassium chloride	spironolactone	
496	potassium citrate	amiloride	
497	prednisolone	sparfloxacin	
498	procaterol	epinephrine	생딍유황제
499	procaterol	norepinephrine	생딍욻황제
500	proglumetacin	diflunisal	
501	pseudoephedrine	moclobemide	
502	pseudoephedrine	selegiline	
503	quazepam	ritonavir	
504	quinidine	voriconazole	
505	quinidine	azithromycin	
506	quinidine	clarithromycin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507	quinidine	darunavir	
508	quinidine	erythromycin	
509	quinidine	fluconazole	
510	quinidine	indinavir	
511	quinidine	josamycin	
512	quinidine	ketoconazole	
513	quinidine	lopinavir + ritonavir	
514	quinidine	posaconazole	
515	quinidine	roxithromycin	
516	quinidine	spiramycin	
517	quinidine	telithromycin	
518	quinupramine	moclobemide	
519	quinupramine	selegiline	
520	rabeprazole	atazanavir	
521	repaglinide	gemfibrozil	
522	revaprazan	atazanavir	
523	rifampicin	isradipine	
524	rifampicin	nifedipine	
525	rifampicin	nisoldipine	
526	rifampicin(rifampin)	voriconazole	
527	ritonavir	blonanserin	
528	ritonavir	flecainide	
529	ritonavir	lovastatin	
530	ritonavir	quinidine	
531	roxithromycin	pimozide	
532	salbutamol	epinephrine (분류번호 : 245)	생딍유황제
533	salbutamol	norepinephrine	생딍욻황쩨
534	selegiline	bupropion	
535	selegiline	cyclobenzaprine	
536	selegiline	dextromethorphan	
537	selegiline	fluoxetine	
538	selegiline	morphine	
539	selegiline	sertraline	
540	selegiline	sumatriptan	
541	selegiline	tramadol	
542	selegiline	venlafaxine	
543	sibutramine	diethylpropion	
544	sibutramine	mazindol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545	sibutramine	phendimetrazine	
546	sibutramine	phentermine	
547	sildenafil	indinavir	
548	sildenafil	lopinavir + ritonavir	
549	sildenafil	ritonavir	
550	sildenafil	mirodenafil	
551	sildenafil	nitroglycerin	
552	sildenafil	nitroprusside	
553	sildenafil	tadalafil	
554	sildenafil	udenafil	
555	sildenafil	vardenafil	
556	simvastatin	clarithromycin	
557	simvastatin	darunavir	
558	simvastatin	erythromycin	
559	simvastatin	indinavir	
560	simvastatin	ketoconazole	
561	simvastatin	lopinavir + ritonavir	
562	simvastatin	nelfinavir	
563	simvastatin	ritonavir	
564	simvastatin	telithromycin	
565	spiramycin	mizolastine	
566	spironolactone	triamterene	
567	sumatriptan	clomipramine	
568	sumatriptan	ergotamine	
569	sumatriptan	lithium carbonate	
570	sumatriptan	zolmitriptan	
571	tacrolimus	amiloride	
572	tacrolimus	spironolactone	
573	tadalafil	isosorbide dinitrate	
574	tadalafil	isosorbide mononitrate	
575	tadalafil	molsidomine	
576	tadalafil	nicorandil	
577	tadalafil	nitroglycerin	
578	tadalafil	nitroprusside	
579	telithromycin	anhydrous caffeine + ergotamine	
580	telithromycin	amiodarone	
581	tenoxicam	methotrexate	methotrexate 1주에 20mg 이상 투여시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582	terbutaline	norepinephrine	생딍욻황째
583	terbutaline	epinephrine	생딍읩황쩨
584	thiothixene	bromocriptine	
585	tiaprofenic acid(tiaprofenate)	methotrexate (분류번호 : 421)	methotrexate 1주에 15mg 이상 투여시
586	tizanidine	ciprofloxacin	
587	tranexamic acid	thrombin	
588	tretinoin	doxycycline	
589	tretinoin	oxytetracycline	
590	tretinoin	tetracycline	
591	〈삭제〉		
592	triazolam	josamycin	
593	trifluoperazine	epinephrine	
594	tulobuterol	epinephrine (분류번호 : 245)	생딍꿃황쩨
595	tulobuterol	norepinephrine	생딍욻황쩨
596	udenafil	isosorbide dinitrate	
597	udenafil	isosorbide mononitrate	
598	udenafil	molsidomine	
599	udenafil	nicorandil	
600	udenafil	nitroglycerin	
601	udenafil	nitroprusside	
602	udenafil	tadalafil	
603	〈삭제〉		
604	〈삭제〉		
605	valproic acid(valproate)	imipenem + cilastatin	
606	valproic acid(valproate)	meropenem	
607	valproic acid(valproate)	panipenem + betamipron	
608	vardenafil	amiodarone	
609	vardenafil	atazanavir	
610	vardenafil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611	vardenafil	darunavir	
612	vardenafil	dronedarone	
613	vardenafil	indinavir	
614	vardenafil	lopinavir + ritonavir	
615	vardenafil	nelfinavir	
616	vardenafil	ritonavir	
617	vardenafil	sotalol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618	vardenafil	isosorbide dinitrate	
619	vardenafil	isosorbide mononitrate	
620	vardenafil	molsidomine	
621	vardenafil	nicorandil	
622	vardenafil	nitroglycerin	
623	vardenafil	nitroprusside	
624	vardenafil	tadalafil	
625	vardenafil	udenafil	
626	ziprasidone	dronedarone	
627	ziprasidone	mizolastine	
628	ziprasidone	pimozide	
629	ziprasidone	toremifene	
630	zolmitriptan	moclobemide	
631	zuclopenthixol	epinephrine	
632	cyproterone + ethinyl estradiol	desogestrel + ethinyl estradiol(정제)	
633	cyproterone + ethinyl estradiol	drospirenone + ethinyl estradiol(정제)	
634	cyproterone + ethinyl estradiol	etonogestrel(이식제(피하 삽입))	
635	cyproterone + ethinyl estradiol	etonogestrel + ethinyl estradiol(질내삽입링)	
636	cyproterone + ethinyl estradiol	gestodene + ethinyl estradiol(정제)	
637	cyproterone + ethinyl estradiol	levonorgestrel(정제, 이식제(자궁내 삽입))	
638	〈삭제〉		
639	cyproterone + ethinyl estradiol	levonorgestrel + ethinyl estradiol(정제)	
640	cyproterone + ethinyl estradiol	medroxyprogesterone (주사제)	
641	dexlansoprazole	atazanavir	
642	esomeprazole	nelfinavir	
643	olanzapine(정제)	epinephrine	
644	omeprazole	nelfinavir	
645	agomelatine	fluvoxamine	
646	agomelatine	ciprofloxacin	
647	dabigatran	cyclosporine	
648	dabigatran	dronedarone	
649	dabigatran	itraconazole	
650	doripenem	valproic acid(valproate)	
651	〈삭제〉		
652	〈삭제〉		
653	doripenem	divalproex	
654	etravirine	carbamazepine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655	etravirine	phenobarbital	
656	etravirine	phenytoin	
657	etravirine	rifampicin	
658	etravirine	St. john's wort	
659	febuxostat	mercaptopurine	
660	febuxostat	azathioprine	
661	fosaprepitant	pimozide	
662	iguratimod	warfarin	
663	ivabradine	itraconazole	
664	ivabradine	clarithromycin	
665	ivabradine	erythromycin	
666	ivabradine	nelfinavir	
667	ivabradine	ritonavir	
668	rasagiline	moclobemide	
669	rasagiline	selegiline	
670	rasagiline	pethidine(meperidine)	
671	rasagiline	tramadol	
672	rasagiline	cyclobenzaprine	
673	rasagiline	St. john's wort	
674	rilpivirine	carbamazepine	
675	rilpivirine	oxcarbazepine	
676	rilpivirine	phenobarbital	
677	rilpivirine	phenytoin	
678	rilpivirine	fosphenytoin	
679	rilpivirine	rifampicin	
680	rilpivirine	St. john's wort	
681	rilpivirine(경구제)	omeprazole	
682	rilpivirine(경구제)	esomeprazole	
683	rilpivirine(경구제)	lansoprazole	
684	rilpivirine(경구제)	dexlansoprazole	
685	rilpivirine(경구제)	pantoprazole	
686	rilpivirine(경구제)	s-pantoprazole	
687	rilpivirine(경구제)	rabeprazole	
688	rilpivirine(경구제)	ilaprazole	
689	rilpivirine	revaprazan	
690	rivaroxaban	atazanavir	
691	rivaroxaban	indinavir	
692	rivaroxaban	ritonavir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693	rivaroxaban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694	rivaroxaban	itraconazole	
695	rivaroxaban	voriconazole	
696	silodosin	clarithromycin	
697	silodosin	itraconazole	
698	silodosin	ritonavir	
699	ticagrelor	clarithromycin	
700	ticagrelor	ritonavir	
701	ticagrelor	atazanavir	
702	tolvaptan	clarithromycin	
703	tolvaptan	itraconazole	
704	tolvaptan	ritonavir	
705	tolvaptan	indinavir	
706	tolvaptan	nelfinavir	
707	domperidone	amiodarone	
708	domperidone	amisulpride	
709	domperidone	anagrelide	
710	domperidone	arsenic trioxide	
711	domperidone	atazanavir	
712	domperidone	azithromycin	
713	domperidone	bedaquiline	
714	domperidone	bepridil	
715	domperidone	bicalutamide	
716	domperidone	boceprevir	
717	domperidone	chlorpromazine	
718	domperidone	ciprofloxacin	
719	domperidone	citalopram	
720	domperidone	clarithromycin	
721	domperidone	darunavir	
722	domperidone	degarelix	
723	domperidone	dolasetron	
724	domperidone	dronedarone	
725	domperidone	ebastine	
726	domperidone	ebastine + pseudoephedrine	
727	domperidone	erythromycin	
728	domperidone	escitalopram	
729	domperidone	fingolimod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730	domperidone	fluconazole	
731	domperidone	granisetron	
732	domperidone	haloperidol	
733	domperidone	indinavir	
734	domperidone	itraconazole	
735	domperidone	ketoconazole	
736	domperidone	levofloxacin	
737	domperidone	mequitazine	
738	domperidone	metoclopramide	
739	domperidone	metoclopramide + pancreatin	
740	domperidone	mizolastine	
741	domperidone	moxifloxacin	
742	domperidone	nelfinavir	
743	domperidone	nilotinib	
744	domperidone	ondansetron	
745	domperidone	oxatomide	
746	domperidone	paliperidone (주사제)	
747	domperidone	pentamidine	
748	domperidone	pilsicainide	
749	domperidone	pimozide	
750	domperidone	posaconazole	
751	domperidone	prucalopride	
752	domperidone	radotinib	
753	domperidone	risperidone (주사제)	
754	domperidone	ritonavir	
755	domperidone	ritonavir + lopinavir	
756	domperidone	sotalol	
757	domperidone	telithromycin	
758	domperidone	toremifene	
759	domperidone	trazodone	
760	domperidone	vandetanib	
761	domperidone	venlafaxine	
762	domperidone	voriconazole	
763	domperidone	ziprasidone	
764	lamivudine	emtricitabine + tenofovir	
765	lamivudine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766	lamivudine	emtricitabine + tenofovir +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cobicistat + elvitegravir	
767	lamivudine + zidovudine	emtricitabine + tenofovir	
768	lamivudine + zidovudine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emtricitabine + tenofovir +	
769	lamivudine + zidovudine	cobicistat + elvitegravir	
770	lamivudine + abacavir	emtricitabine + tenofovir	
771	lamivudine + abacavir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772	lamivudine + abacavir	emtricitabine + tenofovir + cobicistat + elvitegravir	
773	xylometazoline	moclobemide	
774	xylometazoline	rasagiline	
775	xylometazoline	selegiline	
776	boceprevir	alfuzosin	
777	boceprevir	amiodarone	
778	boceprevir	dihydroergotamine	
779	boceprevir	doxazosin	
780	boceprevir	ergotamine + anhydrous caffeine	
781	boceprevir	lovastatin	
782	boceprevir	naftopidil	
783	boceprevir	pimozide	
784	boceprevir	propafenone	
785	boceprevir	quetiapine	
786	boceprevir	silodosin	
787	boceprevir	simvastatin	
788	boceprevir	simvastatin + ezetimibe	
789	boceprevir	simvastatin + fenofibrate	
790	boceprevir	tamsulosin	
791	boceprevir	terazosin	
792	boceprevir	triazolam	
793	dolutegravir	pilsicainide	
794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carbamazepine	
795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dexlansoprazole	
796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esomeprazole	
797	emtricitabine + tenofovir +	fosphenytoin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rilpivirine		
798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ilaprazole	
799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lansoprazole	
800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omeprazole	
801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oxcarbazepine	
802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pantoprazole	
803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s-pantoprazole	
804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phenobarbital	
805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phenytoin	
806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rabeprazole	
807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revaprazan	
808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rifampicin	
809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e	St. john's wort	
810	desvenlafaxine	moclobemide	
811	desvenlafaxine	selegiline	
812	vortioxetine	moclobemide	
813	vortioxetine	selegiline	
814	etoricoxib	methotrexate	methotrexate 1주에 15mg 이상 투여시
815	tapentadol	moclobemide	
816	tapentadol	rasagiline	
817	tapentadol	selegiline	
818	trastuzumab emtansine	boceprevir	
819	trastuzumab emtansine	clarithromycin	
820	trastuzumab emtansine	atazanavir	
821	trastuzumab emtansine	darunavir	
822	trastuzumab emtansine	indinavir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823	trastuzumab emtansine	itraconazole	
824	trastuzumab emtansine	nelfinavir	
825	trastuzumab emtansine	posaconazole	
826	trastuzumab emtansine	ritonavir	
827	trastuzumab emtansine	ritonavir + lopinavir	
828	trastuzumab emtansine	voriconazole	
829	trastuzumab emtansine	ketoconazole	
830	duloxetine	fluvoxamine	
831	duloxetine	moclobemide	
832	duloxetine	selegiline	
833	risperidone	epinephrine	
834	diclofenac + misoprostol	ketorolac	
835	quetiapine	epinephrine	
836	diltiazem	ivabradine	
837	verapamil	ivabradine	
838	nitroglycerin	ergotamine + caffeine	생딍유황제
839	nitroglycerin	dihydroergotamine	생딍유황째
840	nitroglycerin	riociguat	생딍유황제
841	avanafil	riociguat	
842	mirodenafil	riociguat	
843	sildenafil	riociguat	
844	tadalafil	riociguat	
845	udenafil	riociguat	
846	vardenafil	riociguat	
847	dextromethorphan	rasagiline	
848	ephedrine	ergotamine + caffeine	
849	ephedrine	dihydroergotamine	
850	pimozide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851	pimozide	cobicistat + atazanavir	
852	pimozide	cobicistat + darunavir	
853	pimozide	darunavir	
854	pimozide	indinavir	
855	pimozide	nelfinavir	
856	pimozide	fluconazole	
857	simvastatin	fusidic acid	
858	simvastatin + ezetimibe	fusidic acid	
859	simvastatin + ezetimibe	clarithromycin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860	simvastatin + ezetimibe	posaconazole	
861	simvastatin + ezetimibe	ritonavir	
862	simvastatin + fenofibrate	clarithromycin	
863	simvastatin + fenofibrate	posaconazole	
864	simvastatin + fenofibrate	ritonavir	
865	simvastatin + fenofibrate	fusidic acid	
866	St. john's wort	abacavir + lamivudine + dolutegravir	
867	St. john's wort	efavirenz	
868	St. john's wort	nevirapine	
869	St. john's wort	indinavir	
870	St. john's wort	nelfinavir	
871	St. john's wort	ritonavir	
872	St. john's wort	ritonavir + lopinavir	
873	asunaprevir	atazanavir	
874	asunaprevir	boceprevir	
875	asunaprevir	bosentan	
876	asunaprevir	carbamazepine	
877	asunaprevir	ceritinib	
878	asunaprevir	clarithromycin	
879	asunaprevir	cobicistat함유제제	
880	asunaprevir	crizotinib	
881	asunaprevir	cyclosporine	
882	asunaprevir	dabrafenib	
883	asunaprevir	darunavir	
884	asunaprevir	dexamethasone	
885	asunaprevir	diltiazem	
886	asunaprevir	dronedarone	
887	asunaprevir	efavirenz	
888	asunaprevir	enzalutamide	
889	asunaprevir	erythromycin	
890	asunaprevir	etravirine	
891	asunaprevir	flecainide	
892	asunaprevir	fluconazole	
893	asunaprevir	fosphenytoin	
894	asunaprevir	gemfibrozil	
895	asunaprevir	imatinib	
896	asunaprevir	indinavir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897	asunaprevir	itraconazole	
898	asunaprevir	ketoconazole	
899	asunaprevir	lopinavir + ritonavir	
900	asunaprevir	mitotane	
901	asunaprevir	modafinil	
902	asunaprevir	nafcillin	
903	asunaprevir	nelfinavir	
904	asunaprevir	nevirapine	
905	asunaprevir	nilotinib	
906	asunaprevir	oxcarbazepine	
907	asunaprevir	phenobarbital	
908	asunaprevir	phenytoin	
909	asunaprevir	posaconazole	
910	asunaprevir	primidone	
911	asunaprevir	propafenone	
912	asunaprevir	rifabutin	
913	asunaprevir	rifampicin	
914	asunaprevir	ritonavir	
915	asunaprevir	sirolimus	
916	asunaprevir	St. John's Wort	
917	asunaprevir	verapamil	
918	asunaprevir	voriconazole	
919	daclatasvir	amiodarone	
920	daclatasvir	carbamazepine	
921	daclatasvir	dexamethasone	
922	daclatasvir	enzalutamide	
923	daclatasvir	fosphenytoin	
924	daclatasvir	mitotane	
925	daclatasvir	oxcarbazepine	
926	daclatasvir	phenobarbital	
927	daclatasvir	phenytoin	
928	daclatasvir	primidone	
929	daclatasvir	rifabutin	
930	daclatasvir	rifampicin	
931	daclatasvir	St. John's Wort	
932	sofosbuvir	amiodarone	
933	sofosbuvir	carbamazepine	
934	sofosbuvir	fosphenytoin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935	sofosbuvir	modafinil	
936	sofosbuvir	oxcarbazepine	
937	sofosbuvir	phenobarbital	
938	sofosbuvir	phenytoin	
939	sofosbuvir	primidone	
940	sofosbuvir	rifabutin	
941	sofosbuvir	rifampicin	
942	sofosbuvir	St. John's Wort	
943	ledipasvir + sofosbuvir	amiodarone	
944	ledipasvir + sofosbuvir	carbamazepine	
945	ledipasvir + sofosbuvir	fosphenytoin	
946	ledipasvir + sofosbuvir	modafinil	
947	ledipasvir + sofosbuvir	oxcarbazepine	
948	ledipasvir + sofosbuvir	phenobarbital	
949	ledipasvir + sofosbuvir	phenytoin	
950	ledipasvir + sofosbuvir	primidone	
951	ledipasvir + sofosbuvir	rifabutin	
952	ledipasvir + sofosbuvir	rifampicin	
953	ledipasvir + sofosbuvir	rosuvastatin	
954	ledipasvir + sofosbuvir	St. John's Wort	
955	itraconazole	ticagrelor	
956	omeprazole + sodium bicarbonate	rilpivirine(경구제)	
957	omeprazole + sodium bicarbonate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	
958	esomeprazole + naproxen	rilpivirine(경구제)	
959	esomeprazole + naproxen	emtricitabine + tenofovir + rilpivirin	
960	lansoprazole	nelfinavir	
961	atorvastatin	fusidic acid	
962	atorvastatin + amlodipine	fusidic acid	
963	atorvastatin + ezetimibe	fusidic acid	
964	atorvastatin + irbesartan	fusidic acid	
965	clarithromycin	colchicine	
966	hydroxyzine	amiodarone	
967	hydroxyzine	citalopram	
968	hydroxyzine	erythromycin	
969	hydroxyzine	escitalopram	
970	hydroxyzine	haloperidol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971	hydroxyzine	levofloxacin	
972	hydroxyzine	mefloquine	
973	hydroxyzine	moxifloxacin	
974	hydroxyzine	pentamidine	
975	hydroxyzine	sotalol	
976	hydroxyzine	toremifene	
977	hydroxyzine	vandetanib	
978	oxymetazoline	amitriptyline	
979	oxymetazoline	amoxapine	
980	oxymetazoline	clomipramine	
981	oxymetazoline	dothiepin (Dosulepin)	
982	oxymetazoline	doxepin	
983	oxymetazoline	imipramine	
984	oxymetazoline	nortriptyline	
985	dabigatran	ketoconazole	
986	dabigatran	carbamazepine	
987	dabigatran	phenytoin	
988	dabigatran	rifampicin	
989	dabigatran	St. John's Wort	
990	dabigatran	rifampicin + isoniazid	
991	dabigatran	rifampicin + isoniazid +pyrazinamide	
992	dabigatran	rifampicin + isoniazid +	
	_	pyrazinamide + ethambutol	
993	sertraline	linezolid	
994	pantoprazole	nelfinavir	
995	s-pantoprazole	nelfinavir	
996	palbociclib	clarithromycin	
997	palbociclib	itraconazole	
998	palbociclib	ketoconazole	
999	palbociclib	posaconazole	
1000	palbociclib	voriconazole	
1001	palbociclib	indinavir	
1002	palbociclib	lopinavir + ritonavir	
1003	palbociclib	nelfinavir	
1004	palbociclib	ritonavir	
1005	palbociclib	carbamazepine	
1006	palbociclib	enzalutamide	
1007	palbociclib	phenytoin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008	palbociclib	rifampicin (rifampin)	
1009	palbociclib	St. John's wort	
1010	Elbasvir +Grazoprevir	Carbamazepine	
1011	Elbasvir + Grazoprevir	Efavirenz	
1012	Elbasvir + Grazoprevir	Phenytoin	
1013	Elbasvir + Grazoprevir	Rifampicin (Rifampin)	
1014	Elbasvir + Grazoprevir	St. John's wort	
1015	Elbasvir + Grazoprevir	Atazanavir	
1016	Elbasvir + Grazoprevir	Cyclosporin	
1017	Elbasvir + Grazoprevir	Darunavir	
1018	Elbasvir + Grazoprevir	Lopinavir + Ritonavir	
1010	E-1 - 1 1 - 1	Ombitasvir + Paritaprevir +	
1019	Ethinylestradiol	Ritonavir	
1020	Ethinylastradial Castadana	Ombitasvir + Paritaprevir +	
1020	Ethinylestradiol + Gestodene	Ritonavir	
1021	Ethinylestradiol + Levonorgestrel	Ombitasvir + Paritaprevir +	
1021	Ethniylestraction Levoliorgestrei	Ritonavir	
1022	Ethinylestradiol + Desogestrel	Ombitasvir + Paritaprevir +	
1022	Ethinylestradior Desogestrer	Ritonavir	
1023	Ethinylestradiol + Drospirenone	Ombitasvir + Paritaprevir +	
1023	Etimiyiesitadisi - Brospitelisite	Ritonavir	
1024	Ethinylestradiol + Cyproterone	Ombitasvir + Paritaprevir +	
		Ritonavir	
1025	Methotrexate	Nitrous oxide (N2O)	
1026	Gemfibrozil	Dasabuvir	
1027	Gemfibrozil	Selexipag	
1028	Bupropion + Naltrexone	Diethylpropion	
1029	Bupropion + Naltrexone	Lorcaserin	
1030	Bupropion + Naltrexone	Mazindol	
1031	Bupropion + Naltrexone	Phendimetrazine	
1032	Bupropion + Naltrexone	Phentermine	
1033	Lorcaserin	Diethylpropion	
1034	Lorcaserin	Mazindol	
1035	Lorcaserin	Phendimetrazine	
1036	Lorcaserin	Phentermine	
1037	Haloperidol	Levodopa + Carbidopa	
1038	Haloperidol	Levodopa + Carbidopa +	
	_	Entacapone	
1039	Haloperidol	Levodopa + Benserazide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040	Haloperidol	Amiodarone	
1041	Haloperidol	Dronedarone	
1042	Haloperidol	Sotalol	
1043	Haloperidol	Citalopram	
1044	Haloperidol	Escitalopram	
1045	Haloperidol	Azithromycin	
1046	Haloperidol	Clarithromycin	
1047	Haloperidol	Erythromycin	
1048	Haloperidol	Levofloxacin	
1049	Haloperidol	Moxifloxacin	
1050	Haloperidol	Chlorpromazine	
1051	Haloperidol	Levomepromazine	
1052	Haloperidol	Perphenazine	
1053	Haloperidol	Pimozide	
1054	Haloperidol	Ziprasidone	
1055	Haloperidol	Pentamidine	
1056	Haloperidol	Dolasetron	
1057	Haloperidol	Toremifene	
1058	Haloperidol	Vandetanib	
1059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Carbamazepine	
1060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Phenobarbital	
1061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Phenytoin	
1062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Fosphenytoin	
1063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Rifabutin	
1064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Rifampicin (Rifampin)	
1065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St. John's wort	
1066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Alfuzosin	
1067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Amiodarone	
1068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Blonanserin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069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Dihydroergotamine	
1070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Ergometrine	
1071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Ergotamine + Caffeine	
1072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Lovastatin	
1073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Simvastatin	
1074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Triazolam	
1075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Sildenafil	
1076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Tadalafil	
1077	Radium 223 dichloride	Abiraterone	
1078	Itraconazole	Dronedarone	
1079	Itraconazole	Mizolastine	
1080	Itraconazole	Irinotecan	
1081	Itraconazole	Felodipine	
1082	Itraconazole	Lercanidipine	
1083	Itraconazole	Dapoxetine	
1084	Fluconazole	Eryrhromycin	
1085	Voriconazole	Rifabutin	
1086	Voriconazole	Phenobarbital	
1087	Voriconazole	Sirolimus	
1088	Voriconazole	St. John's wort	
1089	Posaconazole	Atorvastatin	
1090	Atorvastatin	Cyclosporine	
1091	Simvastatin	Cyclosporine	
1092	Rosuvastatin	Cyclosporine	
1093	Lovastatin	Cyclosporine	
1094	Pitavastatin	Cyclosporine	
1095	Iobitridol	Metformin 함유제제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1096	Iodixanol	Metformin 함유제제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1097	Iohexol	Metformin 함유제제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1098	Iomeprol	Metformin 함유제제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1099	Iopamidol	Metformin 함유제제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100	Iopromide	Metformin 함유제제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1101	Ioversol	Metformin 함유제제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1102	Iodised oil	Metformin 함유제제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1103	Haloperidol	Gemifloxacin	
1104	Pseudoephedrine	Rasagiline	
1105	Dexbrompheniramine + Pseudoephedrine	Rasagiline	
1106	Gimeracil + Oteracil + Tegafur	Fluorouracil (5-Fluorouracil, 5-FU)	
1107	Gimeracil + Oteracil + Tegafur	Capecitabine	
1108	Gimeracil + Oteracil + Tegafur	Doxifluridine	
1109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Methotrexate	
1110	Glecaprevir + Pibrentasvir	Atazanavir	
1111	Glecaprevir + Pibrentasvir	Atorvastatin	
1112	Glecaprevir + Pibrentasvir	Simvastatin	
1113	Glecaprevir + Pibrentasvir	Carbamazepine	
1114	Glecaprevir + Pibrentasvir	Phenytoin	
1115	Glecaprevir + Pibrentasvir	Rifampicin(Rifampin)	
1116	Glecaprevir + Pibrentasvir	St. John's wort	
1117	Letermovir	Pimozide	
1118	Letermovir	Ergotamine + Caffeine	
1119	Letermovir	Methylergometrine	
1120	Netupitant + Palonosetron	Rifampicin(Rifampin)	
1121	Tegoprazan	Atazanavir	
1122	Tegoprazan	Rilpivirine	
1123	Tegoprazan	Rilpivirine + Dolutegravir	
1124	Hydroxychloroquine	Amiodarone	
1125	Nirmatrelvir + Ritonavir	Amiodarone 함유제제	
1126	Nirmatrelvir + Ritonavir	Ergotamine 함유제제	
1127	Nirmatrelvir + Ritonavir	Pimozide 함유제제	
1128	Nirmatrelvir + Ritonavir	Sildenafil 함유제제	
1129	Nirmatrelvir + Ritonavir	Simvastatin 함유제제	12시간 이내 병용금기
1130	Nirmatrelvir + Ritonavir	St. john's wort 함유제제	
1131	Nirmatrelvir + Ritonavir	Flecainide 함유제제	
1132	Nirmatrelvir + Ritonavir	Lovastatin 함유제제	12시간 이내 병 8금 기
1133	Nirmatrelvir + Ritonavir	Alfuzocin 함유제제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134	〈삭제〉		
1135	〈삭제〉		
1136	Nirmatrelvir + Ritonavir	Ranolazine 함유제제	
1137	Nirmatrelvir + Ritonavir	Dronedarone 함유제제	
1138	Nirmatrelvir + Ritonavir	Colchicine 함유제제	
1139	〈삭제〉		
1140	Nirmatrelvir + Ritonavir	Triazolam 함유제제	
1141	Nirmatrelvir + Ritonavir	Carbamazepine 함유제제	
1142	Nirmatrelvir + Ritonavir	Phenobarbital 함유제제	
1143	Nirmatrelvir + Ritonavir	Phenytoin 함유제제	
1144	Nirmatrelvir + Ritonavir	Rifampicin(rifampin) 함유제제	
1145	Nirmatrelvir + Ritonavir	Apalutamide 함유제제	
1146	Nirmatrelvir + Ritonavir	Propafenone 함유제제	
1147	Nirmatrelvir + Ritonavir	Methylergometrine (methylergonovine) 함유제제	
1148	Divalproex	Mefloquine	
1149	Foscarnet	Pentamidine	
1150	Zinc histidine	D-Penicillamine	
1151	Defibrotide	Alteplase	
1152	Defibrotide	Tenecteplase	
1153	Omidenepag isopropyl	Tafluprost	
1154	Omidenepag isopropyl	Tafluprost + Timolol	
1155	Bic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alafenamide	Adefovir dipivoxil	
1156	Bic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alafenamide	Lamivudine	
1157	Bic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alafenamide	Lamivudine + Abacavir	
1158	Bic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alafenamide	Lamivudine + Dolutegravir	
1159	Bic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alafenamide	Lamivudine + Zidovudine	
1160	Bic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alafenamide	Lamivudine + Abacavir + Dolutegravir	
1161	Ranolazine	Itraconazole	
1162	Doravirine + Lamivudine + Tenofovir disoproxil	Adefovir dipivoxil	
1163	Triazolam	Ritonavir	
1164	Triazolam	Ritonavir + Lopinavir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165	Irinotecan	St. john's wort	
1166	Selegiline	Linezolid	
1167	Nirmatrelvir + Ritonavir	Silodosin 함유제제	
1168	Nirmatrelvir + Ritonavir	Eplerenone 함유제제	
1169	Nirmatrelvir + Ritonavir	Ivabradine 함유제제	
1170	Nirmatrelvir + Ritonavir	Tolvaptan 함유제제	
1171	Nirmatrelvir + Ritonavir	Finerenone 함유제제	
1172	Nirmatrelvir + Ritonavir	Primidone 함유제제	
1173	Valbenazine	Deutetrabenazine	
1174	Dexlansoprazole	Atazanavir + Cobicistat	
1175	Esomeprazole	Atazanavir + Cobicistat	
1176	Esomeprazole + Naproxen	Atazanavir	
1177	Esomeprazole + Naproxen	Atazanavir + Cobicistat	
1178	Esomeprazole + Calcium carbonate	Atazanavir	
1179	Esomeprazole + Calcium carbonate	Atazanavir + Cobicistat	
1180	Esomeprazole + Calcium carbonate	Rilpivirine(경구제)	
1181	Esomeprazole + Sodium bicarbonate	Atazanavir	
1182	Esomeprazole + Sodium bicarbonate	Atazanavir + Cobicistat	
1183	Esomeprazole + Sodium bicarbonate	Rilpivirine(경구제)	
1184	Esomeprazole + Magnesium hydroxide	Atazanavir	
1185	Esomeprazole + Magnesium hydroxide	Atazanavir + Cobicistat	
1186	Esomeprazole + Magnesium hydroxide	Rilpivirine(경구제)	
1187	Ilaprazole	Atazanavir + Cobicistat	
1188	Lansoprazole	Atazanavir + Cobicistat	
1189	Lansoprazole + Calcium carbonate	Atazanavir	
1190	Lansoprazole + Calcium carbonate	Atazanavir + Cobicistat	
1191	Lansoprazole + Calcium carbonate	Rilpivirine(경구제)	
1192	Omeprazole	Atazanavir + Cobicistat	
1193	Omeprazole + Sodium bicarbonate	Atazanavir	
1194	Omeprazole + Sodium bicarbonate	Atazanavir + Cobicistat	
1195	Pantoprazole	Atazanavir + Cobicistat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196	Rabeprazole	Atazanavir + Cobicistat	
1197	Rabeprazole + Sodium bicarbonate	Atazanavir	
1198	Rabeprazole + Sodium bicarbonate	Atazanavir + Cobicistat	
1199	Rabeprazole + Sodium bicarbonate	Rilpivirine(경구제)	
1200	S-pantoprazole sodium	Atazanavir	
1201	S-pantoprazole sodium	Atazanavir + Cobicistat	
1202	Atorvastatin + Amlodipine	Cyclosporine	
1203	Atorvastatin + Amlodipine	Itraconazole	
1204	Atorvastatin + Amlodipine	Ketoconazole	
1205	Atorvastatin + Amlodipine	Posaconazole	
1206	Atorvastatin + Amlodipine	Glecaprevir + Pibrentasvir	
1207	Atorvastatin + Ezetimibe	Cyclosporine	
1208	Atorvastatin + Ezetimibe	Itraconazole	
1209	Atorvastatin + Ezetimibe	Ketoconazole	
1210	Atorvastatin + Ezetimibe	Posaconazole	
1211	Atorvastatin + Ezetimibe	Glecaprevir + Pibrentasvir	
1212	Atorvastatin + Irbesartan	Cyclosporine	
1213	Atorvastatin + Irbesartan	Itraconazole	
1214	Atorvastatin + Irbesartan	Ketoconazole	
1215	Atorvastatin + Irbesartan	Posaconazole	
1216	Atorvastatin + Irbesartan	Glecaprevir + Pibrentasvir	
1217	Atorvastatin + Fimasartan	Fusidic acid	
1218	Atorvastatin + Fimasartan	Cyclosporine	
1219	Atorvastatin + Fimasartan	Itraconazole	
1220	Atorvastatin + Fimasartan	Ketoconazole	
1221	Atorvastatin + Fimasartan	Posaconazole	
1222	Atorvastatin + Fimasartan	Glecaprevir + Pibrentasvir	
1223	Atorvastatin + Metformin	Fusidic acid	
1224	Atorvastatin + Metformin	Cyclosporine	
1225	Atorvastatin + Metformin	Itraconazole	
1226	Atorvastatin + Metformin	Ketoconazole	
1227	Atorvastatin + Metformin	Posaconazole	
1228	Atorvastatin + Metformin	Glecaprevir + Pibrentasvir	
1229	Atorvastatin + Omega-3-Acid Ethyl Esters 90	Fusidic acid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230	Atorvastatin + Omega-3-Acid Ethyl Esters 90	Cyclosporine	
1231	Atorvastatin + Omega-3-Acid Ethyl Esters 90	Itraconazole	
1232	Atorvastatin + Omega-3-Acid Ethyl Esters 90	Ketoconazole	
1233	Atorvastatin + Omega-3-Acid Ethyl Esters 90	Posaconazole	
1234	Atorvastatin + Omega-3-Acid Ethyl Esters 90	Glecaprevir + Pibrentasvir	
1235	Atorvastatin + Amlodipine + Candesartan	Fusidic acid	
1236	Atorvastatin + Amlodipine + Candesartan	Cyclosporine	
1237	Atorvastatin + Amlodipine + Candesartan	Itraconazole	
1238	Atorvastatin + Amlodipine + Candesartan	Ketoconazole	
1239	Atorvastatin + Amlodipine + Candesartan	Posaconazole	
1240	Atorvastatin + Amlodipine + Candesartan	Glecaprevir + Pibrentasvir	
1241	Ator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Fusidic acid	
1242	Ator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Cyclosporine	
1243	Ator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Itraconazole	
1244	Ator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Ketoconazole	
1245	Ator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Posaconazole	
1246	Ator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Glecaprevir + Pibrentasvir	
1247	Fluvastatin	Fusidic acid	
1248	Lovastatin	Fusidic acid	
1249	Lovastatin	Cobicistat + Atazanavir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250	Lovastatin	Cobicistat + Darunavir	
1251	Pitavastatin	Fusidic acid	
1252	Pitavastatin + Ezetimibe	Cycolosporine	
1253	Pitavastatin + Ezetimibe	Fusidic acid	
1254	Pitavastatin + Fenofibrare	Cycolosporine	
1255	Pitavastatin + Fenofibrare	Fusidic acid	
1256	Pitavastatin + Valsartan	Cycolosporine	
1257	Pitavastatin + Valsartan	Fusidic acid	
1258	Pravastatin	Fusidic acid	
1259	Pravastatin + Fenofibrate	Fusidic acid	
1260	Rosuvastatin	Fusidic acid	
1261	Rosuvastatin + Amlodipine	Cyclosporine	
1262	Rosuvastatin + Amlodipine	Fusidic acid	
1263	Rosuvastatin + Amlodipine	Ledipasvir + Sofosbuvir	
1264	Rosuvastatin + Candesartan	Cyclosporine	
1265	Rosuvastatin + Candesartan	Fusidic acid	
1266	Rosuvastatin + Candesartan	Ledipasvir + Sofosbuvir	
1267	Rosuvastatin + Ezetimibe	Cyclosporine	
1268	Rosuvastatin + Ezetimibe	Fusidic acid	
1269	Rosuvastatin + Ezetimibe	Ledipasvir + Sofosbuvir	
1270	Rosuvastatin + Fimasartan	Cyclosporine	
1271	Rosuvastatin + Fimasartan	Fusidic acid	
1272	Rosuvastatin + Fimasartan	Ledipasvir + Sofosbuvir	
1273	Rosuvastatin + Gemigliptin	Cyclosporine	
1274	Rosuvastatin + Gemigliptin	Fusidic acid	
1275	Rosuvastatin + Gemigliptin	Ledipasvir + Sofosbuvir	
1276	Rosuvastatin + Metformin	Cyclosporine	
1277	Rosuvastatin + Metformin	Fusidic acid	
1278	Rosuvastatin + Metformin	Ledipasvir + Sofosbuvir	
1279	Rosuvastatin + Nebivolol	Cyclosporine	
1280	Rosuvastatin + Nebivolol	Fusidic acid	
1281	Rosuvastatin + Nebivolol	Ledipasvir + Sofosbuvir	
1282	Rosuvastatin + Olmesartan	Cyclosporine	
1283	Rosuvastatin + Olmesartan	Fusidic acid	
1284	Rosuvastatin + Olmesartan	Ledipasvir + Sofosbuvir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285	Rosuvastatin + Omega-3-Acid Ethyl Esters 90	Cyclosporine	
1286	Rosuvastatin + Omega-3-Acid Ethyl Esters 90	Fusidic acid	
1287	Rosuvastatin + Omega-3-Acid Ethyl Esters 90	Ledipasvir + Sofosbuvir	
1288	Rosuvastatin + Telmisartan	Cyclosporine	
1289	Rosuvastatin + Telmisartan	Fusidic acid	
1290	Rosuvastatin + Telmisartan	Ledipasvir + Sofosbuvir	
1291	Rosuvastatin + Valsartan	Cyclosporine	
1292	Rosuvastatin + Valsartan	Fusidic acid	
1293	Rosuvastatin + Valsartan	Ledipasvir + Sofosbuvir	
1294	Rosuvastatin + Amlodipine + Fimasartan	Cyclosporine	
1295	Rosuvastatin + Amlodipine + Fimasartan	Fusidic acid	
1296	Rosuvastatin + Amlodipine + Fimasartan	Ledipasvir + Sofosbuvir	
1297	Rosuvastatin + Amlodipine + Olmesartan	Cyclosporine	
1298	Rosuvastatin + Amlodipine + Olmesartan	Fusidic acid	
1299	Rosuvastatin + Amlodipine + Olmesartan	Ledipasvir + Sofosbuvir	
1300	Rosuvastatin + Amlodipine + Telmisartan	Cyclosporine	
1301	Rosuvastatin + Amlodipine + Telmisartan	Fusidic acid	
1302	Rosuvastatin + Amlodipine + Telmisartan	Ledipasvir + Sofosbuvir	
1303	Rosu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Cyclosporine	
1304	Rosu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Fusidic acid	
1305	Rosu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Ledipasvir + Sofosbuvir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306	Rosuvastatin + Amlodipine Losartan	+	Cyclosporine	
1307	Rosuvastatin + Amlodipine Losartan	+	Fusidic acid	
1308	Rosuvastatin + Amlodipine Losartan	+	Ledipasvir + Sofosbuvir	
1309	Rosuvastatin + Ezetimibe Telmisartan	+	Cyclosporine	
1310	Rosuvastatin + Ezetimibe Telmisartan	+	Fusidic acid	
1311	Rosuvastatin + Ezetimibe Telmisartan	+	Ledipasvir + Sofosbuvir	
1312	Rosuvastatin + Amlodipine Ezetimibe + Losartan	+	Cyclosporine	
1313	Rosuvastatin + Amlodipine Ezetimibe + Losartan	+	Fusidic acid	
1314	Rosuvastatin + Amlodipine Ezetimibe + Losartan	+	Ledipasvir + Sofosbuvir	
1315	Rosuvastatin + Amlodipine Ezetimibe + Telmisartan	+	Cyclosporine	
1316	Rosuvastatin + Amlodipine Ezetimibe + Telmisartan	+	Fusidic acid	
1317	Rosuvastatin + Amlodipine Ezetimibe + Telmisartan	+	Ledipasvir + Sofosbuvir	
1318	Simvastatin		Cobicistat + Atazanavir	
1319	Simvastatin		Cobicistat + Darunavir	
1320	Simvastatin + Amlodipine		Cyclosporine	
1321	Simvastatin + Amlodipine		Fusidic acid	
1322	Simvastatin + Amlodipine		Itraconazole	
1323	Simvastatin + Amlodipine		Ketoconazole	
1324	Simvastatin + Amlodipine		Posaconazole	
1325	Simvastatin + Amlodipine		Clarithromycin	
1326	Simvastatin + Amlodipine		Atazanavir	
1327	Simvastatin + Amlodipine		Darunavir	
1328	Simvastatin + Amlodipine		Ritonavir	
1329	Simvastatin + Amlodipine		Glecaprevir + Pibrentasvir	
1330	Simvastatin + Amlodipine		Lopinavir + Ritonavir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331	Simvastatin + Amlodipine	Cobicistat + Atazanavir	
1332	Simvastatin + Amlodipine	Cobicistat + Darunavir	
1333	Simvastatin + Amlodipine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1334	Simvastatin + Amlodipine	Nirmatrelvir + Ritonavir	
1335	Simvastatin + Ezetimibe	Cyclosporine	
1336	Simvastatin + Ezetimibe	Cobicistat + Atazanavir	
1337	Simvastatin + Ezetimibe	Cobicistat + Darunavir	
1338	Simvastatin + Ezetimibe	Glecaprevir + Pibrentasvir	
1339	Simvastatin + Ezetimibe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1340	Simvastatin + Ezetimibe	Nirmatrelvir + Ritonavir	
1341	Chloroquine	Amiodarone	
1342	Vincristine	Itraconazole	
1343	Pirfenidone	Rifampicin	
1344	Finerenone	Clarithromycin	
1345	Finerenone	Itraconazole	
1346	Finerenone	Ritonavir	
1347	Finerenone	Cobicistat 함유제제	
1348	Finerenone	Phenobarbital	
1349	Finerenone	Carbamazepine	
1350	Finerenone	Phenytoin	
1351	Finerenone	St. John's wort	
1352	Finerenone	Rifampicin	
1353	Fosnetupitant + Palonosetron	Rifampicin	
1354	Fedratinib	Phenytoin	
1355	Fedratinib	Rifampicin	
1356	Lorlatinib	Carbamazepine	
1357	Lorlatinib	Phenytoin	
1358	Lorlatinib	St. John's wort	
1359	Lorlatinib	Enzalutamide	
1360	Lorlatinib	Mitotane	
1361	Lorlatinib	Rifampicin	
1362	Lorlatinib	Pimozide	
1363	Lorlatinib	Cyclosporine	
1364	Lorlatinib	Sirolimus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365	Lorlatinib	Tacrolimus	
1366	Lorlatinib	Alfentanil	
1367	Lorlatinib	Fentanyl	
1368	Cabotegravir	Phenobarbital	
1369	Cabotegravir	Carbamazepine	
1370	Cabotegravir	Oxcarbazepine	
1371	Cabotegravir	Phenytoin	
1372	Cabotegravir	Rifampicin	
1373	Sofosbuvir 함유제제	Rifampicin	
1374	Sofosbuvir 함유제제	Amiodarone	
1375	Voriconazole	Ivabradine	
1376	Voriconazole	Tolvaptan	
1377	Voriconazole	Venetoclax	만성 램프거성 백혈병 환시에서 치료 시작 시와 용량 증량 기간 동안 병용금기
1378	Voriconazole	Ritonavir	
1379	Itraconazole	Apixaban	
1380	Itraconazole	Edoxaban	
1381	Itraconazole	Eliglustat	
1382	Itraconazole	Venetoclax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치료 시작 시와 용량 증량 기간 동안 병용금기
1383	Cyproheptadine 함유제제	Rasagiline	
1384	Cyproheptadine 함유제제	Selegiline	

□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제5조 관련)

연번	유효성분	연령기준	해당 제형
1	acarbose	18세 이하	정제
2	acetaminophen	12세 미만	서방형제제(encapsulated포함)
3	albendazole	2세 미만	정제, 액제
4	alclometasone	1세 이하	외용제제
5	aloxiprin	14세 이하	정제
6	amisulpride	15세 미만	정제, 시럽제
7	atazanavir	3개월 미만	캡슐제
8	atomoxetine	6세 미만	캡슐제, 시럽제
0	.,	12세 미만	점안제(1%)
9	atropine	4세 미만	점안제(0.125%)
10	azelastine	6세 이하	정제
11	benzonatate	10세 이하	캡슐제
12	benztropine	3세 미만	정제, 주사제
13	bicalutamide	18세 미만	정제
14	brimonidine	2세 미만	점안제
14	brimomaine	18세 미만	겔제
15	brimonidine + timolol	2세 미만	점안제
16	butorphanol	18세 이하	주사제
17	〈삭제〉		
18	cefetamet	3세 미만	정제, 산제
19	octinizino	2세 미만	액제
19	cetirizine	6세 미만	정제, 캡슐제
20	chlorpromazine	1세 미만	정제
21	chlorprothixene	6세 미만	정제
22	ciprofloxacin	18세 미만	정제, 주사제
23	clemastine	1세 이하	정제, 주사제
24	clobetasol	24개월 미만	외용제제
25	cyclopentolate	1세 미만	점안제(0.5% 이상)
26	cyproheptadine	2세 이하	정제
27	dactinomycin	1세 미만	주사제
28	dexketoprofen	12세 이하	정제, 주사제
29	diazepam	6개월 이하	정제
		4주 미만	벤질알코올 함유한 주사제
30	diclofenac	4주 미만	벤질알코올 함유한 주사제
31	dicyclomine	6개월 이하	정제, 캡슐제
32	diethylpropion	16세 이하	정제

연번	유효성분	연령기준	해당 제형
33	dihydrocodeine	12세 이하	정제
34	dolasetron	18세 이하	주사제
35	doxazosin	12세 이하	정제(서방제제 제외)
36	doxycycline	12세 미만 (다만. 다른 약을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8세이상 신중 투예	정제, 캡슐제
37	doxylamine	15세 이하	정제, 산제
38	dutasteride	18세 미만	정제, 캡슐제
39	enoxacin	18세 이하	정제
40	etidronate	12세 미만	정제
41	etomidate	2세 미만	주사제
		2세 미만	주사제
42	fentanyl	18세 미만	구강정, 박칼정, 설하정, 점비액제, 경피 흡수 제
43	ferucarbotran	18세 미만	주사제
44	ferumoxide	18세 미만	주사제
45	flurazepam	15세 이하	정제
46	fluticasone	3개월 미만	크림제
47	fusidic acid	4주 미만	주사제
48	gemifloxacin	18세 이하	정제, 주사제
49	hydroxocobalamin	4주 미만	벤질알코올 함유한 주사제
50	ibandronic acid	18세 이하	정제, 주사제
51	isopropyl antipyrine 함유제제	15세 미만	정제
52	ketoprofen	4주 미만	벤질알코올 함유한 주사제
53	ketoprofen 함유 외용제	15세 미만	외용제제 *분류번호:264(진통,진양,수렴, 소염제)
54	ketoprofen	6세 미만	외용제제 *분류번호:231(치과구강용약)
	1	16세 이하	정제
55	ketorolac	2세 미만	주사제
56	levodopa + benserazide	25세 미만	정제, 캡슐제
57	levofloxacin	18세 이하	정제, 주사제
58	lidocaine + prilocaine	3개월 이하	외용제제
59	lindane	3세 미만	외용제제
60	lomefloxacin	18세 이하	정제, 캡슐제
61	loperamide	2세 미만	정제, 캡슐제, 시럽제

ਯੂਸ਼ੀ	O 중 거 H	어러기ス	케디 케팅
연번	유효성분	연령기준	해당 제형
62	loratadine	2세 미만	시럽제
		6세 미만	정제, 캡슐제, 구강붕해필름
63	lorazepam	4주 미만	벤질알코올 함유한 주사제
64	lornoxicam	18세 이하	정제
		18세 이하, 65세 초과	주사제
65	lovastatin	20세 미만	정제
66	mazindol	16세 이하	정제
67	meloxicam	15세 이하	정제, 캡슐제
		4주 미만	좌제
68	mesalazine	2세 미만	정제(장용정제, 서방형장용정제 포함), 과립제
		6세 미만	서방형정제, 서방형 과립제
		12세 미만	외용액제, 포말제
69	metacycline	12세미만 (다만, 다른 약을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8세이상 신중 투예	캡슐제
70	methylphenidate	5세 이하	정제, 캡슐제
71	metoclopramide	1세 미만	정제, 주사제
72	metoclopramide + pancreatin	1세 미만	정제
73	metoclopramide + dizet100 + simethicone	1세 미만	정제
74	milnacipran	18세 미만	캡슐제
75	minocycline	12세미만 (다만, 다른 약을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8세이상 신중 투예)	캡슐제
76	mirodenafil	18세 이하	정제, 구강붕해필름
77	molindone	12세 이하	정제
		2세 이하	크림제, 연고제, 로션제
78	mometasone	24개월 미만	분무제(점비제)
		12세 미만	흡입제
79	moxonidine	18세 미만	정제
80	nalidixic acid	3개월 미만	정제
81	norfloxacin	18세 이하	정제, 캡슐제
82	nortriptyline	18세 이하	정제
83	ofloxacin	18세 이하	정제, 주사제
84	olanzapine	13세 미만	정제, 주사제
85	oxycodone	18세 미만	정제, 주사제

연번	유효성분	연령기준	해당 제형
86	oxytetracycline	12세미만 (다만, 다른 약을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8세이상 신중 투예	정제, 캡슐제
87	pefloxacin	15세 이하	정제, 주사제
88	perphenazine	14세 이하	정제, 주사제
89	phendimetrazine	16세 이하	정제
90	phentermine	16세 이하	정제, 캡슐제
91	phenylephrine	4주 미만	점안제
92	pimecrolimus	2세 미만	외용제제
93	pipemidic acid	18세 이하	캡슐제
94	piracetam	16세 미만	정제, 캡슐제, 주사제
95	piroxicam	4주 미만	벤질알코올 함유한 주사제
96	polystyrenesulfonatecalcium	1개월 미만	시럽제, 과립제, 겔제, 액제, 산제, 경구용 젤리제
97	pyrazinobutazone	14세 이하	캡슐제
98	repaglinide	18세 미만	정제
99	ritodrine	65세 이상, 12세 미만	캡슐제, 주사제
100	sildenafil	18세 이하(다만, 발기부전 치료에 한함)	정제, 세립제, 츄정, 구강붕해정,
101	silversulfadiazine	2개월 미만	구강붕해필름, 구강용해필름 외용제제
101	sodiumferricgluconatecomplex	12개월 미만	최용세세 캡슐제, 액제
103	sodium tetradecyl sulfate	3세 미만	주사제
103	sulfadiazine + trimethoprim	2개월 미만	정제
105	sulfadoxine + pyrimethamine	2개월 미만	정제
106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개월 미만	정제, 시럽제, 주사제
107	sulfasalazine	2세 이하	정제
108	sulfisoxazole	2개월 미만	정제
109	sulfisoxazole+erythromycin	2개월 미만	시럽제
110	tacrolimus	2세 미만	외용제제
111	tadalafil	18세 미만	정제, 구강용해필름, 산제
112	talniflumate	12세 이하	정제, 캡슐제
113	taurolidine	6세 미만	주사제
114	telbivudine	16세 미만	정제
115	terazosin	12세 이하	정제
116	terbinafine	2세 미만	정제
117	teriparatide	18세 미만	주사제
	(recombinant를 포함)	10 11 11	1 1 11

연번	유효성분	연령기준	해당 제형
118	tetracycline	12세미만 (다만, 다른 약을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8세이상 신중 투예	캡슐제
119	thiothixene	12세 이하	캡슐제
120	tianeptine	15세 미만	정제
121	tigecycline	8세 이하	주사제
122	timonacic	12세 미만	정제, 캡슐제
123	topiramate	2세 미만	정제, 캡슐제
124	tiaprofenate	2세 이하	주사제
125	udenafil	18세 이하	정제
126	vardenafil	18세 미만	정제
127	venlafaxine	18세 미만	정제, 캡슐제
128	zolpidem	18세 미만	정제
129	6β-Iodomethyl-19-norcholest- 5(10)-en-3β-ol(1311)	18세 미만	주사제
130	balofloxacin	18세 미만	정제
131	moxifloxacin	18세 미만	정제, 주사제
132	tosufloxacin	18세 미만	정제
133	codeine	12세 이하	정제
134	codeine + acetaminophen	12세 이하	정제
135	codeine + acetaminophen +ibuprofen	12세 이하	캡슐제
136	thiocolchicoside	16세 미만	캡슐제, 주사제
137	thiocolchicoside + aescin	16세 미만	정제
138	avanafil	18세 이하	정제
139	darunavir	3세 미만	정제
140	dibasic sodium phosphate+ monobasic sodium phosphate	3세 미만	액제(관장제)
141	dibasicsodiumphosphate monob asicsodiumphosphate	5세 이하	액제(경구제)
142	efavirenz	3개월 미만	정제
143	pazopanib	2세 미만	정제
144	pazufloxacin	18세 이하	주사제
145	Attenuated yellow fever live virus	6개월 미만	주사제
1/6	1 1	12세 미만	점비제(0.1%)
146	xylometazoline	2세 미만	점비제(0.05%)
147	desvenlafaxine	18세 미만	서방형정제
148	tapentadol	18세 미만	속효성정제, 서방형정제

연번	유효성분	연령기준	해당 제형
149	duloxetine	18세미만 (다만, '주요 우울장애의 치료'에 한함)	캡슐제, 정제
150	mirtazapine	18세 미만	정제, 구강붕해정
151	levocetirizine	6세미만 1세미만	정제 액제
152	mequitazine	24개월 미만	정제, 시럽제
153	vortioxetine	18세 미만	정제
154	diclofenac + misoprostol	18세 미만	정제
155	nifuroxazide	1개월 미만	캡슐제, 현탁액제
156	verapamil	24개월 미만	정제, 서방형정제, 주사제
157	L-carbocysteine	24개월 미만	캡슐제, 시럽제
158	olodaterol + tiotropium	18세 미만	흡입제
159	cholecalciferol	3개월 미만	정제
160	zabofloxacin	18세 미만	정제
161	chlorhexidine + lidocaine	24개월 미만	겔제
162	strontium chloride	12세 미만	주사제
163	dihydrocodeine + chlorpheniramine + methylephedrine + guaifenesin	12세 미만	시럽제, 정제
164	dihydrocodeine + chlorpheniramine + methylephedrine + ammonium chloride	12세 미만	시럽제
165	dihydrocodeine + chlorpheniramine + methylephedrine + caffeine	12세 미만	정제
166	cobicistat + atazanavir	3개월 미만	정제
167	cobicistat + darunavir	36개월 미만	정제
168	live attenuated influenza virus type A (H1N1) + live attenuated influenza virus type A (H3N2) + live attenuated influenza virus type B	24개월 미만, 50세 이상	점비제
169	polymyxin B + dexamethasone + neomycin	28일 미만	점안제, 안연고제
170	naltrexone + bupropion	18세 이하, 75세 이상	서방형정제
171	piroxicam	80세 이상	정제, 캡슐제, 주사제
172	propofol	36개월 미만(전신마취)	주사제
173	Tramadol	12세 미만	캡슐제, 서방캡슐제, 서방정제, 발포정제, 주사제
174	Tramadol + Acetaminophen	12세 미만	정제, 서방정제

연번	유효성분	연령기준	해당 제형
175	Acamprosate	65세 이상	정제
176	Cinnoxicam	80세 이상	정제
177	Cyclobenzaprine	65세 이상	정제, 서방캡슐제
178	Dioctahedral smectite	24개월 미만	현탁액제
179	Kaolin + Berberine tannate + Pectin	19세 미만	시럽제
180	Hydrotalcite	15세 미만	과립제, 산제
181	Hydrotalcite + Azulene + L-glutamine	15세 미만	저작정제
182	Pulvis Cinnamomi Corticis(Cinnamon Bark Powder) + Pulvis Gentianae Luteae Radicis et Rhizomatis(Gentian Powder) + Hydrotalcite + Sodium bicarbonate	15세 미만	정제
183	Aluminium hydroxide + Benfotiamine + Pulvis Syzygii Flos(Clove Powder) + Licorice Extract Powder + Pulvis Curcumae Radicis(Curcuma Root Powder) + Fennel + Pulvis Ginseng Radicis + Hydrotalcite + Magnesium hydroxide + Methylmethionine sulfonium chloride + Zingiberis Rhizoma Recens	15세 미만	과립제
184	Calcium carbonate + Cinnamon Oil + Diastase-protease-cellulase + Fennel Oil + Hydrotalcite + Lipase II + Prozyme + Sodium bicarbonate + Ursodeoxycholic acid	15세 미만	정제
185	Calcium carbonate + Pulvis Cinnamomi Corticis(Cinnamon Bark Powder) + Pulvis Syzygii Flos(Clove Powder) + Pulvis Glycyrrhizae Radicis et Rhizomatis(Licorice Powder) + Fennel + Pulvis Zingiberis Rhizomatis(Ginger Powder) + Pulvis Ginseng Radicis(Ginseng Powder) + Hydrotalcite + L-menthol + Magnesium aluminosilicate + Pulvis	15세 미만	정제

연번	유효성분	연령기준	해당 제형
	Phellodendri Corticis(Phellodendron Bark Powder)+ Scopolia Extract		
186	Milk-thistle Fruit Dry Extract (Milk Thistle Dry Extract)	12세 이하	정제, 캡슐제, 액제
187	Calcium pantothenate + Cyanocobalamin + Milk-thistle Fruit Dry Extract(Milk Thistle Dry Extract) + Nicotinamide + Pyridoxine hydrochloride + Thiamine nitrate	12세 이하	캡슐제
188	Tipiracil + Trifluridine	18세 이하	정제
189	Mebendazole	1세 미만	정제, 시럽제
190	Rifampicin + Isoniazid + Pyrazinamide + Ethambutol	8세 미만	정제
191	D-Mannitol	6세 미만	흡입제
192	Methacholine	5세 미만	흡입제
193	Molnupiravir	18세 미만	캡슐제
194	Eszopiclone	18세 미만	정제
195	Armodafinil	18세 미만	정제
196	Nitrofurantoin	3개월 미만	캡슐제
197	Permethrin	2세 미만	크림제
198	Racecadotril	3개월 미만	캡슐제, 산제
199	Hydromorphone	18세 미만	서방정
200	Morphine sulfate	18세 미만	서방정
201	Ammonium chloride + Chlorpheniramine + Dihydrocodeine + Methylephedrine + Pelargonium sidoides extract	12세 미만	시럽제
202	Triazolam	18세 이하	정제
203	Lidocaine	4세 이하3개월 이하3개월 이하	구강용겔제(5%) 연고제(침윤거즈) 겔제(5%)
204	Acrinol + Berberine + Enterococcus Faecalis + Loperamide	2세 미만	캡슐제

□ 임부금기 성분(제6조 관련) (단일제 및 복합제에 적용)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1	(Micronized)Progesterone	1등급(경구), 1등급(주사)(다만,황제호르몬부 족으로 인한 유·조산 치료시 제외)	
2	3'-Deoxy-3'-Fluorothymidine(18F)	2등급	
3	Abacavir	2등급	
4	Abatacept	2등급	
5	Abiraterone	1등급	
6	Acamprosate	2등급	
7	Acarbose	2등급	
8	Aceclofenac	2등급	
9	Acemetacin	2등급	
10	Acetazolamide	2등급	
11	Acipimox	2등급	
12	Acitretin	1등급	
13	Aflibercept	2등급	안과용 주사제 포함
14	Alacepril	2등급	
15	Albendazole	2등급	
16	Alemtuzumab	2등급	
17	Alendronate	2등급	
18	Aliskiren	2등급	
19	Allylestrenol	1등급	
20	Almotriptan	2등급	
21	Alogliptin	2등급	
22	Alprazolam	2등급	
23	Alprostadil	1등급	좌제, 크림제, 외용액제 포함
24	Altretamine	2등급	
25	Amantadine	2등급	
26	Ambrisentan	1등급	
27	Amfenac	2등급	
28	Amikacin	2등급	
29	Amiloride	2등급	
30	Aminolevulinic acid	2등급	
31	Aminophylline	2등급	
32	Amiodarone	2등급	
33	Amisulpride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34	Amitriptyline	2등급	
35	Amlodipine	2등급	
36	Amosulalol	2등급	
37	Amoxapine	2등급	
38	Amsacrine	2등급	
39	Anastrozole	1등급	
40	Anidulafungin	2등급	
41	Aripiprazole	2등급	
42	Arotinolol	2등급	
43	Arsenic trioxide	2등급	
44	Artesunate	2등급	
45	Aspirin	2등급	
46	Atenolol(S-atenolol 포함)	2등급	
47	Atomoxetine	2등급	
48	Atorvastatin	1등급	
49	Auranofin	2등급	
50	Axitinib	2등급	
51	Azacitidine	2등급	
52	Azathioprin	2등급	
53	Azelastine	2등급	
54	Azosemide	2등급	
55	Balofloxacin	2등급	
56	Barnidipine	2등급	
57	Basiliximab	2등급	
58	Bazedoxifene	1등급	
59	Beclomethasone	2등급	
60	Belimumab	2등급	
61	Belotecan	2등급	
62	Benazepril	2등급	
63	Bendamustine	2등급	
64	Benexate	2등급	
65	Benidipine	2등급	
66	Benserazide	2등급	
67	Benzbromarone	2등급	
68	Benztropine	2등급	
69	Benzydamine	2등급	
70	Bepotastine	2등급	
71	Beraprost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72	Betamethasone	2등급	·
73	Betaxolol	2등급	
74	Bethanechol	2등급	
75	Bevacizumab	2등급	
76	Bevantolol	2등급	
77	Bezafibrate	2등급	
78	Bicalutamide	1등급	
		2등급	
79	Bisoprolol	(단, 강심제로 사용시 제외)	
80	Bleomycin	2등급	연고제 포함
81	Blonanserin	2등급	
82	Bortezomib	2등급	
83	Bosentan	1등급	
84	Bromazepam	2등급	
85	Bromfenac	2등급	점안제 포함
86	Bromperidol	2등급	
87	Brompheniramine	2등급	
88	Bucillamine	2등급	
89	Bumetanide	2등급	
90	Buprenorphine	2등급	패취제 포함
91	Buserelin	1등급	이식제, 분무액제 포함
92	Busulfan	2등급	
93	Butorphanol	2등급	
94	Cabazitaxel	2등급	
95	Cadralazine	2등급	
96	Calcitriol	2등급	
97	Camostat	2등급	
98	Canagliflozin	2등급	
99	Candesartan	2등급	
100	Capecitabine	2등급	
101	Captopril	2등급	
102	Carbamazepine	2등급	
103	Carbidopa	2등급	장내겔제 포함
104	Carbimazole	2등급	
105	Carboplatin	2등급	
106	Carmofur	2등급	
107	Carmustine	2등급	이식정제 포함
108	Carteolol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109	Carvedilol	2등급	
110	Celecoxib	2등급	
111	Celiprolol	2등급	
112	Cetrorelix	1등급	
113	Cetuximab	2등급	
114	Chlorambucil	2등급	
115	Chlordiazepoxide	2등급	
116	Chlormadinone	1등급	
117	Chloroquine	2등급 (말라리아 치료시 제외)	
118	Chlorpromazine	2등급	
119	Chlorprothixene	2등급	
120	Chlorthalidone	2등급	
121	Cilazapril	2등급	
122	Cilnidipine	2등급	
123	Cilostazol	2등급	
124	Cinacalcet	2등급	
125	Cinnoxicam	2등급	
126	Ciprofibrate	2등급	
127	Ciprofloxacin	2등급	
128	Cisplatin	2등급	
129	Cladribine	2등급	
130	Clinofibrate	2등급	
131	Clobazam	2등급	
132	Clofarabine	2등급	
133	Clofibrate	2등급	
134	Clomiphene	1등급	
135	Clomipramine	2등급	
136	Clonazepam	2등급	
137	Clonidine	2등급	
138	Clonixin	2등급	
139	Clorazepate	2등급	
140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B	2등급	
141	Clotiazepam	2등급	
142	Clozapine	2등급	
143	Colchicine	2등급	
144	ConjugatedEstrogen	1등급	크림제 포함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145	Conjugated Estrogen +	1등급	
146	Medroxyprogesterone Crizotinib	2등급	
147	Cyclofenil	 1등급	
148	Cyclophosphamide	2등급	
149	Cyclosporin	2등급	
150	Cyproheptadine	 2등급	
151	Cyproterone	1등급	
152	Cytarabine	2등급	
153	Dabigatran	2등급	
154	Daorgatran	2등급	
155	Dactinomycin	2등급	
156	Danazol	1등급	
157	Dapagliflozin	2등급	
158	Dasatinib	2등급	
159	Daunorubicin	2등급	
160	Decitabine	2등급	
161	Deferiprone	2등급	
162	Deflazacort	2등급	
163	Degarelix	2등급	
164	Delapril	2등급	
165	Denopamine	2등급	
166	Dexamethasone	2등급	점비제 포함
167	Dexbrompheniramine	2등급	L
168	Dexibuprofen	2등급	
169	Dexketoprofen	2등급	
170	Dexmedetomidine	2등급	
171	Diazepam	2등급	
172	Diclofenac	2등급	
173	Dienoestrol = Dienestrol	1등급	질크림제 포함
174	Dienogest	2등급	
175	Diflunisal	2등급	
176	Dihydroergotamine	1등급	
177	Diltiazem	2등급	
178	Diphenylpyraline	2등급	
179	Etidronate	2등급	
180	Docetaxel	2등급	
181	Domperidone	1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그	비고
182	Doripenem	2등급	
183	Dothiepin	2등급	
184	Doxazosin	2등급	
185	Doxifluridine	2등급	
186	Doxorubicin	2등급	
187	Doxycycline	2등급	
188	D-Penicillamine	2등급 (윌슨병, 납·수은중독, 특정시스틴뇨증시)	
189	Dronedarone	2등급	
190	Dutasteride	1등급 1등급	
191	Dydrogesterone	1등급 (황체기능부전에 의한 불임치료, 황체호르몬부족으로 인한 유·조산 치료시 제외)	
192	Ebastine	2등급	
193	Efavirenz	2등급	
194	Efonidipine	2등급	
195	Emorfazone	2등급	
196	Empagliflozin	2등급	
197	Enalapril	2등급	
198	Enocitabine	2등급	
199	Enoxacin	2등급	
200	Entacapone	2등급	
201	Epinastine	2등급	
202	Epinephrine	2등급	
203	Epirubicin	2등급	
204	Eprosartan	2등급	
205	Ergotamine + Anhydrous caffeine	1등급	
206	Eribulin	2등급	
207	Erlotinib	2등급	
208	Esmolol	2등급	
209	Estradiol	1등급	겔제, 패취제, 질정제 포함
210	Estramustine	1등급	
211	Estriol	2등급	크림제, 질좌제 포함
212	Estropipate	1등급	크림제 포함
213	Ethinyl estradiol	1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214	Ethosuximide	2등급	, ,
215	Ethyl loflazepate	2등급	
216	Etizolam	2등급	
217	Etodolac	2등급	
218	Etofibrate	2등급	
219	Etoposide	2등급	
220	Everolimus	2등급	
221	Exemestane	1등급	
222	Exenatide	2등급	
223	Ezetimibe	2등급	
224	Febuxostat	2등급	
225	Felodipine	2등급	
226	Fenofibrate	2등급	
227	Fenoprofen	2등급	
228	Fentanyl	2등급	패취제, 구강정제, 설하정제, 점비제 포함
229	Fesoterodine	2등급	
230	Fexofenadine	2등급	
231	Fimasartan	2등급	
232	Finasteride	1등급	외용 모발용제 포함
233	Fingolimod	1등급	
234	Flecainide	2등급	
235	Fleroxacin	2등급	
236	Fluconazole	2등급	
237	Fludarabine	2등급	
238	Fludrocortisone	2등급	
239	Flufenamic acid	2등급	
240	Flunarizine	2등급	
241	Flunitrazepam	2등급	
242	Fluoropropyl-CIT	2등급	
243	Fluorouracil	1등급	크림제 포함
244	Fluoxymesterone	1등급	
245	Flurazepam	2등급	
246	Flurbiprofen	2등급	
247	Flutamide	1등급	
248	Fluticasone	2등급	점비제 포함
249	Fluvastatin	1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250	Follicle-stimulating hormone (follitropin, follitropin alfa, follitropin beta, corifollitropin alfa,urofollitropin)	1등급	
251	Fosinopril	2등급	
252	Fosphenytoin	2등급	
253	Frovatriptan	2등급	
254	Fulvestrant	2등급	
255	Furosemide	2등급	
256	Gabexate	2등급	
257	Gadobutrol	2등급	
258	Gadolinium + EOB-DTPA	2등급	
259	Ganciclovir	2등급	
260	Ganirelix	1등급	
261	Gatifloxacin	2등급	
262	Gefitinib	2등급	
263	Gemcitabine	2등급	
264	Gemfibrozil	2등급	
265	Gemifloxacin	2등급	
266	Gemigliptin	2등급	
267	Gentamicin	2등급	이식제, 점안제 포함
268	Gestrinone	2등급	
269	Glatiramer	2등급	
270	Glibenclamide	2등급	
271	Gliclazide	2등급	
272	Glimepiride	2등급	
273	Glipizide	2등급	
274	Glucametacin	2등급	
275	Golimumab	2등급	
27.6		1등급 (자궁내막증/자궁내막축소증환자)	
276	Goserelin	2등급 (폐경전 유방암 환자)	
277	Griseofulvin	2등급	
278	Haloperidol	2등급	
279	Heptaplatin = Eptaplatin	2등급	
280	Hydralazine	2등급	
281	Hydrocortisone	2등급	좌제 포함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282	Hydroxychloroquine	2등급	
283	Hydroxyprogesterone	(말라리아치료시제외) 1등급 (황체기능부전에 의한 불임치료, 황체호르몬부족으로 인한 유·조산 치료시 제외)	
284	Hydroxyurea	2등급	
285	Hydroxyzine	2등급	
286	Ibandronic acid	2등급	
287	Ibritumomab	2등급	
288	Ibuprofen	2등급	
289	Idarubicin	2등급	
290	Ifosfamide	2등급	
291	Iguratimod	2등급	
292	Ilaprazole	2등급	
293	Iloprost	2등급	흡입제 포함
294	Imatinib	2등급	
295	Imidafenacin	2등급	
296	Imidapril	2등급	
297	Imidazole salicylate	2등급	
298	Imipramine	2등급	
299	Inamrinone	2등급	
300	Indacaterol	2등급	흡입제 포함
301	Indomethacin	2등급	
302	〈삭제〉		
303	Insulin degludec	2등급	
304	Insulin degludec + Insulin aspart	2등급	
305	〈삭제〉		
306	Insulin glargine	2등급	
307	Insulin glulisine	2등급	
308	〈삭제〉		
309	Interferon beta-1a	2등급	
310	Interferon beta-1b	2등급	
311	Interleukin-2 = aldesleukin	2등급	
312	Ipragliflozin	2등급	
313	Irbesartan	2등급	
314	Irinotecan	2등급	
315	Isoflurane	2등급	흡입제 포함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316	Unoprostone	2등급	점안제 포함
317	Isosorbide Dinitrate	2등급	흡입제 포함
318	Isosorbide Mononitrate	2등급	
319	Isotretinoin	1등급(경구제)	
220	т 1	2등급(겔제, 크림제)	
320	Isradipine	2등급	
321	Itraconazole	2등급	
322	Ivabradine	2등급	
323	Ixabepilone	2등급	
324	Kanamycin	2등급	
325	Ketoconazole	2등급	
326	Ketoprofen	2등급	
327	Ketorolac	2등급	
328	Lacidipine	2등급	
329	Lacosamide	2등급	
330	Lamotrigine	2등급	
331	Lanreotide	2등급	
332	Lapatinib	2등급	
333	L-Asparaginase	2등급	
334	Leflunomide	1등급	
335	Lenalidomide	1등급	
336	Lercanidipine	2등급	
337	Letrozole	1등급	
338	Leuprorelin = Leuprolide	1등급 (자궁내막증/자궁내막축소증환자) 2등급 (폐경전 유방암 환자)	
339	Levetiracetam	2등급	
340	Levodopa	2등급	장내겔제 포함
341	Levofloxacin	2등급	0 , 0 , - 1
342	Levomepromazine	2등급	
343	Levonorgestrel	1등급	자궁내시스템 포함
344	Limaprost	1등급	
345	Linagliptin	2등급	
346	Liraglutide	2등급	
347	Lisinopril	2등급	
348	Lithium carbonate	2등급	
349	Lixisenatide	2등급	

연번	유효성분	<u> </u>	비고
350	Lobeglitazone	2등급	
351	Lomefloxacin	2등급	
352	Lonazolac	2등급	
353	Lorazepam	2등급	
354	Lornoxicam	2등급	
355	Losartan	2등급	
356	Loteprednol	2등급	점안제 포함
357	Lovastatin	1등급	
358	Loxoprofen	2등급	
359	Magnesium salicylate	2등급	
360	Manidipine	2등급	
361	Mebendazole	2등급	
362	Meclofenamic acid	2등급	
		1등급	
363	Medroxyprogesterone	(항암치료 제외)	
)0)	Medioxyprogesterone	2등급	
		(항암치료)	
364	Mefenamic acid	2등급	
365	Mefloquine	2등급	
	Trems quine	(말라리아 치료시 제외)	
		1등급	
		(현탁액:암 또는 AIDS환자의	
366	Megestrol	식욕부진, 악액질 또는 원인불명의	
		현저한 체중감소의 치료)	
		2등급 (정제:항암치료시)	
367	Meloxicam	(경제·영립지묘지) 2등급	
368	Melphalan	2등급	
369	Menotrophin	1등급	
370	Mercaptopurine	2등급	
371	Metformin	2등급	
372	Methacycline	2등급	
373	Methimazole	2등급	
373	Wethinazoic	1등급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374	Methotrexate	건선 치료)	
		2등급	
		(항암치료)	
375	Methylene blue	1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376	Methylergometrine	1등급	
377	Methylprednisolone	2등급	
378	Metoprolol	2등급	
379	Mexazolam	2등급	
380	Micronized macitentan	1등급	
381	Midazolam	2등급	
382	Miglustat	1등급	
383	Minocycline	2등급	
384	Minoxidil	2등급	
385	Mirabegron	2등급	
386	Misoprostol	1등급	
387	Mitiglinide	2등급	
388	Mitomycin C	1등급	
389	Mitotane	2등급	
390	Mitoxantrone	2등급	
391	Mizoribine	2등급	
392	Modafinil	2등급	
393	Moexipril	2등급	
394	Molindone	2등급	
395	Morniflumate	2등급	
396	Morphine	2등급	
397	Moxifloxacin	2등급	
398	Moxonidine	2등급	
399	Mycophenolate	2등급	
400	Nabumetone	2등급	
401	Nadolol	2등급	
402	Nafamostat	2등급	
403	Nalbuphine	2등급	
404	Nalidixic acid	2등급	
405	Nandrolone	1등급	
406	Naproxen	2등급	
407	Naratriptan	2등급	
408	Nateglinide	2등급	
409	Nebivolol	2등급	
410	Nefopam	2등급	
411	Nemonapride	2등급	
412	Neomycin	2등급	연고제, 크림제, 점안제, 질좌제 포함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413	Netilmicin	2등급	
414	Nicardipine	2등급	
415	Nicotine	2등급	패취제, 껌제, 트로키제, 구강용해필름 포함
416	Nicotinic acid = Niacin	2등급	
417	Nifedipine	2등급	
418	Nilotinib	2등급	
419	Nilvadipine	2등급	
420	Nimesulide	2등급	
421	Nimodipine	2등급	
422	Nimustine	2등급	
423	Nipradilol	2등급	
424	Nisoldipine	2등급	
425	Nitrendipine	2등급	
426	Nitroprusside	2등급	
427	Norepinephrine	2등급	
428	Norethisterone(EP) = Norethindrone(USP)	1등급	
429	Norethisterone + Estradiol	1등급	패취제 포함
430	Norfloxacin	2등급	
431	Nortriptyline	2등급	
432	Ofloxacin	2등급	
433	Olanzapine	2등급	
434	Olmesartan	2등급	
435	Olopatadine	2등급	
436	Olpadronate	2등급	
437	Orphenadrine	2등급	
438	Oxaliplatin	2등급	
439	Oxandrolone	1등급	
440	Oxaprozin	2등급	
441	Oxatomide	2등급	
442	Oxcarbazepine	2등급	
443	Oxiracetam	2등급	
444	Oxymetholone	1등급	
445	Oxytetracycline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446	Oxytocin	1등급 (분만유도/촉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 중절시 제외)	
447	Paclitaxel	2등급	
448	Paliperidone	2등급	
449	Pamidronate	2등급	
450	Panitumumab	2등급	
451	Paroxetine	2등급	
452	Pazopanib	2등급	
453	Pazufloxacin	2등급	
454	Pelubiprofen	2등급	
455	Pemetrexed	2등급	
456	Pemirolast	2등급	
457	Penbutolol	2등급	
458	Pentazocine	2등급	
459	Pentobarbital	2등급	
460	Pentostatin	2등급	
461	Peramivir	2등급	
462	Perfluoro-n-butane	2등급	
463	Perindopril	2등급	
464	Perphenazine	2등급	
465	Pertuzumab	2등급	
466	Pethidine	2등급	
467	Pheniramine	2등급	
468	Phenobarbital	2등급	
469	Phentolamine	2등급	
470	Phenytoin	2등급	
471	Pilsicainide	2등급	
472	Pimozide	2등급	
473	Pinazepam	2등급	
474	Pioglitazone	2등급	
475	Pipemidic acid	2등급	
476	Piroxicam	2등급	
477	Pitavastatin	1등급	
478	Plerixafor	2등급	
479	Polaprezinc	2등급	
480	Porfimer sodium	2등급	
481	Potassium iodide	2등급	단일제에 한함

연번	유효성분	등그	비고
482	Pralatrexate	2등급	
483	Pramipexole	2등급	
484	Pranlukast	2등급	
485	Pranoprofen	2등급	
486	Pravastatin	1등급	
487	Prednisolone	2등급	
488	Pregabalin	2등급	
489	Primaquine	1등급	
490	Primidone	2등급	
491	Probucol	2등급	
492	Proglumetacin	2등급	
493	Propacetamol	2등급	
494	Propafenone	2등급 2등급	
495	Propranolol	2등급	
496	Propylthiouracil	2등급	
497	Prucalopride	2등급	
498	Prulifloxacin	2등급	
499	Pyrazinobutazone	2등급	
500	Pyronaridine	2등급	
501	Quetiapine	2등급	
502	Quinapril	2등급	
503	Quinidine	2등급	
504	Quinupramine	2등급	
505	Radotinib	2등급	
506	Raloxifen	1등급	
507	Raltegravir	2등급	
508	Ramipril	2등급	
509	Ranibizumab	2등급	
510	Rasagiline	2등급	
511	Regorafenib	2등급	
512	Repaglinide	2등급	
513	Retapamulin	2등급	연고제 포함
514	Ribavirin	1등급	흡입제, 크림제 포함
515	Riluzole	2등급	
516	Risedronate	2등급	
517	Risperidone	2등급	
518	Rituximab	2등급	
519	Rivaroxaban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520	Roflumilast	2등급	
521	Ropinirole	2등급	
522	Rosuvastatin	1등급	
523	Rotigotine	2등급	패취제 포함
524	Salsalate	2등급	
525	Sarpogrelate	2등급	
526	Saxagliptin	2등급	
527	Selegiline	2등급	
528	Senna ex.	2등급	
529	Sennoside	2등급	
530	Simvastatin	1등급	
531	Sitagliptin	2등급	
532	Sodium iodide (I-131)	1등급	
533	Sodium salicylate	2등급	
534	Sorafenib	2등급	
535	Sotalol	2등급	
536	Sparfloxacin	2등급	
537	Spironolactone	2등급	
538	Stanozolol	1등급	
539	Streptococcus pyogenes	2등급	
540	Streptomycin	2등급	
541	Strontium ranelate	2등급	
542	Sulfadoxine + Pyrimethamine	2등급 (클로로퀸 저항성 말라리아 치료시 제외)	
543	Sulindac	2등급	
544	Sulpiride	2등급	
545	Sumatriptan	2등급	
546	Sunitinib	2등급	
547	Tacrolimus	2등급	연고제 포함
548	Tafluprost	2등급	점안제 포함
549	Talniflumate	2등급	
550	Tamoxifen	2등급	
551	Tegafur	2등급	
552	Tegafur + Uracil	2등급	
553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2등급	
554	Telmisartan	2등급	
555	Temocapril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그	비고
556	Temozolomide	2등급	
557	Temsirolimus	2 등급	
558	Teneligliptin	2등급	
559	Tenoxicam	2등급	
560	Terlipressin	2등급	
561	Testosterone	1등급	겔제 포함
562	Tetracycline	2등급	
563	Thalidomide	1등급	
564	Thiocolchicoside	2등급	
565	Thiocolchicoside + Aescin	2등급	
566	Thiotepa	2등급	
567	Thiothixene	2등급	
568	Thymopentin = Thymopoietin = Thymus hormone	2등급	
569	Tiaprofenic acid	2등급	
570	Tibolone	1등급	
571	Ticagrelor	2등급	
572	Tigecycline	2등급	
573	Tobramycin	2등급	
574	Tocilizumab	2등급	
575	Tolfenamic acid	2등급	
576	Tolmetin	2등급	
577	Tolvaptan	2등급	
578	Topiramate	2등급	
579	Topotecan	2등급	
580	Toremifene	2등급	
581	Torsemide	2등급	
582	Tosufloxacin	2등급	
583	Trabectedin	2등급	
584	Trafermin	2등급	
585	Tramadol	2등급	
586	Tranilast	2등급	
587	Trastuzumab	2등급	
588	Travoprost	2등급	점안제 포함
589	Treprostinil	2등급	
590	Tretinoin	1등급	크림제, 겔제, 연고제, 외용액제 포함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591	Triamcinolone	2등급	
592	Triamterene	2등급	
593	Triazolam	1등급	
594	Trifluoperazine	2등급	
595	Triptorelin	1등급	
596	Tropisetron	2등급	
597	Ubenimex	2등급	
598	Ulipristal	1등급	
599	Valganciclovir	2등급	
600	Valproic acid	2등급	
601	Valsartan	2등급	
602	Vemurafenib	2등급	
603	Verapamil	2등급	
604	Vigabatrin	2등급	
605	Vildagliptin	2등급	
606	Vinblastine	2등급	
607	Vincristine	2등급	
608	Vinorelbine	2등급	
609	Vismodegib	2등급	
610	Vitamin A(레티놀) 함유제제	1등급 (단, VitA(레티놀)로서 50001.U/1일 이상)	점안제 포함
611	Voglibose	2등급	
612	Voriconazole	2등급	
613	Vorinostat	2등급	
614	Warfarin	1등급	
615	Zaltoprofen	2등급	
616	Ziprasidone	2등급	
617	Zofenopril	2등급	
618	Zoledronic acid	2등급	
619	Zolmitriptan	2등급	
620	Zonisamide	2등급	
621	Zotepine	2등급	
622	Zuclopenthixol	2등급	
623	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	2등급	
624	Tofacitinib	2등급	
625	Etoricoxib	2등급	
626	Tapentadol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627	Afatinib	2등급	
628	Tertomotide	2등급	
629	Denosumab	1등급	
630	Florbetaben (18F)	2등급	
631	Umeclidinium + Vilanterol	2등급	흡입제 포함
632	Bupropion	2등급	
633	Loratadine	2등급	
634	Alitretinoin	1등급	
635	Clarithromycin	2등급	
636	Dirithromycin	2등급	
637	Erythromycin	2등급	
638	Erythromycin + Acetylsulfisoxazole	2등급	
639	Erythromycin+Colistin	2등급	점안제, 안연고제 포함
640	Kitasamycin	2등급	
641	Midecamycin	2등급	
642	Rokitamycin	2등급	
643	Roxithromycin	2등급	
644	Arbekacin	2등급	
645	Astromicin	2등급	
646	Isepamicin	2등급	
647	Micronomicin	2등급	
648	Ribostamycin	2등급	
649	Sisomicin	2등급	
650	Teicoplanin	2등급	
651	Vancomycin	2등급	
652	Clindamycin	2등급	외용액제, 겔제 포함
653	Clindamycin + Benzoyl peroxide	2등급	겔제 포함
654	Lincomycin	2등급	
655	Chloramphenicol	1등급(주사제) 2등급(점안제)	
656	Chloramphenicol + Dexamethasone +Tetrahydrozoline	2등급	점안제 포함
657	Thiamphenicol	2등급	
658	Pefloxacin	2등급	
659	Ertapenem	2등급	
660	Imipenem + Cilastatin	2등급	
661	Meropenem	2 등 급	

연번	유효성분	등그	비고
662	Panipenem + Betamipron	2등급	
663	Aztreonam	2등급	
664	Colistin	2등급	
665	〈삭제〉		
666	Fusidic acid	2등급	
667	Linezolid	2등급	
668	Rifaximin	2등급	
669	Spectinomycin	2등급	
670	Avanafil	1등급	
671	Mirodenafil	1등급	구강붕해필름 포함
672	Sildenafil	1등급 (폐동백고혈압 치료시 제외)	구강붕해필름 포함
673	Tadalafil	1등급	구강붕해필름 포함
674	Udenafil	1등급	100 121 1
675	Vardenafil	1등급	
676	Ephedrine	2등급	
677	Terbutaline	2등급	흡입제 포함
678	Edoxaban	2등급	
679	Codeine	2등급	
680	Mesalazine	2등급	좌제, 관장제, 포말제 포함
681	Olodaterol + Tiotropium	2등급	흡입제 포함
682	Flutemetamol (18F)	2등급	
683	Lenvatinib	2등급	
684	Perampanel	2 등급	
685	Polmacoxib	2등급	
686	Lorcaserin	1등급	
687	Secukinumab	2등급	
688	Albiglutide	2등급	
689	Anagliptin	2등급	
690	Dulaglutide	2등급	
691	Evogliptin	2등급	
692	Ramucirumab	2등급	
693	Propofol	2등급	
694	Tedizolid	2등급	
695	Zabofloxacin	2등급	
696	Daclatasvir	2 등 급	
697	Sofosbuvir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698	Ledipasvir + Sofosbuvir	2등급	
699	St. John's Wort	2등급	
700	Mometasone	2등급	점비제, 연고제, 크림제, 로션제, 흡입제 포함
701	Esomeprazole	2등급	
702	Lansoprazole	2등급	
703	Dexlansoprazole	2등급	
704	Rabeprazole	2등급	
705	Pantoprazole	2등급	
706	S-pantoprazole	2등급	
707	Alclometasone	2등급	로션제, 크림제, 연고제 포함
708	Strontium chloride	1등급	
709	Dimethyl fumarate	2등급	
710	Sacubitril· Valsartan	1등급	
711	Nintedanib	1등급	
712	Pasireotide	2등급	
713	Elotuzumab	2등급	
714	Nivolumab	2등급	
715	Olmutinib	2등급	
716	Palbociclib	2등급	
717	Pembrolizumab	2등급	
718	Ruxolitinib	2등급	
719	Etonogestrel	1등급	
720	Choriogonadotropin α	1등급	
721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1등급 (다만 습관성 유산, 절박유산 치료 시 제외)	
722	Lutropin α	1등급	
723	Darbepoetin α	2등급	
724	Erythropoietin	2등급	
725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2등급	
726	Octreotide	2등급	
727	Carbetocin	1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728	Dinoprostone	1등급 (다만 임신 기간 38주 이상인, 분만의 유도가 의학적 또는 산과적으로 지시된 환자의 분만 유도 시 제외)	질정제 포함
729	Sulprostone	1등급 (치료목적의 유산유도에 사용 시 제외)	
730	Ritodrine	2등급 (임신기간 22주에서 37주 사이의 임부의 분만억제 사용 시 제외)	
731	Alfuzosin	2등급	
732	Tamsulosin	2등급	
733	Terazosin	2등급	
734	Diethylpropion	1등급	
735	Mazindol	1등급	
736	Phendimetrazine	1등급	
737	Phentermine	1등급	
738	Naltrexone + Bupropion	1등급	
739	Orlistat	1등급	
740	Naltrexone	2등급	
741	2-Deoxy-2-fluoro-D-glucose (18F)	2등급	
742	6-Fluoro-(18F)-L-dopa	2등급	
743	Sodium Fluoride (18F)	2등급	
744	N-(3-Fluorpropyl)-2β-carboxy -methoxy-3β-(4-[1231]iodophenyl) -tropane	1등급	
745	N-Isopropyl-4-iodoamphetamine (123I)	1등급	
746	3-Iodobenzylguanidine (123I)	1등급	
747	3-Iodobenzylguanidine (131I)	1등급	
748	6β-lodomethyl-19- norcholest-5(10)-en-3β-ol (131I)	1등급	
749	Sodium Molybdate (99Mo) + Sodium Pertechnetate (99mTc)	2등급	
750	Betiatide	2등급	
751	Mertiatide	2등급	
752	Dimercapto Succinic Acid	2등급	
753	Disodium Oxidronate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754	Exametazime	 2등급	1
755	Mebrofenin	2등급	
756	Methylenediphosphonic Acid	 2등급	
-			
757	Pentetic Acid	2등급	
758	Sodium Phytate	2등급	
759	Sodium Pyrophosphate Tetrakis	2등급	
760	(2-Methoxyisobutylisonitrile) Copper(I) Tetrafluoroborate	2등급	
761	Tetrasodium3,3-diphosphono-propa ne-1,2-dicarboxylate	2등급	
762	Tetrofosmin	2등급	
763	Ammonia (13N)	2등급	
764	Chromium (51Cr) Edetate	2등급	
765	Gallium Citrate (67Ga)	2등급	
766	Radium Dichloride (223Ra)	1등급	
767	Sodium Chromate (51Cr)	2등급	
768	Thallium (201Tl) Chloride	2등급	
769	Urea (14C)	2등급	
770	Yttrium (90Y) Chloride	2등급	
771	Freeze-dried BCG Vaccine	1등급	
772	Inactivated Hantaan Virus	2등급	
773	Live Attenuated Influenza virus Type A (H1N1) + Live Attenuated Influenza virus Type A (H3N2) + Live Attenuated Influenza virus Type B	1등급	
774	Purified Inactivated Influenza Antigen (H5N1)	2등급	
775	Live Attenu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1등급	
776	Live attenuated Measles Vaccine + Live Mumps Vaccine + Live Attenuated Rubella Vaccine	1등급	
777	Live Salmonella Typhoid Ty21a Strain	1등급	
778	Vaccinia Virus	1등급	
779	Live Attenuated Varicella-Zoster Vaccines	1등급	
780	Bupivacaine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781	Levobupivacaine	2등급	
782	Teriflunomide	 1등급	
783	Enzalutamide	 1등급	
784	Osimertinib	2등급	
785	Vandetanib	 2등급	
786	Anagrelide	 2등급	
787	BCG Strain Tice	2등 급	
788	Mifamurtide	2등 급	
789	Levosulpiride	2등 급	
790	Somatostatin	2등급	
791	Somatropin	2등급	
792	Teriparatide	2등급	
793	Prednisone	2등급	
794	Promestriene	2등급	질좌제, 질크림제 포함
795	Tolterodine	2등급	
796	Lindane	2등급	크림제, 로션제, 외용액제(샴푸제) 포함
797	Alfatradiol	2등급	외용액제 포함
798	Eculizumab	2등급	
799	Human papillomavirus (types 6, 11, 16, 18, 31, 33, 45, 52, 58) L1 protein	2등급	
800	Elbasvir+Grazoprevir	2등급	
801	Rupatadine fumarate	2등급	
802	Apremilast	1등급	
803	Baricitinib	2등급	
804	Ixekizumab	2등급	
805	Azilsartan medoxomil potassium	2등급	
806	Alirocumab	2등급	
807	Evolocumab	2등급	
808	Besifovir dipivoxil maleate	2등급	
809	Atezolizumab	2등급	
810	Carfilzomib	2 등 급	
811	Panobinostat lactate	2 등 급	
812	Ombitasvir + Paritaprevir + Ritonavir	2등급	
813	Sevoflurane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814 Ginkgo biloba leaf extract 2등급 815 Dihydrocodeine 2등급 816 Hydrocodone 2등급 817 Hydromorphone 2등급 818 Oxycodone 2등급 819 Alfentanil 2등급 820 Remifentanil 2등급 821 Sufentanil 2등급 822 Desflurane 2등급 823 Etomidate 2등급 824 Ketami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40 Adefovir 2등급 841 Adefovir				
815 Dihydrocodeine 2등급 816 Hydrocodone 2등급 817 Hydromorphone 2등급 818 Oxycodone 2등급 819 Alfentanil 2등급 820 Remifentanil 2등급 821 Sufentanil 2등급 822 Desflurane 2등급 823 Etomidate 2등급 824 Ketami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20 Sabapentin 2등급 821 Supropylantipyrine 2등급 822 Sabapentin 2등급 823 Etomidate 2등급 824 Retami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5등급 829 Zolpidem 25등급 829 Zolpidem 25등급 830 Gabapentin 25등급 831 Rufinamide 25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5등급 833 Methylphenidate 25등급 834 Donepezil 25등급 835 Fampridine 25등급 836 Galantamine 25등급 837 Memantine 25등급 838 Nalfurafine 25등급 839 Rivastigmine 25등급 839 Rivastigmine 25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5등급 841 Posaconazole 25등급 842 Caspofungin 25등급 843 Micafungin 25등급 844 Cycloserine 25등급 845 Delamanid 25등급 846 Rifampicin 25등급 847 Isoniazid 25등급 848 Ethambutol 25등급 849 Pyrazinamide 25등급 849 Pyrazinamide 25등급 849 Pyrazinamide 25등급 849 Pyrazinamide 25등급 850 Lamivudine 25등급 850 Lamivudine 255급 850 Lamivudine 2553 850 Lamivudine 25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816 Hydrocodone 2등급 817 Hydromorphone 2등급 818 Oxycodone 2등급 819 Alfentanil 2등급 820 Remifentanil 2등급 821 Sufentanil 2등급 822 Desflurane 2등급 823 Etomidate 2등급 824 Ketami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14	Ginkgo biloba leaf extract		
817 Hydromorphone 2등급 818 Oxycodone 2등급 819 Alfentanil 2등급 820 Remifentanil 2등급 821 Sufentanil 2등급 822 Desflurane 2등급 823 Etomidate 2등급 824 Ketami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30 Rufantipyrine 2등급 831 Rufantipyrine 2등급 832 Esga 2 Sega	815	Dihydrocodeine		
818 Oxycodone 2등급 819 Alfentanil 2등급 820 Remifentanil 2등급 821 Sufentanil 2등급 821 Sufentanil 2등급 822 Desflurane 2등급 823 Etomidate 2등급 824 Ketami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816	Hydrocodone		
819 Alfentanil 2등급 820 Remifentanil 2등급 821 Sufentanil 2등급 822 Desflurane 2등급 823 Etomidate 2등급 824 Ketami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30 Rivastigmine 2등급 831 Rufandin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49 Pyrazinamide	817	Hydromorphone	2등급	
820 Remifentanil 2등급 821 Sufentanil 2등급 822 Desflurane 2등급 823 Etomidate 2등급 824 Ketami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30 Rivastigmine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Rifampicin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850 Lamivudine 2등급 849	818	Oxycodone	2등급	
821 Sufentanil 2등급 822 Desflurane 2등급 823 Etomidate 2등급 824 Ketami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819	Alfentanil	2등급	
822 Desflurane 2등급 823 Etomidate 2등급 824 Ketami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820	Remifentanil		
823 Etomidate 2등급 824 Ketami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30 Rivastigmine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E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821	Sufentanil		
824 Ketami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t< td=""><td>822</td><td>Desflurane</td><td>2등급</td><td></td></t<>	822	Desflurane	2등급	
825 Thiopental 2등급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40 Lamivudine	823	Etomidate		
826 Chloral hydrate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824	Ketamine	2등급	
Section Sec	825	Thiopental	2등급	
828 Quazepam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848 Ethambutol 849 Pyrazinamide 850 Lamivudine	826	Chloral hydrate	2등급	
Recomposition 2등급	827	Doxepin	2등급	
830 Gabapentin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50	828	Quazepam	2등급	
831 Rufinamide 2등급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29	Zolpidem	2등급	
Sacration Sac	830	Gabapentin		
Sacration Sac	831	Rufinamid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832	Isopropylantipyrine	2등급	
834 Donepezil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833	Methylphenidate	2등급	
836 Galantam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834	Donepezil		
837 Memant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35	Fampridine	2등급	
838 Nalfuraf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836	Galantam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37	Memant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838	Nalfurafine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39	Rivastigmine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40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41	Posaconazole	2등급	
844 Cycloser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42	Caspofungin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43	Micafungin	2등급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44	Cycloserine		
846 Rifampicin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45	Delamanid	2등급	
847 Isoniazid 2등급 848 Ethambutol 2등급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46	Rifampicin		
848Ethambutol2등급849Pyrazinamide2등급850Lamivudine2등급	847	Isoniazid		
849 Pyrazinamide 2등급 850 Lamivudine 2등급	848	Ethambutol		
850 Lamivudine 2등급	849	Pyrazinamide		
	850	Lamivudine		
	851	Adefovir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852	Entecavir	2등급	
853	Atovaquone + Proguanil	2등급	
854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alafenamide	2등급	
855	Cobicistat + Elvi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disoproxil	2등급	
856	Dolutegravir	2등급	
857	Theophylline	2등급	
858	Levodropropizine	2등급	
859	Procaterol	2등급	
860	Bambuterol	2등급	
861	Clenbuterol	2등급	
862	Formoterol	2등급	
863	Fenoterol	2등급	
864	Salbutamol	2등급	
865	Tiotropium	2등급	
866	Isoproterenol	2등급	
867	Naloxone	2등급	
868	Pirfenidone	2등급	
869	Pseudoephedrine	2등급	
870	S-Amlodipine	2등급	
871	Midodrine	2등급	
872	Calcium dobesilate	2등급	
873	Alteplase	2등급	
874	Tenecteplase	2등급	
875	Urokinase	2등급	
876	Streptokinase	2등급	
877	Streptokinase + Streptodornase	2등급	
878	Argatroban	2등급	
879	Dopamine	2등급	
880	Milrinone	2등급	
881	Pentoxifylline	2등급	
882	Ibudilast	2등급	
883	Protirelin	2등급	
884	Lanthanum carbonate	2등급	
885	Sevelamer	2등급	
886	Alglucosidase α	2등급	
887	Rasburicase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888	Miglitol	2등급	
889	Vasopressin	2등급	
890	Elcatonin	2등급	
891	Liothyronine	2등급	
892	Thyrotropin alfa	2등급	
893	Fenticonazole	2등급	질연질캡슐제 포함
894	Dimethyl sulfoxide	2등급	외용액제 포함
895	Propiverine	2등급	
896	Solifenacin	2등급	
897	Silver sulfadiazine	2등급	크림제 포함
898	Mafenide acetate	2등급	크림제, 외용산제 포함
899	Clobetasol propionate	2등급	로션제, 스프레이, 연고제, 외용액제, 크림제 포함
900	Diflucortolone valerate	2등급	로션제, 연고제, 크림제 포함
901	Fluocinonide	2등급	겔제, 외용액제, 크림제 포함
902	Desoximetasone	2등급	겔제, 로션제, 연고제 포함
903	Halcinonide	2등급	연고제, 크림제 포함
904	Diflorasone diacetate	2등급	크림제 포함
905	Clobetasone butyrate	2등급	연고제, 크림제 포함
906	Prednicarbate	2등급	로션제, 연고제, 외용액제, 크림제 포함
907	Desonide	2등급	로션제, 크림제 포함
908	Crotamiton	2등급	연고제 포함
909	Terbinafine	2등급	
910	Tioconazole	2등급	크림제 포함
911	Cadexomer iodine	2등급	연고제 포함
912	Potassium iodide + Sodium iodide	2등급	점안제 포함
913	Difluprednate	2등급	크림제 포함
914	Irsogladine	2등급	
915	Lafutidine	2등급	
916	Nizatidine	2등급	
917	Roxatidine	2등급	
918	Magnesium carbonate + Citric acid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919	Aprepitant	2등급	
920	Fosaprepitant	2등급	
921	Dimenhydrinate	2등급	
922	Granisetron	2등급	패취제 포함
923	Ondansetron	2등급	
924	Palonosetron	2등급	
925	Palonosetron + Netupitant	1등급	
926	Ramosetron	2등급	
927	Chenodeoxycholic acid + Ursodeoxycholic acid	1등급	
928	Loperamide	2등급	
929	Berberine	1등급	
930	Bismuth subsalicylate + Calcium carbonate p.p.t.	2등급	
931	Bisacodyl	2등급	좌제 포함
932	Sodium picosulfate	2등급	
933	Agiolax	2등급	
934	Docusate	2등급	
935	Glycerin	2등급	관장제 포함
936	Liquid paraffin	2등급	
937	Metoclopramide	2등급	
938	Pinaverium	2등급	
939	Mebeverine	2등급	
940	Balsalazide	2등급	
941	Sodium phenylbutyrate	2등급	
942	Clevudine	2등급	
943	Lidocaine	2등급	
944	Mepivacaine	2등급	
945	Ropivacaine	2등급	
946	Procaine	2등급	
947	Atracurium	2등급	
948	Cisatracurium	2등급	
949	Baclofen	2등급	
950	Cyclobenzaprine	2등급	
951	Dantrolene	2등급	
952	Methocarbamol	2등급	
953	Suxamethonium	2등급	
954	Tizanidine	2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955	Tolperisone	2등급	
956	Atropine	 2등급	점안제 포함
957	Oxybutynin	 2등급	06120
958	Tofisopam	2등급	
	_	 2등급	
959	Magnesium sulfate	(5일 이상 사용 시)	
960	Scopolamine hydrobromide	2등급	패취제 포함
961	Trospium	2등급	
962	Ethanol	2등급	
963	Enviomycin	2등급	
964	Rifabutin	2등급	
965	Prothionamide	2등급	
966	Clofazimine	2등급	
967	Dapsone	2등급	
968	Tenofovir alafenamide	2등급	
969	Zidovudine	2등급	
970	Nevirapine	2등급	
971	Nelfinavir	2등급	
972	Enfuvirtide	2등급	
973	Maraviroc	2 등급	
974	Cobicistat + Atazanavir	2등급	
975	Cobicistat + Darunavir	2등급	
976	Inosiplex	2등급	
977	Valaciclovir	2등급	
978	Zanamivir	2등급	흡입제 포함
979	Natalizumab	2등급	
980	Flubendazole	2등급	
981	Niclosamide	2등급	
982	Pyrantel	2등급	
983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2등급	
984	Sulfasalazine	2등급	
985	Pentamidine	2등급	
986	Pilocarpine	2등급	점안제 포함
987	Homatropine	2등급	점안제 포함
988	Phenylephrine	2등급	
989	Fluocinolone acetonide	2등급	이식정제, 크림제, 점이제 포함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990	Fluorometholone	2등급	점안제, 안연고제 포함
991	Ketotifen	2등급	
992	Apraclonidine	2등급	점안제 포함
993	Brinzolamide	2등급	점안제 포함
994	Dorzolamide	2등급	점안제 포함
995	Bimatoprost	2등급	점안제 포함
996	Latanoprost	2등급	점안제 포함
997	Levobunolol	2등급	점안제 포함
998	Timolol	2등급	점안제 포함
999	Verteporfin	2등급	
1000	Ciclesonide	2등급	점비액제, 흡입제 포함
1001	Omalizumab	2등급	
1002	Piprinhydrinate	2등급	
1003	Sirolimus	2등급	
1004	Evening primrose oil	2등급	
1005	Peginterferon beta-1a	2등급	
1006	Trientine	2등급	
1007	Zinc acetate	2등급	단일제에 한함
1008	Allopurinol	2등급	
1009	Edetate calcium disodium (Calcium EDTA)	2등급	
1010	Deferasirox	2등급	
1011	Deferoxamine	2등급	
1012	Dexrazoxane	1등급	
1013	Aminobenzoate potassium	2등급	
1014	5-Hydroxytryptophan	2등급	
1015	Cabergoline	2등급	
1016	Avocado and Soyabean oil, unsaponifiables	2등급	
1017	Diacerein	2등급	
1018	Diazoxide	2등급	
1019	Barium Sulfate	2등급	
1020	Gadobenate dimeglumine	1등급	
1021	Gadoteridol	1등급	
1022	Iobitridol	2등급	
1023	Iodised oil	2등급	

연번	유효성분	<u> </u>	비고
1024	Iodixanol	2등급	
1025	Iohexol	2등급	
1026	Iomeprol	2등급	
1027	Iopamidol	2등급	
1028	Iopromide	2등급	
1029	Ioversol	2등급	
1030	Ioxitalamic acid	2등급	
1031	Alfacalcidol	2등급	
1032	Calcifediol	2등급	
1033	Paricalcitol	2등급	
1034	Potassium chloride	2등급	단일제에 한함
1035	Aminocaproic acid	2등급	
1036	Heparin	2등급	
1037	Efmoroctocog alfa	2등급	
1020	Factor IX Fc fusion	25ユ	
1038	protein recombinant	2등급	
1039	Eltrombopag	2등급	
1040	Romiplostim	2등급	
1041	Lenograstim	2등급	
1042	Pegfilgrastim	2등급	
1043	Lipegfilgrastim	2등급	
1044	Pegteograstim	2등급	
1045	Tripegfilgrastim	2등급	
1046	Ticlopidine	2등급	
1047	Sodium tetradecyl sulfate	2등급	
1048	Manganese chloride	2등급	
1049	Brentuximab vedotin	2등급	
1050	Centella Titrated Extract	2등급	
1051	Dioctahedral smectite	2등급	
1052	Nusinersen	2등급	
1053	Letermovir	2등급	
1054	Guselkumab	2등급	
1055	Durvalumab	2등급	
1056	Ertugliflozin	2등급	
1057	Tegoprazan	2등급	
1058	Sucroferric oxyhydroxide	2등급	
1059	Florapronol (18F)	2등급	
1060	Adapalene	2등급	겔제 포함

연번	유효성분	<u> </u>	비고
1061	Brivaracetam	2등급	
1062	Galcanezumab	2등급	
1063	Opicapone	2등급	
1064	Ripasudil	2등급	점안제 포함
1065	Omidenepag isopropyl	2등급	점안제 포함
1066	Risankizumab	2등급	
1067	Benralizumab	2등급	
1068	Vonoprazan	2등급	
1069	Lubiprostone	2등급	
1070	Romosozumab	2등급	
1071	Inotuzumab ozogamicin	2등급	
1072	Abemaciclib	2등급	
1073	Tipiracil + Trifluridine	2등급	
1074	Olaparib	2등급	
1075	Ribociclib	2등급	
1076	Bictegravir + Emtricitabine + Tenofovir alafenamide	2등급	
1077	Baloxavir marboxil	2등급	
1078	Remdesivir	2등급	
1079	D-Mannitol	2등급	주사제에 한함
1080	Molnupiravir	1등급	
1081	Esketamine	2등급	점비제 포함
1082	Loxapine	2등급	
1083	Armodafinil	2등급	
1084	Ataluren	2등급	
1085	Edaravone	2등급	
1086	L-arginine-L-aspartate	2등급	
1087	Tafamidis	2등급	
1088	Canakinumab	2등급	
1089	Purified house dust mite	2등급	
1090	allergen extract Gadoterate meglumine	2등급	
1090	Perflutren	 2등급	
1091	Varenicline	2등급	
1092	Bedaquiline	2 ŏ ㅂ 2등급	
1093	Conestat alfa	2등급	
1094	Follitropin delta	 1등급	
1096	Foscarnet	2등급	
1097	Human serum albumin	2등급	

연번			비고
1000	유효성분	등급	11-12-
	Icatibant	2등급	
	Mepolizumab	2등급	
	Migalastat	2등급	
	Nitrofurantoin	2등급	
	Riociguat	1등급	
	Defibrotide 16	2등급	
	Asfotase alfa	2등급	
	Elosulfase alfa	2등급 2등급	
	Eliglustat	2등급	
	Sapropterin	2등급	
	Alectinib	2등급	
	Avelumab	2등급	
	Blinatumomab	2등급	
	Cabozantinib	2 등 급	
	Ceritinib	2등급	
1113	Cobimetinib	2등급	
1114	Dabrafenib	2등급	
1115	Daratumumab	2등급	
1116	Entrectinib	2등급	
1117	Gilteritinib	2등급	
1118	Ibrutinib	2등급	
1119	Ipilimumab	2등급	
1120	Ixazomib citrate	2등급	
1121	Larotrectinib	2등급	
1122	Midostaurin	2등급	
	Niraparib	2등급 2등급	
	Obinutuzumab	2 등급	
1125	Pomalidomide	1등급	
1126	Ponatinib	2등급	
1127	Siltuximab	2등급	
1128	Trametinib	2등급	
1129	Fluoroestradiol(18F)	2등급	
	Lutetium(177Lu) oxodotreotide	1등급	
	Eslicarbazepine acetate	2등급	
	Mirogabalin	2등급	
	Safinamide	2등급	
	Upadacitinib	 2등급	
	Ranolazine	2등급	
	Burosumab	 2등급	
	Brigatinib	25급	

연번	유효성분	등그	비고
1138	Dacomitinib	2등급	
1139	Talazoparib	2등급	
1140	Venetoclax	2등급	
1141	Brolucizumab	2등급	
1142	Vedolizumab	2등급	
1143	Isavuconazonium	2등급	
1144	Ravulizumab	2등급	
1145	Manganese sulfate	2등급	주사제에 한함
1146	Amidotrizoate + Meglumine + Sodium hydroxide	2등급	
1147	D-sorbitol + Glycerin + Sodium citrate	2등급	관장제 포함
1148	Iodine + Isopropanol	2등급	외용액제 포함
1149	Povidone-iodine	2등급	질용좌제, 외용액제, 가글제, 구강용 스프레이제 포함
1150	Iodine + Potassium iodide	2등급	
1151	Remimazolam	2등급	
1152	Valbenazine	2등급	
1153	Latanoprostene bunod		점안제 포함
1154	Abrocitinib	2등급 2등급	
1155	Lanadelumab	2등급	
1156	Vericiguat	1등급	
1157	Fexuprazan	2등급	
1158	Trifarotene	2등급	크림제 포함
1159	Roxadustat	1등급	
1160	Acalabrutinib	2등급	
1161	Alpelisib	2등급	
1162	Lazertinib	2등급	
1163	Neratinib	2등급	
1164	Tisagenlecleucel	2등급	
1165	Fluciclovine(18F)	1등급	
1166	Fremanezumab	2등급	
1167	Eflapegrastim	2등급	
1168	Lasmiditan	2등급	
1169	Filgotinib	2등급	
1170	Finerenone	2등급	
1171	Vibegron	2등급	
1172	Enarodustat	1등급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1173	Luspatercept	1등급	
1174	Enavogliflozin	2등급	
1175	Dostarlimab	2등급	
1176	Fedratinib	2등급	
1177	Lorlatinib	2등급	
1178	Mogamulizumab	2등급	
1179	Trastuzumab deruxtecan	2등급	
1180	Cabotegravir	2등급	
1181	Sofosbuvir + Velpatasvir	2등급	
1182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2등급	
1183	Human Protein C	2등급	
1184	Nifuroxazide	2등급	
1185	Desogestrel	1등급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 7.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따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약제 중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요양 급여대상으로 급여목록표에 고시되어 있는 약제를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허가초과 사용"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제외한다.
 - 1.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 2.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 3.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제3조(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자격 등)** ①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이라 한다)이 예외적으로 제3조의2제3항에 의하여 인정한 약제에 대하여는 의약품임상 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의2(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대상 기관 확대 요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심평원장에게 특정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른 관련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한의사협회
- 2. 대한병원협회
- 3. 대한치과의사협회
- 4. 의료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
- ② 제1항 각 호의 단체는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요청하고자 하는 약제(이하 '신청약제'라고 한다)가 제2조 각 호 및 별표에서 정한 의학적 근거의 범위 및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심평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심평원장은 제2항에 따라 단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신청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의 타당성, 사용대상 기관 확대의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 기관의 확대요청을 승인한다.
- 1. 동일한 사용승인 사항으로 승인 받은 기관이 전체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대비 1/3 이상인 약제
- 2. 동일한 사용승인 사항으로 사용한 례수가 신청일 전년도 기준 3,000례 이상인 약제
- 3. 대상 질환의 특성 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희귀 질환 및 소아질환으로서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약제
- 제4조(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 등) ① 약제를 허가초과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의 장은 심평원장에게 해당 약제에 대해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요양
 - 기관에 설치된 약사법령에 의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평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과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따라 심평원장이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한약제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별표에서 정한 의학적 근거의 범위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의 적절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같은 신청기관 내에 설치된 약사(藥事)위원회 (Pharmacy and Therapeutic committee; PTC)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심평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별표에서 정한 의학적 근거의 범위 및 기준에 적합하고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⑤ 심평원장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평원장은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관련 단체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단체의 심의 관련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심평원장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⑦ 심평원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 및 제5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내용이 의학적 근거의 범위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 경우에는 평가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 ⑧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관련 단체에서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대상 기관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호서식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심평원장에게 확대 신청하여야 하며, 제3조2의제3항에 따른 인정한 약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기재하여 심평원장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⑨ 심평원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한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승인여부 및 내용을 신청한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따른 검토기간 및 신청한 요양기관 또는 단체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는데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⑩ 심평원장이 제9항에 따라 승인 여부 및 내역을 통보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평원장의 승인 통보 전 신청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약제는 심평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등) ①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을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해당 처방·투약이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 투약 계획 및 소요 비용
 - 2. 예상되는 부작용의 종류 및 부작용 발생 시 대응 계획
 - 3. 대체가능한 치료법 유무
 - ② 요양기관이 심평원장으로부터 제4조제9항에 따른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 약제를 더 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요양기관이 심평원장으로부터 제4조제9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에 사용한 해당 약제의 사용 내역(승인 후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제4조제11항에 따라 승인 통보 전 사용한 내역도 포함한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도에 비급여 불승인을 3회 받은 요양기관:경고
 - 2. 해당 연도에 비급여 불승인을 4회 이상 받은 요양기관:제4조제9항에 따른 심평원장 승인 전 비급여 사용 제한
 - ⑤ 심평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비급여 사용내역을 보고 받은 후 그 내용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은 사용내역 등을 평가하여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평원장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심평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비급여 사용내역을 평가하여 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른 식약처장의 사용증지 요청을 받은 심평원장은 지체 없이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게 승인 결정의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세부운영절차 등)**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승인에 필요한 검토절차, 심의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한다.
-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40호, 2020. 7.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승인을 위한 의학적 근거의 범위 및 기준(제4조 관련)

1. 의학적 근거의 범위

의학적 근거의 범위는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연구문헌, 제외국의 약제 허가사항 등으로 한다.

2. 임상연구문헌의 의학적 근거수준의 분류 및 기준

임상연구 문헌은 연구유형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을 위해서는 범주 2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희귀질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주 4 까지 인정할 수 있다.

범주 1: 무작위 대조군 시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systemic review, meta-analysis)

범주 2: 무작위 대조군 시험 또는 범주3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범주 3: 준-무작위 대조군 시험, 환자-대조군 연구(case control study), 코호트 연구 (cohort study) 및 기타 관찰적 분석 연구(observational, analytic study)

범주 4: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 전/후 비교연구(before/after study), 증례 보고(case report), 환자군 연구(case series), 비분석적 연구(non-analytic study)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사업단 EBH팀 「근거문헌수록지침(EBRM: Evidence Based Review Manual) 제2판 2006년 12월」

2024년 7월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발행일 : 2024년 8월 30일

발행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 쇄:(주)두루행복한세상

1644-0728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Tel. 1644-2000 www.hira.or.kr